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와 공시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

박성환 (한밭대)

이호영 (연세대)

강선아 (충남대)

채수준 (강원대)

이재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14년 3월

한국회계학회

< 차 례 >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실태 및 문제점	2
3. 연구목적	3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4
1.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	4
2.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	5
3. 비영리조직의 공시제도	6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제4절 기대효과	15
제 2 장 공시실태분석	17
제1절 사회복지법인 공시 현황	17
1. 사회복지법인 연도별 공시현황	17
2. 사회복지법인 규모별 공시현황	33
제2절 장학재단 공시현황	53
제3절 공시 현황 요약	68
1. 사회복지법인 공시 현황 요약	68
2. 장학재단 공시 현황 요약	72
제4절 단변량 분석	75
제 3 장 이해관계자 설문분석결과	78
제1절 조사개요	78
1. 조사목적	78
2. 조사내용	78
제2절 조사 설계	79

1. 분석대상	79
2. 척도의 정의	79
3. 자료 분석	79
제3절 분석결과	80
1. 공인회계사 설문결과	80
2. 비영리법인 관계자 설문결과	106
3. 정보이용자 설문결과	132
4. 주무관청 관계자 설문결과	153
5. 종교신자 설문결과	178

제 4 장 국내외 비영리조직의 모니터링시스템 모범사례 발굴 192

제1절 국내사례	193
1. 국내 비영리조직의 평가사례	193
2. 국내 벤치마킹사례(Best Practice Cases)	195
3. 국내 실패사례(Worst Practice Cases)	209
제2절 국외사례	214
1. 해외 비영리조직의 평가사례	214
2. 해외 벤치마킹사례(Best Practice Cases)	218
3. 해외 실패사례(Worst Practice Cases)	229
제3절 홈텍스 vs. Form 990 비교	236
1. 홈텍스 vs. Form 990의 기본사항 차이점	236
2. 홈텍스 vs. Form 990의 기타사항에서의 차이점	237
3. Form 990에서 요구하는 기타사항	237
4. 홈텍스 및 Form 990에서 공시되는 재무제표	238
5. 한국 및 미국의 비영리기관 감사보고서 비교	239
제4절 해외 비영리기관 회계제도	240
1. 미국	240
2. 일본	245
3. 영국	246
제5절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248
1. 비영리기관의 내부통제	248
2. 비영리기관의 외부감사 및 규제기관의 감독	248
3. 비영리기관의 회계처리 및 공시	249

제 5 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0

제 1 절 문제점 250

- 1. 내부통제의 취약성 250
- 2. 공시의 부실 및 명확한 회계기준의 부재 252
- 3. 외부감사의 실효성 미흡 255

제 2 절 개선방안 259

- 1. 내부통제 259
- 2. 회계기준체계와 공시제도의 개선 260
- 3. 외부감사 263
- 4. 관련법규의 정비 267

제 6 장 결론 271

참고 문헌 274

부록 : 이해관계자 설문지 277

〈 표 차 례 〉

〈표 2-1〉 주요기관의 외부감사현황	5
〈표 2-2〉 비재무 정보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17
〈표 2-3〉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19
〈표 2-4〉 대차대조표 수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22
〈표 2-5〉 대차대조표 수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24
〈표 2-6〉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26
〈표 2-7〉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28
〈표 2-8〉 손익계산서 합계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29
〈표 2-9〉 감사보고서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31
〈표 2-10〉 홈페이지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32
〈표 2-11〉 비재무 정보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33
〈표 2-12〉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36
〈표 2-13〉 대차대조표 수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39
〈표 2-14〉 대차대조표 합계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42
〈표 2-15〉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45
〈표 2-16〉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47
〈표 2-17〉 손익계산서 합계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50
〈표 2-18〉 감사보고서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51
〈표 2-19〉 비재무 정보 공시 현황 (장학재단)	53
〈표 2-20〉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공시 현황(장학재단)	55
〈표 2-21〉 대차대조표 수익사업 공시 현황(장학재단)	57
〈표 2-22〉 대차대조표 합계 공시 현황(장학재단)	59
〈표 2-23〉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공시 현황(장학재단)	61
〈표 2-24〉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공시 현황(장학재단)	62
〈표 2-25〉 손익계산서 합계 공시 현황(장학재단)	64
〈표 2-26〉 감사보고서 공시 현황(장학재단)	65
〈표 2-27〉 홈페이지 공시 현황(장학재단)	67
〈표 2-28〉 사회복지법인 공시 현황 요약(연도별)	69
〈표 2-29〉 사회복지법인 공시 현황 요약(규모별)	70
〈표 2-30〉 장학재단 공시 현황 요약	73
〈표 2-31〉 단변량 분석	76
〈표 2-32〉 상관관계	77
〈표 3-1-1〉 조사내용	78
〈표 3-1-2〉 분석대상	79
〈표 3-2-1〉 응답자 특성별 분포	80
〈표 3-2-2〉 응답자의 법인 소속 현황	81
〈표 3-3-1〉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85

<표 3-3-2>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1	86
<표 3-3-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2	87
<표 3-3-4>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3	88
<표 3-3-5>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4	89
<표 3-3-6>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5	90
<표 3-4-1>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1	91
<표 3-4-2>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2	92
<표 3-4-3>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3	93
<표 3-4-4>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4	94
<표 3-4-5>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5	95
<표 3-5-1> 외부감사의 필요성	96
<표 3-5-2> 외부감사의 효과	97
<표 3-5-3> 외부감사제도 개선1	98
<표 3-5-4> 외부감사제도 개선2	99
<표 3-6-1>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 5억 이상)	100
<표 3-6-2>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1(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101
<표 3-6-3>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2(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102
<표 3-6-4>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 1억 미만)	103
<표 3-7-1> 응답자 특성별 분포	106
<표 3-7-2> 응답자의 법인 소속 현황	107
<표 3-8-1>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111
<표 3-8-2>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1	112
<표 3-8-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2	113
<표 3-8-4>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3	114
<표 3-8-5>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4	115
<표 3-10-1> 법인 정보공시 현황1	118
<표 3-10-2> 법인 정보공시 현황2	119
<표 3-11-1>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1	120
<표 3-11-2>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2	121
<표 3-11-3>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3	122
<표 3-11-4>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4	123
<표 3-11-5>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5	124
<표 3-12-1> 외부감사인 활용 현황	126
<표 3-13-1> 비영리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의견1	128
<표 3-13-2> 비영리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의견2	129
<표 3-14-1> 응답자 특성별 분포	132
<표 3-15-1> 비영리법인 정보 인식수준	135
<표 3-15-2>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136
<표 3-15-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137
<표 3-15-4>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1	138

<표 3-15-5>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2	139
<표 3-15-6>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3	140
<표 3-15-7>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4	141
<표 3-15-8>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5	142
<표 3-16-1> 외부감사의 필요성	143
<표 3-16-2> 외부감사의 효과	144
<표 3-16-3> 외부감사제도 개선1	145
<표 3-16-4> 외부감사제도 개선2	146
<표 3-17-1>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 5억 이상)	147
<표 3-17-2>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1(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148
<표 3-17-3>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2(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149
<표 3-17-4>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 1억 미만)	150
<표 3-18-1> 응답자 특성별 분포	153
<표 3-18-2> 응답자의 직급 및 경력 현황	154
<표 3-19-1> 비영리법인 제출 결산자료 및 정보 인식수준	156
<표 3-19-2> 비영리법인 제출 결산자료 및 정보의 활용도	157
<표 3-20-1>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158
<표 3-20-2>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1	159
<표 3-20-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2	160
<표 3-20-4>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3	161
<표 3-20-5>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4	162
<표 3-20-6>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5	163
<표 3-21-1>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1	164
<표 3-21-2>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2	165
<표 3-21-3>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3	166
<표 3-21-4>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4	167
<표 3-21-5>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5	168
<표 3-22-1> 외부감사의 필요성	169
<표 3-22-2> 외부감사의 효과	170
<표 3-23-1> 외부감사제도 개선1	171
<표 3-23-2> 외부감사제도 개선2	172
<표 3-24-1>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 5억 이상)	173
<표 3-24-2>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174
<표 3-24-3>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 1억 미만)	175
<표 3-25> 종교기관별 응답자 특성별 분포	179
<표 3-26-1>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 의견1	182
<표 3-26-2>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 의견2	183
<표 3-26-3> 종교기관별 기관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 의견 차이분석	184
<표 3-27-1>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 의견1	185
<표 3-27-2>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 의견2	186

<표 3-27-3> 종교기관별 재정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의견 차이분석	187
<표 3-28-1>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1	188
<표 3-28-2>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2	189
<표 3-28-3> 종교기관별 투명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 차이분석	190
<표 4-1> 장애인재단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203
<표 4-2> 장애인재단 규정	203
<표 4-3> 비영리조직 평가요소	214
<표 4-4> Charity Navigator의 평가사례	215
<표 4-5> Charity Navigator 웹상의 정보	217
<표 4-6> Direct Relief의 재무성과와 운영의 건전성(2012년 6월 30일 현재)	218
<표 4-7> 국세청 보고서 상의 정보(2012년 6월 30일 현재)	219
<표 4-8> 웹사이트 상 정보(Information Provided on the Charity' s Website)	219
<표 4-9> Direct Relief의 재무성과와 운영의 건전성(2011년 12월 31일 현재)	224
<표 4-10> 국세청 보고서 상의 정보(2011년 12월 31일 현재)	225
<표 4-11> 웹사이트 상 점보(Information Provided on the Charity' s Website)	225
<표 4-12> 재무성과와 운영의 건전성(2011년 12월 31일 현재)	227
<표 4-13> 홈텍스 vs. Form 990의 기본사항 차이	236
<표 4-14> 홈텍스 vs. Form 990의 기타사항 차이	237
<표 4-15> Form 990에서 요구하는 기타사항	238
<표 4-16> 홈텍스 vs. Form 990에서 공시되는 재무제표 비교	239
<표 4-17> 한국과 미국 감사보고서 비교	239
<표 4-18> 미국의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240
<표 4-19> IRS 인적자원 현황	241
<표 4-20> IRS 조직도	242
<표 4-21> 일본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245
<표 4-22> 영국 자선단체 수입 정보공개 양식	247
<표 5-1>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수준	250
<표 5-2> 내부통제 운영실태	251
<표 5-3> 재무정보 공시실태	252
<표 5-4> 외부감사에 대한 인식수준	256
<표 5-5> 법규에 따른 회계정보 요구와 회계기준 현황	258
<표 5-6> 내부통제 개선방안	259
<표 5-7> 비영리법인 공시개선 의견	262
<표 5-8> 외부감사제도의 개선방안	263
<표 5-9>외부감사법제화(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금액 5억 이상)	265
<표 5-10>외부감사법제화(자산규모 10억-100억 미만, 수입금액 1-5억 미만)	265
<표 5-11> 외부감사법제화(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금액 1억 미만)	266
<표 5-12> 공시관련 법규	267
<표 5-13> 외부감사와 관련된 법규	268

〈그림 차례〉

〈그림 3-1〉 업무분야(n=274, 다중응답)	81
〈그림 3-2-1〉 업무분야(n=123)	82
〈그림 3-2-2〉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경험기간(n=121)	82
〈그림 3-2-3〉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경험기관(n=121)	83
〈그림 3-2-4〉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적용지침(n=121)	83
〈그림 3-2-5〉 비영리공익법인 참여 형태(n=181, 다중응답)	84
〈그림 3-2-6〉 “비적정의견” 표명 경험(n=121)	84
〈그림 3-2-7〉 “비적정의견” 사유(n=10, 다중응답)	84
〈그림 3-3-1〉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85
〈그림 3-3-2〉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1	86
〈그림 3-3-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2	87
〈그림 3-3-4〉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3	88
〈그림 3-3-5〉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4	89
〈그림 3-3-6〉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5	90
〈그림 3-4-1〉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1	91
〈그림 3-4-2〉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2	92
〈그림 3-4-3〉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3	93
〈그림 3-4-4〉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4	94
〈그림 3-4-5〉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5	95
〈그림 3-5-1〉 외부감사의 필요성	96
〈그림 3-5-2〉 외부감사의 효과	97
〈그림 3-5-3〉 외부감사제도 개선1	98
〈그림 3-5-4〉 외부감사제도 개선2	99
〈그림 3-6-1〉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 5억 이상)	100
〈그림 3-6-2〉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1(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101
〈그림 3-6-3〉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2(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102
〈그림 3-6-4〉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 1억 미만)	103
〈그림 3-7-1〉 법인 별도 회계규정 및 지침 제정 시행여부	108
〈그림 3-7-2〉 법인 적용 회계기준(지침)	108
〈그림 3-7-3〉 고유사업의 적용 회계기록 방식과 회계원칙	109
〈그림 3-7-4〉 수익사업의 적용 회계기록 방식과 회계원칙	109
〈그림 3-7-5〉 자체 회계전담인력 보유	110
〈그림 3-8-1〉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111
〈그림 3-8-2〉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1	112
〈그림 3-8-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2	113
〈그림 3-8-4〉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3	114
〈그림 3-8-5〉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4	115
〈그림 3-9-1〉 법인 공시방법(n=144, 다중응답)	116

<그림 3-9-2> 법인 홈페이지 구축 현황(n=63)	116
<그림 3-9-3> 법인 홈페이지 업데이트 주기(n=61)	117
<그림 3-9-4> 법인 홈페이지 주요 제공 정보(n=147, 다중응답)	117
<그림 3-10-1> 법인 정보공시 현황1	118
<그림 3-10-2> 법인 정보공시 현황2	119
<그림 3-11-1>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1	120
<그림 3-11-2>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2	121
<그림 3-11-3>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3	122
<그림 3-11-4>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4	123
<그림 3-11-5>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5	124
<그림 3-12-1> 외부 회계감사 수행 여부	125
<그림 3-12-2> 외부 회계감사 수행 기관	125
<그림 3-12-3> 공인회계사의 서비스	126
<그림 3-12-4> 자산이 100억 미만 : 외부감사 이유	127
<그림 3-12-5> 외부감사받지 않는 이유	127
<그림 3-13-1> 비영리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의견1	128
<그림 3-13-2> 비영리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의견2	129
<그림 3-14-1> 기부경험(n=84)	133
<그림 3-14-2> 기부단체(n=81)	133
<그림 3-14-3> 기부한 법인의 정보접근경로(n=184, 다중응답)	134
<그림 3-14-4> 활용정보(n=155, 다중응답)	134
<그림 3-15-1> 비영리법인 정보 인식수준	135
<그림 3-15-2>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136
<그림 3-15-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137
<그림 3-15-4>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1	138
<그림 3-15-5>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2	139
<그림 3-15-6>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3	140
<그림 3-15-7>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4	141
<그림 3-15-8>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5	142
<그림 3-16-1> 외부감사의 필요성	143
<그림 3-16-2> 외부감사의 효과	144
<그림 3-16-3> 외부감사제도 개선1	145
<그림 3-16-4> 외부감사제도 개선2	146
<그림 3-17-1>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 5억 이상)	147
<그림 3-17-2>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1(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148
<그림 3-17-3>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2(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149
<그림 3-17-4>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 1억 미만)	150
<그림 3-18-1> 비영리법인 지도 및 감독시의 어려움(n=166, 다중응답)	155
<그림 3-19-1> 비영리법인 제출 결산자료 및 정보 인식수준	156
<그림 3-19-2> 비영리법인 제출 결산자료 및 정보의 활용도	157

<그림 3-20-1>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158
<그림 3-20-2>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1	159
<그림 3-20-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2	160
<그림 3-20-4>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3	161
<그림 3-20-5>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4	162
<그림 3-20-6>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5	163
<그림 3-21-1>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1	164
<그림 3-21-2>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2	165
<그림 3-21-3>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3	166
<그림 3-21-4>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4	167
<그림 3-21-5>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5	168
<그림 3-22-1> 외부감사의 필요성	169
<그림 3-22-2> 외부감사의 효과	170
<그림 3-23-1> 외부감사제도 개선1	171
<그림 3-23-2> 외부감사제도 개선2	172
<그림 3-24-1>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 5억 이상)	173
<그림 3-24-2>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174
<그림 3-24-3>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 1억 미만)	175
<그림 3-25-1> 종교기관별 분포(n=208)	178
<그림 3-25-2> 성별 분포(n=208)	178
<그림 3-25-3> 연령별 분포(n=207)	178
<그림 3-25-4> 지역별 분포(n=207)	179
<그림 3-25-5> 직책별 분포(n=262, 다중응답)	180
<그림 3-25-6> 신앙기간(n=208)	180
<그림 3-25-7> 재정정보 제공 현황(n=206)	180
<그림 3-25-8> 재정정보 제공 주기(n=208)	181
<그림 3-25-9> 재정정보 제공 내용(n=420, 다중응답)	181
<그림 3-26-1>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 의견1	182
<그림 3-26-2>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 의견2	183
<그림 3-27-1>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 의견1	185
<그림 3-27-2>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 의견2	186
<그림 3-28-1>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1	188
<그림 3-28-2>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 의견2	189
<그림 4-1>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례	196
<그림 4-2> 한국월드비전 사례1	198
<그림 4-3> 한국월드비전 사례2	198
<그림 4-4> 승가원 사례1	200
<그림 4-5> 승가원 사례2	200
<그림 4-6> 승가원 사례3	201
<그림 4-7> 승가원 사례4	201

〈그림 4-8〉 재단 후원금 공개 예	204
〈그림 4-9〉 태화복지재단의 비전 예	206
〈그림 4-10〉 비영리법인 정보공시 예	207
〈그림 4-10〉 Direct Reliefs 예(www.directrelief.org)	222
〈그림 4-11〉 United Nations Foundation 사례1	223
〈그림 4-12〉 United Nations Foundation 사례2	226
〈그림 4-13〉 United Nations Foundation 사례3	226
〈그림 4-14〉 Globus Relief 사례1	228
〈그림 4-15〉 Globus Relief 사례2	228
〈그림 4-16〉 Globus Relief 사례3	228
〈그림 4-17〉 American Breast Cancer Foundation 사례	231
〈그림 4-18〉 Firefighters Charitable Foundation 사례	233
〈그림 4-19〉 Children's Wish Foundation 사례	234
〈그림 5-1〉 비영리법인 적용 회계기준(N=66)	253
〈그림 5-2〉 비영리법인 공익사업 기록방식 및 인식기준(N=66)	254
〈그림 5-3〉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기록방식 및 인식기준(N=66)	254
〈그림 5-4〉 비영리법인 외부감사 준거 회계기준(N=123)	254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배경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료,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민법 제 32조). 이들 조직은 사회일반의 공익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두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 행위를 포함하여 운영될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조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내국 법인의 범위와 달리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법인들이다. 본래 비영리공익법인은 기부금의 출연과 자원봉사의 참여로 운영이 되고 기부자의 필랜트로피(Philanthropy)실현을 위해 대리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비영리법인은 정치, 경제, 보건, 환경, 교육,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양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활동내용도 정책제안, 감시, 국민운동 전개 등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이나 사회적 중요성과 달리 최근 기부금단체의 성금유용과 횡령 같은 공익법인의 부정과 비리는 매스컴을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부정적이다.

비영리법인의 부정과 비리는 부실한 내부통제제도와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의 취약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그 특성상 감시기능이 취약하고 설립목적이 비계량적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능력이나 의지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비영리조직에 적합한 내부통제시스템과 외부감사체계, 그리고 공시제도 등 종합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과 현실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Enron과 Worldcom 사태와 같은 대규모 회계 부정 사건이후 제정된 Sarbanes-Oxley(이하 SOX)법의 시행으로 인해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비영리 법인의 회계투명성 증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

1) 국세청 공익법인 통계에 의하면 2012년말 현재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은 29,509개(종교보급 17,708개, 학술장학 3,394개, 사회복지 3,093개, 교육 1,702개, 예술문화 743개, 의료목적 759개, 기타 2,110개)이다.

다. 실제로 Ostrower(2007)과 Iyer and Watkins(2008)의 연구에서는 SOX 이후에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Fremont-Smith(2007)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자들 역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고려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민간부문의 회계제도 개혁추진과 함께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실태 및 문제점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 강화노력은 진행 중이다. 예를 들면, 사립대학의 경우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었으나, 사립대학은 전체 비영리법인 중 약 6%(개수 기준)에 불과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비영리공익법인이 외부감사와 정보공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부정과 비리는 주로 도덕적 해이와 불투명한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공익법인의 내적·외적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현행체계에서는 관련당국의 감시감독이 사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관련규정의 위반 시 제재나 처벌도 실효성이 없어 사후규제에 대한 효과성이 의문시된다. 한정화 등(2012)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회계투명성 저하요인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규정과 감사계약상 기업의 우월한 위치, 패널티보다 회계부정의 이익이 크다는 인식 등으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사후적인 적발이나 후속조치가 아닌 부정과 비리의 사전예방차원에서 사전적 규제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례위주의 연구나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현황분석으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정화 등(2012)와 김완희 등(2013)의 연구에서는 국내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 유형별로 관할 부처(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회계지침, 외부감사 의무, 공시제도가 다르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충분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회계와 감사기준을 체계화하고 관리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총괄기구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둘러싼 환경 및 원인을 검토하고 비영리기관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 공시제도 및 회계감사 등 모니터링 실태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국내와 해외 비영리단체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벤치마킹할 모범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접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종합적인 모니터링체계 개선대안을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대안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목적

비영리 공익법인은 교육, 학술 장학, 사회복지, 의료, 문화, 기타로 구분²⁾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기부자(정보이용자), 중앙 및 지방정부 등 지원기관, 외부감사인 등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사회복지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외부감사, 공시제도의 실태분석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등 개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제 2장에서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공시현황에 대한 실태분석을 종합보고한다. 제 3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며 제 4장에서는 국내외 비영리조직의 모니터링시스템의 사례분석을 보고한다. 제 5장에서는 공시실태분석과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국내 비영리법인의 종합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설문에 사용된 설문지를 첨부하였다.

2)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상 분류체계에 따름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최근 비영리 조직의 회계투명성에 관한 관심과 달리 관련연구의 수준은 부분적 현황파악과 문헌조사에 기초한 초기단계수준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관심사항인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공시제도측면의 선행된 주요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

내부통제제도는 기업 회계정보의 오류와 부정을 통제하고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³⁾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내부통제의 도입 이후 회계투명성이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현우와 유경연(2006)은 코스닥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하여 내부통제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내부통제제도 의무시행이전에 비해 이후연도의 재량적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제도 도입의 효과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손성규와 정기위(2009)는 내부통제제도의 도입 효과성을 재무제표의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검증한 결과, 도입 전에 비해 도입 후의 회계오류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Choi et al.(2009)과 유혜영 등(2012)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력을 보유한 회사들의 경우 이익조정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김완희 등(2013)은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공금유용이나 횡령사건 등의 발생원인으로 내부통제제도의 결여를 지적하고, 최소한의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영세성으로 인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인회계사회 등의 재능기부를 통한 멘토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외에서는 내부통제 취약점이 기부자 및 정부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Petrovits et al.(2011)의 연구가 있다. Petrovits et al.(2011)은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정부기관의 승인과 기부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재무위험이 높고, 규모가 작은 그리고 급격히 성장한 비영리법인일 수록 보다 높은 내부통제의 문제점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Ge and McVay 2005; Keating et al. 2005; Doyle et al. 2007; Ashbaugh-Skaife et al. 2007).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1항 1호, 1항 2호, 1항 3호.

2.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감사연구는 외부감사인의 특성 및 투입요소와 감사의 산출물인 이익조정 정도, 이익의 질, 소송 및 관련비용, 감리활동 및 결과 등과 관련하여 다수 수행되었다(권수영 등 2013). 반면에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효과, 감사품질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내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들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부처는 제각기 분산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수행한다는 목적의 순수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이 감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의 특성 상 관련된 감시 및 공시체계가 부실하여 외부감사의 효과성차원에서 회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1-1>에서 보면 비영리단체의 성격별로 제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개별 회계기준이나 지침이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재무제표나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도 체계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주요기관의 외부감사현황

구분		소관부처	외부감사대상	근거법률
비 영 리 단 체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법
	학교법인 ⁴⁾	교육부	입학정원 1,000명 이상	사립학교법
	기부금품 모집자	행안부	모집금액 1억원 초과	기부금모집법
	비영리공익법인	교육부등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법
	공동주택 ⁵⁾	국토해양부	입주자 1/10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요구시	주택법
	재개발·재건축조합	국토해양부	일부조건 충족시	도시환경법
	종교재단	문화관광부	없음	없음

* 자료: 2013 한국회계학회 용역보고서

4) 2012년 말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모든 사립대학이 외부감사의무가 있음.

5)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비영리법인의 경우 상증법상 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의무가 부여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 동 시행령 제 43조),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가액의 합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2명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해 외감법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감사받는 비율은 30%에 불과하고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다. 금년부터 모든 학교법인에 의무화된 외부회계감사 역시 학연·지연에 의한 감사수임관행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에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관련 기준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김완희 등, 2013). 이러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관련부처에서 일관된 관리감독을 기대하기 어렵고 외부감사의 품질과 활용 면에서도 신뢰성을 담보받기 어렵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의 실태와 감사품질,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3. 비영리조직의 공시제도

공시제도는 외부이해관계자와 내부이해관계자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공시수준이 높을수록 자본시장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Healy et al.(1999)은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이용하여 자발적 공시 수준이 증가한 97개 기업에 대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발적 공시 수준의 증가는 기업의 주식수익률, 기관투자자 보유지분율, 애널리스트 분석수가 증가하며 주식유동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elb and Zarowin(2002)은 공시 수준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현재 주가와 미래 이익간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시 수준이 높은 기업의 미래 이익반응계수(ERC)는 공시 수준이 낮은 기업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rancis et al.(2005)은 35개국의 표본을 사용하여 기업의 공시정책이 자기자본비용 및 타인자본비용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공시품질이 자본비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는 공시가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자본시장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의 경우, 정보이용자는 다양하나 이익배당, 지분 등이 없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정보공시와 내용에 대해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정보이용자들의 비영리법인 재무공시에 대한 낮은 수요와 관심은 정보비대칭을 증가시킴으로써 비영리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김완희 등(2013)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회계정보에 대해 공시할 대상을 정립하고 공시내용을 표준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김완희 등, 2013). 또한 고영일(2010)은 감독당국에서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형식적인 제출요구를 넘어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회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기초문헌조사에 근거한 기존연구를 확장하고 국내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실태파악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 국내외 모범사례 발굴 및 종합적인 모니터링체계의 제시를 포함한다.

첫 번째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문헌연구를 발전시켜 현재 국내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나 외부감사 및 회계공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영리조직의 투명성뿐 아니라 비영리조직에 대한 투명성 역시 균형 있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초단계로써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외부감사 및 공시 현황을 분석한다. 아울러 설문조사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내부통제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과 회계투명성개선노력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두 번째는 국내외 비영리조직의 모범사례발굴이다. 먼저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비영리조직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실패사례와 모범사례를 찾아 그 원인과 차이에 대해 분석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조사된 필수적·자발적 공시항목을 중심으로 점수화 및 순위 분석을 통해 국내 벤치마킹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해외의 모범사례도 검토한다.

세 번째는 이상에서 분석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중심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의 모니터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비영리법인 공시실태의 현주소 파악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1항에서 정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 즉, 비영리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다⁶⁾. 이러한 비영리 공익법인 중에서도 사회복지유형의 공익법인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2011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의 사회복지공익법인 383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종교와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포함시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 보다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실태를 파악한다⁷⁾. 이와 같이 사회복지유형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공익법인은 현재와 미래의 기부자(정보이용자), 중앙 및 지방정부 등 지원기관, 외부감사인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회계감사 및 공시제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공익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152호)’을 적용받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공시할 의무가 있어 공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공익법인의 연구 결과는 다른 유형의 공익법인에도 적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공익법인의 내부통제, 외부감사, 공시제도와 관련된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복지공익법인 종사자, 공인회계사, 주무관청 담당자, 정보이용자를 포함한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종교단체 관계자 208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에 관련된 설문조사도 추가한다.

2. 연구방법

가)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 외부감사 및 재무공시 실태파악

우선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비영리기관 회계 및 공시 담당자와 실제 감사를 수행했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해당법인 내 내부통제절차와 인력의 전문성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먼저 비영리기관의 회계 및 공시담당자 수준에서 인식하는 내부통제 취약점과 외부감사의 필요성,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감사인의 실제 투입인력과 투입시간, 감사보수 등에 대한 분석적 검토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해 현행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인식된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의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 제출법인을 대상으로 회계공시실태를 파악한다. 공시대상법인의 공시된 결산서류나 감사보고서를 수집하여 공시항목이나 체계 및 공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색한다. 아울러 해당 감독기관이나 지원기관의 모니터링 실태도 관련 직원에 대한 설문 및

7) 본 연구에서는 참고목적으로 다른 유형의 공익법인과 공시실태의 비교를 위해 대표적인 학술·장학 공익법인 67개의 공시실태도 추가로 파악한다.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한다. 현재 사후적 모니터링시스템의 효과성과 사전적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 시 어떠한 내용이 적용 가능한지와 그 실효성에 대해 관련자와의 심층 인터뷰방식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다.⁸⁾

■ 설문을 통한 모니터링 실태파악 방안

▷ 비영리법인의 담당자 설문

· 현황파악 설문

회계담당자의 전공과 경력, 전담여부(경리, 총무, 인사 등 중복), 구매와 자금지출 및 회계기록 업무의 분장여부, 주기적(매월) 현금기록장부와 통장잔액의 일치여부 확인, 복식부기 사용여부, 회계기장의 외부위탁여부, 재무제표 작성지원(자기감사)여부, 이사의 구성(출연자와의 관련성)과 이사회 운영방식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회계감사기간, 회계감사예산, 회계감사투입인력, 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다.

· 개선방안 관련 설문

내부통제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복식부기, 세무지식, 회계프로그램), 필요한 역량 확보의 장애요소(인력부족, 재직자 회계전문교육의 미흡, 예산의 부족), 회계투명성의 정도에 따른 정부의 차등지원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한다.

▷ 감사인 대상설문

· 현황파악 설문

비영리 법인 감사경험, 평균적인 감사투입시간(인력), 감사보수 적정성, 비영리 법인 담당자의 회계전문성, 재무제표 작성지원 여부, 회계자문 여부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 개선방안 관련 설문

비영리 법인의 명확하고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적절한 보수,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법적 제재조항추가, 비영리 법인의 회계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정부 지원을 통한 회계전문 인력양성), 정부 차원

8) 실태파악의 과정에서 한국가이드스타,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사회복지 공익법인 주무관청의 비영리 부문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의 외적타당성을 높일 계획이다.

에서 비영리 법인 회계지원단 설립운영, 외부감사 의무화하고 정부지원금에 감사보수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 정보이용자 대상설문

· 현황파악 설문

기부주체인 개인 및 기업, 관련 분야 연구자인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기부경험, 기부단체로부터 주기적으로 받아보는 정보, 기부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기대수준, 외부감사의 필요성, 내부통제 등 기부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기부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한 주무관청(보조금지급기관 또는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제출서류를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여부, 비영리기관의 투명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 개선방안 관련 설문

비영리 법인의 명확하고 통일된 회계기준 제정,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적절한 보수,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법적 제재조항추가, 비영리 법인의 회계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정부 지원을 통한 회계전문 인력양성), 정부 차원에서 비영리 법인 회계지원단 설립운영, 정부보조금 지급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화하고 지원금에 감사보수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다.

■ 공시실태 조사방안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의무공시 대상 사회복지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시실태를 파악한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의 합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국세청 공시시스템에서는 기본사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일반 정보이용자들이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시시스템을 통해 비영리 공익법인의 공시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자발적 회계공

시항목을 조사한다. 공시실태의 파악은 각 공시항목에 대해 공시의무항목과 자발적 공시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대해 공시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공시의 품질에 대한 양적 및 질적인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감사보고서가 외부감사보고서인지 자체 내부감사보고서인지, 외부감사보고서의 경우에 감사의견만 첨부하였는지 감사보고서 전문을 첨부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비영리조직 회계투명성 개선의 경제적 효과 분석

비영리기관은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원의 수탁책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감시감독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 부패에 노출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표면화 되면서 최근 들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비영리기관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개선과 지배구조의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⁹⁾.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란 기관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신뢰 가능한 재무보고와 규정 및 법에 따라 기관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계하여 운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통제제도가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비영리법인의 부정을 예방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비영리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의 취약점의 존재가 비영리기관의 재무적 어려움, 복잡성, 규모 및 성장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Petrovits et al. 201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특성이 내부통제의 취약성 및 공시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봄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및 감사보고서를 통해 인식한 내부통제의 효과성과 공시투명성이 비영리기관에 대한 기부금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동일한 논리로 정부의 지원금과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 등 회계투명성 개선의 경제적 효과 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Ribar and Wilhelm 2002; Petrovits et al. 2011)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고려한다.

$$\begin{aligned} \text{Ln(기부금 또는 정부보조금)}_t = & \beta_0 + \beta_1 \text{내부통제취약성}_{t-1} + \beta_2 \text{Ln(기금조성활동비용)}_{t-1} \\ & + \beta_3 (\text{공시성실성})_{t-1} + \beta_4 (\text{외부감사여부})_{t-1} + \beta_5 \text{비영리기관의연혁}_t + \beta_6 \text{GDP}_t + \varepsilon_t \quad (1) \end{aligned}$$

9) 머니투데이. 2013.4.19. “여신협회, 방만 경영에 내부통제도 안 돼” 여신금융협회가 관리감독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불가능한데다 3년마다 이뤄지는 감사도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만 확인할 뿐, 실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기능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방만 경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하생략

나) 국내외 비영리조직의 모니터링시스템 모범사례 발굴

본 연구단계에서는 국내외 비영리조직의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먼저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및 공시시스템에 대한 실패사례를 찾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뒤, 국내외 비영리조직의 모니터링시스템 상 모범적 사례를 발굴한다. 구체적으로 모범사례의 선정 작업은 이전단계에서 조사·분석된 공시제도 등의 체계분석결과를 통해 필수적 요소와 자발적 요소로 구분된 항목별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수행된다.

비영리기관은 그 설립목적의 공익성으로 인해 운영에 있어서의 전적인 사회적 신뢰성을 부여 받아 통제와 감독을 피해왔었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운영자들에 의한 부정과 공금횡령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그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립자나 이사장(executive director) 또는 중요한 기부자들의 전적인 통제 하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한된 인력을 회계보고, 내부통제 및 재정운영 감시에 할당하고, 주로 상호거래관계가 아닌 익명기부와 같은 일 방향적인 거래로 이루어져 있어 자원의 횡령 시 적발이 어렵고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다. 해외의 경우, Charity Navigator에 의해서 최악의 비영리기관으로 선정되었었던 Kids Wish Network, American Breast Cancer Foundation, Cancer Fund of America, Firefighters Charitable Foundation, Children's Wish Foundation International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규정위반과 비리들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검정교과서, 대구테크노파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자유총연맹, (재)지덕사 등 많은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도덕적 해이와 비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공시자료, 감사보고서,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제도의 개선대안을 도출해 본다.

다음 단계는 현재 국내 혹은 해외 비영리조직으로 적절한 내부통제, 실효성 있는 외부감사와 공시를 수행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사례로 제시한다. 미국이나 서유럽 등 해외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조사·분석하여 국내현실에 적합한 시스템을 벤치마킹사례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 연구한 국내현황과 두 번째 단계에서 발굴한 벤치마킹 사례와의 차이분석을 수행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한다. 예를 들면, 국내의 경우에, JA코리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JA코리아의 경우 외부감사의무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외부회계감사

를 받아 공시하고 있으며, 굿네이버스나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의무공시사항을 모두 공시하고 있으며 외부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Charity Navigator에 의해서 The Best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선정되었던 Direct Relief International, United Nations Foundation, Globus Relief 등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외의 대표적인 비영리기관의 감사보고서와 그들의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공시정보와 내부통제시스템, 외부감사와 관련된 투명성을 검토하여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

다)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 외부감사 및 회계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앞서 진행된 국내현황과악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실태분석, 개선방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설문결과, 국내외 사례의 분석적 검토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 그리고 국내외 벤치마킹사례를 통한 차이분석 등으로부터 각 부문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연구들에서 주장된 원론적인 수준의 대안 보다는 구체적인 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의 급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국민화합과 지속 가능한 상생경제의 정착을 위한 소득격차 해소와 사회적 소외집단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영리기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 졌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비영리기관의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들은 비영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구축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매스컴은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근원적 문제 파악을 도외시하고 외부에 알려진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전달하여 비영리기관의 발전에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기관들에서도 부정의 예방과 투명성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미흡하여 이러한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장기업을 비롯한 영리기업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회계감사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체계의 개선 등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어 왔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및 노력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사회 및 국가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성 확보가 없이는 비영리조직의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 외부감사 및 재무공시 실태파악을 하는데 있어, 관련 담당자의 회계지식 수준과 통제장치 등 내부통제수준을 평가하고,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 회계공시실태를 분석하며, 감독 및 지원기관의 모니터링 현황을 파악하는 등 비영리조직 외부감사의 품질제고와 관련된 요소들을 연구한다. 또한 해외 비영리조직의 모니터링시스템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국내 현황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국내 비영리조직의 모니터링시스템의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들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사회적 공헌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회구성원들 즉 비영리기관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기여한 기부금이나 세금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이를 통해 비영리기관이 사회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부자들에게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또는 기부 의사결정에 어떤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본 연구결과의 활용을 통해 한국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한 투명성 향상은

물론 국내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전환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체계화된 비영리기관의 공시정보의 유용성과 문제점, 개선점 등을 활용하여 관계당국 및 감독기관들이 국내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입안 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비영리 기관이 자체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참고하여 법인의 내부통제절차를 적절히 구축하고 법인의 공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부금 등의 재원 조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외부감사인들에게는 비영리기관운영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점차로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재무보고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신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주체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회계기준의 제정에 따른 비영리 공익법인의 감사기준의 제정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한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등은 기존 문헌연구조사방법에 그쳤던 국내 비영리 회계 관련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비영리기관 관련 경영 및 회계감사, 내부통제, 지배구조 수업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역량 있고 윤리적인 비영리기관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장 공시실태분석

제 1 절 사회복지법인 공시 현황

1. 사회복지법인 연도별 공시현황

사회복지법인 비재무정보 공시 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기본사항을 공시한 법인이 382개, 미공시한 법인이 1개이다. 기본사항 중 설립근거법을 공시한 법인은 177개 미공시한 법인은 206개이다. 2012년에는 기본사항을 공시한 법인이 376개, 미공시한 법인이 1개이다. 기본사항 중 설립근거법을 공시한 법인은 179개 미공시한 법인은 198개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중 월별기부금 수입 및 지출을 공시한 법인은 2011년 330개, 미공시한 법인은 53개이며 2012년 공시한 법인은 327개, 미공시한 법인은 50개이다. 기부금지출 세부명세를 공시한 법인은 2011년에는 243개, 미공시한 법인은 140개이며 2012년에는 258개 법인이 공시, 119개 법인이 미공시하였다.

<표 2-2> 비재무 정보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구분	공시	미공시	총합계	공시	미공시	총합계
A. 기본사항	공시여부	382	1	383	376	1	377
	설립근거법	177	206	383	179	198	377
B.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월별기부금 수입및지출	330	53	383	327	50	377
	기부금지출 세부명세	243	140	383	258	119	377
C.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명세서	공시여부	130	253	383	131	246	377
D.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명세서	공시여부	363	20	383	362	15	377
	이사수	363	20	383	362	15	377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명세서를 공시한 법인은 2011년에 130개, 미공시한 법인이 253개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이 131개, 미공시한 법인은 246개이다.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를 공시한 법인은 2011년에는 363개, 미공시한 법인은 20개 이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 중 이사수를 공시한 법인은 363개, 미공시한 법인은 20개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62개, 미공시한 법인은 15개이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 중 이사수를 공시한 법인은 362개, 미공시한 법인은 15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된 법인은 57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317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9개이다.

2012년에는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된 법인은 49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317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11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93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50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174개 이다. 2012년에는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101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46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170개 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64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53개 이다. 2012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73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44개 이다. 총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13개, 미공시한 법인은 4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16개, 미공시한 법인은 1개 이다.

유동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296개, 미공시한 법인은 21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00개, 미공시한 법인은 17개 이다. 유형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276개, 미공시한 법인은 41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77개, 미공시한 법인은 40개 이다.

총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203개, 미공시한 법인은 114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97개, 미공시한 법인은 120개 이다. 유동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71개, 미공시한 법인은 146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70개, 미공시한 법인은 147개 이다.

<표 2-3>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상위항목	2011년				2012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57	317	9	383	49	317	11	377
B. 공시성실성	93	50	174	317	101	46	170	317
C. 공시비교여부	264	53		317	273	44		317
D. 총자산	313	4		317	316	1		317
E. 유동자산	296	21		317	300	17		317
F. 유형자산	276	41		317	277	40		317
G. 총부채	203	114		317	197	120		317
H. 유동부채	171	146		317	170	147		317
I.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64	253		317	59	258		317
J.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62	2			57	2		59
K. 순자산	105	212		317	106	211		317
L. 제약없는 순자산	159	158		317	155	162		317
M. 일시제약 순자산	46	271		317	51	266		317
N. 영구제약 순자산	134	183		317	137	180		317

A: 1 =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
2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대차대조표 공시,
3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대차대조표 미공시.

B: 1 = 부채와 순자산표시생략, 2 = 순자산표시생략, 3 = 모두표시.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D: 1 = 공시, 2 = 미공시. E: 1 = 공시, 2 = 미공시.

F: 1 = 공시, 2 = 미공시. G: 1 = 공시, 2 = 미공시.

H: 1 = 공시, 2 = 미공시. I: 1 = 공시, 2 = 미공시.

J: 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 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

K: 1 = 공시, 2 = 미공시. L: 1 = 공시, 2 = 미공시.

M: 1 = 공시, 2 = 미공시. N: 1 = 공시, 2 = 미공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64개, 미공시한 법인은 253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59개, 미공시한 법인은 258개 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중 2011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62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2개 이다. 2012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57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2개 이다.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105개, 미공시한 법인은 212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06개, 미공시한 법인은 211개 이다. **계약없는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59개, 미공시한 법인은 158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55개, 미공시한 법인은 162개 이다. **일시계약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46개, 미공시한 법인은 271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51개, 미공시한 법인은 266개 이다. **영구계약 순자산**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34개, 미공시한 법인은 183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37개, 미공시한 법인은 180개 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대차대조표 **수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된 법인은 74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 있으며,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151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158개이다.

2012년에는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된 법인은 63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 있으며,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167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147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20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25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106개 이다. 2012년에는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18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32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117개 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138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13개 이다. 2012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144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23개 이다.

총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50개, 미공시한 법인은 1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67개, 미공시한 법인은 0개 이다. **유동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147개, 미공시한 법인은 4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62개, 미공시한 법인은 5개 이다. **유형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126개, 미공시한 법인은 25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39개, 미공시한 법인은 28개 이다.

총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30개, 미공시한 법인은 21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48개, 미공시한 법인은 19개 이다. **유동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125개, 미공시한 법인은 26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36개, 미공시한 법인은 31개 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74개, 미공시한 법인은 77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81개, 미공시한 법인은 86개 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중 2011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74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2012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81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15개, 미공시한 법인은 36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28개, 미공시한 법인은 39개 이다. **계약 없는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2개, 미공시한 법인은 139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2개, 미공시한 법인은 155개 이다. **일시계약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0개, 미공시한 법인은 151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개, 미공시한 법인은 166개 이다. **영구계약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8개, 미공시한 법인은 143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5개, 미공시한 법인은 162개 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대차대조표 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기본사항에서 공익,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계대차대조표가 생략된 법인이 49개, 합계 대차대조표가 공시(수익, 공익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된 법인은 230개, 수익사업이 없어서 공익대차대조표만 공시하고 합계는 생략한 법인은 104개 이다. 2012년에는 기본사항에서 공익,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계대차대조표가 생략한 법인은 37개, 합계 대차대조표가 공시(수익, 공익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된 법인은 264개, 수익사업이 없어서 공익대차대조표만 공시하고 합계는 생략한 법인은 76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42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38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150개 이다. 2012년에는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43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44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177개 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193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37개 이다. 2012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28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36개 이다.

<표 2-4> 대차대조표 수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상위항목	2011년				2012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74	151	158	383	63	167	147	377
B. 공시성실성	20	25	106	151	18	32	117	167
C. 공시비교여부	138	13		151	144	23		167
D. 총자산	150	1		151	167	0		167
E. 유동자산	147	4		151	162	5		167
F. 유형자산	126	25		151	139	28		167
G. 총부채	130	21		151	148	19		167
H. 유동부채	125	26		151	136	31		167
I.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74	77		151	81	86		167
J.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74	0		74	81	0		81
K. 순자산	115	36		151	128	39		167
L. 제약없는 순자산	12	139		151	12	155		167
M. 일시제약 순자산	0	151		151	1	166		167
N. 영구제약 순자산	8	143		151	5	162		167

- A: 1 =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
 2 = 기본사항에 수익사업 있으며, 수익사업 대차대조표 공시,
 3 =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대차대조표 미공시.
- B: 1 = 부채와 순자산표시생략, 2 = 순자산표시생략, 3 = 모두표시.
-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 D: 1 = 공시, 2 = 미공시. E: 1 = 공시, 2 = 미공시.
- F: 1 = 공시, 2 = 미공시. G: 1 = 공시, 2 = 미공시.
- H: 1 = 공시, 2 = 미공시. I: 1 = 공시, 2 = 미공시.
- J: 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 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
- K: 1 = 공시, 2 = 미공시. L: 1 = 공시, 2 = 미공시.
- M: 1 = 공시, 2 = 미공시. N: 1 = 공시, 2 = 미공시.

총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229개, 미공시한 법인은 1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64개, 미공시한 법인은 0개 이다. **유동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221개, 미공시한 법인은 9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58개, 미공시한 법인은 6개 이다. **유형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214개, 미공시한 법인은 16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46개, 미공시한 법인은 18개 이다.

총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83개, 미공시한 법인은 47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15개, 미공시한 법인은 49개 이다. **유동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67개, 미공시한 법인은 63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92개, 미공시한 법인은 72개 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87개, 미공시한 법인은 143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98개, 미공시한 법인은 166개 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중 2011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87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2012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98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65개, 미공시한 법인은 65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93개, 미공시한 법인은 71개 이다. **계약없는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121개, 미공시한 법인은 109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31개, 미공시한 법인은 133개 이다. **일시계약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29개, 미공시한 법인은 201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42개, 미공시한 법인은 222개 이다. **영구계약 순자산**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98개, 미공시한 법인은 132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19개, 미공시한 법인은 145개 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손익계산서가 생략된 법인은 78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305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미공시한 법인은 0개이다. 2012년에는,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손익계산서가 생략된 법인은 57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320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미공시한 법인은 0개이다.

<표 2-5> 대차대조표 수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상위항목	2011년				2012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49	230	104	383	37	264	76	377
B. 공시성실성	42	38	150	230	43	44	177	264
C. 공시비교여부	193	37		230	228	36		264
D. 총자산	229	1		230	264	0		264
E. 유동자산	221	9		230	258	6		264
F. 유형자산	214	16		230	246	18		264
G. 총부채	183	47		230	215	49		264
H. 유동부채	167	63		230	192	72		264
I.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87	143		230	98	166		264
J.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87	0		87	98	0		98
K. 순자산	165	65		230	193	71		264
L. 제약없는 순자산	121	109		230	131	133		264
M. 일시제약 순자산	29	201		230	42	222		264
N. 영구제약 순자산	98	132		230	119	145		264

- A: 1 =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
 2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대차대조표 공시,
 3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대차대조표 미공시.
- B: 1 = 부채와 순자산표시생략, 2 = 순자산표시생략, 3 = 모두표시.
-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 D: 1 = 공시, 2 = 미공시. E: 1 = 공시, 2 = 미공시.
- F: 1 = 공시, 2 = 미공시. G: 1 = 공시, 2 = 미공시.
- H: 1 = 공시, 2 = 미공시. I: 1 = 공시, 2 = 미공시.
- J: 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 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
- K: 1 = 공시, 2 = 미공시. L: 1 = 공시, 2 = 미공시.
- M: 1 = 공시, 2 = 미공시. N: 1 = 공시, 2 = 미공시.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법인은 197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108개이다. 2012년에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법인은 206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114개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58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47개 이다. 2012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70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50개 이다. **발생기준여부**에 따른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발생주의 49개, 현금주의 256개, 혼용 0개이다. 2012년에는 발생주의 57개, 현금주의 263개, 혼용 0개이다.

사업수입(프로그램수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285개, 미공시한 법인은 20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03개, 미공시한 법인은 17개 이다. **기부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47개, 미공시한 법인은 58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47개, 미공시한 법인은 73개 이다. **보조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60개, 미공시한 법인은 145개 이다. 2012년에 공시한 법인은 169개, 미공시한 법인은 151개 이다. **전입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49개, 미공시한 법인은 156개 이다. 2012년에 공시한 법인은 127개, 미공시한 법인은 193개 이다.

사업외수입(영업외수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48개, 미공시한 법인은 157개 이다. 2012년에 공시한 법인은 154개, 미공시한 법인은 166개 이다.

사업비용총계(공익비용)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284개, 미공시한 법인은 21개 이다. 2012년에 공시한 법인은 290개, 미공시한 법인은 30개 이다.

사업외비용(영업외비용)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14개, 미공시한 법인은 191개 이다. 2012년에 공시한 법인은 131개, 미공시한 법인은 189개 이다. **인건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19개, 미공시한 법인은 186개 이다. 2012년에 공시한 법인은 82개, 미공시한 법인은 238개 이다.

순자산증감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99개, 미공시한 법인은 106개 이다. 2012년에 공시한 법인은 208개, 미공시한 법인은 112개 이다.

<표 2-6>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상위항목	2011년				2012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78	305	0	383	57	320	0	377
B. 공시성실성	197	108		305	206	114		320
C. 공시비교여부	258	47		305	270	50		320
D. 발생기준여부	49	256	0	305	57	263	0	320
E. 사업수입(프로그램수입)	285	20		305	303	17		320
F. 기부금	247	58		305	247	73		320
G. 보조금	160	145		305	169	151		320
H. 전입금	149	156		305	127	193		320
I. 사업외수입(영업외수입)	148	157		305	154	166		320
J. 사업비용총계(공익비용)	284	21		305	290	30		320
K. 사업외비용(영업외비용)	114	191		305	131	189		320
L. 인건비	119	186		305	82	238		320
M. 순자산증감	199	106		305	208	112		320

- A: 1 =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손익계산서 생략
 2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손익계산서 공시.
 3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손익계산서 미공시.
- B: 1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정상표시
 2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누락.
-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 D: 1 = 발생주의, 2 = 현금주의, 3 = 혼용.
- E: 1 = 공시, 2 = 미공시. F: 1 = 공시, 2 = 미공시.
- G: 1 = 공시, 2 = 미공시. H: 1 = 공시, 2 = 미공시.
- I: 1 = 공시, 2 = 미공시. J: 1 = 공시, 2 = 미공시.
- K: 1 = 공시, 2 = 미공시. L: 1 = 공시, 2 = 미공시.
- M: 1 = 공시, 2 = 미공시.

사회복지법인의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손익계산서가 생략된 법인이 55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 있으며, 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175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미공시한 법인은 153개이다. 2012년에는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손익계산서가 생략된 법인은 51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 있으며,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공시한 법인은 185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미공시한 법인은 141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정상 표시한 법인은 107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68개이다. 2012년에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정상 표시한 법인은 111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74개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154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21개 이다. 2012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161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24개 이다.

발생기준여부에 따른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발생주의 95개, 현금주의 80개, 혼용 0개이다. 2012년에는 발생주의 98개, 현금주의 87개, 혼용 0개이다. **수익사업수입(매출)**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145개, 미공시한 법인은 30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55개, 미공시한 법인은 30개 이다.

판관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146개, 미공시한 법인은 29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53개, 미공시한 법인은 32개 이다. **인건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109개, 미공시한 법인은 66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11개, 미공시한 법인은 74개 이다. **수익사업비용 총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7개, 미공시한 법인은 168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5개, 미공시한 법인은 180개 이다. **영업외수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157개, 미공시한 법인은 18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59개, 미공시한 법인은 26개 이다. **순자산증감**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72개, 미공시한 법인은 103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68개, 미공시한 법인은 117개 이다.

<표 2-7>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상위항목	2011년				2012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55	175	153	383	51	185	141	377
B. 공시성실성	107	68		175	111	74		185
C. 공시비교여부	154	21		175	161	24		185
D. 발생기준여부	95	80	0	175	98	87	0	185
E. 수익사업수입(매출)	145	30		175	155	30		185
F. 판관비	146	29		175	153	32		185
G. 인건비	109	66		175	111	74		185
H. 수익사업비용 총계	7	168		175	5	180		185
I. 영업외수익	157	18		175	159	26		185
J. 순자산증감	72	103		175	68	117		185

A: 1 =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손익계산서가 생략,

2 = 기본사항에 수익사업 있으며,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공시,

3 =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미공시.

B: 1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정상표시

2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누락.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D: 1 = 발생주의, 2 = 현금주의, 3 = 혼용

E: 1 = 공시, 2 = 미공시. F: 1 = 공시, 2 = 미공시.

G: 1 = 공시, 2 = 미공시. H: 1 = 공시, 2 = 미공시.

I: 1 = 공시, 2 = 미공시. J: 1 = 공시, 2 = 미공시.

사회복지법인의 손익계산서 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수익사업이 없어서 합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 법인이 7개, 공익과 수익사업이 있고 합계손익계산서 공시한 경우 법인은 272개, 기본사항에 공익과 수익사업 내용이 있는데 합계손익계산서 생략한 경우 법인은 104개이다. 2012년에는 수익사업이 없어서 합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 법인은 2개, 공익과 수익사업이 있고 합계손익계산서 공시한 경우 법인은 283개, 기본사항에 공익과 수익사업 내용이 있는데 합계손익계산서 생략한 경우 법인은 92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법인은 134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138개이다. 2012년에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법인은 153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130개이다.

<표 2-8> 손익계산서 합계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상위항목	2011년				2012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7	272	104	383	2	283	92	377
B. 공시성실성	134	138		272	153	130		283
C. 공시비교여부	187	85		272	211	72		283
D. 수입합계	223	49		272	235	48		283
E. 비용합계	218	54		272	231	52		283
F. 순자산증감	184	88		272	218	65		283

A: 1 = 수익사업이 없어서 합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

2 = 공익과 수익사업이 있고 합계손익계산서 공시한 경우.

3 = 기본사항에 공익과 수익사업 내용이 있는데 합계손익계산서 생략한 경우.

B: 1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정상표시

2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누락.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D: 1 = 공시, 2 = 미공시.

E: 1 = 공시, 2 = 미공시. F: 1 = 공시, 2 = 미공시.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187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85개 이다. 2012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11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72개 이다. 수입 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223개, 미공시한 법인은 49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35개, 미공시한 법인은 48개 이다. 비용 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218개, 미공시한 법인은 54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31개, 미공시한 법인은 52개 이다. 순자산증감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84개, 미공시한 법인은 88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18개, 미공시한 법인은 65개 이다.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보고서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항목 중 외부감사여부 공시 현황은 2011년 외부감사보고서 있는 법인 40개, 내부감사보고서 있는 법인 47개, 첨부파일 안열림 13개, 기타 재무제표 등을 첨부 10개, 없음 273개이다. 2012년은 외부감사보고서 있는 법인 45개, 내부감사보고서 있는 법인 59개, 첨부파일 안열림 30개, 기타 재무제표 등을 첨부 6개, 없음 237개이다.

BIG4 감사인 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BIG4 11개, Non-Big4 29개 이다. 2012년도는 BIG4 11개, Non-Big4 34개이다. **감사준거기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관계법령 18개, 일반기업회계기준 9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 5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4개, 특정목적 회계기준 4개이다. 2012년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관계법령 24개, 일반기업회계기준 7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 4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6개, 특정목적 회계기준 4개이다.

첨부재무제표 종류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8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법인이 24개, 기타 7개, 없음 1개이다. 2012년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10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법인이 25개, 기타 9개, 없음 1개이다.

손익계산서 명칭을 살펴보면, 2011년 손익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24개, 수지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5개, 기타(운영보고서 등) 법인이 5개, 없음이 6개이다. 2012년은 손익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25개, 수지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2개, 기타(운영보고서 등) 법인이 7개 모름 11개이다.

대차대조표 명칭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대차대조표로 작성한 법인이 6개, 재무상태표로 작성한 법인이 26개, 기타로 작성한 법인이 0개, 없음이 8개이다. 2012년은

<표 2-9> 감사보고서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Panel. A							
연도	2011						
상위항목	1	2	3	4	5	합계	비고
A. 외부감사여부	40	47	13	10	273	383	127
B. BIG4 감사인 여부	11	29				40	
C. 감사준거기준	18	9	5	4	4	40	
D. 첨부재무제표 종류	8	24	7	1		40	
E. 손익계산서 명칭	24	5	5	6		40	
F. 대차대조표 명칭	6	26	0	8		40	
감사보고서 페이지 수 평균 (주석 수 평균)	14.9쪽(7.9개)						
Panel. B							
연도	2012년						
상위항목	1	2	3	4	5	합계	비고
A. 외부감사여부	45	59	30	6	237	377	122
B. BIG4 감사인 여부	11	34				45	
C. 감사준거기준	24	7	4	6	4	45	
D. 첨부 재무제표 종류	10	25	9	1		45	
E. 손익계산서 명칭	25	2	7	11		45	
F. 대차대조표 명칭	4	32	0	9		45	
감사보고서 페이지 수 평균 (주석 수 평균)	16.1쪽(8.8개)						

- A: 1 = 외부감사보고서 있음. 2 = 내부감사보고서 있음.
 3 = 첨부파일 안 열림 4 = 기타 재무제표 등을 첨부. 5 = 없음.
 B: 1 = BIG4, 2=Non-Big4.
 C: 1 = 일반법인회계기준과 관계법령. 2 = 일반법인회계기준.
 3 =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 4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5 = 특정목적 회계기준.
 D: 1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계산서.
 2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 기타, 4 = 없음.
 E: 1 = 손익계산서. 2 = 수지계산서. 3 = 기타(운영보고서 등). 4 = 없음.
 F: 1 = 대차대조표. 2 = 재무상태표. 3 = 기타,
 4 = 없음 /비고 = 100억 초과법인 감사보고서 미제출

대차대조표로 작성한 법인이 4개, 재무상태표로 작성한 법인이 32개, 기타로 작성한 법인이 0개, 없음이 9개이다. 그리고 100억 초과법인 중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법인은 2011년 127개, 2012년 122개이다. 감사보고서 페이지수 평균(주석수 평균)을 살펴보면, 2011년은 14.9쪽(7.9개) 2012년은 16.1쪽(8.8개)이다.

사회복지법인 홈페이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구분에 **홈페이지유무**에 따라서 홈페이지 있음 282개, 홈페이지 없음 95개이다. **후원금(기부금) 공시**를 살펴보면, 공시 186개, 미공시 92개, 정회원 가입시 공개 0개, 에러로 보이지 않음 4개이다.

예금결산서 공시를 살펴보면, 공시 172개, 미공시 92개, 정회원 가입 시 공개 6개, 에러로 보이지 않음 1개이다. **이사회 회의록 공시**를 살펴보면, 공시 83개, 미공시 194개, 정회원 가입시 공개 4개, 에러로 보이지 않음 1개이다.

외부감사보고서 공시를 살펴보면, 공시 3개, 미공시 263개, 내부감사보고서 공시 10개, 정회원 가입시 공개 4개, 에러로 보이지 않음 2개이다.

연차보고서 공시를 살펴보면, 공시 42개, 미공시 235개, 정회원 가입시 공개 4개, 에러로 보이지 않음 1개이다.

<표 2-10> 홈페이지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구분	1	2	3	4	5	합계
A. 홈페이지 유무	282	95				377
B. 후원금(기부금) 공시	186	92	0	4		282
C. 예금결산서 공시	172	103	6	1		282
D. 이사회 회의록 공시	83	194	4	1		282
E. 외부감사보고서 공시	3	263	10	4	2	282
F. 연차보고서 공시	42	235	4	1		282

A: 1 = 홈페이지 있음. 2 = 홈페이지 없음.

B: 1 = 공시. 2 = 미공시. 3 = 정회원 가입시 공개. 4 = 에러로 보이지 않을시.

C: 1 = 공시. 2 = 미공시. 3 = 정회원 가입시 공개. 4 = 에러로 보이지 않을시.

D: 1 = 공시. 2 = 미공시. 3 = 정회원 가입시 공개. 4 = 에러로 보이지 않을시.

E: 1 = 공시. 2 = 미공시. 3 = 내부감사보고서 공시. 4 = 정회원 가입시 공개.

5 = 에러로 보이지 않을시.

F: 1 = 공시. 2 = 미공시. 3 = 정회원 가입시 공개. 4 = 에러로 보이지 않을시.

2. 사회복지법인 규모별 공시현황

사회복지법인 비재무정보 공시 현황을 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기본사항**을 공시한 법인이 56개, 미공시한 법인이 2개이다. 기본사항 중 **설립근거법**을 공시한 법인은 27개 미공시한 법인은 31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기본사항을 공시한 법인이 372개, 미공시한 법인이 0개이다. 기본사항 중 **설립근거법**을 공시한 법인은 173개 미공시한 법인은 199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기본사항을 공시한 법인이 330개, 미공시한 법인이 0개이다. 기본사항 중 **설립근거법**을 공시한 법인은 156개 미공시한 법인은 174개이다.

<표 2-11> 비재무 정보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항목	연도·법인 규모	총자산 50억 미만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			총자산 100억 이상		
	구분	공 시	미공시	총합계	공시	미공시	총합계	공시	미공시	총합계
A. 기본사항	공시여부	56	2	58	372	0	372	330	0	330
	설립근거법	27	31	58	173	199	372	156	174	330
B.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월별기부금 수입및지출	51	7	58	315	57	372	291	39	330
	기부금지출 세부명세	41	17	58	242	130	372	218	112	330
C.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명세서	공시여부	17	41	58	105	267	372	139	191	330
D.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구성원 현황 명세서	공시여부	53	5	58	357	15	372	315	15	330
	이사수	53	5	58	357	15	372	315	15	33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중 월별기부금 수입 및 지출을 공시한 법인은 총 자산 50억 미만일 때 51개, 미공시한 법인은 7개이며,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 일 때 공시한 법인은 315개, 미공시한 법인은 57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291개, 미공시한 법인이 39개이다. 기부금지출 세부명세를 공시한 법인은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41개, 미공시한 법인은 17개이며,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242개 법인이 공시, 130개 법인이 미공시하였다. 총자산이 100억 이상 일 때 공시한 법인이 218개, 미공시한 법인이 112개이다.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명세서를 공시한 법인은 50억 미만일 때 17개, 미공시한 법인이 53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이 105개, 미공시한 법인은 267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139개, 미공시한 법인이 191개이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를 공시한 법인은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53개, 미공시한 법인은 5개 이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 중 이사 수는 공시한 법인은 43명, 미공시한 법인은 15명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357개, 미공시한 법인은 15개 이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 중 이사수를 공시한 법인은 357명, 미공시한 법인은 15명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315개, 미공시한 법인은 15개이다.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명세서 중 이사수를 공시한 법인은 315개, 미공시한 법인은 15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된 법인은 26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30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2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된 법인은 45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319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대차대조표 미공시한 법인은 8개,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된 법인은 35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285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10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17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5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8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127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53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139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50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38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197개 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3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7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56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63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58개, 전기

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27개 이다.

총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30개, 미공시한 법인은 0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316개, 미공시한 법인은 3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283개, 미공시한 법인은 2개이다.

유동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26개, 미공시한 법인은 4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304개, 미공시한 법인은 15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266개, 미공시한 법인이 19개이다.

유형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1개, 미공시한 법인은 19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290개, 미공시한 법인은 29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252개, 미공시한 법인은 33개이다.

총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3개, 미공시한 법인은 17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63개, 미공시한 법인은 156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224개, 미공시한 법인이 61개 이다. **유동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8개, 미공시한 법인은 22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29개, 미공시한 법인은 190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204개, 미공시한 법인은 81개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7개, 미공시한 법인은 23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51개, 미공시한 법인은 268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65개, 미공시한 법인은 220개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중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7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47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4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65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6개, 미공시한 법인은 24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02개, 미공시한 법인은 217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103개, 미공시한 법인은 182개이다.

<표 2-12>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상위항목	총자산 50억 미만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				총자산 100억 이상			
	1	2	3	합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26	30	2	58	45	319	8	372	35	285	10	330
B. 공시성실성	17	5	8	30	127	53	139	319	50	38	197	285
C. 공시비교여부	23	7		30	256	63		319	258	27		285
D. 총자산	30	0		30	316	3		319	283	2		285
E. 유동자산	26	4		30	304	15		319	266	19		285
F. 유형자산	11	19		30	290	29		319	252	33		285
G. 총부채	13	17		30	163	156		319	224	61		285
H. 유동부채	8	22		30	129	190		319	204	81		285
I.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7	23		30	51	268		319	65	220		285
J.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7	0		7	47	4		51	65	0		65
K. 순자산	6	24		30	102	217		319	103	182		285
L. 제약없는 순자산	15	15		30	144	175		319	155	130		285
M. 일시제약 순자산	1	29		30	37	282		319	59	226		285
N. 영구제약 순자산	4	26		30	118	201		319	149	136		285
A: 1 =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 2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대차대조표 공시, 3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대차대조표 미공시. B: 1 = 부채와 순자산표시생략, 2 = 순자산표시생략, 3 = 모두표시.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D: 1 = 공시, 2 = 미공시. E: 1 = 공시, 2 = 미공시. F: 1 = 공시, 2 = 미공시. G: 1 = 공시, 2 = 미공시. H: 1 = 공시, 2 = 미공시. I: 1 = 공시, 2 = 미공시. J: 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 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 K: 1 = 공시, 2 = 미공시. L: 1 = 공시, 2 = 미공시. M: 1 = 공시, 2 = 미공시. N: 1 = 공시, 2 = 미공시.												

계약 없는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5개, 미공시한 법인은 15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44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175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155개, 미공시한 법인은 130개 이다. **일시계약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개, 미공시한 법인은 29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37개, 미공시한 법인은 282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59개, 미공시한 법인은 226개이다. **영구계약 순자산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4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26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118개, 미공시한 법인은 201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149개, 미공시한 법인은 136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대차대조표 **수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된 법인은 11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이 있으며,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20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27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된 법인은 72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이 있으며,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124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102개,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된 연도-법인은 54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이 있으며,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연도-법인은 174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102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0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8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12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20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21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83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18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28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128개 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18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2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전기채무제표를 공시한 연도-법인은 105개, 전기채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19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전기채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159개, 전기채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15개 이다.

총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20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0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23개, 미공시한 법인은 1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174개, 미공시한 법인은 0개이다. **유동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20개, 미공시한 법인은 0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17개, 미공시한 법인은 7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172개, 미공시한 법인이 2개이다. **유형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8개, 미공시한 법인은 2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00개, 미공시한 법인은 24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147개, 미공시한 법인은 27개이다.

총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20개, 미공시한 법인은 0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00개, 미공시한 법인은 24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158개, 미공시한 법인이 16개 이다. **유동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8개, 미공시한 법인은 2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95개, 미공시한 법인은 29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148개, 미공시한 법인은 26개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6개, 미공시한 법인은 14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59개, 미공시한 법인은 65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90개, 미공시한 법인은 84개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중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6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59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90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2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8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91개, 미공시한 법인은 33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140개, 미공시한 법인은 34개이다.

<표 2-13> 대차대조표 수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상위항목	총자산 50억 미만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				총자산 100억 이상			
	1	2	3	합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11	20	27	58	72	124	176	372	54	174	102	330
B. 공시성실성	0	8	12	20	20	21	83	124	18	28	128	174
C. 공시비교여부	18	2		20	105	19		124	159	15		174
D. 총자산	20	0		20	123	1		124	174	0		174
E. 유동자산	20	0		20	117	7		124	172	2		174
F. 유형자산	18	2		20	100	24		124	147	27		174
G. 총부채	20	0		20	100	24		124	158	16		174
H. 유동부채	18	2		20	95	29		124	148	26		174
I.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6	14		20	59	65		124	90	84		174
J.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6	0		6	59	0		59	90	0		90
K. 순자산	12	8		20	91	33		124	140	34		174
L. 제약없는 순자산	2	18		20	13	111		124	9	165		174
M. 일시제약 순자산	0	20		20	0	124		124	1	173		174
N. 영구제약 순자산	0	20		20	7	117		124	6	168		174

A: 1 =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
 2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대차대조표 공시,
 3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대차대조표 미공시.

B: 1 = 부채와 순자산표시생략, 2 = 순자산표시생략, 3 = 모두표시.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D: 1 = 공시, 2 = 미공시. E: 1 = 공시, 2 = 미공시.

F: 1 = 공시, 2 = 미공시. G: 1 = 공시, 2 = 미공시.

H: 1 = 공시, 2 = 미공시. I: 1 = 공시, 2 = 미공시.

J: 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 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

K: 1 = 공시, 2 = 미공시. L: 1 = 공시, 2 = 미공시.

M: 1 = 공시, 2 = 미공시. N: 1 = 공시, 2 = 미공시.

계약없는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2개, 미공시한 법인은 18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3개, 미공시한 법인은 111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9개, 미공시한 법인은 165개 이다. **일시계약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0개, 미공시한 법인은 20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0개, 미공시한 법인은 124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1개, 미공시한 법인은 173개이다. **영구계약 순자산**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0개, 미공시한 법인은 20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7개, 미공시한 법인은 117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6개, 미공시한 법인은 168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대차대조표 **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기본사항에서 공익,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계대차대조표를 생략한 연도-법인은 15개, 합계 대차대조표가 공시(수익, 공익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된 법인은 27개, 수익사업이 없어서 공익대차대조표만 공시하고 합계는 생략한 법인은 16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기본사항에서 공익,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계대차대조표를 생략한 법인은 46개, 합계 대차대조표가 공시(수익, 공익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된 법인은 226개, 수익사업이 없어서 공익대차대조표만 공시하고 합계는 생략한 법인은 100개,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기본사항에서 공익,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계대차대조표를 생략한 법인은 25개, 합계 대차대조표가 공시(수익, 공익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된 법인은 241개, 수익사업이 없어서 공익대차대조표만 공시하고 합계는 생략한 법인은 64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7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5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15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55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44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127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23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33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185개 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1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6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186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

은 40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14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27개 이다.

총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27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0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225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1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241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0개이다. **유동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24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3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218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8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237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이 4개이다. **유형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20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7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214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12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226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15개이다.

총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19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8개 이다. 총자산 50억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165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61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214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이 27개 이다. **유동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14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13개 이다. 총자산 50억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146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80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199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42개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5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22개 이다. 총자산 50억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80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146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100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141개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공시한 법인 중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5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개 0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80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연도-법인은 100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표 2-14> 대차대조표 합계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상위항목	총자산 50억 미만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				총자산 100억 이상			
	1	2	3	합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15	27	16	58	46	226	100	372	25	241	64	330
B. 공시성실성	7	5	15	27	55	44	127	226	23	33	185	241
C. 공시비교여부	21	6		27	186	40		226	214	27		241
D. 총자산	27	0		27	225	1		226	241	0		241
E. 유동자산	24	3		27	218	8		226	237	4		241
F. 유형자산	20	7		27	214	12		226	226	15		241
G. 총부채	19	8		27	165	61		226	214	27		241
H. 유동부채	14	13		27	146	80		226	199	42		241
I.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5	22		27	80	146		226	100	141		241
J.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5	0		5	80	0		80	100	0		100
K. 순자산	19	8		27	150	76		226	189	52		241
L. 제약없는 순자산	15	12		27	106	120		226	131	110		241
M. 일시제약 순자산	1	26		27	29	197		226	41	200		241
N. 영구제약 순자산	5	22		27	87	139		226	125	116		241

A: 1 = 기본사항에서 공익,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계대차대조표가 생략,

2 = 합계 대차대조표가 공시(수익, 공익 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

3 = 수익사업이 없어서 공익대차대조표만 공시하고 합계는 생략

B: 1 = 부채와 순자산표시생략, 2 = 순자산표시생략, 3 = 모두표시.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D: 1 = 공시, 2 = 미공시. E: 1 = 공시, 2 = 미공시.

F: 1 = 공시, 2 = 미공시. G: 1 = 공시, 2 = 미공시.

H: 1 = 공시, 2 = 미공시. I: 1 = 공시, 2 = 미공시.

J: 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 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

K: 1 = 공시, 2 = 미공시. L: 1 = 공시, 2 = 미공시.

M: 1 = 공시, 2 = 미공시. N: 1 = 공시, 2 = 미공시.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9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8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150개, 미공시한 법인은 76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189개, 미공시한 법인은 52개이다.

제약 없는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5개, 미공시한 법인은 12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06개, 미공시한 법인은 120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131개, 미공시한 법인은 110개 이다.

일시제약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개, 미공시한 법인은 26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29개, 미공시한 법인은 197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41개, 미공시한 법인은 200개이다.

영구제약 순자산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5개, 미공시한 법인은 22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87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139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125개, 미공시한 법인은 116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손익계산서가 생략된 연도-법인은 25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연도-법인은 33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0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손익계산서가 생략된 연도-법인은 65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연도-법인은 307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0개,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손익계산서가 생략된 연도-법인은 45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이 있으며,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연도-법인은 285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0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연도-법인은 25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연도-법인은 8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연도-법인은 193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연도-법인은 114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

시한 연도-법인은 185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연도-법인은 100개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5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8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51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56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연도-법인은 252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33개 이다.

발생기준여부에 따른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발생주의 0개, 현금주의 33개, 혼용 0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발생주의 37개, 현금주의 270개, 혼용 0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발생주의 69개, 현금주의 216개, 혼용 0개이다.

사업수입(프로그램수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30개, 미공시한 법인은 3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294개, 미공시한 법인은 13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264개, 미공시한 법인이 21개이다.

기부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27개, 미공시한 법인은 6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238개, 미공시한 법인은 69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229개, 미공시한 법인이 56개이다. **보조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7개, 미공시한 법인은 16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175개, 미공시한 법인은 132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137개, 미공시한 법인은 148개이다.

전입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11개, 미공시한 법인은 22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124개, 미공시한 법인은 183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공시한 법인이 133개, 미공시한 법인이 152개이다.

사업외수입(영업외수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11개, 미공시한 법인은 22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124개, 미공시한 법인은 183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공시한 법인이 167개, 미공시한 법인이 118개이다.

사업비용총계(공익비용)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본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28개, 미공시한 법인은 5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278개, 미공시한 법인은 29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268개, 미공시한 법인은 17개 이다.

<표 2-15>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상위항목	총자산 50억 미만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				총자산 100억 이상			
	1	2	3	합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25	33	0	58	65	307	0	372	45	285	0	330
B. 공시성실성	25	8		33	193	114		307	185	100		285
C. 공시비교여부	25	8		33	251	56		307	252	33	0	285
D. 발생기준여부	0	33	0	33	37	270	0	307	69	216	0	285
E. 사업수입 (프로그램수입)	30	3		33	294	13		307	264	21		285
F. 기부금	27	6		33	238	69		307	229	56		285
G. 보조금	17	16		33	175	132		307	137	148		285
H. 전입금	19	14		33	124	183		307	133	152		285
I. 사업외수입 (영업외수입)	11	22		33	124	183		307	167	118		285
J. 사업비용총계 (공익비용)	28	5		33	278	29		307	268	17		285
K. 사업외비용 (영업외비용)	8	25		33	107	200		307	130	155		285
L. 인건비	8	25		33	71	236		307	122	163		285
M. 순자산증감	19	14		33	208	99		307	180	105		285

- A: 1 =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손익계산서 생략,
 2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손익계산서 공시,
 3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손익계산서 미공시.
- B: 1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정상표시
 2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누락.
-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 D: 1 = 발생주의, 2 = 현금주의, 3 = 혼용. E: 1 = 공시, 2 = 미공시.
- F: 1 = 공시, 2 = 미공시. G: 1 = 공시, 2 = 미공시.
- H: 1 = 공시, 2 = 미공시. I: 1 = 공시, 2 = 미공시. J: 1 = 공시, 2 = 미공시.
- K: 1 = 공시, 2 = 미공시. L: 1 = 공시, 2 = 미공시. M: 1 = 공시, 2 = 미공시.

사업외비용(영업외비용)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8개, 미공시한 법인은 25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107개, 미공시한 법인은 200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130개, 미공시한 법인은 155개이다. **인건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8개, 미공시한 법인은 25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71개, 미공시한 법인은 236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122개, 미공시한 법인은 163개이다.

순자산증감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9개, 미공시한 법인은 14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208개, 미공시한 법인은 99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180개, 미공시한 법인은 105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손익계산서가 생략된 법인은 12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 있으며, 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연도-법인은 25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미공시한 법인은 21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손익계산서가 생략한 법인은 59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 있으며,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공시한 법인은 136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미공시한 법인은 177개,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손익계산서가 생략한 법인은 35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 있으며,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공시한 법인은 199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미공시한 법인은 96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연도-법인은 10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연도-법인은 15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연도-법인은 79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57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법인은 129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70개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0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5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전기재

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119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17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176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23개 이다.

발생기준여부에 따른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발생주의 12개, 현금주의 13개, 혼용 0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발생주의 68개, 현금주의 68개, 혼용 0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발생주의 117개, 현금주의 82개, 혼용 0개이다.

<표 2-16>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상위항목	총자산 50억 미만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				총자산 100억 이상			
	1	2	3	합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12	25	21	58	59	136	177	372	35	199	96	330
B. 공시성실성	10	15		25	79	57		136	129	70		199
C. 공시비교여부	20	5		25	119	17		136	176	23		199
D. 발생기준여부	12	13	0	25	68	68	0	136	117	82	0	199
E 수익사업수입(매출)	21	4		25	111	25		136	168	31		199
F. 판관비	24	1		25	115	21		136	160	39		199
G. 인건비	12	13		25	83	53		136	125	74		199
H. 수익사업비용	1	24		25	3	133		136	8	191		199
I. 영업외수익	20	5		25	120	16		136	176	23		199
J. 순자산증감	8	17		25	47	89		136	85	114		199

- A: 1 =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손익계산서가 생략,
 2 = 기본사항에 수익사업 있으며,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공시,
 3 =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미공시.
 B: 1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정상표시
 2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누락.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D: 1 = 발생주의, 2 = 현금주의, 3 = 혼용. E: 1 = 공시, 2 = 미공시.
 F: 1 = 공시, 2 = 미공시. G: 1 = 공시, 2 = 미공시.
 H: 1 = 공시, 2 = 미공시. I: 1 = 공시, 2 = 미공시. J: 1 = 공시, 2 = 미공시.

수익사업수입(매출)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21개, 미공시한 법인은 4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111개, 미공시한 법인은 25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168개, 미공시한 법인이 31개이다. **판관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24개, 미공시한 법인은 1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115개, 미공시한 법인은 21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160개, 미공시한 법인이 39개이다. **인건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2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13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83개, 미공시한 법인은 53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125개, 미공시한 법인은 74개이다. **수익사업비용**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1개, 미공시한 법인은 24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3개, 미공시한 법인은 133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8개, 미공시한 법인은 191개이다.

영업외수익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20개, 미공시한 법인은 5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120개, 미공시한 법인은 16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공시한 법인이 176개, 미공시한 법인이 23개이다.

순자산증감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8개, 미공시한 법인은 17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47개, 미공시한 법인은 89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85개, 미공시한 법인은 114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손익계산서 **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수익사업이 없어서 합계손익계산서가 없는 법인은 0개, 공익과 수익사업이 있고 합계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45개, 기본사항에 공익과 수익사업 내용이 있는데 합계손익계산서를 생략한 법인은 13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수익사업이 없어서 합계손익계산서가 없는 법인은 6개, 공익과 수익사업이 있고 합계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257개, 기본사항에 공익과 수익사업 내용이 있는데 합계손익계산서를 생략한 법인은 109개,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수익사업이 없어서 합계손익계산서가 없는 법인은 3개, 공익과 수익사업이 있고 합계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253개, 기본사항에 공익과 수익사업 내용이 있는데 합계손익계산서를 생략한 법인은 74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연도-법인은 15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30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법인은 119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138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연도-법인은 153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100개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0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25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176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81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202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51개 이다.

수입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은 25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20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연도-법인은 206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51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공시한 연도-법인은 227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이 26개이다.

비용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23개, 미공시한 법인은 22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199개, 미공시한 법인은 58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227개, 미공시한 법인이 26개이다.

순자산증감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20개, 미공시한 법인은 25개 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공시한 법인은 168개, 미공시한 법인은 89개 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214개, 미공시한 법인은 39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보고서 공시 현황(<표2-17>)을 살펴보면, 상위항목 중 외부감사여부 공시 현황은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외부감사보고서 있는 연도-법인 0개, 내부감사보고서 있는 연도-법인 15개, 첨부파일 안열림 5개, 기타 재무제표 등을 첨부 2개, 외부(내부)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가 36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는 외부감사보고서 있는 연도-법인 4개, 내부감사보고서 있는 연도-법인 43개, 첨부파일 안열림 18개, 기타 재무제표 등을 첨부 6개, 외부(내부)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가 301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외부감사보고서 있는 연도-법인 81개, 내부감사보고서 있는 연도-법인 48개, 첨부파일 안열림 20개, 기타 재무제표 등을 첨부

부 8개, 100억 초과하였음에도 감사보고서 없음 249개, 외부(내부)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가 173개이다.¹⁰⁾

<표 2-17> 손익계산서 합계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상위항목	총자산 50억 미만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				총자산 100억 이상			
	1	2	3	합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0	45	13	58	6	257	109	372	3	253	74	330
B. 공시성실성	15	30		45	119	138		257	153	100		253
C. 공시비교여부	20	25		45	176	81		257	202	51		253
D. 수입합계	25	20		45	206	51		257	227	26		253
E. 비용합계	23	22		45	199	58		257	227	26		253
F. 순자산증감	20	25		45	168	89		257	214	39		253

A: 1 = 수익사업이 없어서 합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

2 = 공익과 수익사업이 있고 합계손익계산서 공시한 경우.

3 = 기본사항에 공익과 수익사업 내용이 있는데 합계손익계산서 생략한 경우.

B: 1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정상표시

2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누락.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D: 1 = 공시, 2 = 미공시. E: 1 = 공시, 2 = 미공시.

F: 1 = 공시, 2 = 미공시.

BIG4 감사인 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BIG4 2개, Non-Big4 2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BIG4 20개, Non-Big4 61개이다. **감사준거기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관계법령 2개, 일반기업회계기준 0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 2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0개, 특정목적 회계기준 0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관계법령 40개, 일반기업회계기준 16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 7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0개, 특정목적 회계기준 8개이다.

10) 참고로 감사보고서 페이지수 평균(주석수 평균)을 살펴보면, 2011년은 14.9쪽(7.9개) 2012년은 16.1쪽(8.8개)이다.

<표 2-18> 감사보고서 공시 현황(사회복지법인)

Panel. A							
규모	총자산 50억 미만						
상위항목	1	2	3	4	5	합계	비고
A. 외부감사여부	0	15	5	2	36	58	0
Panel. B							
규모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						
상위항목	1	2	3	4	5	합계	비고
A. 외부감사여부	4	43	18	6	301	372	0
B. BIG4 감사인 여부	2	2				4	
C. 감사준거기준	2	0	2	0	0	4	
D. 첨부재무제표 종류	2	2	0			4	
E. 손익계산서 명칭	4	0	0	0		4	
F. 대차대조표 명칭	2	2	0	0		4	
Panel. C							
규모	총자산 100억 이상						
상위항목	1	2	3	4	5	합계	비고
A. 외부감사여부	81	48	20	8	173	330	249
B. BIG4 감사인 여부	20	61				81	
C. 감사준거기준	40	16	7	10	8	81	
D. 첨부재무제표 종류	16	47	16	2		81	
E. 손익계산서 명칭	45	7	12	17		81	
F. 대차대조표 명칭	8	56	0	17		81	

A: 1 = 외부감사보고서 있음. 2 = 내부감사보고서 있음.

3 = 감사보고서 있다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파일이 안 열림.

4 = 기타 재무제표 등을 첨부. 5 = 감사보고서 없음.

B: 1 = BIG4 회계법인이 감사한 경우 2 = 그렇지 않은 경우.

C: 1 = 일반법인회계기준과 관계법령. 2 = 일반법인회계기준.

3 = 한국회계기준원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

4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5 = 특정목적 회계기준

D: 1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계산서.

2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 기타, 4 = 없음

E: 1 = 손익계산서. 2 = 수지계산서. 3 = 기타(운영보고서 등), 4 = 없음.

F: 1 = 대차대조표 2 = 재무상태표 3 = 기타, 4 = 없음/비고 = 100억 초과법인 감사보고서 미제출

첨부재무제표 종류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계산서로 작성한 연도-법인이 2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연도-법인이 2개 기타 0개, 없음 0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계산서로 작성한 연도-법인이 16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연도-법인이 47개 기타 16개, 없음 2개이다.

손익계산서 명칭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손익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4개, 수지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0개, 기타(운영보고서 등) 법인이 0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손익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45개, 수지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7개, 기타(운영보고서 등) 법인이 12개, 없음 17개이다.

대차대조표 명칭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대차대조표로 작성한 법인이 2개, 재무상태표로 작성한 법인이 2개, 기타로 작성한 법인이 0개, 없음 0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대차대조표로 작성한 법인이 8개, 재무상태표로 작성한 법인이 56개, 기타로 작성한 법인이 0개, 없음 17개이다.

제2절 장학재단 공시현황

장학재단 비재무 정보 공시 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기본사항을 공시한 법인이 66개, 미공시한 법인이 0개이다. 기본사항 중 설립근거법을 공시한 법인은 52개 미공시한 법인은 14개이다. 2012년에는 기본사항을 공시한 법인이 67개, 미공시한 법인이 0개이다.

기본사항 중 설립근거법을 공시한 법인은 52개 미공시한 법인은 15개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중 월별기부금 수입 및 지출을 공시한 법인은 2011년 49개, 미공시한 법인은 17개이며, 2012년 공시한 법인은 50개, 미공시한 법인은 17개이다. 기부금지출 세부명세를 공시한 법인은 2011년에는 32개, 미공시한 법인은 34개이며 2012년에는 37개 법인이 공시, 30개 법인이 미공시하였다.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명세서를 공시한 법인은 2011년에 40개, 미공시한 법인이 26개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이 40개, 미공시한 법인은 27개이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를 공시한 법인은 2011년에는 64개, 미공시한 법인은 2개 이다.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 중 이사수~~를~~를 공시한 법인은 63명, 미공시한 법인은 3명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65개, 미공시한 법인은 2개 이다.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 중 이사수~~를~~를 공시한 법인은 64명, 미공시한 법인은 3명이다.

<표 2-19> 비재무 정보 공시 현황 (장학재단)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구분	공시	미공시	총합계	공시	미공시	총합계
A. 기본사항	공시여부	66	0	66	67	0	67
	설립근거법	52	14	66	52	15	67
B.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월별기부금 수입및지출	49	17	66	50	17	67
	기부금지출 세부명세	32	34	66	37	30	67
C.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명세서	공시여부	40	26	66	40	27	67
D.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	공시여부	64	2	66	65	2	67
	이사수	63	3	66	64	3	67

장학재단의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대차대조표를 생략한 법인은 7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54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5개이다. 2012년에는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된 법인은 8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53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6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13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4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37개 이다. 2012년에는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8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4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41개 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51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3개 이다. 2012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51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2개 이다.

총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54개, 미공시한 법인은 12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53개, 미공시한 법인은 14개 이다. **유동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48개, 미공시한 법인은 18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50개, 미공시한 법인은 17개 이다. **유형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1개, 미공시한 법인은 35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3개, 미공시한 법인은 34개 이다.

총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9개, 미공시한 법인은 27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44개, 미공시한 법인은 23개 이다. **유동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4개, 미공시한 법인은 32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8개, 미공시한 법인은 29개 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5개, 미공시한 법인은 51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1개, 미공시한 법인은 56개 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중 2011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15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2012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11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47개, 미공시한 법인은 19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47개, 미공시한 법인은 20개 이다. **계약없는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1개, 미공시한 법인은 35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4개, 미공시한 법인은 33개 이다. **일시계약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8개, 미공시한 법인은 58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7개, 미공시한 법인은 60개 이다. **영구계약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40개, 미공시한 법인은 26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40개, 미공시한 법인은 27개 이다.

<표 2-20>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공시 현황(장학재단)

상위항목	2011년				2012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7	54	5	66	8	53	6	67
B. 공시성실성	13	4	37	54	8	4	41	53
C. 공시비교여부	51	3		54	51	2		53
D. 총자산	54	12		66	53	14		67
E. 유동자산	48	18		66	50	17		67
F. 유형자산	31	35		66	33	34		67
G. 총부채	39	27		66	44	23		67
H. 유동부채	34	32		66	38	29		67
I.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15	51		66	11	56		67
J.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15	0		15	11	0		11
K. 순자산	47	19		66	47	20		67
L. 제약없는 순자산	31	35		66	34	33		67
M. 일시제약 순자산	8	58		66	7	60		67
N. 영구제약 순자산	40	26		66	40	27		67

A: 1 =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

2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대차대조표 공시,

3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대차대조표 미공시.

B: 1 = 부채와 순자산표시생략, 2 = 순자산표시생략, 3 = 모두표시.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D: 1 = 공시, 2 = 미공시. E: 1 = 공시, 2 = 미공시.

F: 1 = 공시, 2 = 미공시. G: 1 = 공시, 2 = 미공시.

H: 1 = 공시, 2 = 미공시. I: 1 = 공시, 2 = 미공시.

J: 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 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

K: 1 = 공시, 2 = 미공시. L: 1 = 공시, 2 = 미공시.

M: 1 = 공시, 2 = 미공시. N: 1 = 공시, 2 = 미공시.

장학재단의 대차대조표 **수입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된 법인은 10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이 있으며,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37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19개이다. 2012년에는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된 법인은 7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이 있으며,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41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19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6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2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29개 이다. 2012년에는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5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4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32개 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전기채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35개, 전기채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2개 이다. 2012년에는 전기채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40개, 전기채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1개 이다.

총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7개, 미공시한 법인은 29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41개, 미공시한 법인은 26개 이다. **유동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5개, 미공시한 법인은 31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40개, 미공시한 법인은 27개 이다. **유형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22개, 미공시한 법인은 44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4개, 미공시한 법인은 43개 이다.

총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1개, 미공시한 법인은 35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5개, 미공시한 법인은 32개 이다. **유동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24개, 미공시한 법인은 42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8개, 미공시한 법인은 39개 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23개, 미공시한 법인은 43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2개, 미공시한 법인은 45개 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중 2011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23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2012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22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4개, 미공시한 법인은 32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6개, 미공시한 법인은 31개 이다. **계약없는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4개, 미공시한 법인은 62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5개, 미공시한 법인은 62개 이다. **일시계약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1개, 미공시한 법인은 65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0개, 미공시한 법인은 67개 이다. **영구계약 순자산**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4개, 미공시한 법인은 62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4개, 미공시한 법인은 63개 이다.

<표 2-21> 대차대조표 수익사업 공시 현황(장학재단)

상위항목	2011년				2012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10	37	19	66	7	41	19	67
B. 공시성실성	6	2	29	37	5	4	32	41
C. 공시비교여부	35	2		37	40	1		41
D. 총자산	37	29		66	41	26		67
E. 유동자산	35	31		66	40	27		67
F. 유형자산	22	44		66	24	43		67
G. 총부채	31	35		66	35	32		67
H. 유동부채	24	42		66	28	39		67
I.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23	43		66	22	45		67
J.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23	0		23	22	0		22
K. 순자산	34	32		66	36	31		67
L. 제약없는 순자산	4	62		66	5	62		67
M. 일시제약 순자산	1	65		66	0	67		67
N. 영구제약 순자산	4	62		66	4	63		67

A: 1 =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대차대조표가 생략,

2 = 기본사항에 수익사업 있으며, 수익사업 대차대조표 공시,

3 =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대차대조표 미공시.

B: 1 = 부채와 순자산표시생략, 2 = 순자산표시생략, 3 = 모두표시.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D: 1 = 공시, 2 = 미공시. E: 1 = 공시, 2 = 미공시.

F: 1 = 공시, 2 = 미공시. G: 1 = 공시, 2 = 미공시.

H: 1 = 공시, 2 = 미공시. I: 1 = 공시, 2 = 미공시.

J: 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 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

K: 1 = 공시, 2 = 미공시. L: 1 = 공시, 2 = 미공시.

M: 1 = 공시, 2 = 미공시. N: 1 = 공시, 2 = 미공시.

장학재단의 대차대조표 **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기본사항에서 공익, 수익 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계대차대조표가 생략된 법인이 8개, 합계 대차대조표가 공시(수익, 공익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된 법인은 47개, 수익사업이 없어서 공익대차대조표만 공시하고 합계는 생략한 법인은 11개이다. 2012년에는 기본사항에서 공익,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계대차대조표가 생략된 법인은 7개, 합계 대차대조표가 공시(수익, 공익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된 법인은 50개, 수익사업이 없어서 공익대차대조표만 공시하고 합계는 생략한 법인은 10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2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3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42개 이다. 2012년에는 부채와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4개, 순자산 표시를 생략한 법인은 6개, 모두 표시한 법인은 40개 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전기채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44개, 전기채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3개 이다. 2012년에는 전기채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50개, 전기채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0개 이다.

총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47개, 미공시한 법인은 19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50개, 미공시한 법인은 17개 이다. **유동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공시한 법인은 47개, 미공시한 법인은 19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50개, 미공시한 법인은 17개 이다. **유형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4개, 미공시한 법인은 32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4개, 미공시한 법인은 33개 이다.

총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45개, 미공시한 법인은 21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46개, 미공시한 법인은 21개 이다. **유동부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9개, 미공시한 법인은 27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40개, 미공시한 법인은 27개 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28개, 미공시한 법인은 38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6개, 미공시한 법인은 41개 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중 2011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27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1개 이다. 2012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인 법인은 26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인 법인은 0개 이다.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41개, 미공시한 법인은 25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41개, 미공시한 법인은 26개 이다. **계약 없는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0개, 미공시한 법인은 36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4개, 미공시한 법인은 33개 이다. **일시계약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6개, 미공시한 법인은 60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8개, 미공시한 법인은 59개 이다. **영구계약 순자산**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3개, 미공시한 법인은 33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2개, 미공시한 법인은 35개 이다.

<표 2-22> 대차대조표 합계 공시 현황(장학재단)

상위항목	2011년				2012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8	47	11	66	7	50	10	67
B. 공시성실성	2	3	42	47	4	6	40	50
C. 공시비교여부	44	3		47	50	0		50
D. 총자산	47	19		66	50	17		67
E. 유동자산	47	19		66	50	17		67
F. 유형자산	34	32		66	34	33		67
G. 총부채	45	21		66	46	21		67
H. 유동부채	39	27		66	40	27		67
I.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28	38		66	26	41		67
J.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분류	27	1		28	26	0		26
K. 순자산	41	25		66	41	26		67
L. 제약없는 순자산	30	36		66	34	33		67
M. 일시제약 순자산	6	60		66	8	59		67
N. 영구제약 순자산	33	33		66	32	35		67

- A: 1 = 기본사항에서 공익,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계대차대조표가 생략,
 2 = 합계 대차대조표가 공시(수익, 공익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
 3 = 수익사업이 없어서 공익대차대조표만 공시하고 합계는 생략
 B: 1 = 부채와 순자산표시생략, 2 = 순자산표시생략, 3 = 모두표시.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D: 1 = 공시, 2 = 미공시. E: 1 = 공시, 2 = 미공시.
 F: 1 = 공시, 2 = 미공시. G: 1 = 공시, 2 = 미공시.
 H: 1 = 공시, 2 = 미공시. I: 1 = 공시, 2 = 미공시.
 J: 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부채, 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류가 자본.
 K: 1 = 공시, 2 = 미공시. L: 1 = 공시, 2 = 미공시.
 M: 1 = 공시, 2 = 미공시. N: 1 = 공시, 2 = 미공시.

장학재단의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손익계산서가 생략된 법인이 7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58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미공시한 법인은 1개이다. 2012년에는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손익계산서가 생략된 법인은 7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이 있으며,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60개,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미공시한 법인은 0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법인은 43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15개이다. 2012년에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법인은 47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13개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55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3개 이다. 2012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58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2개 이다.

발생기준여부에 따른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발생주의 5개, 현금주의 53개, 혼용 0개이다. 2012년에는 발생주의 7개, 현금주의 53개, 혼용 0개이다. **사업수입(프로그램수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53개, 미공시한 법인은 5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55개, 미공시한 법인은 5개 이다.

기부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6개, 미공시한 법인은 22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5개, 미공시한 법인은 25개 이다. **보조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개, 미공시한 법인은 55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4개, 미공시한 법인은 56개 이다. **전입금**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21개, 미공시한 법인은 37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3개, 미공시한 법인은 37개 이다.

사업외수입(영업외수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22개, 미공시한 법인은 36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2개, 미공시한 법인은 38개 이다.

사업비용총계(공익비용)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55개, 미공시한 법인은 3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57개, 미공시한 법인은 3개 이다.

사업외비용(영업외비용)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6개, 미공시한 법인은 42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8개, 미공시한 법인은 42개 이다. **인건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0개, 미공시한 법인은 48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1개, 미공시한 법인은 49개 이다.

순자산증감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42개, 미공시한 법인은 16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44개, 미공시한 법인은 16개 이다.

<표 2-23>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공시 현황(장학재단)

상위항목	2011년				2012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7	58	1	66	7	60	0	67
B. 공시성실성	43	15	0	58	47	13	0	60
C. 공시비교여부	55	3		58	58	2		60
D. 발생기준여부	5	53		58	7	53		60
E. 사업수입(프로그램수입)	53	5		58	55	5		60
F. 기부금	36	22		58	35	25		60
G. 보조금	3	55		58	4	56		60
H. 전입금	21	37		58	23	37		60
I. 사업외수입(영업외수입)	22	36		58	22	38		60
J. 사업비용총계(공익비용)	55	3		58	57	3		60
K. 사업외비용(영업외비용)	16	42		58	18	42		60
L. 인건비	10	48		58	11	49		60
M. 순자산증감	42	16		58	44	16		60

- A: 1 =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고유목적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손익계산서가 생략,
 2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 있으며, 공익사업 손익계산서 공시,
 3 = 기본사항에 공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공익사업 손익계산서 미공시.
- B: 1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정상표시
 2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누락.
-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 D: 1 = 발생주의, 2 = 현금주의, 3 = 혼용. E: 1 = 공시, 2 = 미공시.
- F: 1 = 공시, 2 = 미공시. G: 1 = 공시, 2 = 미공시.
- H: 1 = 공시, 2 = 미공시. I: 1 = 공시, 2 = 미공시.
- J: 1 = 공시, 2 = 미공시. K: 1 = 공시, 2 = 미공시.
- L: 1 = 공시, 2 = 미공시. M: 1 = 공시, 2 = 미공시.

장학재단의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손익계산서가 생략된 법인이 10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이 있으며, 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39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미공시한 법인은 17개이다. 2012년에는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손익계산서가 생략된 법인은 8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이 있으며, 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41개,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미공시한 법인은 18개이다.

<표 2-24>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공시 현황(장학재단)

상위항목	2011년				2012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10	39	17	66	8	41	18	67
B. 공시성실성	31	8	0	39	35	6	0	41
C. 공시비교여부	36	3		39	40	1		41
D. 발생기준여부	21	18		39	20	21		41
E. 수익사업수입(매출)	25	14		39	25	16		41
F. 판관비	24	15		39	27	14		41
G. 인건비	11	28		39	12	29		41
H. 영업외수익	33	6		39	35	6		41
I. 순자산증감	31	8		39	34	7		41

A: 1 = 기본사항에서 수익사업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손익계산서가 생략,
 2 = 기본사항에 수익사업 있으며,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공시,
 3 = 기본사항에 수익사업자산 금액이 없어서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미공시.

B: 1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정상표시
 2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누락.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D: 1 = 발생주의, 2 = 현금주의, 3 = 혼용. E: 1 = 공시, 2 = 미공시.

F: 1 = 공시, 2 = 미공시. G: 1 = 공시, 2 = 미공시.

H: 1 = 공시, 2 = 미공시. I: 1 = 공시, 2 = 미공시.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법인은 31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8개이다. 2012년에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법인은 35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6개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36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3개 이다. 2012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40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1개 이다.

발생기준여부에 따른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발생주의 21개, 현금주의 18개, 혼용 0개이다. 2012년에는 발생주의 20개, 현금주의 21개, 혼용 0개이다.

수익사업수입(매출)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25개, 미공시한 법인은 14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5개, 미공시한 법인은 16개 이다.

판관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24개, 미공시한 법인은 15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27개, 미공시한 법인은 14개 이다. **인건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11개, 미공시한 법인은 28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12개, 미공시한 법인은 29개 이다.

영업외수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3개, 미공시한 법인은 6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5개, 미공시한 법인은 6개 이다.

순자산증감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31개, 미공시한 법인은 8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4개, 미공시한 법인은 7개 이다.

장학재단의 **손익계산서 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수익사업이 없어서 합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 법인이 5개, 공익과 수익사업이 있고 합계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48개, 기본사항에 공익과 수익사업 내용이 있는데 합계손익계산서를 생략한 법인은 13개이다. 2012년에는 수익사업이 없어서 합계손익계산서가 없는 법인은 7개, 공익과 수익사업이 있고 합계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49개, 기본사항에 공익과 수익사업 내용이 있는데 합계손익계산서를 생략한 법인은 11개이다.

공시성실성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법인은 43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5개이다. 2012년에는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상 표시한 법인은 44개,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누락한 법인은 5개이다.

공시비교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한 법인은 45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3개 이다. 2012년에는 전기재무제표를 공시

한 법인은 47개, 전기재무제표를 미공시한 법인은 2개 이다.

수입 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47개, 미공시한 법인은 2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47개, 미공시한 법인은 1개 이다.

비용 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47개, 미공시한 법인은 1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47개, 미공시한 법인은 2개 이다.

순자산증감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공시한 법인은 41개, 미공시한 법인은 7개 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43개, 미공시한 법인은 6개 이다.

<표 2-25> 손익계산서 합계 공시 현황(장학재단)

상위항목	2011년				2012년			
	1	2	3	합계	1	2	3	합계
A. 공시여부	5	48	13	66	7	49	11	67
B. 공시성실성	43	5	0	48	44	5	0	49
C. 공시비교여부	45	3		48	47	2		49
D. 수입합계	47	1		48	49	0		49
E. 비용합계	47	1		48	47	2		49
F. 순자산증감	41	7		48	43	6		49

A: 1 = 수익사업이 없어서 합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

2 = 공익과 수익사업이 있고 합계손익계산서 공시한 경우.

3 = 기본사항에 공익과 수익사업 내용이 있는데 합계손익계산서 생략한 경우.

B: 1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정상표시

2 = 수익, 비용, 순자산증감의 계정과목이나 금액 누락.

C: 1 = 전기재무제표 공시, 2 = 전기재무제표 미공시.

D: 1 = 공시, 2 = 미공시. E: 1 = 공시, 2 = 미공시. F: 1 = 공시, 2 = 미공시.

장학재단의 **감사보고서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항목 중 외부감사여부 공시 현황은 2011년 외부감사보고서 있는 법인 20개, 내부감사보고서 있는 법인 17개, 첨부파일 안 열림 1개, 기타 재무제표 등을 첨부 0개, 없음 28개이다. 2012년은 외부감사보고서 있는 법인 25개, 내부감사보고서 있는 법인 8개, 첨부파일 안 열림 5개, 기타 재무제표 등을 첨부 1개, 없음 28개이다.

<표 2-26> 감사보고서 공시 현황(장학재단)

Panel. A							
연도	2011년						
상위항목	1	2	3	4	5	합계	비고
A. 외부감사여부	20	17	1	0	28	66	23
B. BIG4 감사인 여부	4	16				20	
C. 감사준거기준	8	8	1	0	3	20	
D. 첨부재무제표 종류	4	15	1			20	
E. 손익계산서 명칭	16	2	2			20	
F. 대차대조표 명칭	1	19	0			20	
감사보고서 페이지 수 평균 (주석 수 평균)	14.9쪽(9.7개)						
Panel. B							
연도	2012년						
상위항목	1	2	3	4	5	합계	비고
A. 외부감사여부	25	8	5	1	28	67	23
B. BIG4 감사인 여부	8	17				25	
C. 감사준거기준	6	14	2	0	3	25	
D. 첨부재무제표 종류	5	20	0			25	
E. 손익계산서 명칭	16	4	5			25	
F. 대차대조표 명칭	1	24	0			25	
감사보고서 페이지 수 평균 (주석 수 평균)	21.5쪽(10.6개)						

A: 1 = 외부감사보고서 있음. 2 = 내부감사보고서 있음.

3 = 첨부파일 안열림 4 = 기타 재무제표 등을 첨부.. 5 = 없음.

B: 1 = BIG4 ,2=Non-Big4.

C: 1 = 일반법인회계기준과 관계법령. 2 = 일반법인회계기준.

3 =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 4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5 = 특정목적 회계기준.

D: 1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계산서. 2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 기타, 4 = 없음.

E: 1 = 손익계산서. 2 = 수지계산서. 3 = 기타(운영보고서 등).

F: 1 = 대차대조표. 2 = 재무상태표 3 = 기타, 4 = 없음/비고/100억 초과법인 감사보고서 미제출

BIG4 감사인 여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BIG4 4개, Non-Big4 16개이다. 2012년도는 BIG4 8개, Non-Big4 17개이다. **감사준거기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관계법령 8개, 일반기업회계기준 8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 1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0개, 특정목적 회계기준 3개이다. 2012년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관계법령 6개, 일반기업회계기준 14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 2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0개, 특정목적 회계기준 3개이다.

첨부 재무제표 종류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4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법인이 15개, 기타 1개이다. 2012년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5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법인이 20개, 기타 0개이다.

손익계산서 명칭을 살펴보면, 2011년에 손익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16개, 수지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2개, 기타(운영보고서 등) 법인이 2개이다. 2012년은 손익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16개, 수지계산서로 작성한 법인이 4개, 기타(운영보고서 등) 법인이 5개이다.

대차대조표 명칭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대차대조표로 작성한 법인이 1개, 재무상태표로 작성한 법인이 9개, 기타로 작성한 법인이 0개이다. 2012년은 대차대조표로 작성한 법인이 1개, 재무상태표로 작성한 법인이 24개, 기타로 작성한 법인이 0개이다. 감사보고서 페이지 수 평균(주식 수 평균)을 살펴보면, 2011년은 14.9쪽(9.7개) 2012년은 21.5쪽(10.6개)이다.

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구분에 **홈페이지유무**에 따라서 홈페이지 있음 67개, 홈페이지 없음 9개이다. **후원금(기부금) 공시**를 살펴보면, 공시 20개, 미공시 44개, 정회원 가입시 공개 0개, 예러로 보이지 않음 3개이다. **예금결산서 공시**를 살펴보면, 공시 9개, 미공시 55개, 정회원 가입시 공개 0개, 예러로 보이지 않음 3개이다. **이사회 회의록** 공시를 살펴보면, 공시 10개, 미공시 54개, 정회원 가입시 공개 3개, 예러로 보이지 않음 0개이다. **외부감사보고서** 공시를 살펴보면, 공시 1개, 미공시 60개, 내부감사보고서 공시 4개, 정회원 가입시 공개 2개, 예러로 보이지 않음 0개이다. **연차보고서 공시**를 살펴보면, 공시 3개, 미공시 61개, 정회원 가입시 공개 3개, 예러로 보이지 않음 0개이다.

<표 2-27> 홈페이지 공시 현황(장학재단)

구분	1	2	3	4	5	합계
A. 홈페이지 유무	67	9				76
B. 후원금(기부금) 공시	20	44	0	3		67
C. 예금결산서 공시	9	55	3	0		67
D. 이사회 회의록 공시	10	54	3	0		67
E. 외부감사보고서 공시	1	60	4	2	0	67
F. 연차보고서 공시	3	61	3	0		67

A: 1 = 홈페이지 있음. 2 = 홈페이지 없음.

B: 1 = 공시. 2 = 미공시. 3 = 정회원 가입시 공개. 4 = 에러로 보이지 않을시.

C: 1 = 공시. 2 = 미공시. 3 = 정회원 가입시 공개. 4 = 에러로 보이지 않을시.

D: 1 = 공시. 2 = 미공시. 3 = 정회원 가입시 공개. 4 = 에러로 보이지 않을시.

E: 1 = 공시. 2 = 미공시. 3 = 내부감사보고서 공시. 4 = 정회원 가입시 공개.
5 = 에러로 보이지 않을시.

F: 1 = 공시. 2 = 미공시. 3 = 정회원 가입시 공개. 4 = 에러로 보이지 않을시.

제3절 공시 현황 요약

1. 사회복지법인 공시 현황 요약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공시 현황을 주요항목별 공시유무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표 2-28>은 사회복지법인 연도별 공시 현황 요약표이다. 사회복지법인 비재무정보 공시 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기본사항을 공시한 법인이 382개, 미공시한 법인이 1개이다. 기본사항 중 설립근거법을 공시한 법인은 177개 미공시한 법인은 206개이다. 2012년에는 기본사항을 공시한 법인이 376개, 미공시한 법인이 1개이다. 기본사항 중 설립근거법을 공시한 법인은 179개 미공시한 법인은 198개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중 월별기부금 수입 및 지출을 공시한 법인은 2011년 330개, 미공시한 법인은 53개이며 2012년 공시한 법인은 327개, 미공시한 법인은 50개이다. 기부금지출 세부명세를 공시한 법인은 2011년에는 243개, 미공시한 법인은 140개이며 2012년에는 258개 법인이 공시, 119개 법인이 미공시하였다.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명세서를 공시한 법인은 2011년에 130개, 미공시한 법인이 253개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이 131개, 미공시한 법인은 246개이다.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를 공시한 법인은 2011년에는 363개, 미공시한 법인은 20개 이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 중 이사수를 공시한 법인은 363개, 미공시한 법인은 20개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362개, 미공시한 법인은 15개이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 중 이사를 공시한 법인은 362개, 미공시한 법인은 15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317개, 미공시한 법인은 66개이다. 2012년에는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317개, 미공시한 법인은 60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대차대조표 수입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151개, 미공시한 법인은 232개이다. 2012년에는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167개, 미공시한 법인은 210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대차대조표 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합계 대차대조표가 공시(수익, 공익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된 법인은 230개, 미공시한 법인은 153개이다. 2012년에는 합계 대차대조표가 공시(수익, 공익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된 법인은 264개, 미공시한 법인은 113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305개, 미공시한 법

인은 78개이다. 2012년에는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320개, 미공시한 법인은 57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175개, 미공시한 법인은 208개이다. 2012년에는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185개, 미공시한 법인은 192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손익계산서 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합계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272개, 미공시한 법인은 111개이다. 2012년에는 합계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283개, 미공시한 법인은 94개이다.

<표 2-28> 사회복지법인 공시 현황 요약(연도별)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구분	공시	미공시	총합계	공시	미공시	총합계
A. 기본사항	공시여부	382	1	383	376	1	377
	설립근거법	177	206	383	179	198	377
B.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월별기부금 수입및지출	330	53	383	327	50	377
	기부금지출 세부명세	243	140	383	258	119	377
C.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명세서	공시여부	130	253	383	131	246	377
D.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명세서	공시여부	363	20	383	362	15	377
	이사수	363	20	383	362	15	377
E. 대차대조표(공익사업)	공시여부	317	66	383	317	60	377
F. 대차대조표(수익사업)	공시여부	151	232	383	167	210	377
G. 대차대조표(합계)	공시여부	230	153	383	264	113	377
H. 손익계산서(공익사업)	공시여부	305	78	383	320	57	377
I. 손익계산서(수익사업)	공시여부	175	208	383	185	192	377
J. 손익계산서(합계)	공시여부	272	111	383	283	94	377

<표 2-29>는 사회복지법인 규모별 공시 현황 요약표이다. 사회복지법인 비재무정보 공시 현황을 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기본사항을 공시한 법인이 46개, 미공시한 법인이 12개이다. 기본사항 중 설립근거법을 공시한 연도-법인은 23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35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기본사항을 공시한 법인이 372개, 미공시한 법인이 0개이다. 기본사항 중 설립근거법을 공시한 연도-법인은 173개 미공시한 법인은 199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기본사항을 공시한 법인이 330개, 미공시한 법인이 0개이다. 기본사항 중 설립근거법을 공시한 법인은 156개 미공시한 법인은 174개이다.

<표 2-29> 사회복지법인 공시 현황 요약(규모별)

항목	연도-법인규모	총자산 50억 미만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			총자산 100억 이상		
	구분	공시	미공시	합계	공시	미공시	합계	공시	미공시	합계
A. 기본사항	공시여부	46	12	58	372	0	372	330	0	330
	설립근거법	23	35	58	173	199	372	156	174	330
B.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월별기부금 수입및지출	42	16	58	315	57	372	291	39	330
	기부금지출 세부명세	35	23	58	242	130	372	218	112	330
C.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 명세서	공시여부	15	43	58	105	267	372	139	191	330
D.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구성원 현황 명세서	공시여부	43	15	58	357	15	372	315	15	330
	이사수	43	15	58	357	15	372	315	15	330
E.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공시여부	30	28	58	319	53	372	285	45	330
F. 대차대조표 (수익사업)	공시여부	20	38	58	124	248	372	174	156	330
G. 대차대조표(합계)	공시여부	27	31	58	226	146	372	241	89	330
H.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공시여부	33	25	58	307	65	372	285	45	330
I.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공시여부	25	33	58	136	236	372	199	131	330
J. 손익계산서(합계)	공시여부	45	13	58	257	115	372	253	77	33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중 월별기부금 수입 및 지출을 공시한 연도-법인은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42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16개이며,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315개, 미공시한 법인은 57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291개, 미공시한 법인이 39개이다. 기부금지출 세부명세를 공시한 법인은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35개, 미공시한 법인은 23개이며,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242개 법인이 공시, 130개 법인이 미공시하였다. 총자산이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이 218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이 112개이다.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명세서를 공시한 법인은 50억 미만일 때 15개, 미공시한 법인이 43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연도-법인이 105개, 미공시한 법인은 267개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139개, 미공시한 법인이 191개이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를 공시한 연도-법인은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43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15개 이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 중 이사수를 공시한 법인은 43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15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시한 법인은 357개, 미공시한 법인은 15개이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 중 이사수를 공시한 법인은 357명, 미공시한 법인은 15명이다.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시한 법인은 315개, 미공시한 법인은 15개이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명세서 중 이사수를 공시한 법인은 315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15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30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28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319개, 미공시한 법인은 53개,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285개, 미공시한 법인은 45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대차대조표 수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25개, 미공시한 법인은 33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124개, 미공시한 법인은 248개,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174개, 미공시한 법인은 156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대차대조표 합계를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합계 대차대조표를 공시(수익, 공익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한 법인은 27개, 미공시한 법인은 31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합계 대차대조표를 공시(수익, 공익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한 법인은 226개, 미공시한 법인은 146개,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합계 대차대조표를 공시(수익, 공익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한 법인은 241개, 미공시한 법인은 89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기본사항에서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33개, 미공시한 법인은 25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307개, 미공시한 법인은 65개,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285개, 미공시한 연도-법인은 45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25개, 미공시한 법인은 43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136개, 미공시한 법인은 236개,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199개, 미공시한 법인은 131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손익계산서 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 미만일 때 합계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45개, 미공시한 법인은 13개이다. 총자산 50억 이상 100억 미만일 때, 합계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257개, 미공시한 법인은 115개, 총자산 100억 이상일 때 합계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253개, 미공시한 법인은 77개이다.

2. 장학재단 공시 현황 요약

<표 2-30>은 장학재단 공시 현황 요약표이다. 장학재단 비재무 정보 공시 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기본사항을 공시한 법인이 66개, 미공시한 법인이 0개이다. 기본사항 중 설립근거법을 공시한 법인은 52개 미공시한 법인은 14개이다. 2012년에는 기본사항을 공시한 법인이 67개, 미공시한 법인이 0개이다. 기본사항 중 설립근거법을 공시한 법인은 52개 미공시한 법인은 15개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중 월별기부금 수입 및 지출을 공시한 법인은 2011년 49개, 미공시한 법인은 17개이며, 2012년 공시한 법인은 50개, 미공시한 법인은 17개이다. 기부금지출 세부명세를 공시한 법인은 2011년에는 32개, 미공시한 법인은 34개이며 2012년에는 37개 법인이 공시, 30개 법인이 미공시하였다.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명세서를 공시한 법인은 2011년에 40개, 미공시한 법인이 26개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이 40개, 미공시한 법인은 27개이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를 공시한 법인은 2011년에는 64개, 미공시한 법인은 2개 이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 중 이사수를 공시한 법인은 63개, 미공시한 법인은 3개이다. 2012년에는

공시한 법인은 65개, 미공시한 법인은 2개 이다.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 중 이사수를 공시한 법인은 64개, 미공시한 법인은 3개이다.

<표 2-30> 장학재단 공시 현황 요약

항목	연도	2011년			2012년		
	구분	공시	미공시	합계	공시	미공시	합계
A. 기본사항	공시여부	66	0	66	67	0	67
	설립근거법	52	14	66	52	15	67
B.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월별기부금 수입및지출	49	17	66	50	17	67
	기부금지출 세부명세	32	34	66	37	30	67
C.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명세서	공시여부	40	26	66	40	27	67
D.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명세서	공시여부	64	2	66	65	2	67
	이사수	63	3	66	64	3	67
E. 대차대조표(공익사업)	공시여부	54	12	66	53	14	67
F. 대차대조표(수익사업)	공시여부	37	29	66	41	26	67
G. 대차대조표(합계)	공시여부	47	19	66	50	17	67
H. 손익계산서(공익사업)	공시여부	58	8	66	60	7	67
I. 손익계산서(수익사업)	공시여부	39	27	66	41	26	67
J. 손익계산서(합계)	공시여부	48	18	66	49	18	67

장학재단의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54개, 미공시한 법인은 12개이다. 2012년에는 공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53개, 미공시한 법인은 14개이다. 장학재단의 대차대조표 수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37개, 미공시한 법인은 29개이다. 2012년에는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공시한 법인은 41개, 미공시한 법인은 26개이다. 장학재단의 대차대조표 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합계 대차대조표가 공시(수익, 공익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된 법인은 47개, 미공시한 법인은 19개이다. 2012년에는 합계 대차대조표가 공시(수익, 공익사업 둘 다 없어도 공시한 경우 포함)된 법인은 50개, 미공시한 법인은 17개이다. 장학재단의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58개, 미공시한 법인은 8개이다. 2012년에는 공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60개, 미공시한 법인은 7개이다. 장학재단의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39개, 미공시한 법인은 27개이다. 2012년에는 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41개, 미공시한 법인은 26개이다. 장학재단의 손익계산서 합계 공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합계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48개, 미공시한 법인은 18개이다. 2012년에는 합계손익계산서를 공시한 법인은 49개, 미공시한 법인은 18개이다.

제 4 절 단변량 분석

<표 2-31>은 사회복지법인과 장학재단의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들과 그렇지 않은 법인들 사이의 공시지표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두 재무제표의 공익사업, 수익사업, 합계의 총 6개의 재무제표 공시여부, 성실성, 비교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각 사업은 다시 공시여부, 공시성실성여부 및 공시비교여부로 구분하여 외부감사보고서 미공시와 공시집단간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한 82개 법인이 그렇지 않은 법인들에 비해서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수익사업, 합계와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수익사업, 합계 공시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익사업의 공시성실성의 경우에는 성실성 정도는 평균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사회복지법인이 대차대조표 공익사업을 공시한 경우는 89.02%로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법인이 대차대조표 공익사업을 공시한 비율 82.74%에 비해 10% 유의수준에서 공시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비영리법인 중 부채와 순자산을 모두 표시한 경우는 89.04%로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의 49.73%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들이 공시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와 순자산, 금액 및 계정을 보다 성실히 표시하며 전기 재무제표를 더 많이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재단의 경우는 공익사업의 경우 공시여부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에 공시성실성정도, 비교정보의 공시 등에서는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즉, 공시성실성의 경우는 대차대조표의 공익사업과 손익계산서의 공익사업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합계에서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이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다.

전기재무제표를 공시했는가를 나타내는 공시비교여부는 대차대조표의 수익사업, 합계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공익사업, 합계에서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이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공시성실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표 2-31> 단변량 분석

Panel A. 사회복지법인					
재무제표 종류	분류	변수	외부감사보고서 미공시 (678개)	외부감사보고서 공시 (82개)	t-test
			Mean	Mean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공시여부	0.8274	0.8902	-1.67*
		공시성실성여부	0.4973	0.8904	-9.26***
		공시비교여부	0.8324	0.9589	-4.48***
	수익사업	공시여부	0.3894	0.6585	-4.73***
		공시성실성여부	0.697	0.7222	-0.37
		공시비교여부	0.8707	0.9815	-3.98***
	합계	공시여부	0.6298	0.8171	-4.00***
		공시성실성여부	0.6253	0.8955	-6.09***
		공시비교여부	0.8337	0.9701	-4.94***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공시여부	0.0732	0.1903	-3.59***
		공시성실성여부	0.6284	0.7632	-2.31**
		공시비교여부	0.8306	0.9474	-3.85***
	수익사업	공시여부	0.4484	0.6829	-4.06***
		공시성실성여부	0.588	0.7321	-2.04***
		공시비교여부	0.8609	0.9821	-4.53***
	합계	공시여부	0.7183	0.8293	-2.45**
		공시성실성여부	0.6057	0.8	-3.48***
		공시비교여부	0.863	0.9846	-5.22***

Panel B. 장학재단					
		변수	외부감사보고서 미공시 (89개)	외부감사보고서 공시 (44개)	t-test
			Mean	Mean	
대차대조표	공익사업	공시여부	0.809	0.7955	0.18
		공시성실성여부	0.6667	0.8571	-2.32**
		공시비교여부	0.9444	0.9714	-0.68
	수익사업	공시여부	0.5506	0.6591	-1.19
		공시성실성여부	0.8163	0.7241	0.95
		공시비교여부	0.9388	1	-1.77*
	합계	공시여부	0.6854	0.8182	-1.63
		공시성실성여부	0.8033	0.9167	-1.63
		공시비교여부	0.9508	1	-1.76*
손익계산서	공익사업	공시여부	0.9101	0.8409	1.09
		공시성실성여부	0.7037	0.8919	-2.59**
		공시비교여부	0.9383	1	-2.29**
	수익사업	공시여부	0.573	0.6591	-0.96
		공시성실성여부	0.7843	0.8966	-1.37
		공시비교여부	0.9216	1	-2.06
	합계	공시여부	0.6966	0.7955	-1.26
		공시성실성여부	0.8548	0.9714	-2.18**
		공시비교여부	0.9194	1	-2.3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2-32> 상관관계

Panel A. 전체표본	
	기부금
외부감사보고서 공시여부	0.08** (0.03)
Panel B.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외부감사보고서 공시여부	0.09** (0.01)
Panel C. 장학재단	
	기부금
외부감사보고서 공시여부	0.12 (0.24)

1) ()안은 p값을 나타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2-32>는 기부금과 외부감사보고서 공시여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표본의 경우 5%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과 기부금의 상관관계가 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과 장학재단으로 표본을 나누어서 보면 장학재단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에서는 0.09의 상관계수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들의 기부금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는 외부감사의 필요성을 입증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의 입장에서조차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제3장 이해관계자 설문분석결과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설문분석의 목적은 비영리법인 담당자, 공인회계사, 주무관청,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영리법인(사회복지 유형의 공익법인)의 내부통제, 정보공시, 외부감사에 대한 설문응답결과를 비교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얻는 것이다.
- 설문분석결과는 각 응답자 집단별로 응답자 일반사항을 정리하고,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 정보공시, 외부감사에 관한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의 분포를 정리하였다. 한편, 투명성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종교단체 관계자에 대한 설문 결과를 추가로 정리하였다.

2. 조사내용

- 설문조사의 내용은 <표 3-1-1>과 같다. 즉, 응답자의 특성의 일반사항, 기관의 내부통제제도 인식 및 운영실태,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 외부감사 의견, 외부감사 법제화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구성하였다.

<표 3-1-1> 조사내용

구 분	조사내용
1. 일반사항	- 성별, 연령, 지역, 직업, 기부경험, 비영리법인 정보 경로 및 활용 정보 - 비영리법인정보에 대한 인식수준
2. 내부통제제도 인식 및 운영실태	1) 인식수준 2) 운영실태
3.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	비영리법인의 회계공시제도 개선관련 사항
4.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 대한 의견	1)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의견 2)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5. 외부감사 법제화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	1) 자산규모 100억 이상 또는 연간현금수입 5억원 이상인 비영리공익법인 2) 자산규모 10억~100억 미만 또는 연간현금수입 1-5억원 미만인 비영리공익법인 3) 자산규모 10억 미만 또는 연간현금수입 1억원 미만인 비영리공익법인

제2절 조사 설계

1. 분석대상

- 분석대상은 공인회계사, 비영리법인종사자, 정보이용자, 주무관청관계자 및 종교신자로 구성하였다. 분석대상은 <표 3-1-2>와 같다.

<표 3-1-2> 분석대상

대상	표본 수(%)
공인회계사	123(20.8)
비영리법인 종사자	64(10.8)
정보이용자	84(14.3)
주무관청 관계자	111(18.8)
신자	208(35.3)
계	590(100)

2. 척도의 정의

-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을 측정하며, 1점 '전혀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등간척도를 활용하였다.

질문지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3. 자료 분석

- 수집된 자료는 코딩 및 오류 검토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14프로그램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래프의 작성을 위하여 엑셀 ver. 2010을 이용하였다.

제3절 분석결과

1. 공인회계사 설문결과

1) 응답자 특성별 분포

(1) 응답자 특성

- <표 3-2-1>은 비영리공익법인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및 회계공시제도에 대한 의견을 한국공인회계사를 대상한 조사결과 응답자 특성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남성 공인회계사로 구성되었으며, 40대가 4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1> 응답자 특성별 분포

특성		빈도(%)
성별	남자	117(95.1)
	여자	6(4.9)
연령	30대	24(19.5)
	40대	54(43.9)
	50대	27(22.0)
	60대 이상	18(14.6)
계		12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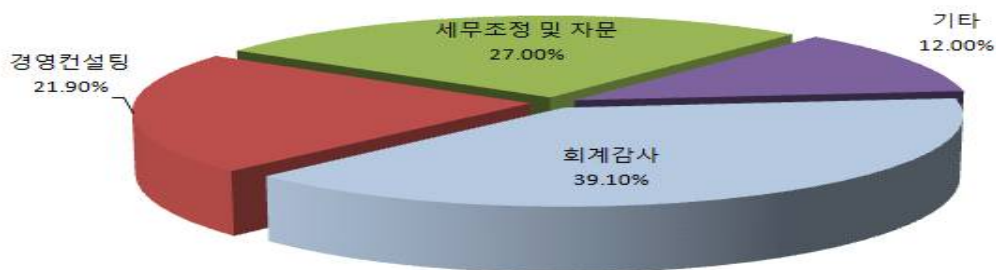
(2) 응답자 소속 및 경력

- <표 3-2-2>은 응답 공인회계사의 소속기관, 직급 및 업무경력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50%이상이 Non Big4법인 소속이며, Partner 직급이 64.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81%이상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응답자의 법인 소속 현황

특성		빈도(%)
소속	Big4	30(24.4)
	Non Big4	66(53.7)
	감사반	22(17.9)
	기타	5(4.1)
직급	Partner	79(64.2)
	Director	19(15.4)
	Manager	18(14.6)
	In Charge	7(5.7)
업무경력	5년 미만	4(3.3)
	5-10년 미만	19(15.4)
	10년 이상	100(81.3)
계		123(100)

- <그림 3-1>은 응답 공인회계사의 업무분야를 나타내고 있다. “회계감사”가 39.1%로 가장 많고, “세무조정 및 자문”, “경영컨설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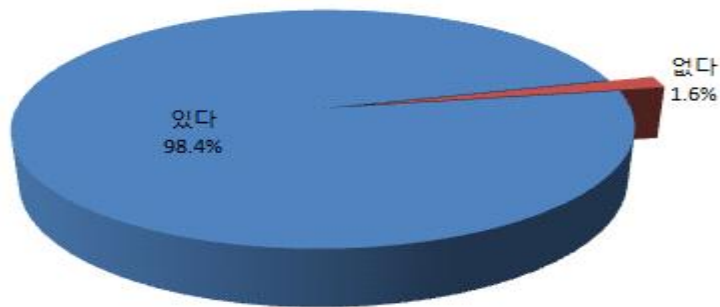


<그림 3-1> 업무분야(n=274, 다중응답)

2) 비영리법인 내부통제제도 검토 및 감사경험

(1)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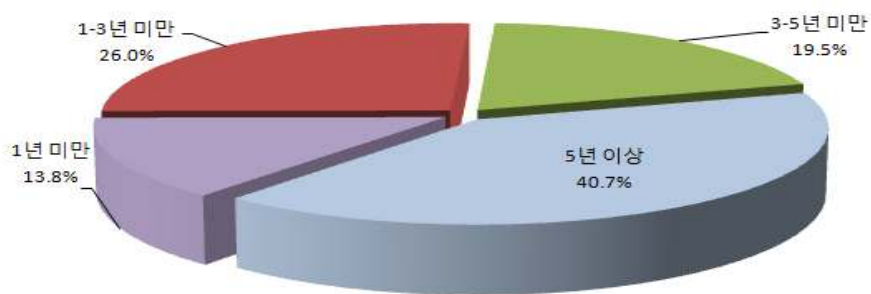
- <그림 3-2-1>는 응답자의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경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회계사들이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업무분야(n=123)

(2)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경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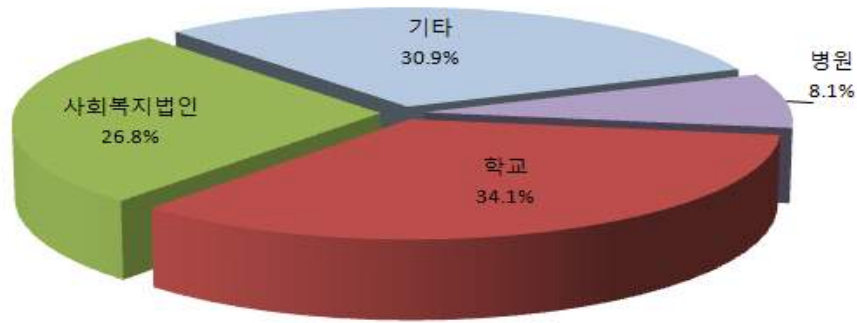
- <그림 3-2-2>은 응답자의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경험한 기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40.7%가 “5년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2>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경험기간(n=121)

(3)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경험(분야)

- <그림 3-2-3>는 응답자의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경험한 기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34.1%가 “학교”, 26.8%가 “사회복지법인”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경험기관(n=121)

(4)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적용 준거회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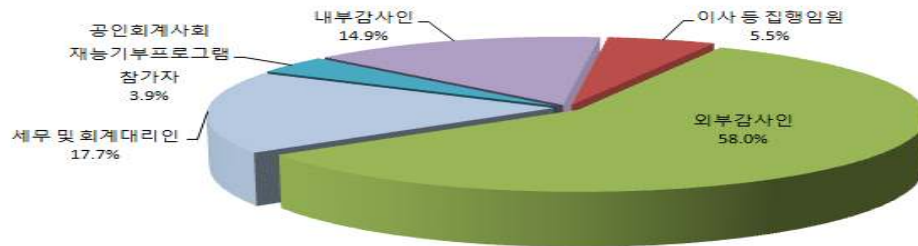
- <그림 3-2-4>는 응답자의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시 적용하는 준거회계기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35.8%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가 35.8%로 가장 많고, “일반기업회계기준” 21.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20.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4>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적용지침(n=121)

(5) 비영리공익법인 참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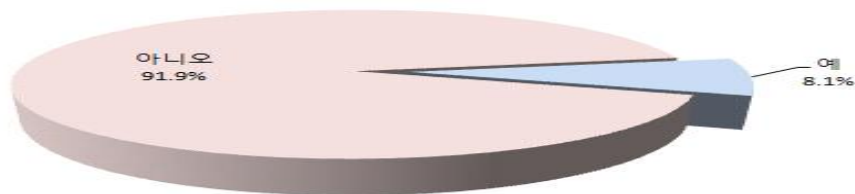
- <그림 3-2-5>는 응답자의 비영리공익법인에의 활동 참여형태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58.0%가 “외부감사인”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 비영리공익법인 참여 형태(n=181,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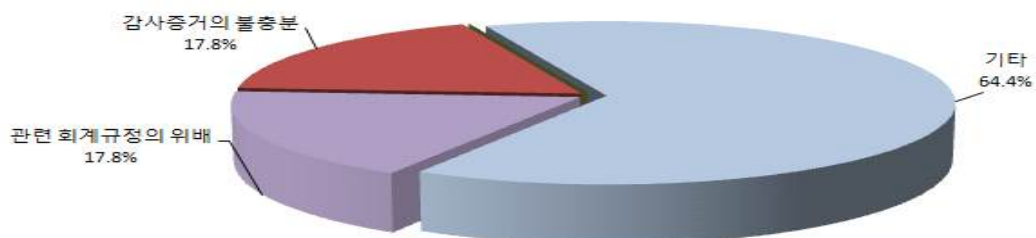
(6) 외부감사 활동 관련 사항

- <그림 3-2-6>은 비영리법인 회계감사시에 “비적정의견” 표명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경우는 8.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3-2-6> “비적정의견” 표명 경험(n=121)

- <그림 3-2-7>은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응답자의 “비적정의견” 사유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비적정의견 표명의 사유는 관련규정위배, 감사증거불충분,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비적정의견” 사유(n=10, 다중응답)

3) 내부통제제도의 인식 및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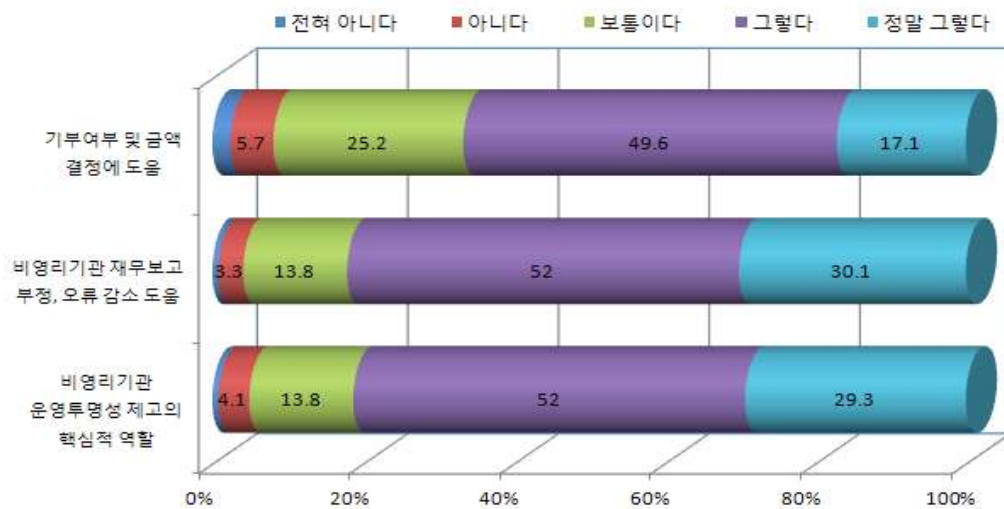
(1) 내부통제제도의 인식수준

- <표 3-3-1>, <그림 3-3-1>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제도가 부정과 오류를 억제하고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4점=그렇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표 3-3-1>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기부여부 및 금액결정 도움	3 (2.4)	7 (5.7)	31 (25.2)	61 (49.6)	21 (17.1)	123 (100)	3.73 (0.90)
비영리기관 재무보고 부정, 오류 감소에 도움	1 (0.8)	4 (3.3)	17 (13.8)	64 (52.0)	37 (30.1)	123 (100)	4.07 (0.80)
비영리기관 운영투명성 제고에의 핵심적 역할	1 (0.8)	5 (4.1)	17 (13.8)	64 (52.0)	36 (29.3)	123 (100)	4.05 (0.82)



<그림 3-3-1>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2)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 <표 3-3-2>, <그림 3-3-2>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통제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장이나 사무총장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편이다”에 대하여 평균 3.84로 “그렇다”는 의견이 80.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법인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권한남용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는 의견에는 평균 2.61로 “아니다”는 의견이 40.7%의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표 3-3-2>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1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법인의사결정은 이사장/ 사무총장 재량결정	-	11 (8.9)	18 (14.6)	74 (60.2)	20 (16.3)	123 (100)	3.84 (0.80)
이사장 권한남용에 적절한 견제/부정 방지프로그램 가동	9 (7.3)	50 (40.7)	45 (36.6)	18 (14.6)	1 (0.8)	123 (100)	2.61 (0.85)
주무관청의 감독절차는 오류/부정방지 효과 있다.	7 (5.7)	24 (19.5)	43 (35.0)	42 (34.1)	7 (5.7)	123 (100)	3.15 (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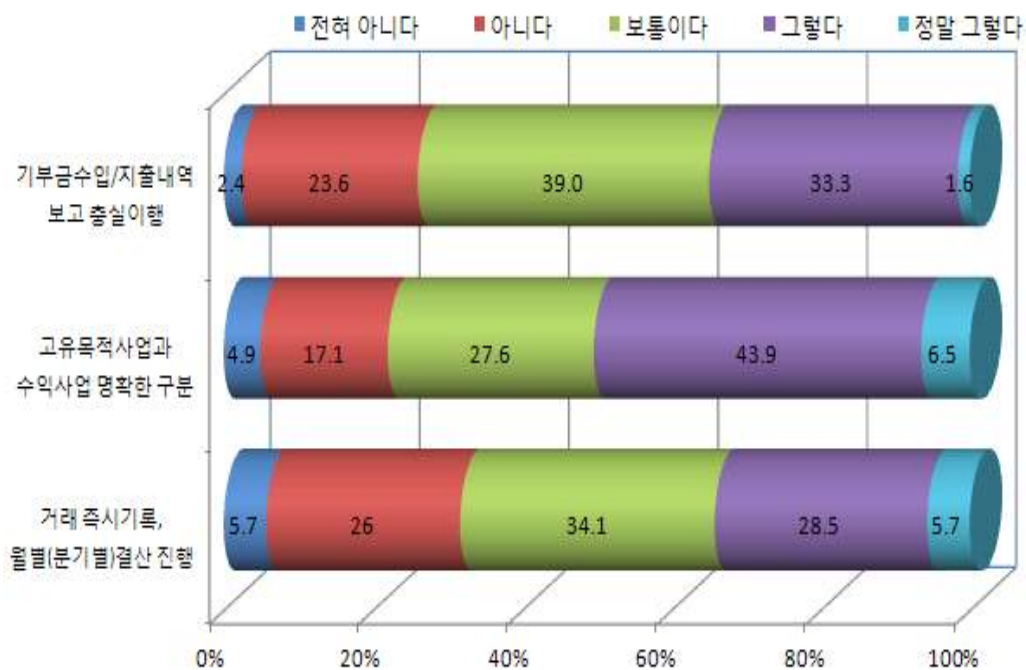
<그림 3-3-2>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1

- <표 3-3-3>, <그림 3-3-3>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통제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기부금 수입 및 지출내역 보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의견은 “보통이다”가 39%로 평균 3.08로 보통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명확한 구분”에 대하여는 “그렇다” 43.9%로 평균 3.3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3-3-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2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보고 충실 이행	3 (2.4)	29 (23.6)	48 (39.0)	41 (33.3)	2 (1.6)	123 (100)	3.08 (0.86)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명확한 구분	6 (4.9)	21 (17.1)	34 (17.6)	54 (43.9)	8 (6.5)	123 (100)	3.30 (0.99)
거래발생시 즉시기록, 월별(분기별) 결산 진행	7 (5.7)	32 (26.0)	42 (34.1)	35 (28.5)	7 (5.7)	123 (100)	3.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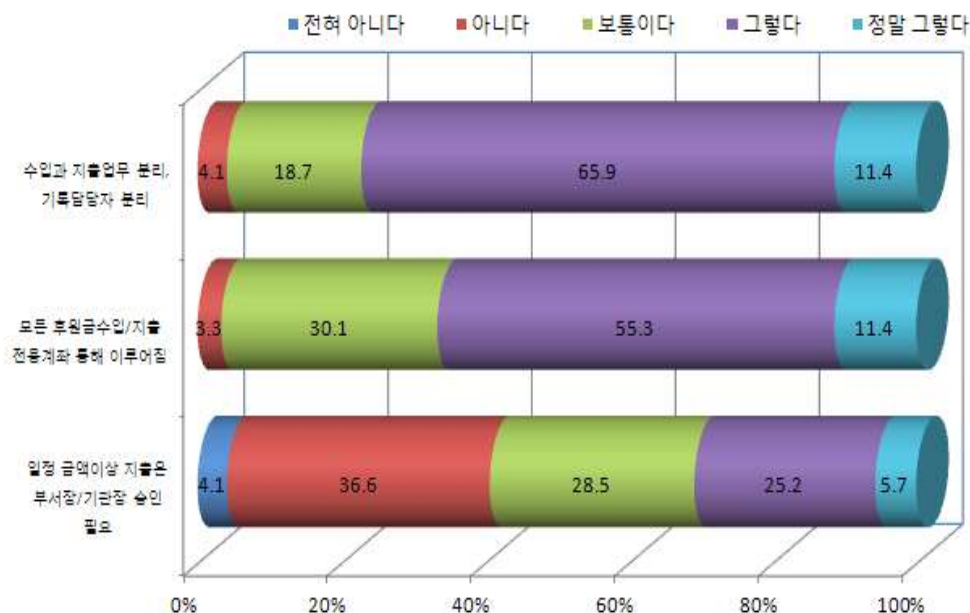
<그림 3-3-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2

- <표 3-3-4>, <그림 3-3-4>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통제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일정금액이상의 지출은 업무담당자 이외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승인이후에 이루어진다”, “모든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가 평균 3.85, 3.75로 보통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수입과 지출업무는 분리되어 있으며, 기록담당자와도 분리되어 있다”는 항목에 대하여는 평균 2.92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3-3-4>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3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수입과 지출업무 분리, 기록담당자 분리	5 (4.1)	45 (36.6)	35 (28.5)	31 (25.2)	7 (5.7)	123 (100)	2.92 (1.00)
모든 후원금수입/지출 전용계좌 통해 이루어짐	-	4 (3.3)	37 (30.1)	68 (55.3)	14 (11.4)	123 (100)	3.75 (0.70)
일정 금액이상 지출은 부서장/기관장 승인 필요	-	5 (4.1)	23 (18.7)	81 (65.9)	14 (11.4)	123 (100)	3.85 (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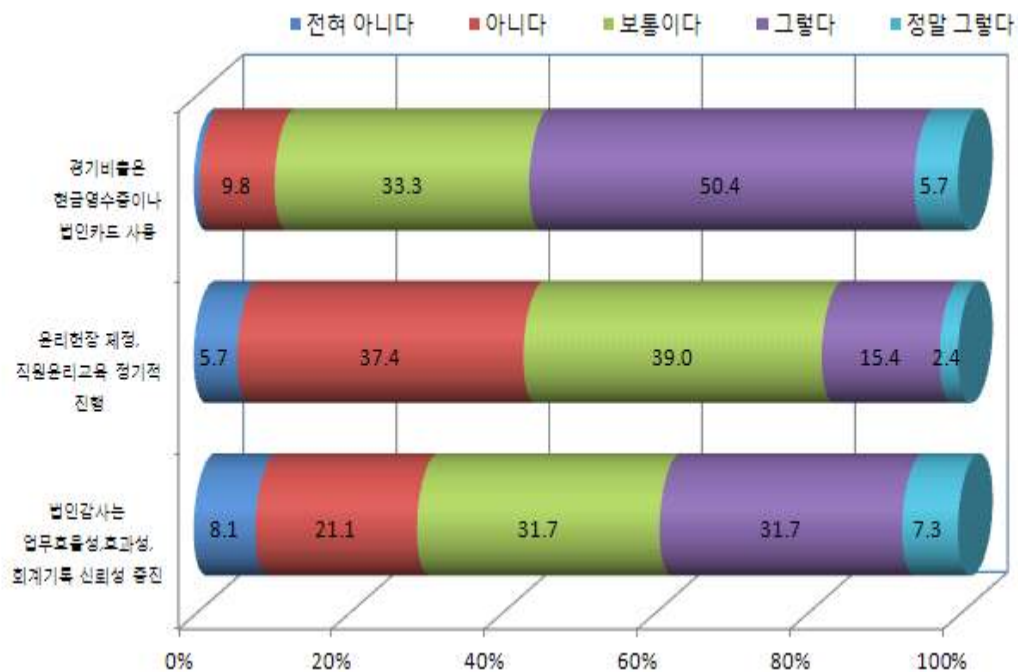
<그림 3-3-4>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3

- <표 3-3-5>, <그림 3-3-5>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통제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경비지출은 현금영수증이나 법인카드를 이루어진다”는 평균 3.50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윤리현장이 제정되어 있고, 직원윤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균 2.72로 보통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4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경비지출은 현금영수증이나 법인카드	1 (0.8)	12 (9.8)	41 (33.3)	62 (50.4)	7 (5.7)	123 (100)	3.50 (0.78)
윤리현장 제정, 직원윤리교육 정기적으로 진행	7 (5.7)	46 (37.4)	48 (39.0)	19 (15.4)	3 (2.4)	123 (100)	2.72 (0.88)
법인감사는 업무 효율성, 효과성, 회계기록 신뢰성 증진	10 (8.1)	26 (21.1)	39 (31.7)	39 (31.7)	9 (7.3)	123 (100)	3.09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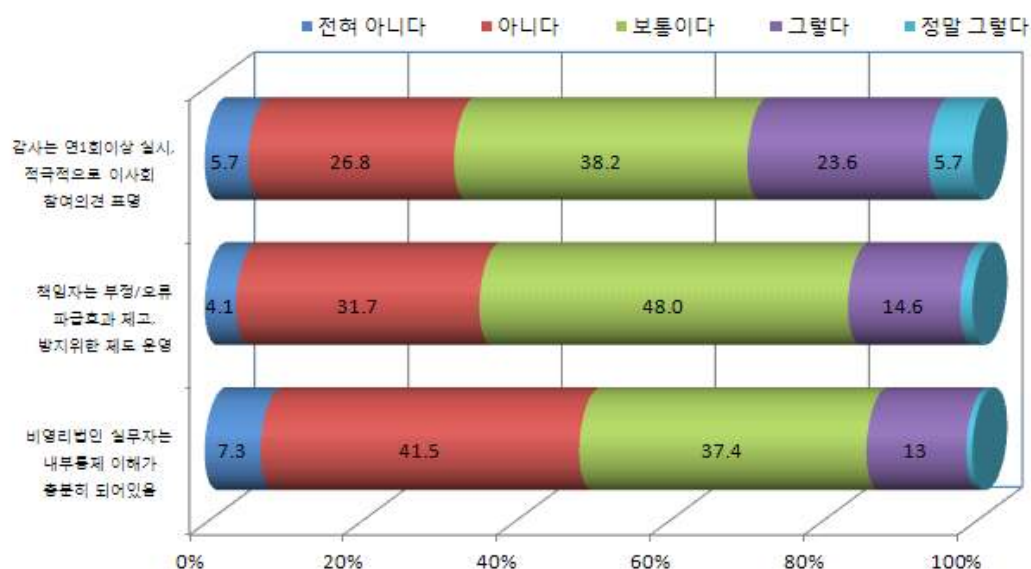
<그림 3-3-5>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4

- <표 3-3-6>, <그림 3-3-6>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통제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감사는 연1회 이상 실시,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한다”는 의견은 평균 2.97로 보통이하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 책임자는 부정과 오류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평균 2.78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을, “전반적으로 비영리법인 실무자는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있다”는 설문에도 평균 2.59수준으로 보통이하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표 3-3-6>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5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감사는 연1회이상 실시, 적극적으로 이사회 참여의견 표명	7 (5.7)	33 (26.8)	47 (38.2)	29 (23.6)	7 (5.7)	123 (100)	2.97 (0.98)
책임자는 부정/오류 파급효과 제고, 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	5 (4.1)	39 (31.7)	59 (48.0)	18 (14.6)	2 (1.6)	123 (100)	2.78 (0.81)
비영리법인 실무자는 내부통제 이해가 충분히 되어있음	9 (7.3)	51 (41.5)	46 (37.4)	16 (13.0)	1 (0.8)	123 (100)	2.59 (0.84)



<그림 3-3-6>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5

4)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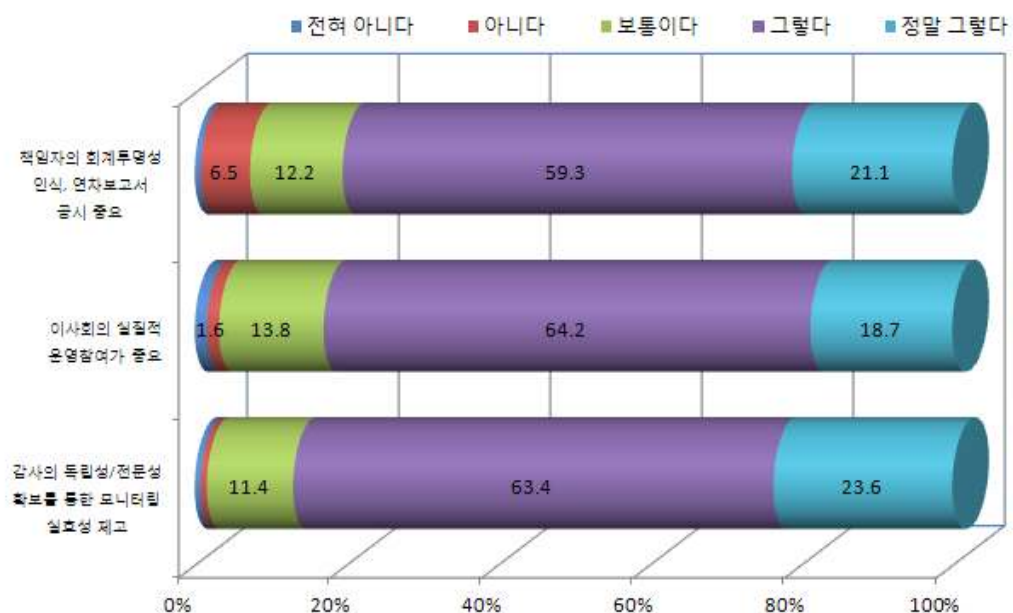
(1)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1

- <표 3-4-1>, <그림 3-4-1>는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통제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4점(그렇다)수준의 개선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의 의견이 강조되고 있다.

<표 3-4-1>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1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책임자의 회계투명성인식, 연차보고서 공시 중요	1 (0.8)	8 (6.5)	15 (12.2)	73 (59.3)	26 (21.1)	123 (100)	3.93 (0.82)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 참여가 중요	2 (1.6)	2 (1.6)	17 (13.8)	79 (64.2)	23 (18.7)	123 (100)	3.97 (0.74)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1 (0.8)	1 (0.8)	14 (11.4)	78 (63.4)	29 (23.6)	123 (100)	4.08 (0.67)



<그림 3-4-1>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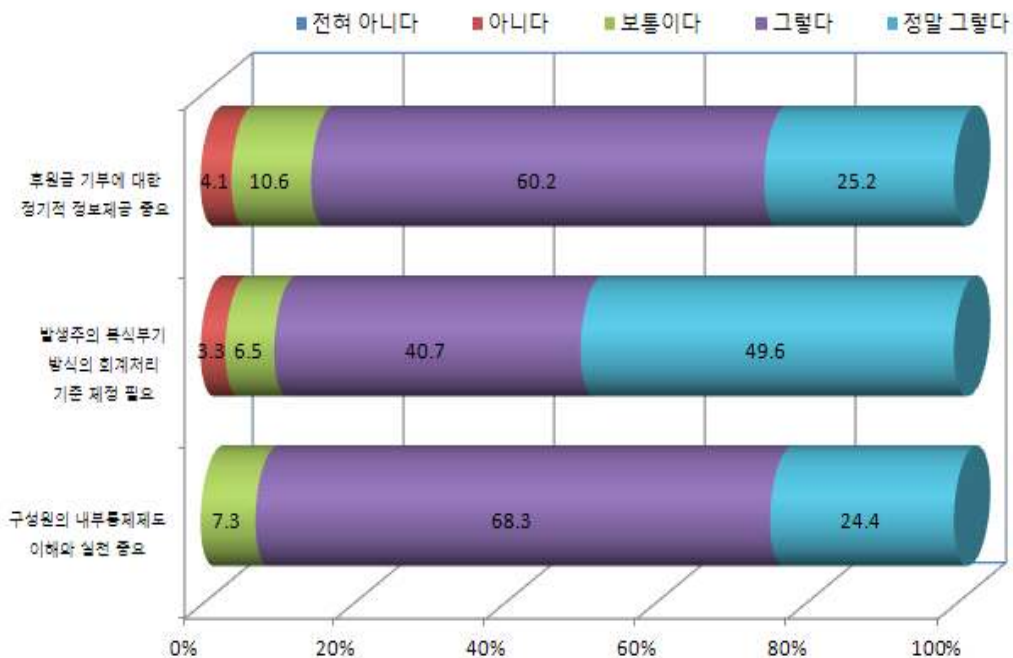
(2)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2

- <표 3-4-2>, <그림 3-4-2>는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회계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4점(그렇다)이상의 개선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균 4.37점으로 강조되고 있다.

<표 3-4-2>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2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기적 정보제공 중요	-	5 (4.1)	13 (10.6)	74 (60.2)	31 (25.2)	123 (100)	4.07 (0.72)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 기준 제정 필요	-	4 (3.3)	8 (6.5)	50 (40.7)	61 (49.6)	123 (100)	4.37 (0.75)
구성원의 내부통제제도 이해와 실천 중요	-	-	9 (7.3)	84 (68.3)	30 (24.4)	123 (100)	4.17 (0.54)



<그림 3-4-2>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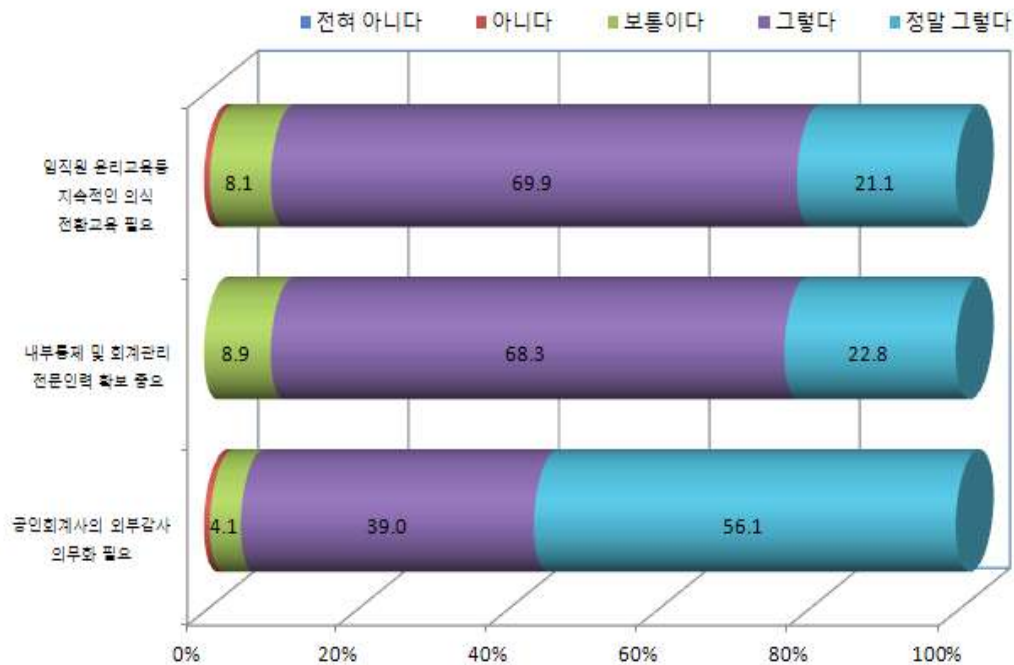
(3)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3

- <표 3-4-3>, <그림 3-4-3>는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내부역량 및 외부감사)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4점(그렇다)이상의 개선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균 4.50으로 강조되고 있다.

<표 3-4-3>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3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임직원 윤리교육등 지속적인 의식전환교육 필요	-	1 (0.8)	10 (8.1)	86 (69.9)	26 (21.1)	123 (100)	4.11 (0.56)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 확보 중요	-	-	11 (8.9)	84 (68.3)	28 (22.8)	123 (100)	4.14 (0.55)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필요	-	1 (0.8)	5 (4.1)	48 (39.0)	69 (56.1)	123 (100)	4.50 (0.62)



<그림 3-4-3>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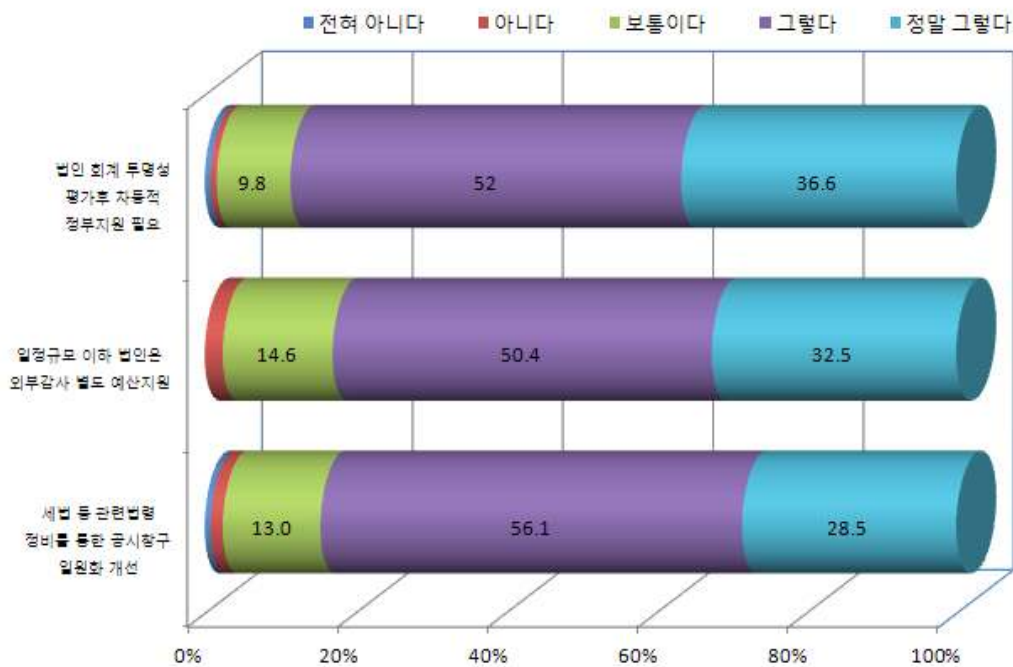
(4)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4

- <표 3-4-4>, <그림 3-4-4>는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4점(그렇다)이상의 개선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법인의 회계투명성 평가 후 차등적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균 4.23으로 높게 강조되고 있다.

<표 3-4-4>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4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법인 회계 투명성 평가후 차등적 정부지원 필요	1 (0.8)	1 (0.8)	12 (9.8)	64 (52.0)	45 (36.6)	123 (100)	4.23 (0.72)
일정규모 이하 법인은 외부감사 별도 예산지원	-	3 (2.4)	18 (14.6)	62 (50.4)	40 (32.5)	123 (100)	4.13 (0.75)
세법 등 관련법령 정비를 통한 공시창구 일원화 개선	1 (0.8)	2 (1.6)	16 (13.0)	69 (56.1)	35 (28.5)	123 (100)	4.10 (0.74)



<그림 3-4-4>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4

(5)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5

- <표 3-4-5>, <그림 3-4-5>는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4점(그렇다)이상의 개선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불성실기부금 운영으로 적발된 단체에 대한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평균 4.46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5>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5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주무관청, 국세청 등 관련 정보 제출요구 중복되지않도록 조정	-	2 (1.6)	11 (8.9)	74 (60.2)	36 (29.3)	123 (100)	4.17 (0.65)
외부감사나 정보공개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 신설필요	-	-	13 (10.6)	65 (52.8)	45 (36.6)	123 (100)	4.26 (0.64)
불성실기부금 운영 적발단체에 대한 공개 강화 필요	-	-	7 (5.7)	52 (42.3)	64 (52.0)	123 (100)	4.46 (0.60)
성실기부금 운영의 모범단체 공개강화 필요	-	1 (0.8)	14 (11.4)	62 (50.4)	46 (37.4)	123 (100)	4.24 (0.68)



<그림 3-4-5>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5

5) 외부감사제도 관련 의견

(1)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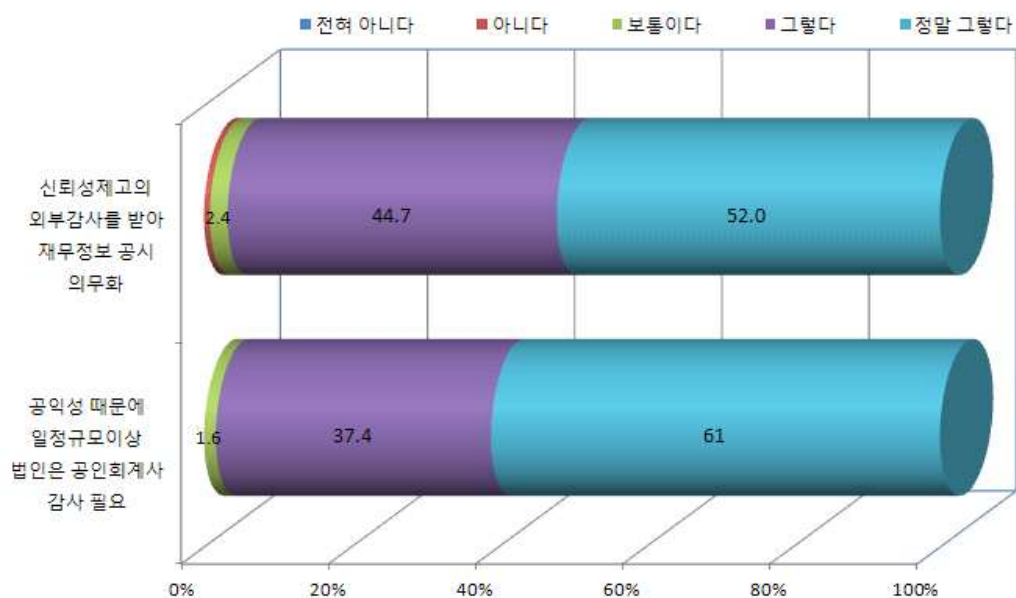
① 외부감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표 3-5-1>, <그림 3-5-1>는 외부감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4점(그렇다) 이상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비영리법인은 공익성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은 외부감사 필요”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표 3-5-1> 외부감사의 필요성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공익성 때문에 일정규모이상 법인은 공인회계사 감사 필요	-	-	2 (1.6)	46 (37.4)	75 (61.0)	123 (100)	4.59 (0.52)
신뢰성제고의 외부감사를 받아 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	1 (0.8)	3 (2.4)	55 (44.7)	64 (52.0)	123 (100)	4.48 (0.59)



<그림 3-5-1> 외부감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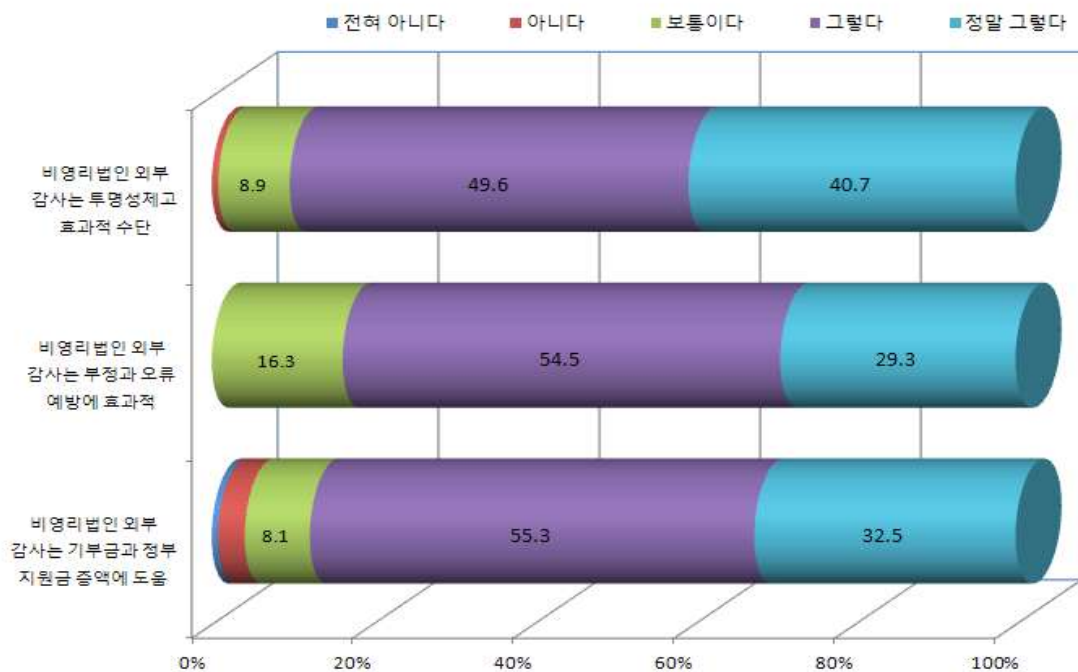
② 외부감사의 효과에 대한 인식

- <표 3-5-2>, <그림 3-5-2>는 외부감사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4점(그렇다) 이상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즉, 외부감사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제고, 부정과 오류의 예방, 기부금증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표 3-5-2> 외부감사의 효과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비영리법인 외부감사는 투명성제고의 효과적 수단	-	1 (0.8)	11 (8.9)	61 (49.6)	50 (40.7)	123 (100)	4.30 (0.66)
비영리법인 외부감사는 부정과 오류예방에 효과적	-	-	20 (16.3)	67 (54.5)	36 (29.3)	123 (100)	4.13 (0.67)
비영리법인 외부감사는 기부금/ 정부지원금 증액에 도움	1 (0.8)	4 (3.3)	10 (8.1)	68 (55.3)	40 (32.5)	123 (100)	4.15 (0.77)



<그림 3-5-2> 외부감사의 효과

(2)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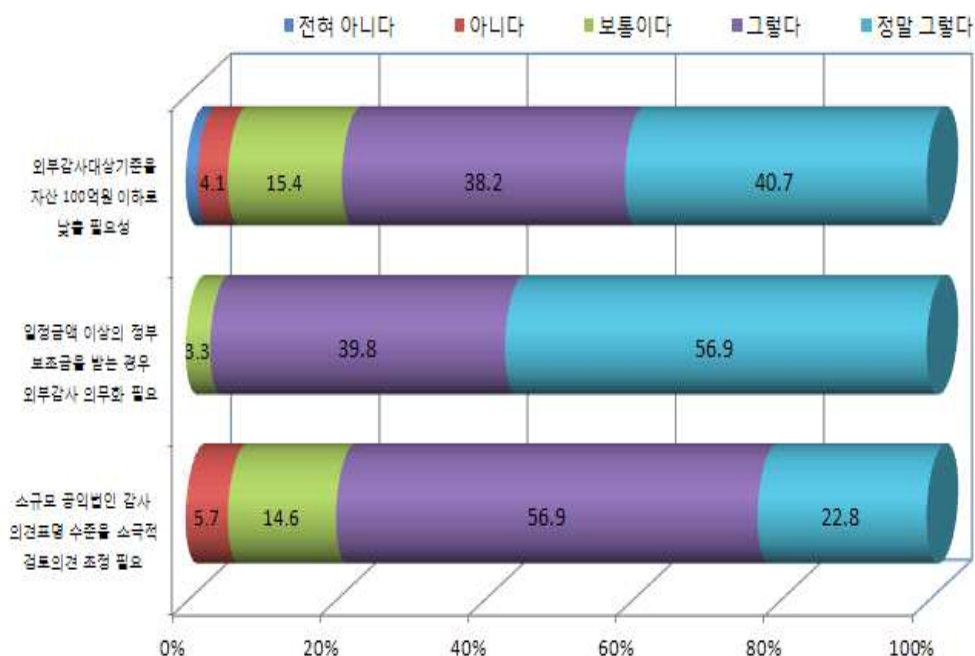
① 외부감사제도 개선1(외부감사의 범위)

- <표 3-5-3>, <그림 3-5-3>는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범위의 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응답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를 의무화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4.54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3-5-3> 외부감사제도 개선1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외부감사대상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하로 낮출 필요성	2 (1.6)	5 (4.1)	19 (15.4)	47 (38.2)	50 (40.7)	123 (100)	4.12 (0.93)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외부감사 의무화 필요	-	-	4 (3.3)	49 (39.8)	70 (56.9)	123 (100)	4.54 (0.56)
소규모 공익법인 감사의견표명 수준을 소극적 검토의견 조정 필요	-	7 (5.7)	18 (14.6)	70 (56.9)	28 (22.8)	123 (100)	3.97 (0.78)



<그림 3-5-3> 외부감사제도 개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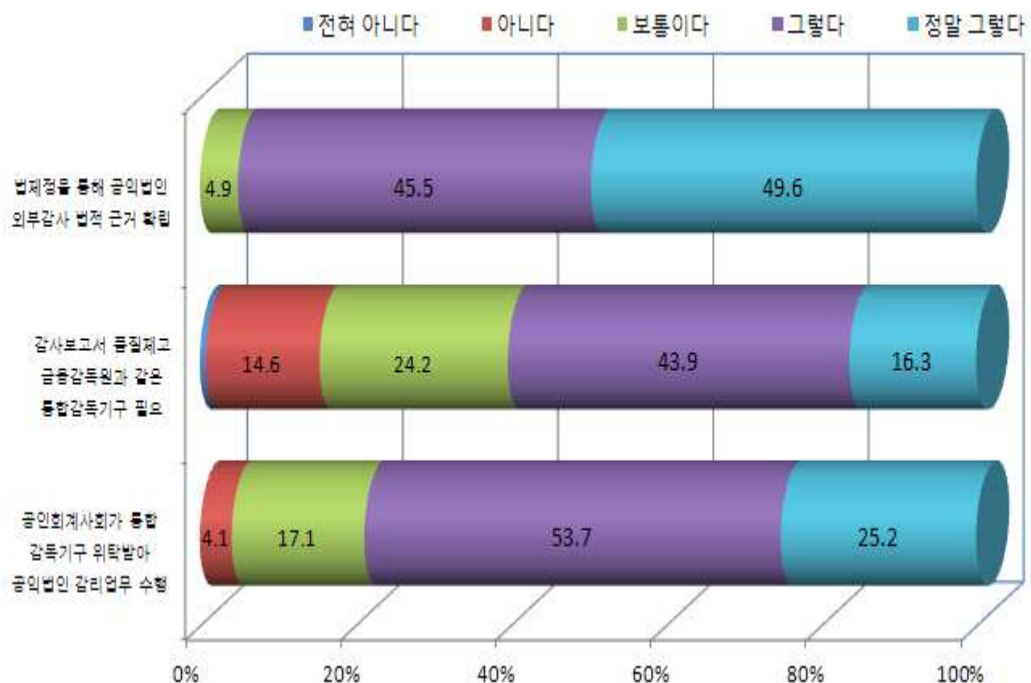
② 외부감사제도 개선2(감사품질제고)

- <표 3-5-4>, <그림 3-5-4>는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법제정을 통해 공익법인 외부감사에 관한 법적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평균 4.45점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감사보고서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적감독기구에 의하기 보다는 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4> 외부감사제도 개선2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법제정을 통해 공익법인 외부감사 법적 근거 확립	-	-	6 (4.9)	56 (45.5)	61 (49.6)	123 (100)	4.45 (0.59)
감사보고서 품질제고를 위한 금융 감독원과 같은 통합감독기구 필요	1 (0.8)	18 (14.6)	30 (24.4)	54 (43.9)	20 (16.3)	123 (100)	3.60 (0.96)
공인회계사회가 통합감독기구위탁 받아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행	-	5 (4.1)	21 (17.1)	66 (53.7)	31 (25.2)	123 (100)	4.00 (0.77)



<그림 3-5-4> 외부감사제도 개선2

6) 외부감사제도 법제화에 대한 실행방안

(1) 자산규모 100억 이상 또는 연간 현금수입 5억원 이상 비영리공익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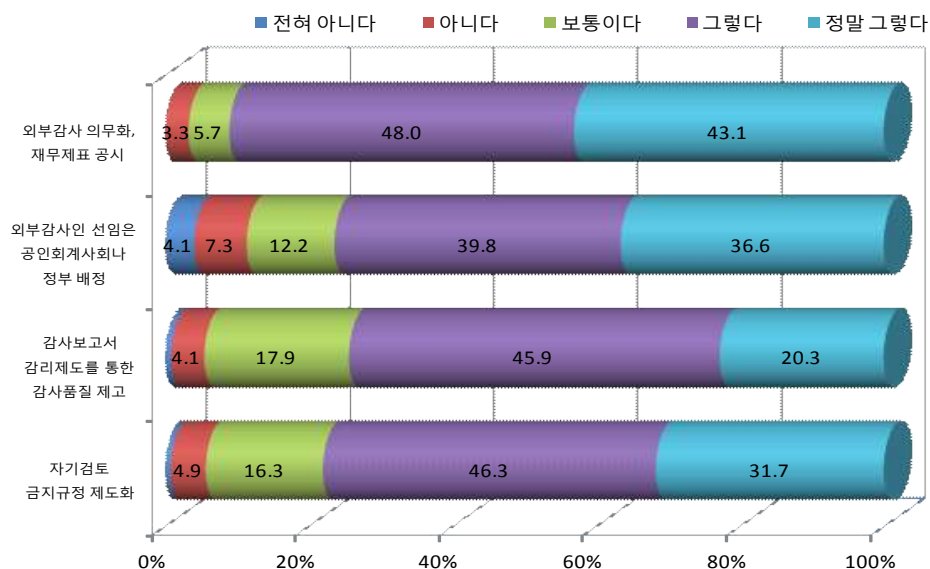
①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

- <표 3-6-1>, <그림 3-6-1>는 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 5억 이상 공익법인의 외부 감사제도의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4점(그렇다)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감사보고서와 함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는 평균 4.31로 강조되고 있다.

<표 3-6-1>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 5억 이상)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외부감사 의무화 감사보고서 함께 재무제표 공시	-	4 (3.3)	7 (5.7)	59 (48.0)	53 (43.1)	123 (100)	4.31 (0.73)
공공성을 고려, 외부감사인 선임은 공인회계사회나 정부 배정	5 (4.1)	9 (7.3)	15 (12.2)	49 (39.8)	45 (36.6)	123 (100)	3.98 (1.08)
공익법인 감사보고서 감리제도로 감사품질 제고	1 (0.8)	5 (4.1)	22 (17.9)	70 (45.9)	25 (20.3)	123 (100)	3.92 (0.79)
자기검토 금지규정 제도화	1 (0.8)	6 (4.9)	20 (16.3)	57 (46.3)	39 (31.7)	123 (100)	4.03 (0.87)



<그림 3-6-1>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 5억 이상)

(2) 자산규모 10억~100억, 연간 현금수입 1~5억원 비영리공익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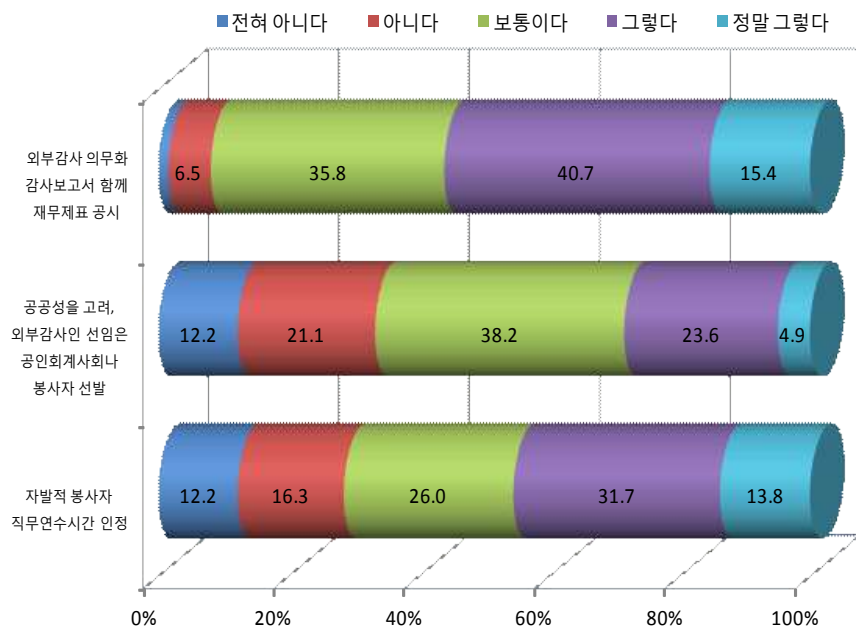
①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1

- <표 3-6-2>, <그림 3-6-2>는 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의 비영리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감사보고서와 함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가 평균 3.62수준으로 보통 이상의 응답을 보였으나, 공인회계사의 봉사와 봉사시간의 직무연수시간 인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3-6-2>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1(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외부감사 의무화 감사보고서 함께 재무제표 공시	2 (1.6)	8 (6.5)	44 (35.8)	50 (40.7)	19 (15.4)	123 (100)	3.62 (0.88)
공공성을 고려, 외부감사인 선임은 공인회계사회나 봉사자 선발	15 (12.2)	26 (21.1)	47 (38.2)	29 (23.6)	6 (4.9)	123 (100)	2.88 (1.06)
자발적 봉사자 직무연수시간 인정	15 (12.2)	20 (16.3)	32 (26.0)	39 (31.7)	17 (13.8)	123 (100)	3.19 (1.22)



<그림 3-6-2>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1(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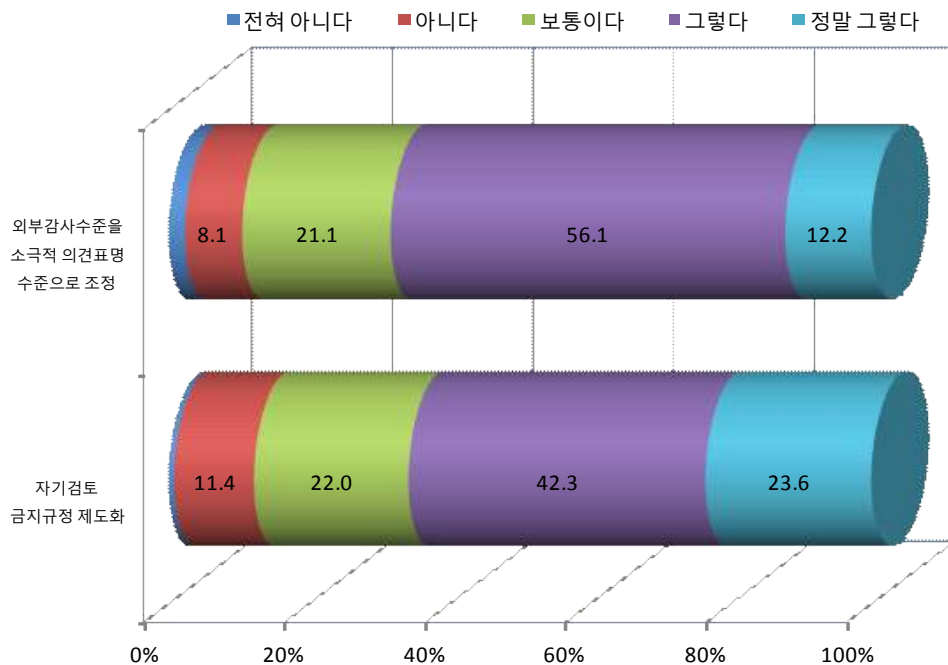
②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2(의견표명수준)

- <표 3-6-3>, <그림 3-6-3>은 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의 비영리공익법인의 외부감사의견표명수준과 자기검토금지에 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의견표명수준을 소극적 의견표명으로 낮추고, 자기검토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제도화하는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표 3-6-3>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2(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외부감사수준을 소극적 의견표명 수준으로 조정	3 (2.4)	10 (8.1)	26 (21.1)	69 (56.1)	15 (12.2)	123 (100)	3.67 (0.88)
자기검토 금지규정 제도화	1 (0.8)	14 (11.4)	27 (22.0)	52 (42.3)	29 (23.6)	123 (100)	3.76 (0.97)



<그림 3-6-3>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2(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3) 자산규모 10억 미만, 연간 현금수입 1억 미만인 비영리공익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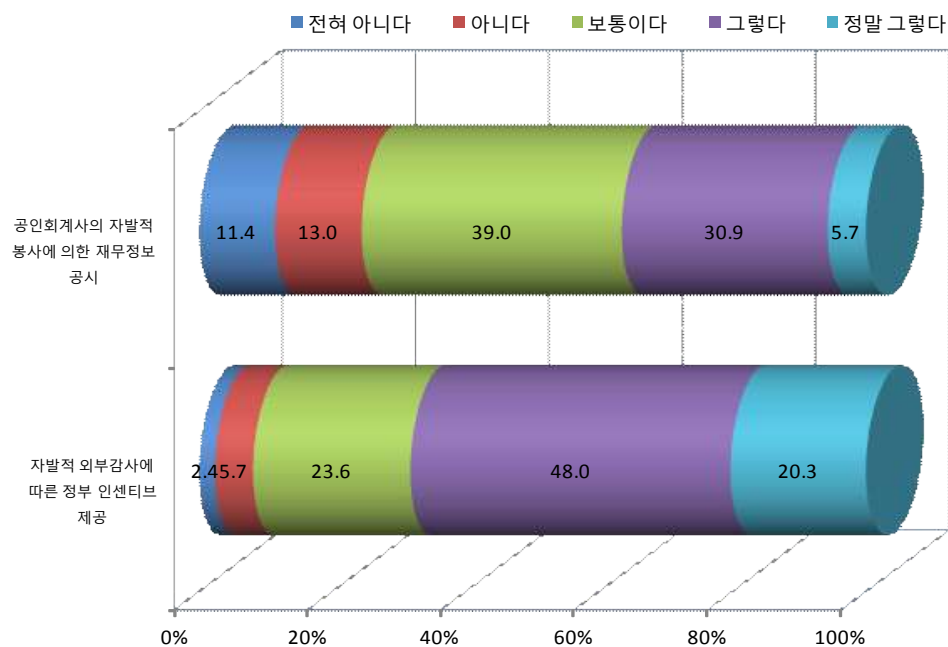
①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

- <표 3-6-4>, <그림 3-6-4>는 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 1억 미만인 비영리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공인회계사의 자발적 봉사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지원을 받아 재무정보를 공시한다”는 평점 3.07, “자발적인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평점 3.78로 나타나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소규모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것 보다는 공인회계사의 봉사 등으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6-4>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 1억 미만)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공인회계사의 자발적 봉사에 의한 재무정보 공시	14 (11.4)	16 (13.0)	48 (39.0)	38 (30.9)	7 (5.7)	123 (100)	3.07 (1.06)
자발적 외부감사에 따른 정부 인센티브 제공	3 (2.4)	7 (5.7)	29 (23.6)	59 (48.0)	25 (20.3)	123 (100)	3.78 (0.92)



<그림 3-6-4>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 1억 미만)

7) 공인회계사 의견 요약

- 응답자의 98.4%가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 “학교”가 34.1%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이 26.8%로 나타났다. 한편,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가 35.8%로 가장 많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이 21.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20.4% 순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응답자의 91.9%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8.1%의 경우에 그 사유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위배”, “감사증거불충분” 등으로 나타났다.
-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과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제도가 부정과 오류를 억제하고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4점=그렇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장이나 사무총장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편이다”에 대하여 평균 3.84로 나타난 반면에, “법인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권한남용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는 의견에는 평균 2.6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부금 수입 및 지출내역 보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균 3.08로 나타났으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명확한 구분”에 대하여는 평균 3.30을 나타냈다. “일정금액이상의 지출은 업무담당자 이외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승인 이후에 이루어진다”, “모든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평균 3.85, 3.75로 보통 이상을 나타냈다. 반면에 “수입과 지출업무는 분리되어 있으며, 기록담당자와도 분리되어 있다”는 항목에 대하여는 평균 2.92로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경비지출은 현금영수증이나 법인카드로 이루어진다”는 평균 3.50으로 나타난 반면에 “윤리헌장이 제정되어 있고, 직원윤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균 2.72로 낮게 나타났다. “감사는 연1회 이상 실시,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한다”는 의견은 평균 2.97로 보통수준을 다소 미치지 못하였고, “비영리법인 책임자는 부정과 오류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평균 2.78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비영리법인 실무자는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있다”는 의견 역시 평균 2.59수준으로 보통이하의 낮은 의견을 나타냈다.

-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조사결과**,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균 4.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불성실 기부금 운영 적발단체(성실 기부금 운영 모범단체)에 대한 공개강화가 필요하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외부감사나 정보공개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법인 회계투명성 평가 후 차등적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 4점이 이상의 높은 지지를 보였다.
- **법인 외부감사제도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비영리법인은 공익성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은 외부감사 필요”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 또한, 외부감사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제고, 부정과 오류의 예방, 기부금증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 **회계사의 법인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감사범위 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응답결과를 보여 주었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4.54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제정을 통해 공익법인 외부감사에 관한 법적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평균 4.45점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 **회계사의 법인 외부감사제도 법제화에 대한 방안 조사결과**,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공공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을 배정제도로 하고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자기검토 금지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자산규모 10-100억원의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의무화에는 찬성을 하지만 공인회계사의 봉사와 봉사시간의 직무연수시간 인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견표명수준을 소극적 의견표명으로 낮추고, 자기검토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제도화하는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작성지원에 의한 재무제표 공시가 필요하다는 데에 다소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자발적인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데에는 평점 3.78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2. 비영리법인 관계자 설문결과

1) 응답자 특성별 분포

(1) 개인특성

- <표 3-7-1>은 비영리공익법인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및 회계공시제도에 대한 의견을 비영리법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결과 응답자 특성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65.6%가 여성 종사자, 40대가 43.8%를 나타내고 있다.

<표 3-7-1> 응답자 특성별 분포

특성		빈도(%)
성별	남자	22(34.4)
	여자	42(65.6)
연령	30대	21(32.8)
	40대	28(43.8)
	50대	13(20.3)
	60대 이상	2(3.1)
지역	서울경기권	26(40.6)
	광역자치단체	7(10.9)
	기타	31(48.4)
계		64(100)

(2) 법인 소속 및 경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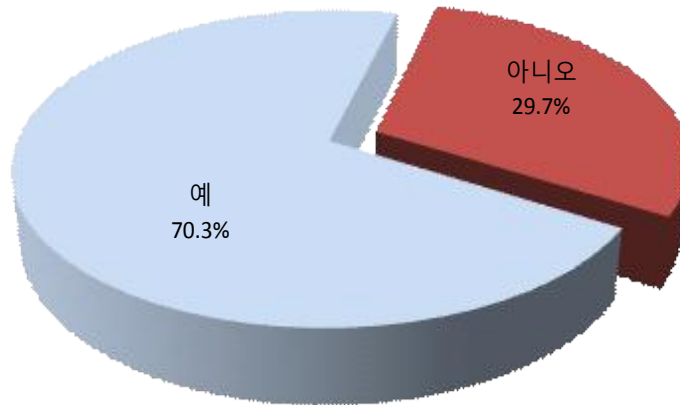
- <표 3-7-2>은 응답자 법인에서의 직급 및 업무경력, 전공분야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53.1%가 “담당직원”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사회복지”가 73.4%를 나타냈다. 한편, 업무경력은 “10년 이상”이 35.9%로 나타났다.

<표 3-7-2> 응답자의 법인 소속 현황

특성		빈도(%)
직급	대표이사	4(6.3)
	사무총장	16(25.0)
	담당직원	34(53.1)
	기타	10(15.6)
전공분야	상경계열	10(15.6)
	행정법학	2(3.1)
	사회복지	47(73.4)
	기타	5(7.8)
업무경력	1년 미만	3(4.7)
	1-3년 미만	12(18.8)
	3-5년 미만	10(15.6)
	5-10년 미만	16(25.0)
	10년 이상	23(35.9)
계		6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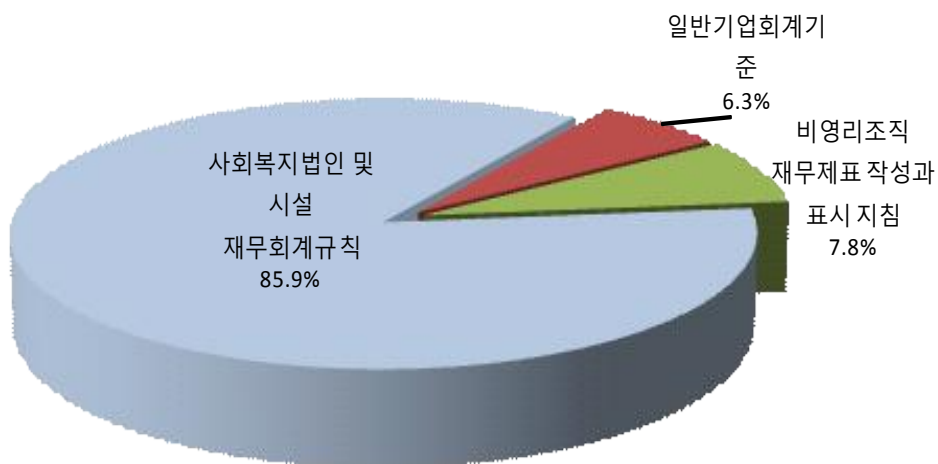
(3) 법인의 정관이외의 별도 회계규정 및 지침 제정

- <그림 3-7-1>은 응답자 법인내의 별도 회계규정 및 지침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70.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7-1> 법인 별도 회계규정 및 지침 제정 시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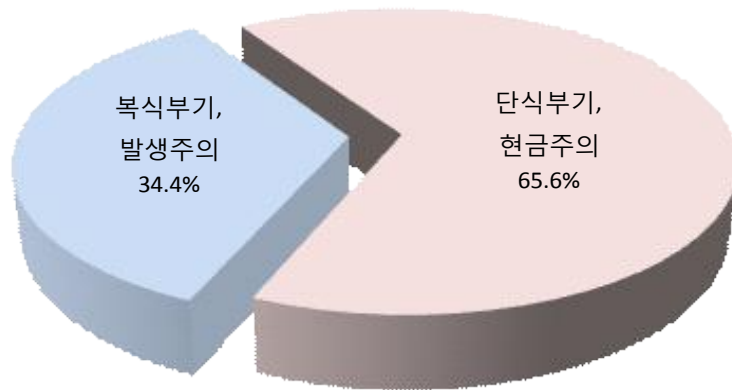
- <그림 3-7-2>는 응답자 법인내의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지침)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8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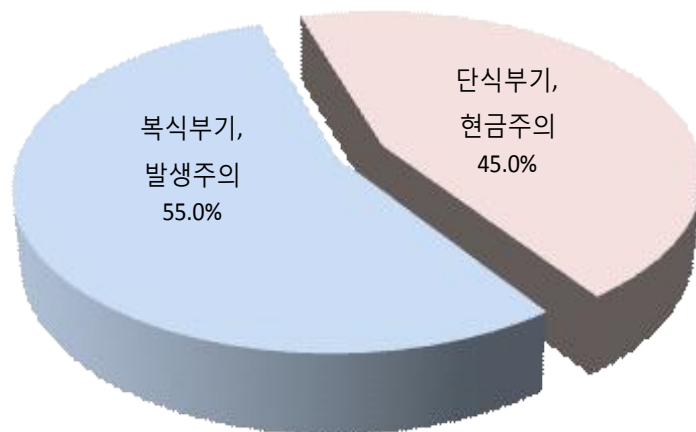
<그림 3-7-2> 법인 적용 회계기준(지침)

(4) 적용 회계기록 방식과 회계원칙

- <그림 3-7-3>, <그림 3-7-4>은 법인의 고유사업과 수익사업의 회계기록 방식과 회계원칙 적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유사업은 “단식부기와 현금주의”가 65.6%로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가 55%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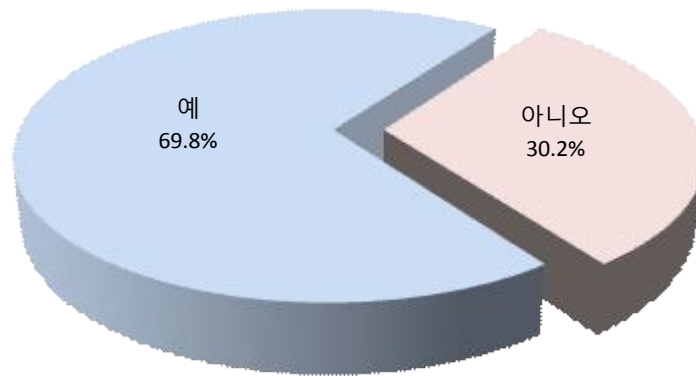
<그림 3-7-3> 고유사업의 적용 회계기록 방식과 회계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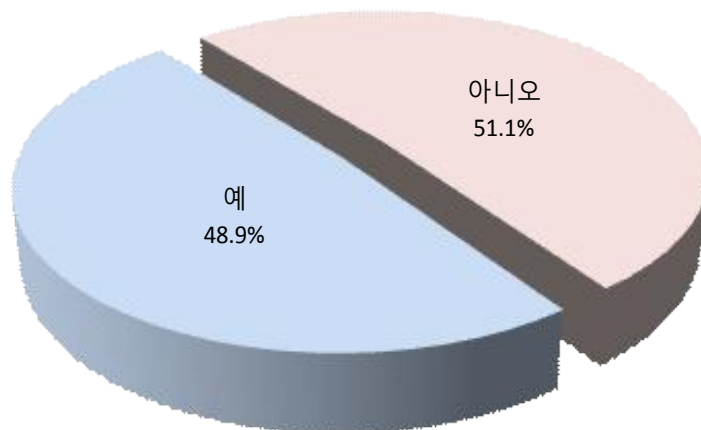
<그림 3-7-4> 수익사업의 적용 회계기록 방식과 회계원칙

(5) 회계 및 세무처리 관련

- <그림 3-7-5>, <그림 3-7-6>는 회계 및 세무처리를 위한 전담인력 보유 현황 및 외부 위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자체 회계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응답기관의 69.8%를 나타냈다. 또한, 회계장부의 기장과 재무제표 작성 및 신고는 외부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탁한다는 응답자는 48.9%로 나타났다.



<그림 3-7-5> 자체 회계전담인력 보유



<그림 3-7-6> 외부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탁

2) 내부통제제도 인식 및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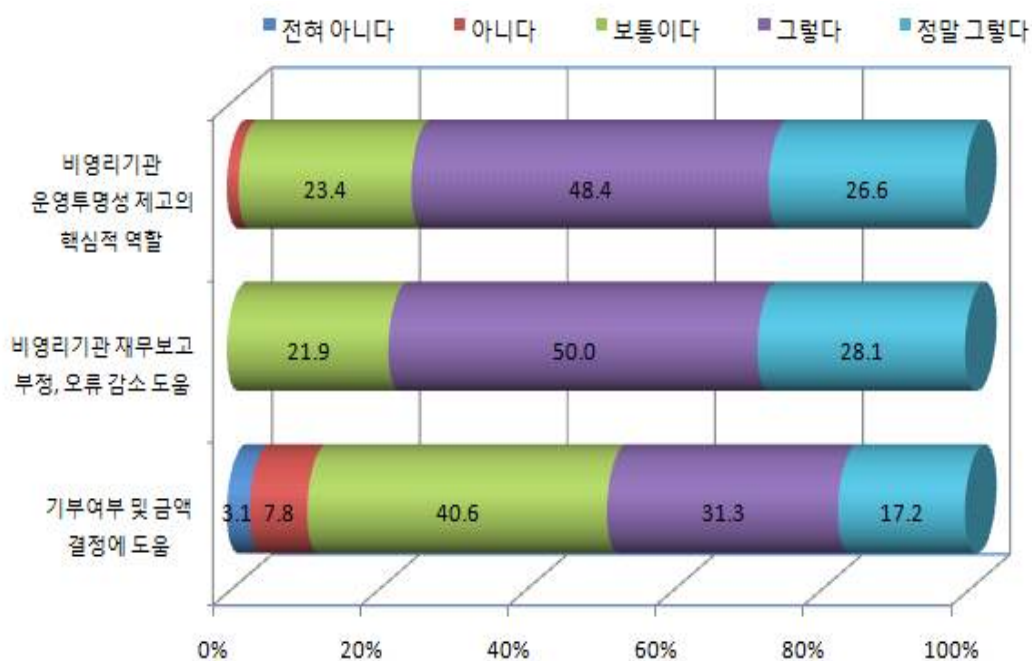
(1) 내부통제제도의 인식수준

- <표 3-8-1>, <그림 3-8-1>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제도가 도움이 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4점 =그렇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기부여부 및 금액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평점 3.5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3-8-1>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비영리기관 운영투명성 제고에의 핵심적 역할	-	1 (1.6)	15 (23.4)	31 (48.4)	17 (26.6)	64 (100)	4.00 (0.76)
비영리기관 재무보고 부정, 오류 감소에 도움	-	-	14 (21.9)	32 (50.0)	18 (28.1)	64 (100)	4.06 (0.71)
기부여부 및 금액결정 도움	2 (3.1)	5 (7.8)	26 (40.6)	20 (31.3)	11 (17.2)	64 (100)	3.52 (0.98)



<그림 3-8-1>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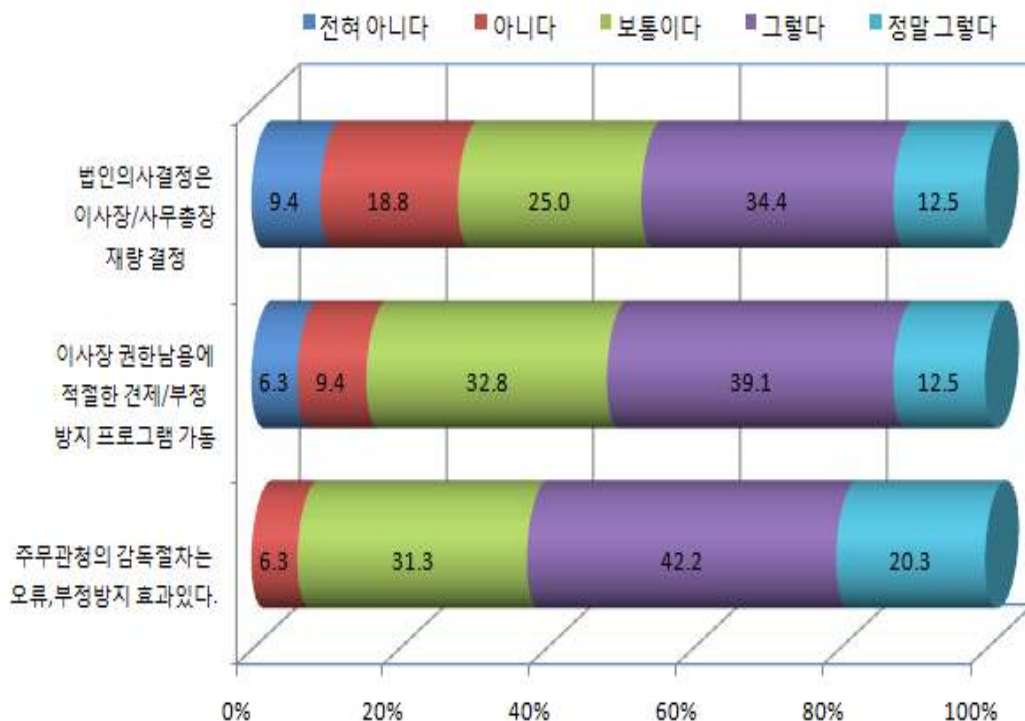
(2)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 <표 3-8-2>, <그림 3-8-2>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통제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주무관청의 감독절차가 기관의 오류나 부정의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평균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8-2>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1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법인의사결정은 이사장/ 사무총장 재량결정	6 (9.4)	12 (18.8)	16 (25.0)	22 (34.4)	8 (12.5)	64 (100)	3.22 (1.12)
이사장 권한남용에 적절한 견제/부정 방지프로그램 가동	4 (6.3)	6 (9.4)	21 (32.8)	25 (39.1)	8 (12.5)	64 (100)	3.42 (1.03)
주무관청의 감독절차는 오류/부정방지 효과 있다.	-	4 (6.3)	20 (31.3)	27 (42.2)	13 (20.3)	64 (100)	3.77 (0.85)



<그림 3-8-2>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1

- <표 3-8-3>, <그림 3-8-3>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통제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4점(그렇다)을 상회하여 내부통제절차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표 3-8-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2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거래발생시 즉시기록, 월별(분기별) 결산 진행	1 (1.6)	1 (1.6)	5 (7.8)	24 (37.5)	33 (51.6)	64 (100)	4.36 (0.82)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명확한 구분	1 (1.6)	-	4 (6.3)	26 (40.6)	33 (51.6)	64 (100)	4.41 (0.75)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보고 충실 이행	-	-	6 (9.4)	25 (39.1)	33 (51.6)	64 (100)	4.42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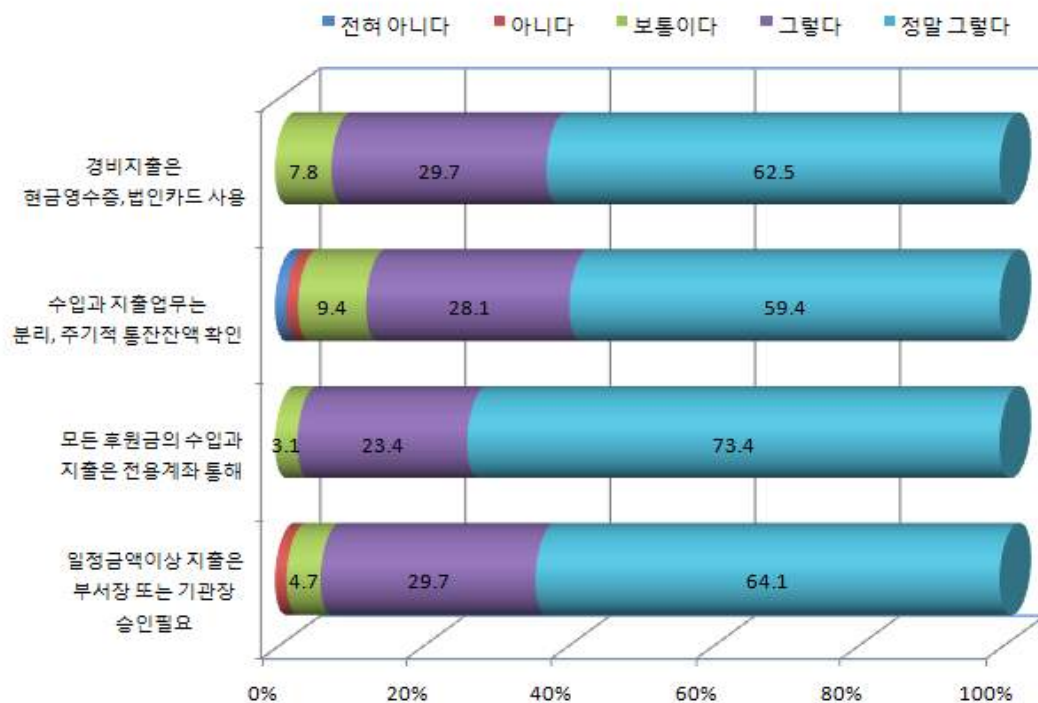
<그림 3-8-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2

- <표 3-8-4>, <그림 3-8-4>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통제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4점(그렇다)을 상회하여 통제절차가 잘 이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모든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4.70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8-4>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3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경비지출은 현금영수증이나 법인카드 사용	-	-	5 (7.8)	19 (29.7)	40 (62.5)	64 (100)	4.55 (0.64)
수입과 지출업무 분리, 기록담당자 분리	1 (1.6)	1 (1.6)	6 (9.4)	18 (28.1)	38 (59.4)	64 (100)	4.42 (0.85)
모든 후원금수입/지출 전용계좌 통해 이루어짐	-	-	2 (3.1)	15 (23.4)	47 (73.4)	64 (100)	4.70 (0.53)
일정 금액이상 지출은 부서장/기관장 승인 필요	-	1 (1.6)	3 (4.7)	19 (29.7)	41 (64.1)	64 (100)	4.56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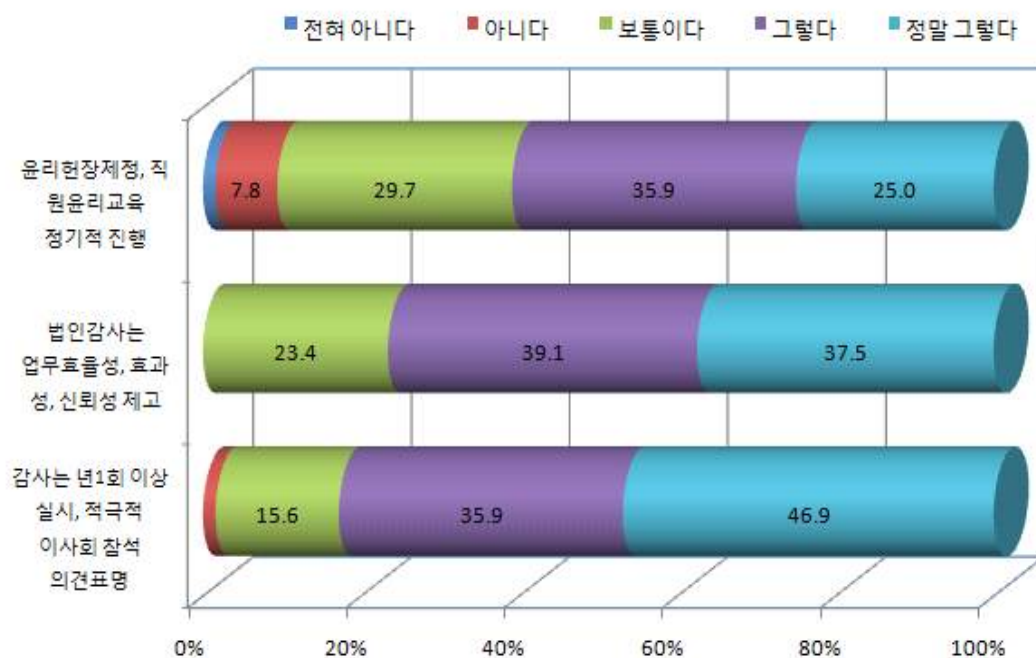
<그림 3-8-4>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3

- <표 3-8-5>, <그림 3-8-5>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통제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감사는 연1회 이상 법인의 사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한다.”가 4.28로 높게 나타나 법인의 내부감사의 역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고 있다. “윤리헌장이 제정되어 있고, 직원윤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3.75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표 3-8-5>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4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윤리헌장제정, 직원윤리교육 정기적 진행	1 (1.6)	5 (7.8)	19 (29.7)	23 (35.9)	16 (25.0)	64 (100)	3.75 (0.98)
법인감사는 업무효율성, 효과성, 신뢰성 제고	-	-	15 (23.4)	25 (39.1)	24 (37.5)	64 (100)	4.14 (0.77)
감사는 연1회 이상 실시, 적극적 이사회 참석 의견표명	-	1 (1.6)	10 (15.6)	23 (35.9)	30 (46.9)	64 (100)	4.28 (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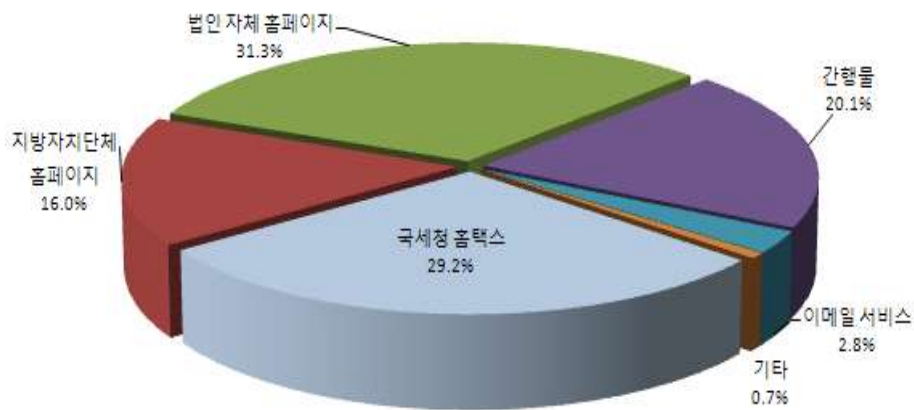
<그림 3-8-5>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4

3) 공시현황

(1) 공시방법

① 공시방법

- <그림 3-9-1>은 비영리법인의 공시방법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공시방법으로 “법인 자체 홈페이지”가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 간행물”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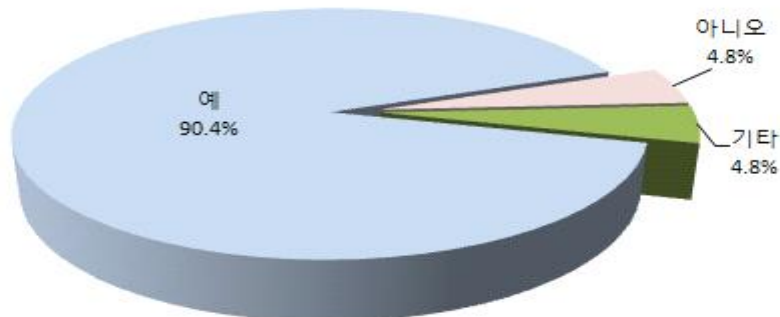


<그림 3-9-1> 법인 공시방법(n=144, 다중응답)

(2) 홈페이지 구축

① 홈페이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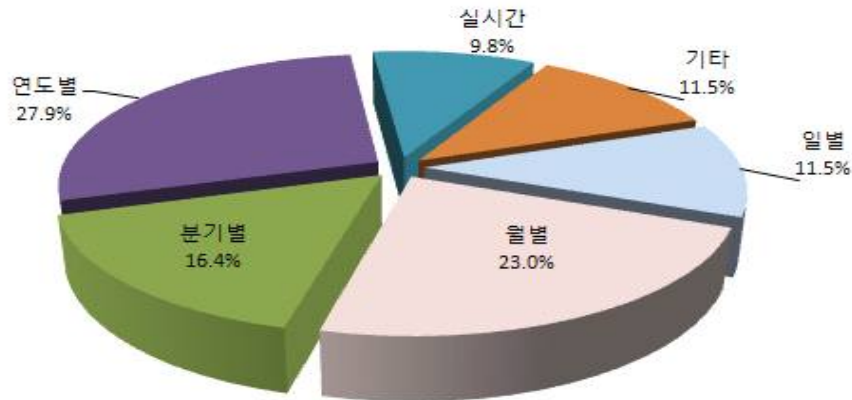
- <그림 3-9-2>은 비영리법인의 법인 홈페이지 구축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90% 이상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2> 법인 홈페이지 구축 현황(n=63)

②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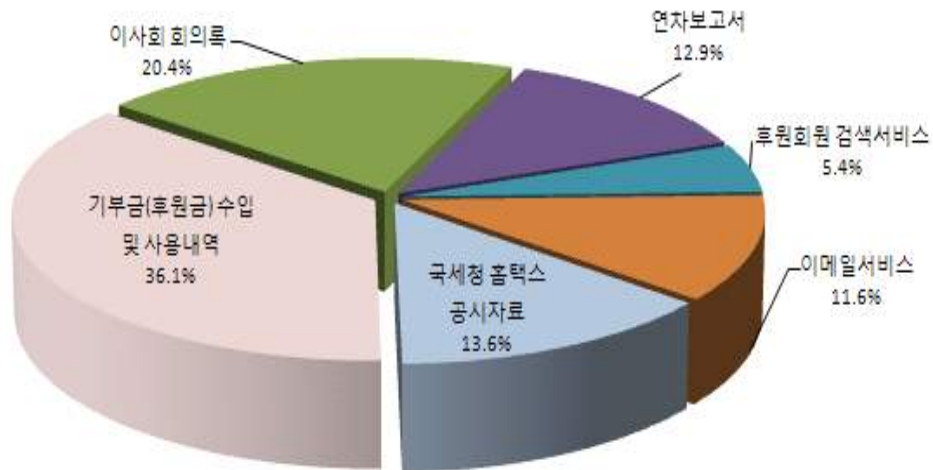
- <그림 3-9-3>은 비영리법인의 법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주기를 나타내고 있다. 연도별로 27.9%, 월별 23.0%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9-3> 법인 홈페이지 업데이트 주기(n=61)

③ 홈페이지 제공 정보

- <그림 3-9-4>은 비영리법인의 법인 홈페이지 주요 제공정보에 대한 결과로, “기부금 수입 및 사용내역”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9-4> 법인 홈페이지 주요 제공 정보(n=147, 다중응답)

4) 법인 정보 공시 현황

(1) 법인 정보 공시 현황1

- <표 3-10-1>, <그림 3-10-1>은 법인 정보공시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제출 결산서류는 외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뢰할 만하다”는 의견이 4.05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무관청과 국세청 등 자료제출 중복 등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10-1> 법인 정보공시 현황1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주무관청 및 국세청 등의 서류제출 및 전자공시 부담	1 (1.6)	7 (10.9)	22 (34.4)	29 (45.3)	5 (7.8)	64 (100)	3.47 (0.85)
국세청 홈페이지 의무공시는 지자체 등에 제출과 중복	1 (1.6)	4 (6.3)	14 (21.9)	33 (51.6)	12 (18.8)	64 (100)	3.80 (0.87)
제출 결산서류는 외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뢰할 만 함	-	1 (1.6)	12 (18.8)	34 (53.1)	17 (26.6)	64 (100)	4.05 (0.72)



<그림 3-10-1> 법인 정보공시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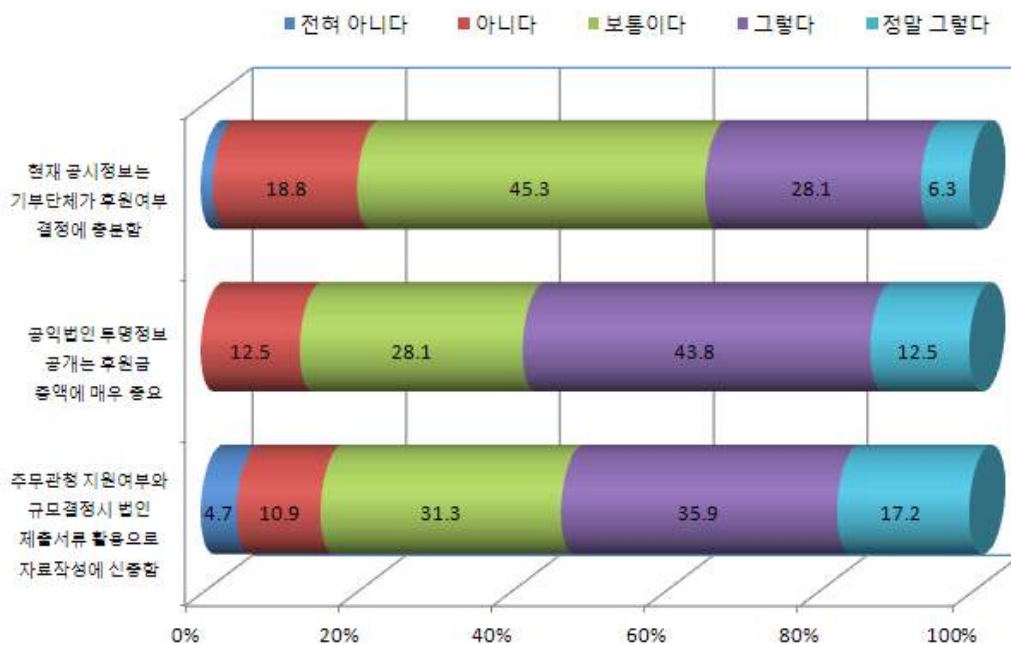
(2) 법인 정보 공시 현황2

- <표 3-10-2>, <그림 3-10-2>은 법인 정보공시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보통(3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법인 투명정보공개는 후원금 증액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0-2> 법인 정보공시 현황2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현재 공시정보는 기부단체가 후원여부 결정에 충분함	1 (1.6)	12 (18.8)	29 (45.3)	18 (28.1)	4 (6.3)	64 (100)	3.19 (0.87)
공익법인 투명정보공개는 후원금 증액에 매우 중요	-	8 (12.5)	18 (28.1)	28 (43.8)	8 (12.5)	64 (100)	3.58 (0.88)
주무관청 지원여부와 규모결정시 법인 제출서류 활용으로 자료작성에 신중함	3 (4.7)	7 (10.9)	20 (31.3)	23 (35.9)	11 (17.2)	64 (100)	3.50 (1.05)



<그림 3-10-2> 법인 정보공시 현황2

5)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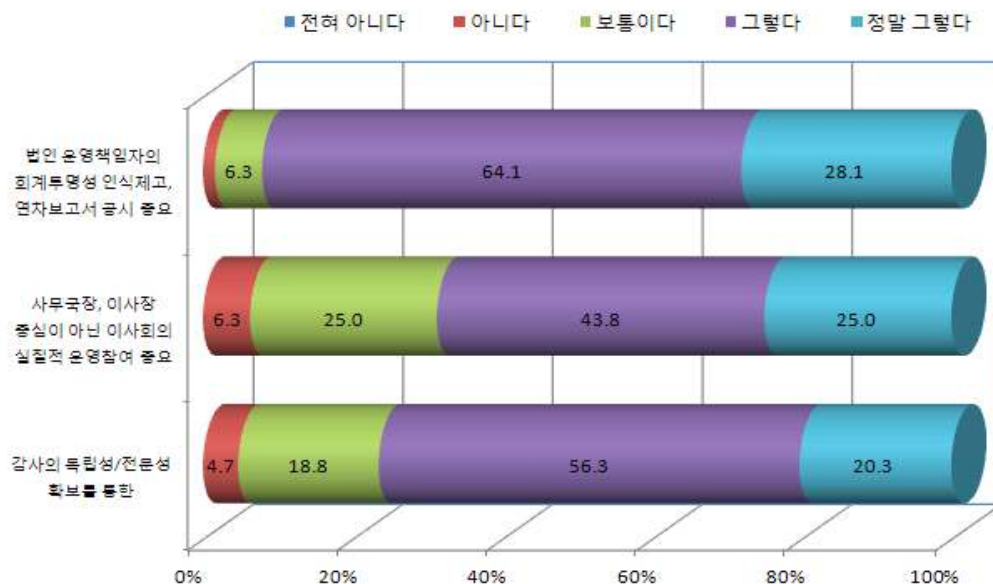
(1)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 개선의견1

- <표 3-11-1>, <그림 3-11-1>은 법인의 내부통제제도와 정보공시의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법인책임자의 투명성인식제고, 이사회실의 실질운영, 감사의 실질적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표 3-11-1>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1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법인 운영책임자의 회계투명성 인식제고, 연차보고서 공시 중요	-	1 (1.6)	4 (6.3)	41 (64.1)	18 (28.1)	64 (100)	4.19 (0.61)
사무국장, 이사장 중심이 아닌 이사회실의 실질적 운영참여 중요	-	4 (6.3)	16 (25.0)	28 (43.8)	16 (25.0)	64 (100)	3.88 (0.86)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중요	-	3 (4.7)	12 (18.8)	36 (56.3)	13 (20.3)	64 (100)	3.92 (0.76)



<그림 3-11-1>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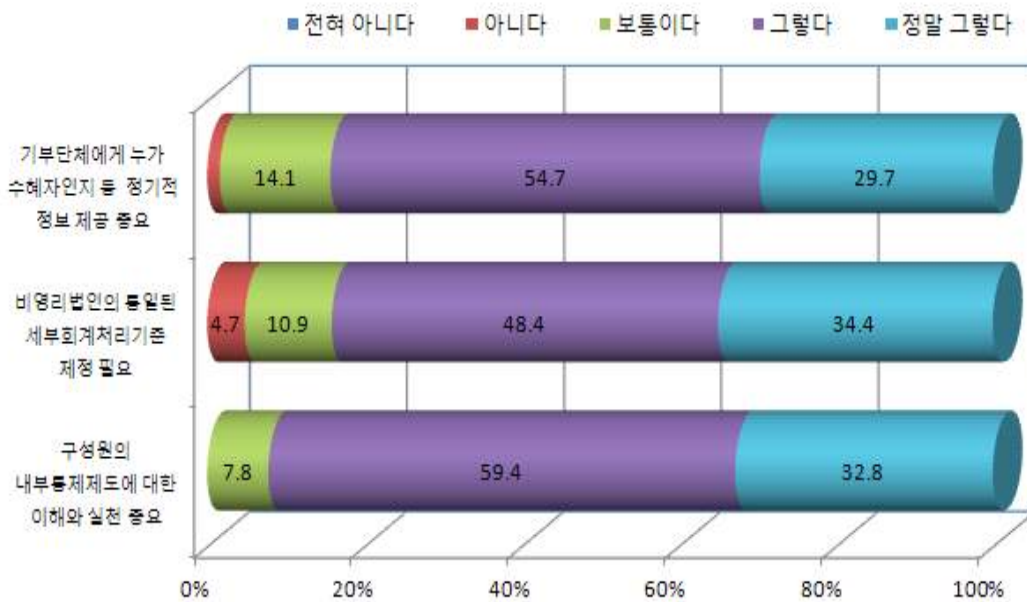
(2)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2

- <표 3-11-2>, <그림 3-11-2>은 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및 정보공시 개선의견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4점(그렇다)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부자에 대한 정보제공, 비영리법인 회계처리기준 통일,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표 3-11-2>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2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기부단체에게 누가 수혜자인지 등 정기적 정보 제공 중요	-	1 (1.6)	9 (14.1)	35 (54.7)	19 (29.7)	64 (100)	4.11 (0.76)
비영리법인의 통일된 세부회계처리기준 제정 필요	-	3 (4.7)	7 (10.9)	31 (48.4)	23 (34.4)	64 (100)	4.14 (0.80)
구성원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 중요	-	-	5 (7.8)	38 (59.4)	21 (32.8)	64 (100)	4.25 (0.59)



<그림 3-11-2>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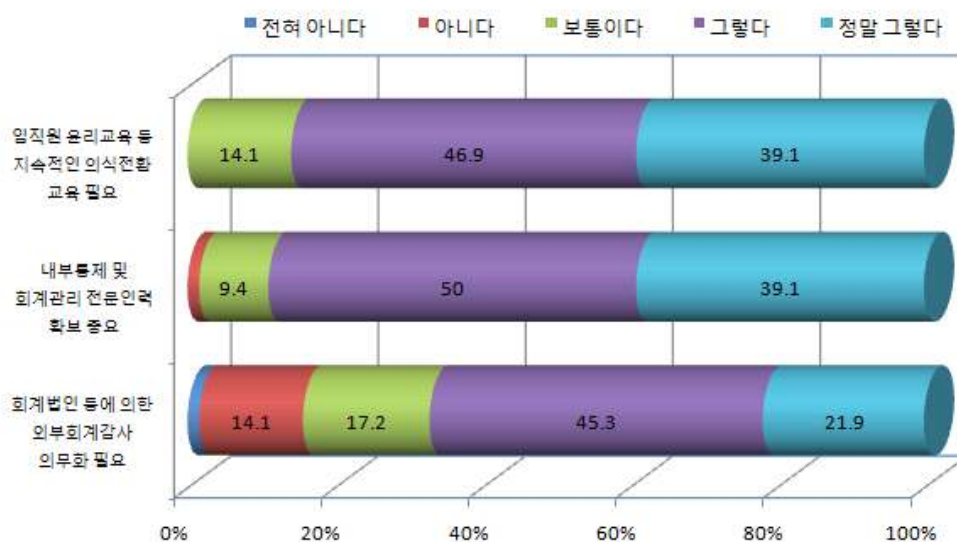
(3)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3

- <표 3-11-3>, <그림 3-11-3>은 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 의견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윤리교육이나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점(그렇다)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4.27로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다만,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은 긍정적이지만 평점 3.7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3-11-3>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3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임직원 윤리교육 등 지속적인 의식전환 교육 필요	-	-	9 (14.1)	30 (46.9)	25 (39.1)	64 (100)	4.25 (0.69)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 확보 중요	-	1 (1.6)	6 (9.4)	32 (50.0)	25 (39.1)	64 (100)	4.27 (0.70)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필요	1 (1.6)	9 (14.1)	11 (17.2)	29 (45.3)	14 (21.9)	64 (100)	3.72 (1.01)



<그림 3-11-3>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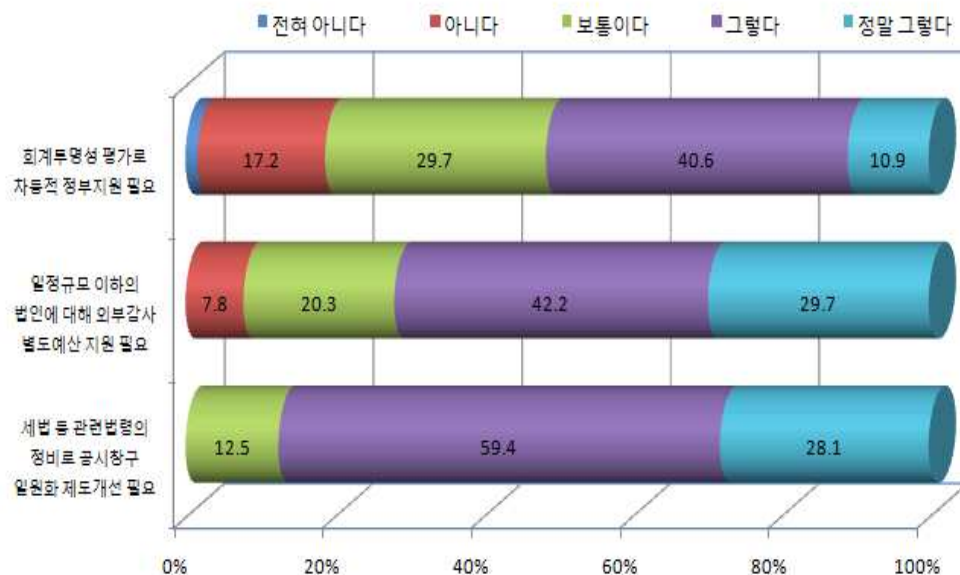
(4)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4

- <표 3-11-4>, <그림 3-11-4>은 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 개선의견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세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로 공시창구를 일원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점(그렇다)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회계투명성 평가로 차등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평점 3.4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3-11-4>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4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회계투명성 평가로 차등적 정부지원 필요	1 (1.6)	11 (17.2)	19 (29.7)	26 (40.6)	7 (10.9)	64 (100)	3.42 (0.95)
일정규모 이하의 법인에 대해 외부감사 별도예산 지원 필요	-	5 (7.8)	13 (20.3)	27 (42.2)	19 (29.7)	64 (100)	3.94 (0.90)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로 공시창구 일원화 제도개선 필요	-	-	8 (12.5)	38 (59.4)	18 (28.1)	64 (100)	4.16 (0.62)



<그림 3-11-4>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4

(5)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5

- <표 3-11-5>, <그림 3-11-5>은 법인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개선 및 회계정보 공시개선의견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주무관청, 국세청 등 결산관련 정보 제출 요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4.53으로 높은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반면에 “외부감사나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시 법적 제재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3.3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1-5>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5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주무관청,국세청 등 결산관련 정보 제출요구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필요	-	-	4 (6.3)	22 (34.4)	38 (59.4)	64 (100)	4.53 (0.62)
외부감사나 정보공개의무 불이행 법적 제재조항 신설 필요	1 (1.6)	9 (14.1)	25 (39.1)	24 (37.5)	5 (7.8)	64 (100)	3.36 (0.88)
불성실기부금 운영 적발단체 공개강화 필요	-	1 (1.6)	14 (21.9)	35 (54.7)	14 (21.9)	64 (100)	3.97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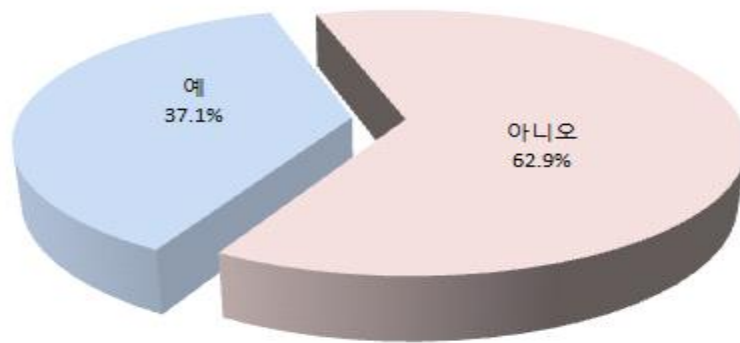


<그림 3-11-5>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에 대한 개선의견5

6) 외부감사제도 관련 의견

(1) 외부감사인(회계법인) 회계감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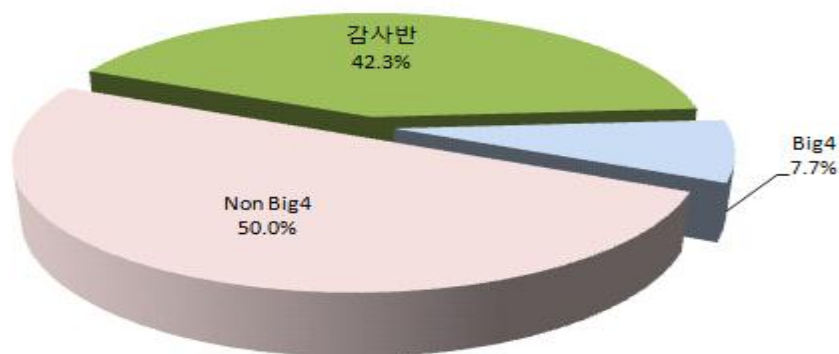
- <그림 3-12-1>는 응답자의 소속 비영리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37.1%만이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림 3-12-1> 외부 회계감사 수행 여부

(2) 외부감사(회계법인) 기관

- <그림 3-12-2>는 앞서 실시하는 외부 회계감사의 수행기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50%가 Non Big4로 나타났다.



<그림 3-12-2> 외부 회계감사 수행 기관

(3) 외부감사(회계법인)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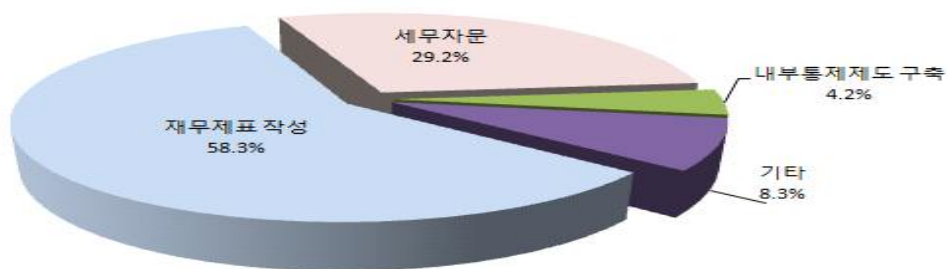
- <표 3-12-1>은 외부감사인 활용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감사기간은 1-2일이 많고, 투입인원은 2명 내외로 나타났다. 감사수수료는 100-500만원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2-1> 외부감사인 활용 현황

(단위: 명, %)

회계감사기간		회계감사 투입인원		감사수수료	
1-2일	11(55.0)	1명	6(33.3)	100만원 미만	5(31.3)
3-4일	2(10.0)	2명	9(50.0)	100-500만원 미만	7(43.7)
6-7일	7(35.0)	3명	2(11.1)	500만원 이상	4(25.0)
		4명	1(5.6)		
계	20(100)	계	18(100)	계	16(100)

- 감사이외의 회계사의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하여는 “재무제표 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2-3> 공인회계사의 서비스

(4) 자산이 100억 미만인데 외부감사를 받는다면,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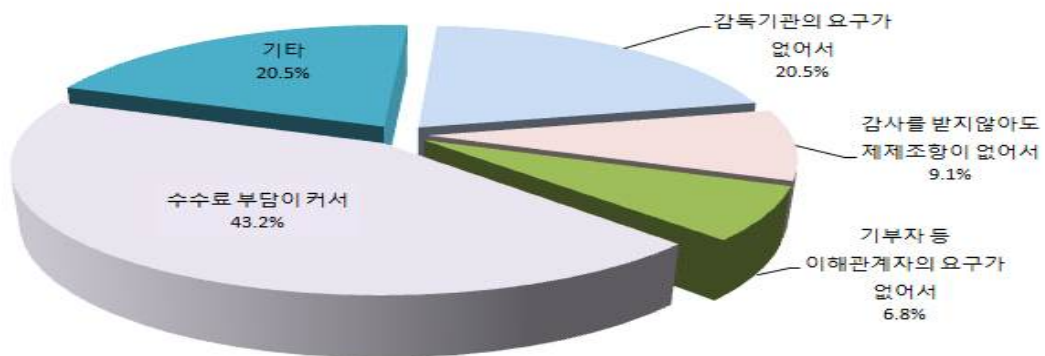
- <그림 3-12-4>은 자산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사장 등 경영층의 자발적 투명성 제고”와 “감독기관의 요구”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4> 자산이 100억 미만 : 외부감사 이유

(5)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이유

- <그림 3-12-5>는 외부감사를 받지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수수료 부담이 커서”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독기관의 요구가 없어서”도 20.5%를 나타냈다. 그리고 감사를 받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9.1%나 되었다.



<그림 3-12-5> 외부감사받지 않는 이유

7) 현행 비영리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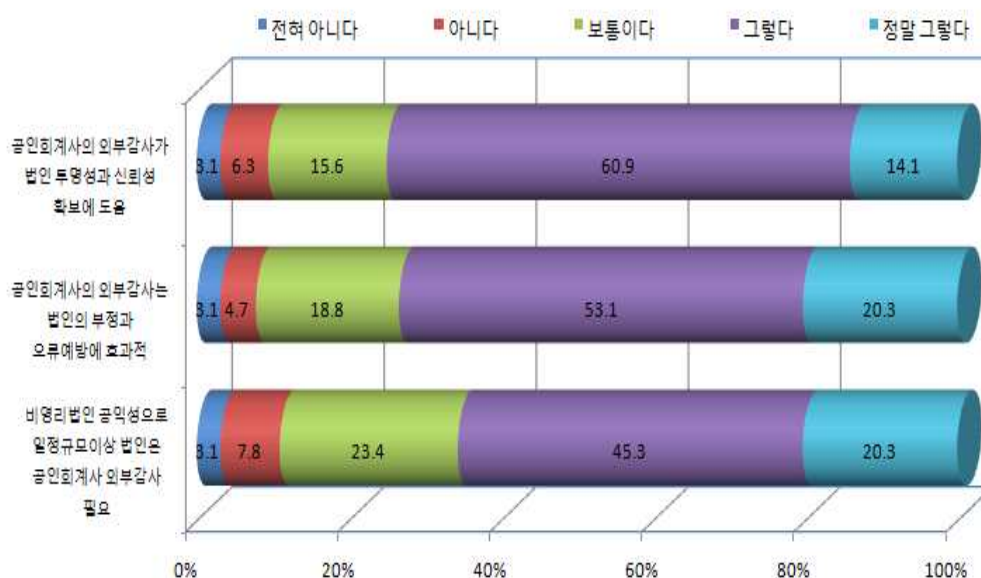
(1) 외부감사제도 의견1(외부감사에 대한 인식수준)

- <표 3-13-1>, <그림 3-13-1>는 현행 비영리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즉 법인의 부정과 오류 예방에 효과적이며, 법인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와 공익성을 위해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표 3-13-1> 비영리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의견1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가 법인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도움	2 (3.1)	4 (6.3)	10 (15.6)	39 (60.9)	9 (14.1)	64 (100)	3.77 (0.88)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는 법인의 부정과 오류예방에 효과적	2 (3.1)	3 (4.7)	12 (18.8)	34 (53.1)	13 (20.3)	64 (100)	3.83 (0.92)
비영리법인의 공익성때문에 일정규모이상 법인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필요	2 (3.1)	5 (7.8)	15 (23.4)	29 (45.3)	13 (20.3)	64 (100)	3.72 (0.98)



<그림 3-13-1> 비영리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의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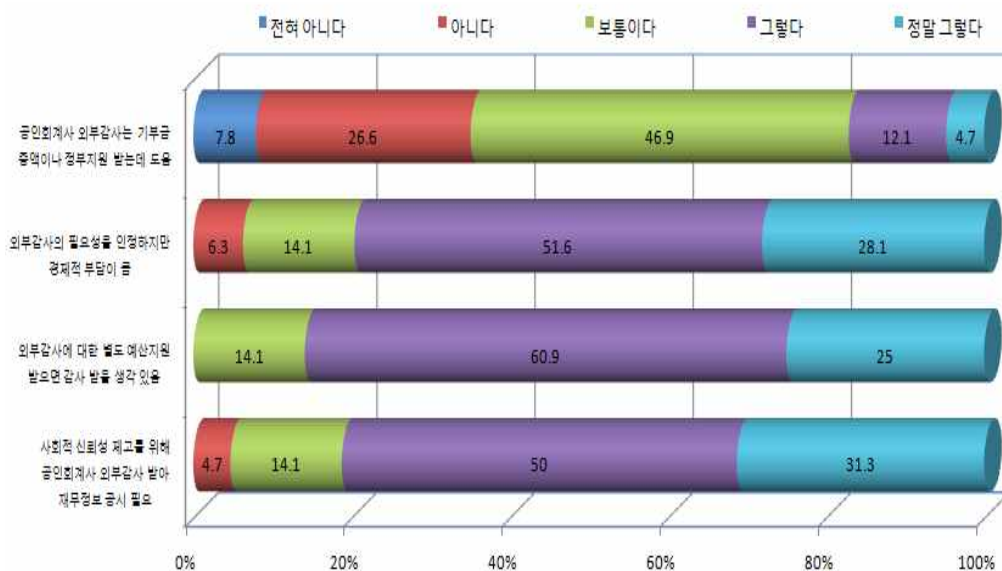
(2) 외부감사제도 의견2

- <표 3-13-2>, <그림 3-13-2>는 현행 비영리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외부감사가 기부금 증액이나 정부지원을 받는데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설문에는 평점 2.81로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외부감사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은 평점 4.02로 높게 나타났고, 예산지원이 있으면 외부감사를 받겠다는 의견이 평점 4.11로 나타났다. 한편,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데에 평점 4.08로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표 3-13-2> 비영리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의견2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는 기부금 증액이나 정부지원 받는데 도움	5 (7.8)	17 (26.6)	30 (46.9)	9 (12.1)	3 (4.7)	64 (100)	2.81 (0.94)
외부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큼	-	4 (6.3)	9 (14.1)	33 (51.6)	18 (28.1)	64 (100)	4.02 (0.83)
외부감사에 대한 별도 예산지원 받으면 감사 받을 생각 있음	-	-	9 (14.1)	39 (60.9)	16 (25.0)	64 (100)	4.11 (0.62)
사회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종교단체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받아 재무정보 공시 필요	-	3 (4.7)	9 (14.1)	32 (50.0)	20 (31.3)	64 (100)	4.08 (0.80)



<그림 3-13-2> 비영리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의견2

8) 비영리법인 관계자 의견 요약

- 64개 비영리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73.4%가 사회복지분야 전공자로 나타났다. 응답자 소속 법인내의 별도 회계규정 및 지침을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경우는 70.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법인내의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지침)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8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법인의 고유사업과 수익사업의 회계기록 방식과 회계원칙 적용에 대한 조사결과, 고유사업은 “단식부기와 현금주의”가 65.6%로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가 5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위한 전담인력 보유 현황 및 외부 위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자체 회계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응답기관의 69.8%로 나타났으며, 회계장부의 기장과 재무제표 작성 및 신고는 외부 회계사무소에 위탁한다는 응답자는 48.9%로 나타났다.
- 법인 소속관계자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과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제도가 부정과 오류를 억제하고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4점=그렇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기부여부 및 기부금액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평균 3.5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편,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통제환경)에 대하여는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장이나 사무총장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편이다”에 대하여 평균 3.22로 어느 정도 재량적 의사결정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권한남용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는 평균 3.42점, “주무관청의 감독절차 오류 및 부정방지 효과가 있다”는 평균 3.77점으로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래발생시 즉시기록,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명확한 구분,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보고에의 충실한 이행, 경비지출시 현금영수증 및 법인카드사용, 수입과 지출의 분리기록, 후원금의 전용계좌 활용,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의 부서 및 기관장 승인 등 내부통제절차에 대해서는 4점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 법인의 정보공시방법 및 공시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법인 자체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시가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90%이상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정보공시와 관련한 의견 조사결과, “제출 결산서류는 외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뢰할 만하다”는 의견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중복 등으로 정보공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정보공시가 기부단체의 후원여부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응답을 나타냈다.

- **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 개선 의견에 대한 조사 결과,** “주무관청, 국세청 등 결산관련 정보 제출요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균 4.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평균 4.27점, “임직원의 윤리교육 등 지속적인 의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와 “구성원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평균 4.2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법인 운영책임자의 회계투명성 인식 제고 및 연차보고서 공시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평균 4.1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 **법인의 외부감사 수행 관련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소속 비영리법인의 37.1%만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감사투입 시간은 1-2일이 55%로 가장 많고, 투입인원은 2명이 50%로 가장 많다. 감사수수료는 100-500만원 미만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산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는 이유로는 “이사장 등 경영층의 자발적 투명성 제고”와 “감독기관의 요구”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수수료 부담이 커서”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독기관의 요구가 없어서”가 20.5%를 나타냈다. 한편, 감사를 받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9.1%나 되었다.
- **현행 비영리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외부감사에 대한 별도 예산지원을 받으면 감사를 받을 생각이 있다”와 “외부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데에 평균 4점 이상의 높은 응답을 보여 외부감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단체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를 받아 재무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평점 4.08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3. 정보이용자 설문결과

1) 응답자 특성별 분포

(1) 개인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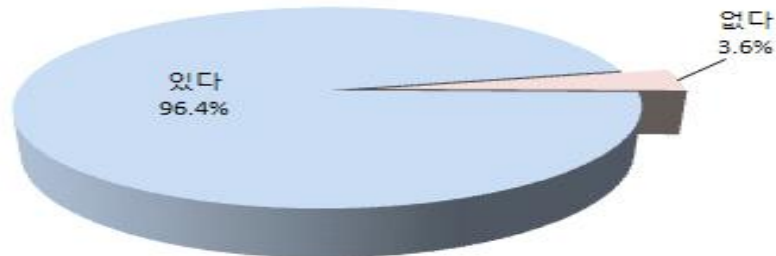
- <표 3-14-1>은 비영리공익법인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및 회계공시제도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특성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88.1%가 남자, 50대가 39.3%, 직업은 교수가 75%, 지역은 서울 및 경기도 69%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4-1> 응답자 특성별 분포

특성		빈도(%)
성별	남자	74(88.1)
	여자	10(11.9)
연령	30대	11(13.1)
	40대	26(31.0)
	50대	33(39.3)
	60대 이상	14(16.7)
직업	교수	63(75.0)
	회사원 및 공무원	5(6.0)
	기타	16(19.0)
지역	서울경기권	58(69.0)
	광역시자치단체	15(17.9)
	기타	11(13.1)
계		84(100)

(2) 기부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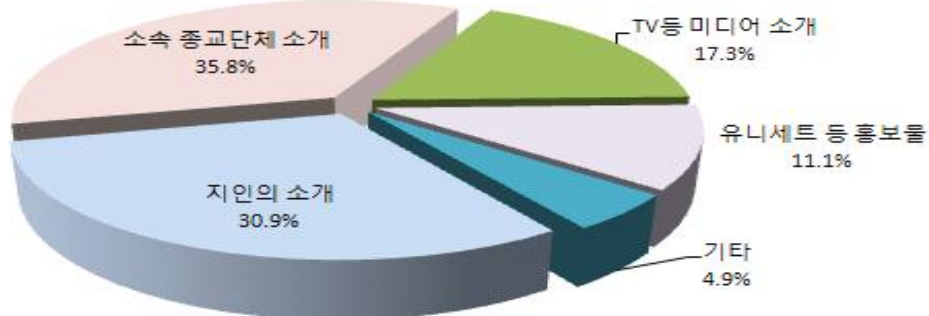
- <그림 3-14-1>는 응답자들의 기부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96.4%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기부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1> 기부경험(n=84)

(3) 기부단체

- <그림 3-14-2>는 기부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기부단체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로 소속종교단체의 소개와 지인의 소개로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2> 기부단체(n=81)

(4) 기부한 법인의 정보 접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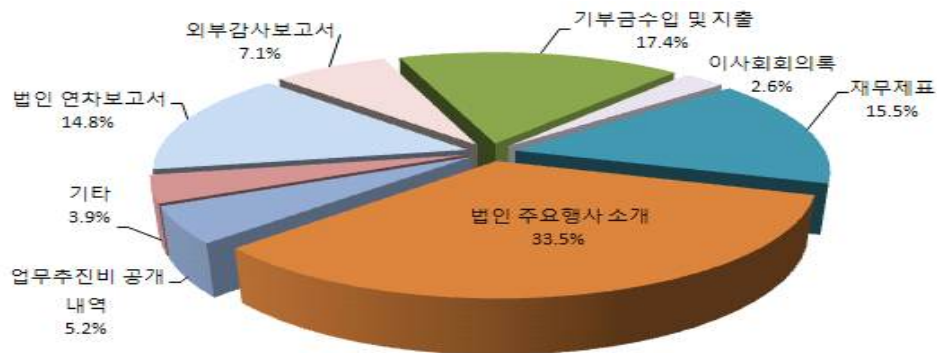
- <그림 3-14-3>은 기부한 법인의 정보에 접근하는 경로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30.4%가 “해당법인 홈페이지”에서 기부경로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회계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재무공시의 대표적인 경로인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는 10.3%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4-3> 기부한 법인의 정보접근경로(n=184, 다중응답)

(5) 활용정보

- <그림 3-14-4>는 기부경로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법인 주요행사 소개”가 3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회의록이나 외부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경우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4-4> 활용정보(n=155, 다중응답)

(6) 비영리법인 정보 인식수준

- <표 3-15-1>, <그림 3-15-1>는 비영리법인 정보에 대한 인식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정보에 대하여 적시제공 및 신뢰성에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금 수입 및 지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3.93점).

<표 3-15-1> 비영리법인 정보 인식수준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현재 이용정보 적시제공	12 (14.3)	41 (48.8)	25 (29.8)	6 (7.1)	-	84 (100)	2.30 (0.80)
현재 이용 정보 신뢰	7 (8.3)	32 (38.1)	32 (38.1)	13 (15.5)	-	84 (100)	2.61 (0.85)
현재 이용정보는 후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	15 (17.9)	37 (44.0)	24 (28.6)	8 (9.5)	-	84 (100)	2.30 (0.87)
기부금 수입 및 지출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6 (7.1)	18 (21.4)	36 (42.9)	24 (28.6)	84 (100)	3.93 (0.89)



<그림 3-15-1> 비영리법인 정보 인식수준

2) 내부통제제도의 인식 및 운영실태

(1) 내부통제제도의 인식수준

- <표 3-15-2>, <그림 3-15-2>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내부통제제도가 투명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부정 및 오류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5-2>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비영리기관 운영투명성 제고에의 핵심적 역할	-	5 (6.0)	9 (10.7)	42 (50.0)	28 (33.3)	84 (100)	4.11 (0.82)
비영리기관 재무보고 부정, 오류 감소에 도움	-	5 (6.0)	8 (9.5)	51 (60.7)	20 (23.8)	84 (100)	4.02 (0.76)
기부여부 및 금액결정 도움	1 (1.2)	8 (9.5)	15 (17.9)	45 (53.6)	15 (17.9)	84 (100)	3.77 (0.89)



<그림 3-15-2>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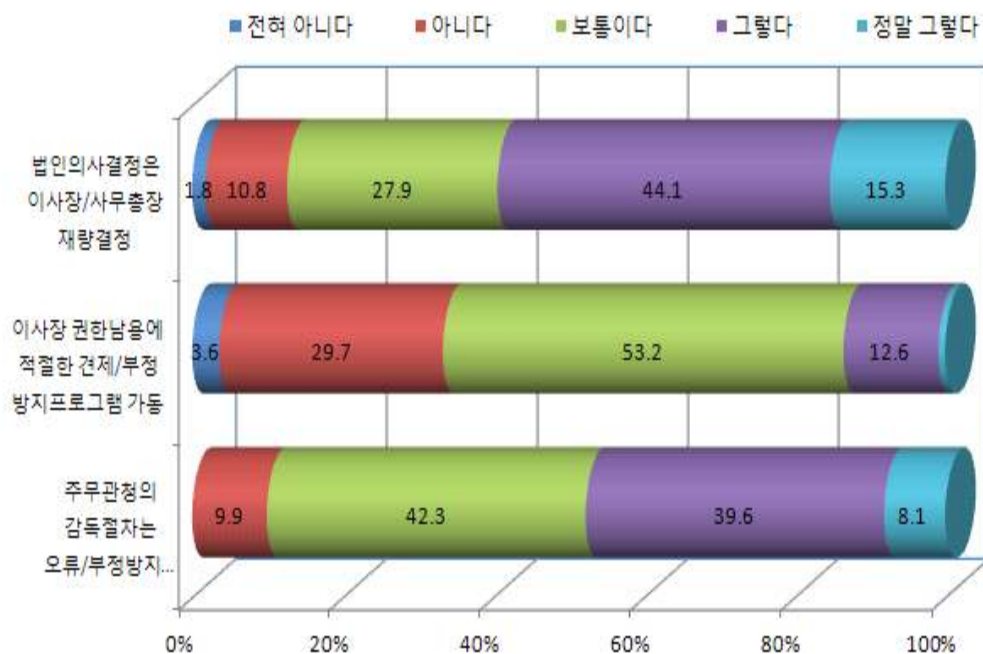
(2)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 <표 3-15-3>, <그림 3-15-3>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정보이용자들은 법인의 수입과 지출이 대표자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법인 운영내역의 투명한 공개나 후원금 관리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5-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법인후원금수입과 지출관리가 대표자 재량으로 이루어짐	2 (2.4)	6 (7.1)	15 (17.9)	51 (60.7)	10 (11.9)	84 (100)	3.73 (0.85)
법인 책임자는 법인운영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중요시함	7 (8.3)	32 (38.1)	26 (31.0)	17 (20.2)	2 (2.4)	84 (100)	2.70 (0.97)
후원금납부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납부 즉시 영수통보	6 (7.1)	21 (25.0)	34 (40.5)	19 (22.6)	4 (4.8)	84 (100)	2.93 (0.98)
법인의 투명한 정보공개/윤리 경영으로 지속적인 후원결심	6 (7.1)	29 (34.5)	25 (29.8)	18 (21.4)	6 (7.1)	84 (100)	2.87 (1.06)



<그림 3-15-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3)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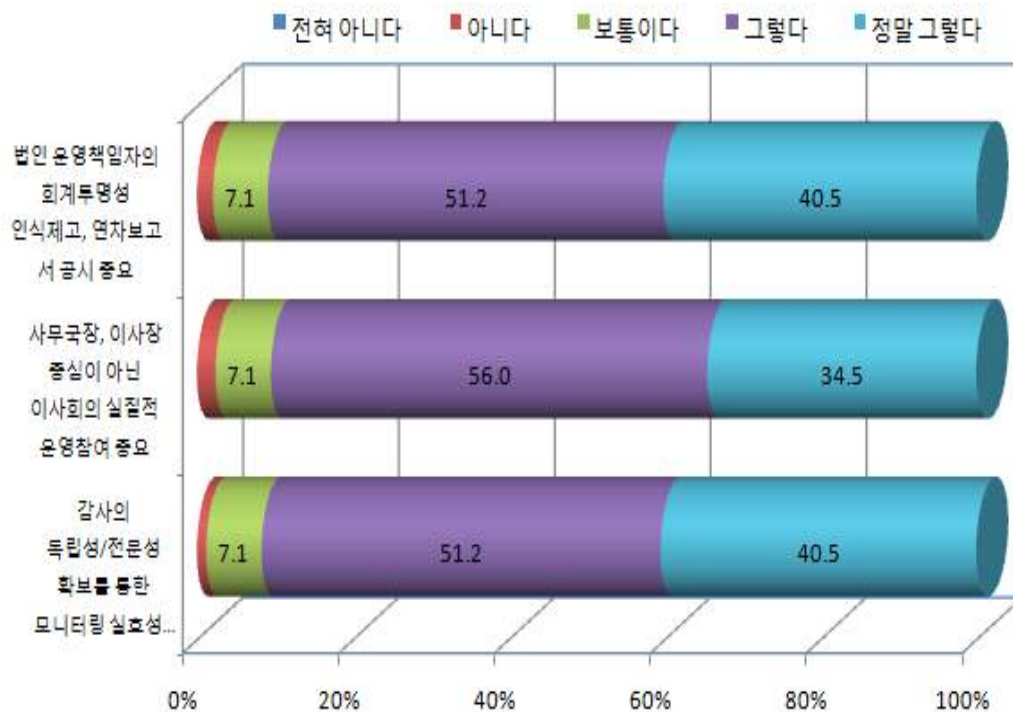
(1)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1

- <표 3-15-4>, <그림 3-15-4>은 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법인 책임자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 이사회실의 실질적 운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감사인의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5-4>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1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법인 운영책임자의 회계투명성 인식제고, 연차보고서 공시 중요	-	1 (1.2)	6 (7.1)	43 (51.2)	34 (40.5)	84 (100)	4.31 (0.66)
사무국장, 이사장 중심이 아닌 이사회실의 실질적 운영참여 중요	-	2 (2.4)	6 (7.1)	47 (56.0)	29 (34.5)	84 (100)	4.23 (0.68)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중요	-	1 (1.2)	6 (7.1)	39 (46.4)	38 (45.2)	84 (100)	4.36 (0.67)



<그림 3-15-4>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1

(2)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2

- <표 3-15-5>, <그림 3-15-5>은 법인의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의견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기부단체에게 누가 수혜자인지 등 정보제공,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구성원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5-5>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의견2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기부단체에게 누가 수혜자인지 등 정기적 정보 제공 중요	-	-	3 (3.6)	45 (53.6)	36 (42.9)	84 (100)	4.39 (0.56)
발생기준/복식부기방식의 통일된 회계처리기준 제정 필요	-	2 (2.4)	8 (9.5)	40 (47.6)	34 (40.5)	84 (100)	4.26 (0.73)
구성원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 중요	-	-	2 (2.4)	48 (57.1)	34 (40.5)	84 (100)	4.38 (0.54)



<그림 3-15-5>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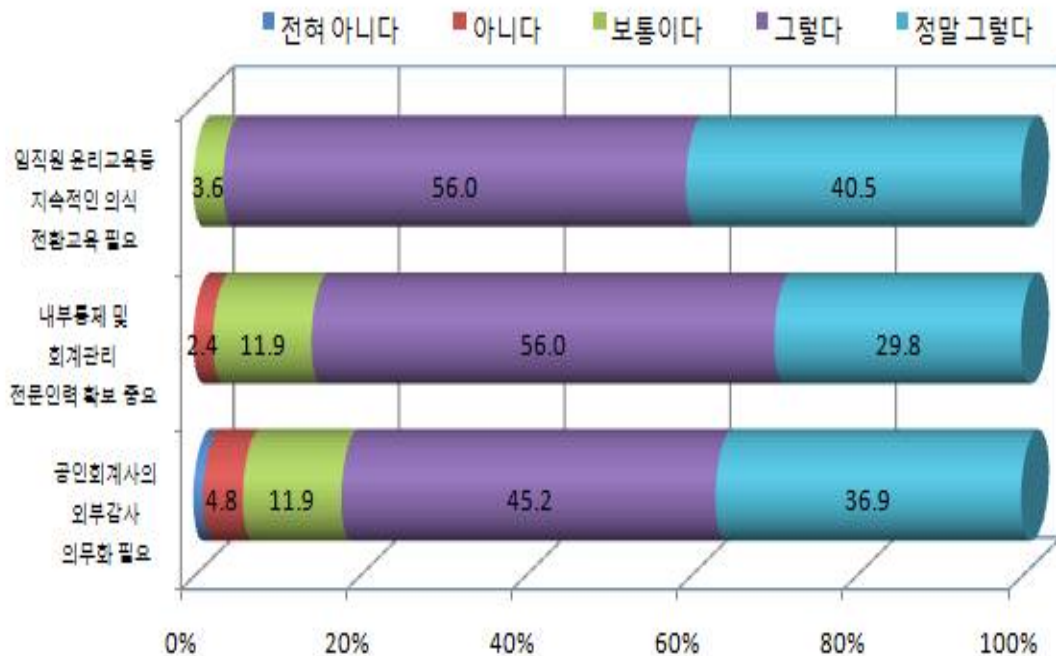
(3)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3

- <표 3-15-6>, <그림 3-15-6>은 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임직원 윤리교육,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확보, 외부감사의 강화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표 3-15-6>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3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임직원 윤리교육 등 지속적인 인식전환 교육 필요	-	-	3 (3.6)	47 (56.0)	34 (40.5)	84 (100)	4.37 (0.55)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 확보 중요	-	2 (2.4)	10 (11.9)	47 (56.0)	25 (29.8)	84 (100)	4.13 (0.71)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의무화 필요	1 (1.2)	4 (4.8)	10 (11.9)	38 (45.2)	31 (36.9)	84 (100)	4.12 (0.88)



<그림 3-15-6>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3

(4)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4

- <표 3-15-7>, <그림 3-15-7>은 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회계투명성 평가로 차등적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균 4.3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시관련 법령의 정비로 통해 자료제출 및 공시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표 3-15-7>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4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회계투명성 평가로 차등적 정부지원 필요	-	2 (2.4)	7 (8.3)	37 (44.0)	38 (45.2)	84 (100)	4.32 (0.73)
일정규모 이하의 법인에 대해 외부감사 별도예산 지원 필요	1 (1.2)	8 (9.5)	14 (16.7)	42 (50.0)	19 (22.6)	84 (100)	3.83 (0.93)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로 공시창구 일원화 제도개선 필요	1 (1.2)	1 (1.2)	10 (11.9)	48 (57.1)	24 (28.6)	84 (100)	4.11 (0.74)
주무관청/국세청 등 결산관련 정보 제출요구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필요	1 (1.2)	-	8 (9.5)	49 (58.3)	26 (31.0)	84 (100)	4.18 (0.70)



<그림 3-15-7>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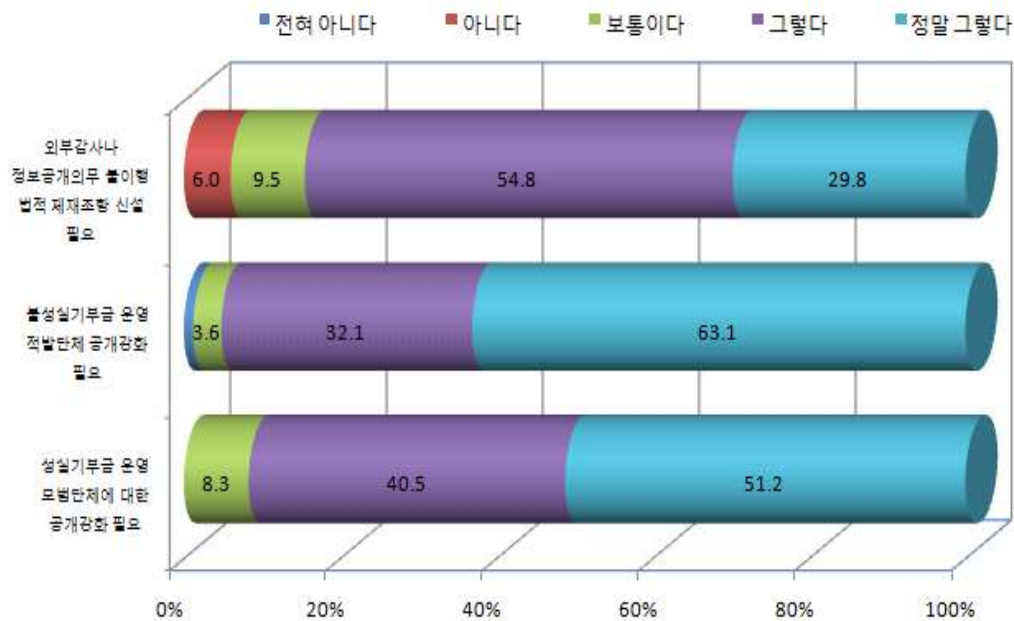
(5)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5

- <표 3-15-8>, <그림 3-15-8>은 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불성실 기부금 운영 적발 단체의 공개 강화, 성실기부금 운영 모범단체에 대한 공개, 그리고 외부감사나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의 신설 순으로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표 3-15-8>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5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외부감사나 정보공개의무 불이행 법적 제재조항 신설 필요	-	5 (6.0)	8 (9.5)	46 (54.8)	25 (29.8)	84 (100)	4.08 (0.80)
불성실기부금 운영 적발단체 공개강화 필요	1 (1.2)	-	3 (3.6)	27 (32.1)	53 (63.1)	84 (100)	4.56 (0.68)
성실기부금 운영 모범단체에 대한 공개강화 필요	-	-	7 (8.3)	34 (40.5)	43 (51.2)	84 (100)	4.43 (0.65)



<그림 3-15-8>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제도 개선의견5

4) 외부감사제도 관련 의견

(1)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효과

① 외부감사의 필요성

- <표 3-16-1>, <그림 3-16-1>는 외부감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은 공익성과 법인의 신뢰성제고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표 3-16-1> 외부감사의 필요성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공익성 때문에 일정규모이상 법인은 공인회계사 감사 필요	-	2 (2.4)	4 (4.8)	35 (41.7)	43 (51.2)	84 (100)	4.42 (0.69)
신뢰성제고의 외부감사를 받아 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1 (1.2)	5 (6.0)	5 (6.0)	36 (42.9)	37 (44.0)	84 (100)	4.23 (0.89)



<그림 3-16-1> 외부감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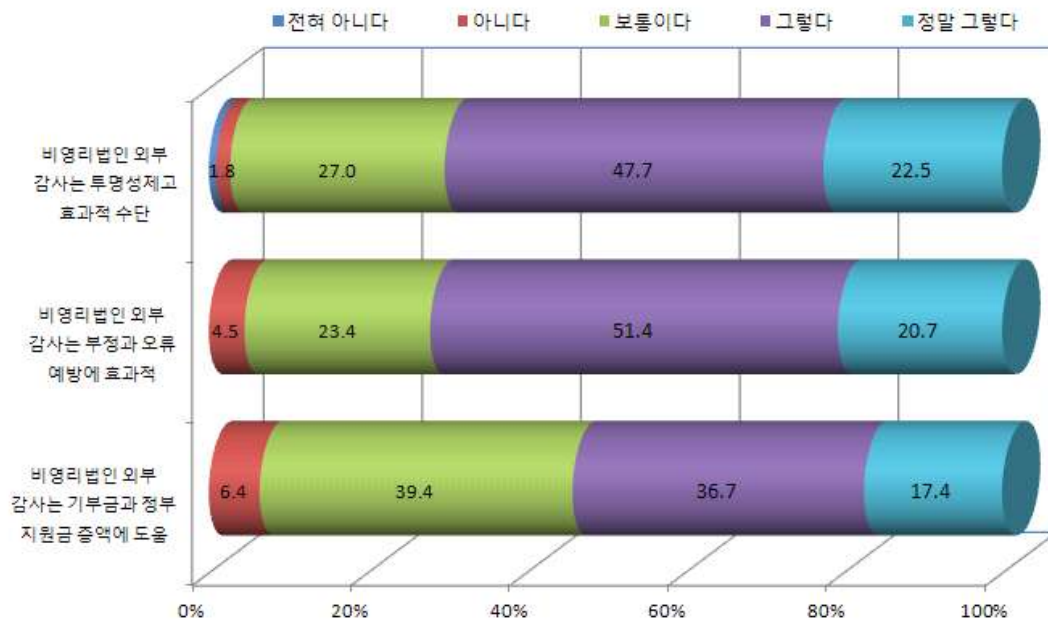
② 외부감사의 효과

- <표 3-16-2>, <그림 3-16-2>는 외부감사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외부감사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오류와 부정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데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외부 감사를 받으면 기부금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3-16-2> 외부감사의 효과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비영리법인 외부감사는 투명성제고의 효과적 수단	-	2 (2.4)	12 (14.3)	41 (48.8)	29 (34.5)	84 (100)	4.15 (0.75)
비영리법인 외부감사는 부정과 오류예방에 효과적	-	1 (1.2)	14 (16.7)	43 (51.2)	26 (31.0)	84 (100)	4.12 (0.72)
비영리법인 외부감사는 기부금과 정부지원금 증액에 도움	-	2 (2.4)	2 (2.4)	13 (15.5)	46 (54.8)	84 (100)	3.98 (0.85)



<그림 3-16-2> 외부감사의 효과

(2)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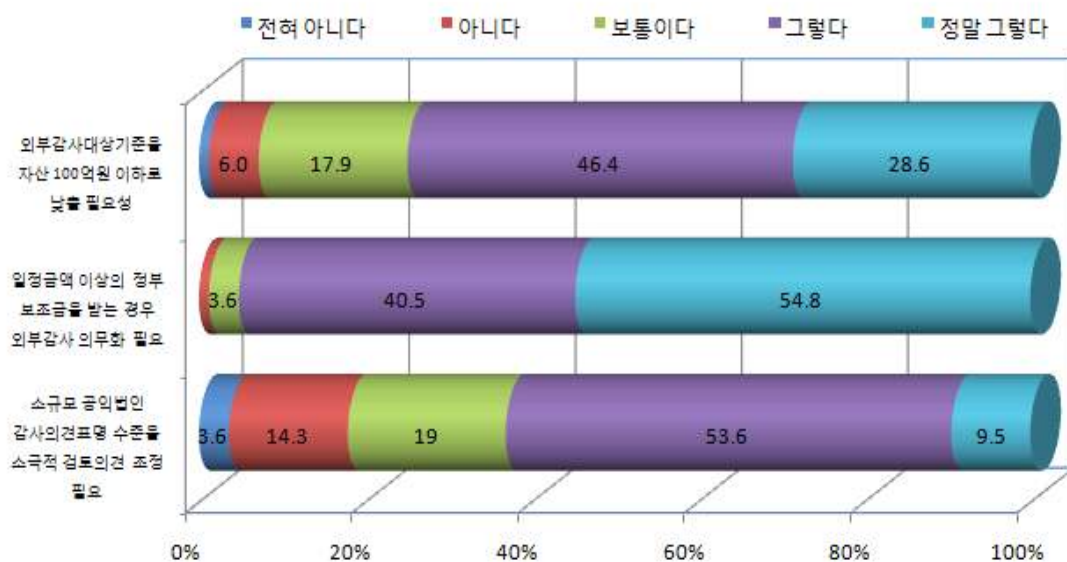
① 외부감사제도 개선1

- <표 3-16-3>, <그림 3-16-3>는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문에 대하여 4.4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외부감사의무화 대상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되 소규모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의견 표명의 수준을 소극적 검토의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표 3-16-3> 외부감사제도 개선1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외부감사대상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하로 낮출 필요성	1 (1.2)	5 (6.0)	15 (17.9)	39 (46.4)	24 (28.6)	84 (100)	3.95 (0.90)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외부감사 의무화 필요	-	1 (1.2)	3 (3.6)	34 (40.5)	46 (54.8)	84 (100)	4.49 (0.63)
소규모 공익법인 감사의견표명 수준을 소극적 검토의견 조정 필요	3 (3.6)	12 (14.3)	16 (19.0)	45 (53.6)	8 (9.5)	84 (100)	3.51 (0.97)



<그림 3-16-3> 외부감사제도 개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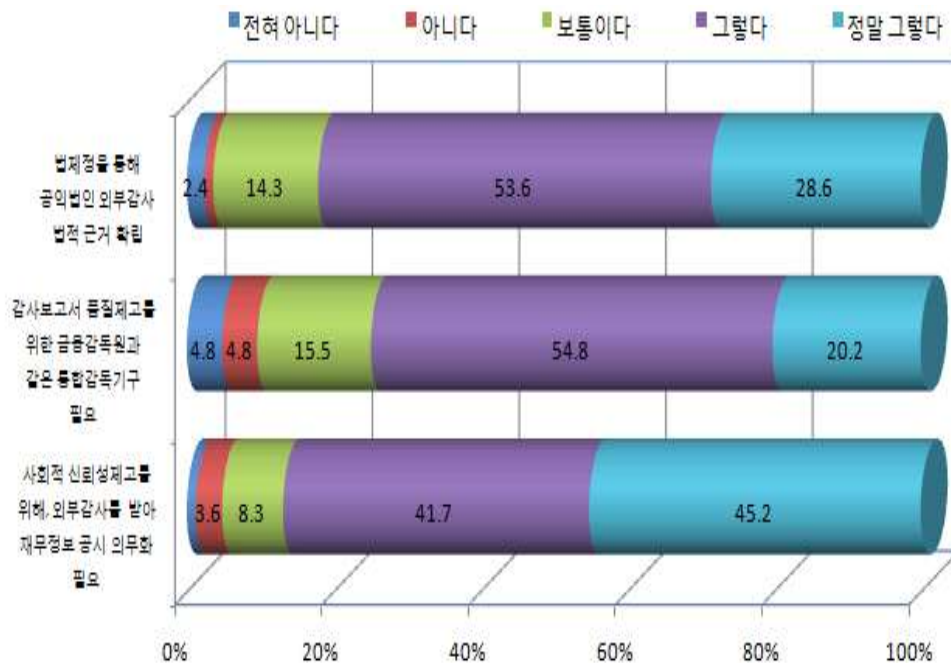
② 외부감사제도 개선2

- <표 3-16-4>, <그림 3-16-4>는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 법제정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단체는 외부감사를 받아 재무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3-16-4> 외부감사제도 개선2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법제정을 통해 공익법인 외부감사 법적 근거 확립	2 (2.4)	1 (1.2)	12 (14.3)	45 (53.6)	24 (28.6)	84 (100)	4.05 (0.83)
감사보고서 품질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과 같은 통합감독기구 필요	4 (4.8)	4 (4.8)	13 (15.5)	46 (54.8)	17 (20.2)	84 (100)	3.81 (0.97)
사회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종교단체도 외부감사 받아 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필요	1 (1.2)	3 (3.6)	7 (8.3)	35 (41.7)	38 (45.2)	84 (100)	4.26 (0.85)



<그림 3-16-4> 외부감사제도 개선2

5) 외부감사제도 법제화에 대한 실행방안

(1) 자산규모 100억 이상 또는 연간 현금수입 5억원 이상 비영리공익법인

①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

- <표 3-17-1>, <그림 3-17-1>는 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 5억 이상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의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외부감사의 의무화, 배정제도에 의한 외부감사인 선임, 감리제도 도입, 자기검토 금지제도화 등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표 3-17-1>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 5억 이상)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외부감사 의무화 감사보고서 함께 재무제표 공시	1 (0.9)	6 (5.4)	30 (27.0)	53 (47.7)	21 (18.9)	111 (100)	3.78 (0.84)
공공성을 고려, 외부감사인 선임은 공인회계사회나 정부 배정	2 (1.8)	9 (8.1)	33 (29.7)	47 (42.3)	20 (18.0)	111 (100)	3.67 (0.92)
공익법인 감사보고서 감리제도로 감사품질 제고	-	8 (7.2)	33 (29.7)	45 (40.5)	25 (22.5)	111 (100)	3.78 (0.87)
자기검토 금지규정 제도화	-	9 (8.1)	36 (32.4)	46 (41.4)	20 (18.0)	111 (100)	3.69 (0.86)



<그림 3-17-1>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 5억 이상)

(2) 자산규모 10억~100억, 연간 현금수입 1~5억원 비영리공익법인

①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1

- <표 3-17-2>, <그림 3-17-2>는 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의 비영리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되 비영리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자발적인 봉사를 활용하자는 데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표 3-17-2>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1(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외부감사 의무화 감사보고서 함께 재무제표 공시	1 (1.2)	11 (13.1)	20 (23.8)	40 (47.6)	12 (14.6)	84 (100)	3.61 (0.93)
공익법인의 경제부담 덜기위해 자발적 봉사자 외부감사서비스 제공	3 (3.6)	10 (11.9)	22 (26.2)	40 (47.6)	9 (10.7)	84 (100)	3.50 (0.96)



<그림 3-17-2>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1(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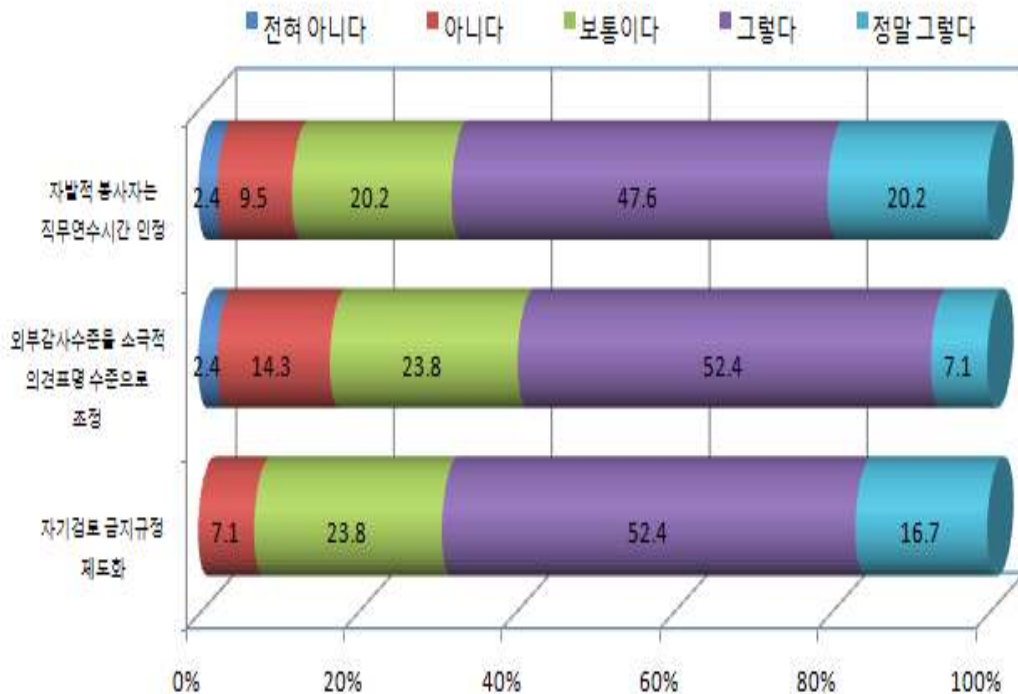
②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2

- <표 3-17-3>, <그림 3-17-3>는 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의 비영리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공인회계사의 자발적 봉사에 대해 직무연수시간 인정, 소극적 검토의견으로 의견표명수준 조정, 자기검토 금지규정 제도화에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표 3-17-3>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2(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자발적 봉사는 직무연수시간 인정	2 (2.4)	8 (9.5)	17 (20.2)	40 (47.6)	17 (20.2)	84 (100)	3.74 (0.97)
외부감사수준을 소극적 의견표명 수준으로 조정	2 (2.4)	12 (14.3)	20 (23.8)	44 (52.4)	6 (7.1)	84 (100)	3.48 (0.91)
자기검토 금지규정 제도화	-	6 (7.1)	20 (23.8)	44 (52.4)	14 (16.7)	84 (100)	3.79 (0.81)



<그림 3-17-3>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2(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3) 자산규모 10억 미만, 연간 현금수입 1억 미만인 비영리공익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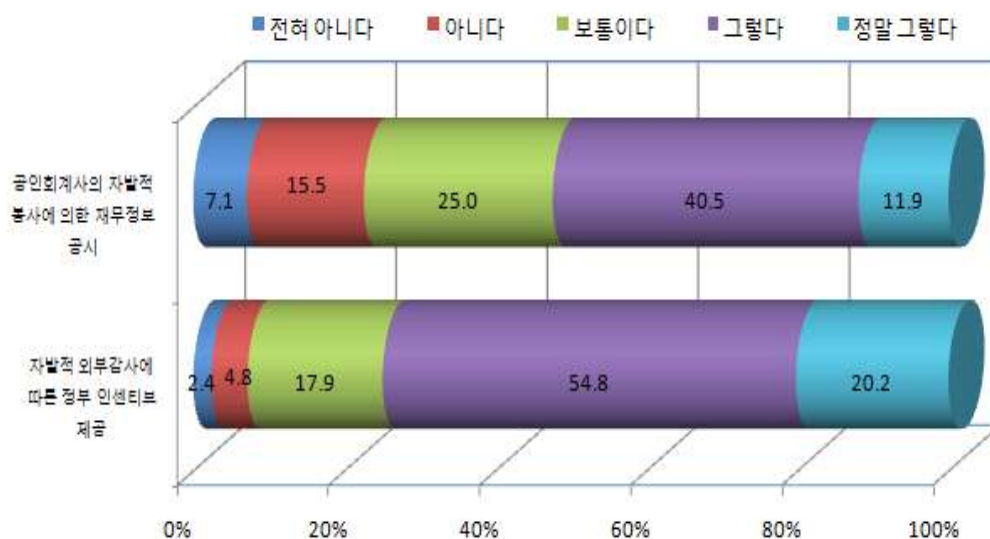
①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

- <표 3-17-4>, <그림 3-17-4>는 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 1억 미만인 비영리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영세규모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의무는 부과하지 않되 공인회계사의 자발적 봉사를 통해 재무정보는 공시하도록 하고, 자발적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표 3-17-4>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 1억 미만)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공인회계사의 자발적 봉사에 의한 재무정보 공시	6 (7.1)	13 (15.5)	21 (25.0)	34 (40.5)	10 (11.9)	84 (100)	3.35 (1.10)
자발적 외부감사에 따른 정부 인센티브 제공	2 (2.4)	4 (4.8)	15 (17.9)	46 (54.8)	17 (20.2)	84 (100)	3.86 (0.88)



<그림 3-17-4>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 1억 미만)

6) 정보이용자 의견 요약

- 응답자의 96.4%가 기부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소속 종교단체소개 및 지인의 소개로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한 법인에 대한 정보의 접근경로는 관련 법인의 홈페이지가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당 경로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는 법인의 주요행사 관련 정보(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정보가 적시성/충분성과 신뢰성이 미흡(3.0 미만)하며, 기부금 수입 및 지출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3.93) 나타났다.
- **정보이용자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과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내부통제제도가 투명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부정 및 오류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법인의 수입과 지출이 대표자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법인 운영정보의 투명공개에 대한 대표자의 의지, 후원금의 적절한 관리, 윤리경영 등에 있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정보이용자의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조사결과**, 불성실기부금 운영 적발단체와 성실기부금 운영 모범단체에 대한 공개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기부자에게 누가 수혜자인지 등 정기적인 정보의 제공, 구성원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 **정보이용자의 법인 외부감사제도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외부감사는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제고는 물론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데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 **정보이용자의 법인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 외부감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평균 4.49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또한 법제정을 통해 외부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4.05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한편, “사회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단체도 외부감사를 받아 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4.26으로 외부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정보이용자의 법인 외부감사제도 법제화에 대한 방안 조사결과**, 자산규모에 따라 외부감사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즉, 100억원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의 의무화, 배정제도에 의한 외부감사인 선임, 감리제도 도입, 자기검토 금지제도화 등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10-100억 사이의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되 비영리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자발적인 봉사를 활용하자는 데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공인회계사의 자발적 봉사에 대해 직무연수시간 인정, 소극적 검토의견으로 의견표명수준 조정, 자기검토 금지제도화에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10억미만의 법인에 대해서는 영세규모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의무는 부과하지 않되 공인회계사의 자발적 봉사를 통해 재무정보는 공시하도록 하고, 자발적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4. 주무관청 관계자 설문결과

1) 응답자 특성별 분포

(1) 개인특성

- <표 3-18-1>은 비영리공익법인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및 회계공시제도에 대한 주무관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특성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55%가 여성 종사자, 40대가 45%, 지역은 광역자치단체가 64%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8-1> 응답자 특성별 분포

특성		빈도(%)
성별	남자	50(45.0)
	여자	61(55.0)
연령	30대	25(22.5)
	40대	50(45.0)
	50대	33(29.7)
	60대 이상	3(2.7)
지역	서울경기권	31(27.9)
	광역자치단체	71(64.0)
	기타	9(8.1)
계		111(100)

(2) 직급 및 경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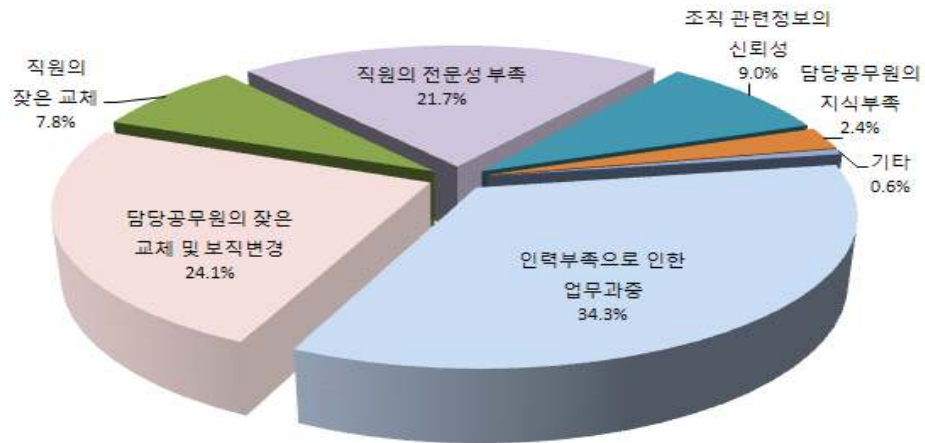
- <표 3-18-2>은 응답자의 각 기관에서의 직급 및 업무경력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82.9%가 “서기보”로 나타났고, 업무경력은 37.8%가 “1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2> 응답자의 직급 및 경력 현황

특성		빈도(%)
직급	서기보	92(82.9)
	서기	2(1.8)
	주사보	10(9.0)
	주사	4(3.6)
	서기관	3(2.7)
업무경력	1년 미만	26(23.4)
	1-3년 미만	22(19.8)
	3-5년 미만	9(8.1)
	5-10년 미만	12(10.8)
	10년 이상	42(37.8)
계		111(100)

(3) 비영리법인 지도 및 감독 시의 어려운 점

- <그림 3-18-1>은 주무관청 관계자의 비영리법인 지도 및 감독 시에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 34.3%,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및 보직변경” 24.2%, “직원의 전문성 부족”이 21.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1> 비영리법인 지도 및 감독시의 어려움(n=166, 다중응답)

(4) 비영리법인 제출 결산자료 정보 인식수준

- <표 3-19-1>, <그림 3-19-1>은 주무관청 관계자의 비영리법인이 제출하는 결산자료 및 정보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받은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신뢰성이 높다”는 설문에 3.5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반면, 비영리법인의 제공정보에 대한 이해가능성, 신뢰성, 충분성은 미흡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표 3-19-1> 비영리법인 제출 결산자료 및 정보 인식수준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현재 이용정보는 이해가능하다	1 (0.9)	17 (15.3)	68 (61.3)	22 (19.8)	3 (2.7)	111 (100)	3.08 (0.70)
현재 이용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	2 (1.8)	21 (18.9)	61 (55.0)	26 (23.4)	1 (0.9)	111 (100)	3.03 (0.73)
현재 이용정보는 충분하다.	6 (5.4)	36 (32.4)	54 (48.6)	14 (12.6)	1 (0.9)	111 (100)	2.71 (0.79)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받은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신뢰성이 높다	-	10 (9.0)	47 (42.3)	42 (37.8)	12 (10.8)	111 (100)	3.50 (0.81)



<그림 3-19-1> 비영리법인 제출 결산자료 및 정보 인식수준

(5) 비영리법인 제출 결산자료 정보의 활용도

- <표 3-19-2>, <그림 3-19-2>은 주무관청 관계자의 비영리법인이 제출하는 결산자료 및 정보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결산보고서의 적기 활용성과 결산보고서가 지원여부결정에 중요한 자료라는 의견에는 각각 3.16, 3.23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익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류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인 정보공시 비영리법인에 대해 정부지원결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설문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표 3-19-2> 비영리법인 제출 결산자료 및 정보의 활용도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서를 적기에 제출받아 활용하고 있다.	3 (2.7)	17 (15.3)	54 (48.6)	33 (29.7)	4 (3.6)	111 (100)	3.16 (0.83)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서는 지원여부결정시 중요 자료가 된다.	2 (1.8)	17 (15.3)	50 (45.0)	38 (34.2)	4 (3.6)	111 (100)	3.23 (0.82)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받은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정부지원결정시 인센티브를 준다.	11 (9.9)	27 (24.3)	57 (51.4)	16 (14.4)	-	111 (100)	2.70 (0.84)
법인의 종합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법인은 지원여부결정시 인센티브를 준다.	10 (9.0)	23 (20.7)	58 (52.3)	19 (17.1)	-	110 (100)	2.78 (0.84)



<그림 3-19-2> 비영리법인 제출 결산자료 및 정보의 활용도

2) 내부통제제도의 인식 및 운영실태

(1) 내부통제제도의 인식수준

- <표 3-20-1>, <그림 3-20-1>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제도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제고, 부정 및 오류감소, 기부금액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표 3-20-1>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비영리기관 운영투명성 제고에의 핵심적 역할	-	9 (8.1)	43 (38.7)	51 (45.9)	8 (7.2)	111 (100)	3.52 (0.75)
비영리기관 재무보고 부정, 오류 감소에 도움	-	5 (4.5)	45 (40.5)	54 (48.6)	7 (6.3)	111 (100)	3.57 (0.68)
기부여부 및 금액결정 도움	-	9 (8.1)	56 (50.5)	42 (37.8)	4 (3.6)	111 (100)	3.37 (0.68)



<그림 3-20-1> 내부통제제도 인식수준

(2)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 <표 3-20-2>, <그림 3-20-2>는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의 의사결정이 이사장 및 사무총장 재량으로 결정되는 편이며, 이사장의 권한 남용이나 부정 방지프로그램이 적절히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주무관청의 감독절차가 오류나 부정의 방지효과가 있는가의 설문에 대하여 다소 높지 않은 응답을 보였다.

<표 3-20-2>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1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법인의사결정은 이사장/ 사무총장 재량결정	2 (1.8)	12 (10.8)	31 (27.9)	49 (44.1)	17 (15.3)	111 (100)	3.60 (0.94)
이사장 권한남용에 적절한 견제/부정 방지프로그램 가동	4 (3.6)	33 (29.7)	59 (53.2)	14 (12.6)	1 (0.9)	111 (100)	2.77 (0.75)
주무관청의 감독절차는 오류/부정방지 효과 있다.	-	11 (9.9)	47 (42.3)	44 (39.6)	9 (8.1)	111 (100)	3.46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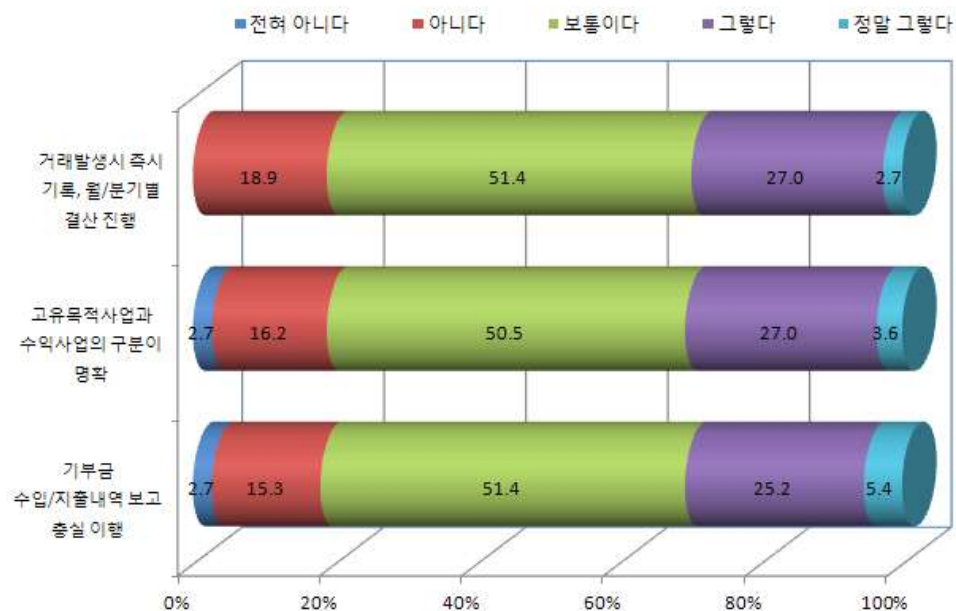
<그림 3-20-2>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1

- <표 3-20-3>, <그림 3-20-3>는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거래의 기록과 결산, 기부금의 수입과 지출보고,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등 회계기록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에 대해 보통(3점)을 약간 넘는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표 3-20-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2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거래발생시 즉시기록, 월별(분기별) 결산 진행	-	21 (18.9)	57 (51.4)	30 (27.0)	3 (2.7)	111 (100)	3.14 (0.75)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보고 충실 이행	3 (2.7)	17 (15.3)	57 (51.4)	28 (25.2)	6 (5.4)	111 (100)	3.15 (0.84)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이 명확	3 (2.7)	18 (16.2)	56 (50.5)	30 (27.0)	4 (3.6)	111 (100)	3.13 (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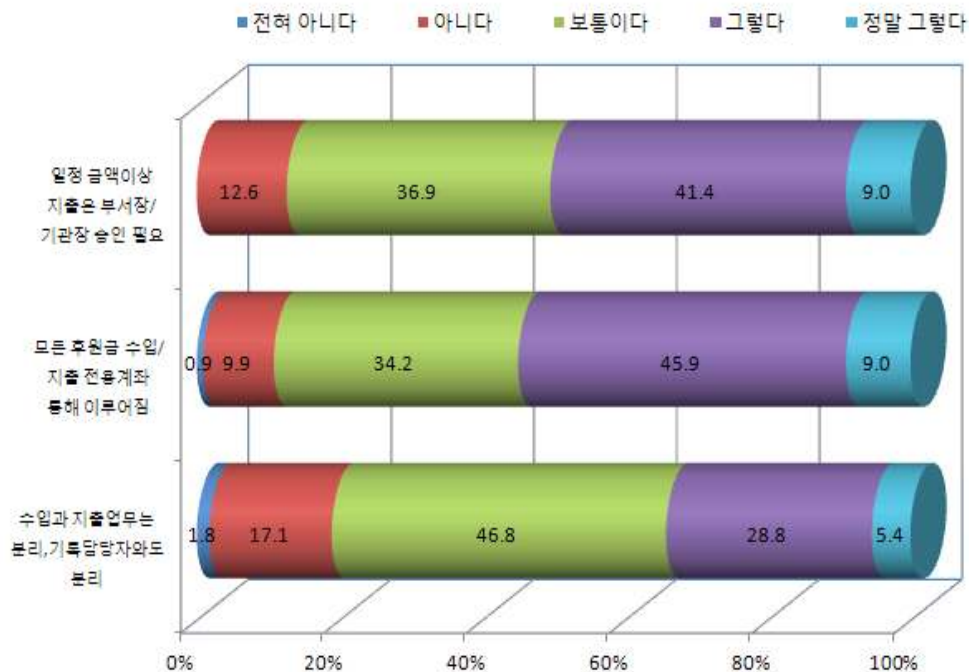
<그림 3-20-3>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2

- <표 3-20-4>, <그림 3-20-4>는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한 승인,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별도 계좌사용, 적절한 업무분장에 대한 설문에 대해 3.19-3.52로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표 3-20-4>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3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일정 금액이상 지출은 부서장/기관장 승인 필요	-	14 (12.6)	41 (36.9)	46 (41.4)	10 (9.0)	111 (100)	3.47 (0.83)
모든 후원금수입/지출 전용계좌 통해 이루어짐	1 (0.9)	11 (9.9)	38 (34.2)	51 (45.9)	10 (9.0)	111 (100)	3.52 (0.83)
수입과 지출업무는 분리, 기록담당자와도 분리	2 (1.8)	19 (17.1)	52 (46.8)	32 (28.8)	6 (5.4)	111 (100)	3.19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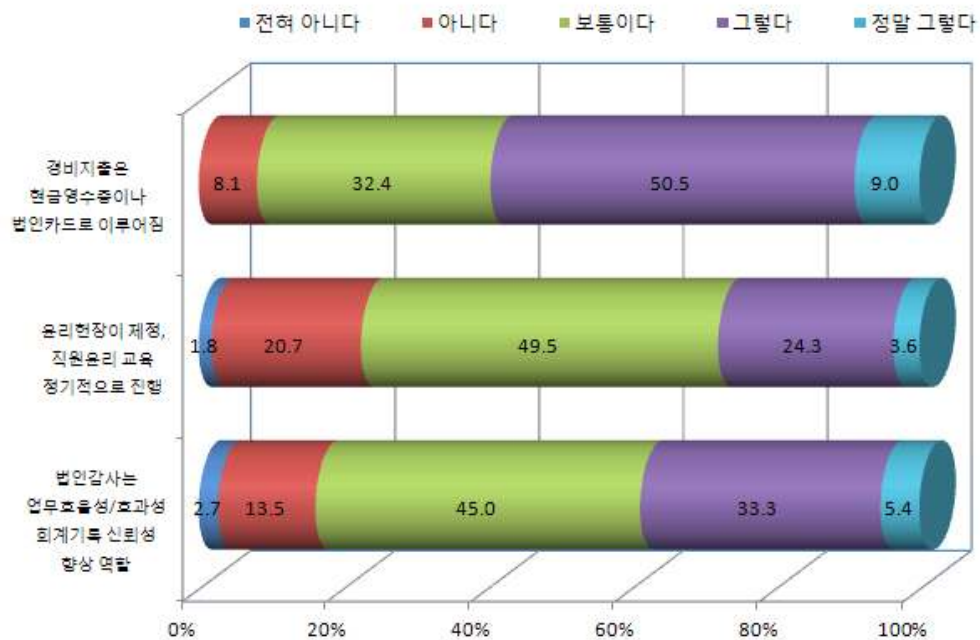
<그림 3-20-4>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3

- <표 3-20-5>, <그림 3-20-5>는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경비지출은 현금영수증이나 법인카드로 이루어진다”가 3.60으로 나타났다. 윤리헌장의 제정 및 윤리교육 진행과 법인감사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표 3-20-5>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4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경비지출은 현금영수증이나 법인카드로 이루어짐	-	9 (8.1)	36 (32.4)	56 (50.5)	10 (9.0)	111 (100)	3.60 (0.77)
윤리헌장이 제정, 직원윤리 교육 정기적으로 진행	2 (1.8)	23 (20.7)	55 (49.5)	27 (24.3)	4 (3.6)	111 (100)	3.07 (0.82)
법인감사는 업무효율성/효과성 회계기록 신뢰성 향상 역할	3 (2.7)	15 (13.5)	50 (45.0)	37 (33.3)	6 (5.4)	111 (100)	3.25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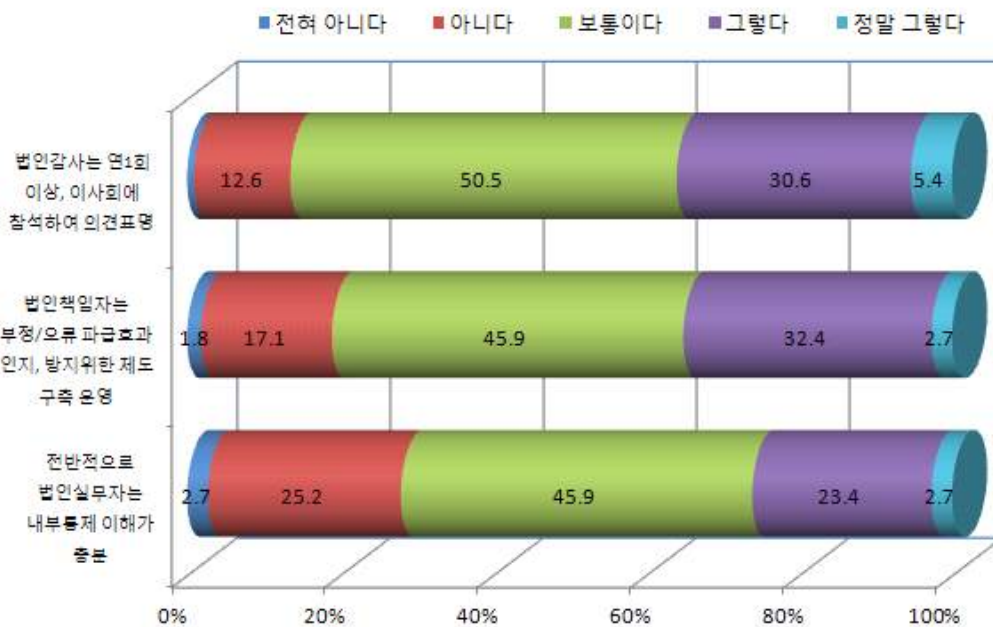
<그림 3-20-5>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4

- <표 3-20-6>, <그림 3-20-6>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 감사의 실질적인 활동, 법인책임자의 부정/오류 방지제도 구축운영, 실무자의 내부통제 이해수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응답을 보였다.

<표 3-20-6>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5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법인감사는 연1회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표명	1 (0.9)	14 (12.6)	56 (50.5)	34 (30.6)	6 (5.4)	111 (100)	3.27 (0.78)
법인책임자는 부정/오류 파급효과 인지, 방지위한 제도 구축 운영	2 (1.8)	19 (17.1)	51 (45.9)	36 (32.4)	3 (2.7)	111 (100)	3.17 (0.81)
전반적으로 법인실무자는 내부통제 이해가 충분	3 (2.7)	28 (25.2)	51 (45.9)	26 (23.4)	3 (2.7)	111 (100)	2.98 (0.84)



<그림 3-20-6>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5

3)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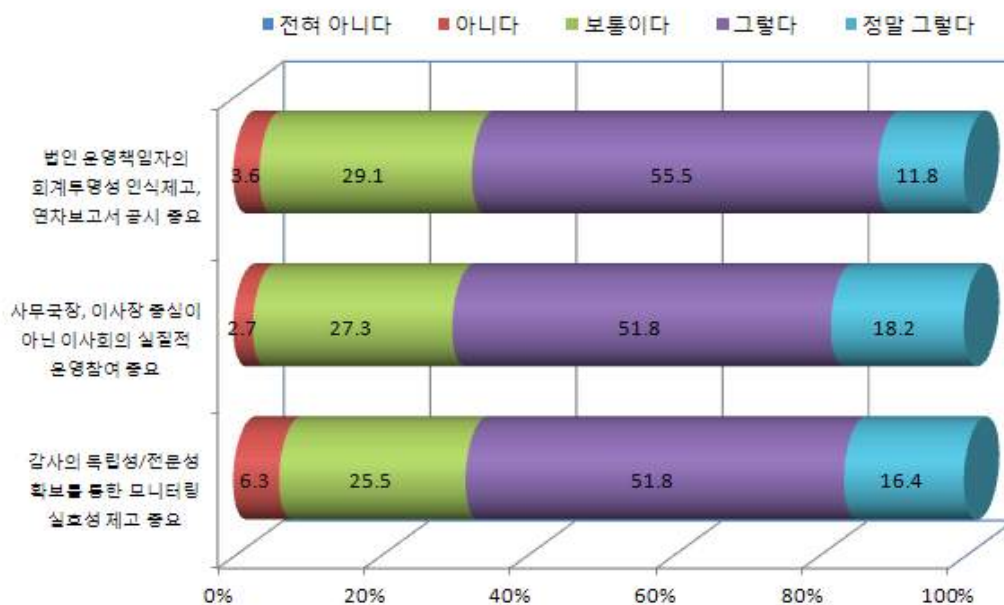
(1)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1

- <표 3-21-1>, <그림 3-21-1>은 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법인책임자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 제고, 이사회실의 실질적 운영,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내부감사인의 실질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표 3-21-1>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1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법인 운영책임자의 회계투명성 인식제고, 연차보고서 공시 중요	-	4 (3.6)	32 (29.1)	61 (55.5)	13 (11.8)	110 (100)	3.75 (0.70)
사무국장, 이사장 중심이 아닌 이사회실의 실질적 운영참여 중요	-	3 (2.7)	30 (27.3)	57 (51.8)	20 (18.2)	110 (100)	3.85 (0.74)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중요	-	7 (6.3)	28 (25.5)	57 (51.8)	18 (16.4)	110 (100)	3.78 (0.79)



<그림 3-21-1>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1

(2)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2

- <표 3-21-2>, <그림 3-21-2>은 법인의 내부통제제도 개선 의견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기부자에 대한 정보제공, 통일된 회계처리기준 제정, 구성원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3-21-2>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2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기부단체에게 누가 수혜자인지 등 정기적 정보 제공 중요	-	6 (5.5)	21 (19.1)	57 (51.8)	26 (23.6)	110 (100)	3.94 (0.80)
발생기준/복식부기방식의 통일된 회계처리기준 제정 필요	-	3 (2.7)	24 (21.8)	60 (54.5)	23 (20.9)	110 (100)	3.94 (0.73)
구성원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 중요	-	6 (5.5)	23 (20.9)	58 (52.7)	23 (20.9)	110 (100)	3.89 (0.79)



<그림 3-21-2>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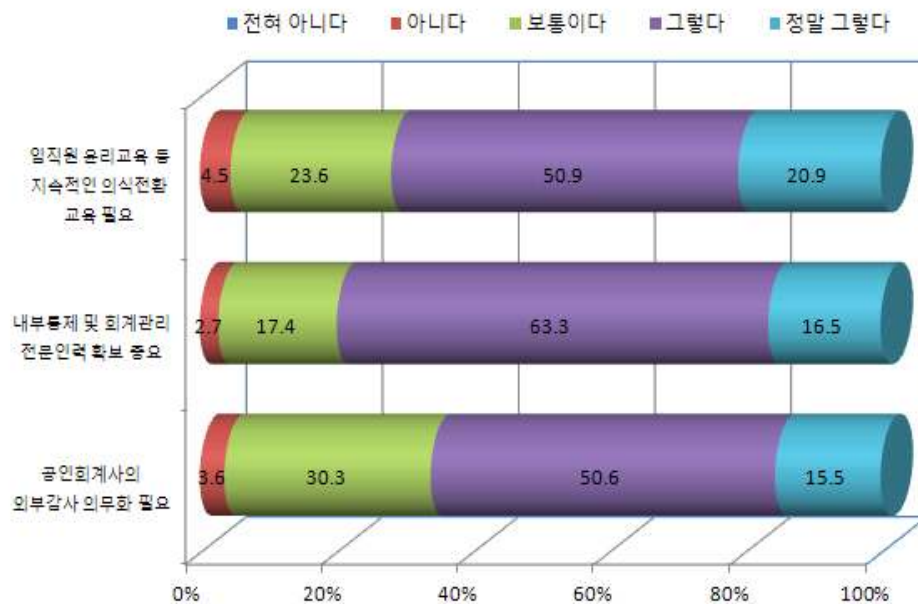
(3)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3

- <표 3-21-3>, <그림 3-21-3>은 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임직원 윤리교육,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의 확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의무화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였다.

<표 3-21-3>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3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임직원 윤리교육 등 지속적인 의식전환 교육 필요	-	5 (4.5)	26 (23.6)	56 (50.9)	23 (20.9)	110 (100)	3.88 (0.78)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 확보 중요	-	3 (2.7)	19 (17.4)	69 (63.3)	18 (16.5)	109 (100)	3.94 (0.67)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의무화 필요	-	4 (3.6)	33 (30.3)	56 (50.9)	17 (15.5)	110 (100)	3.78 (0.75)



<그림 3-21-3>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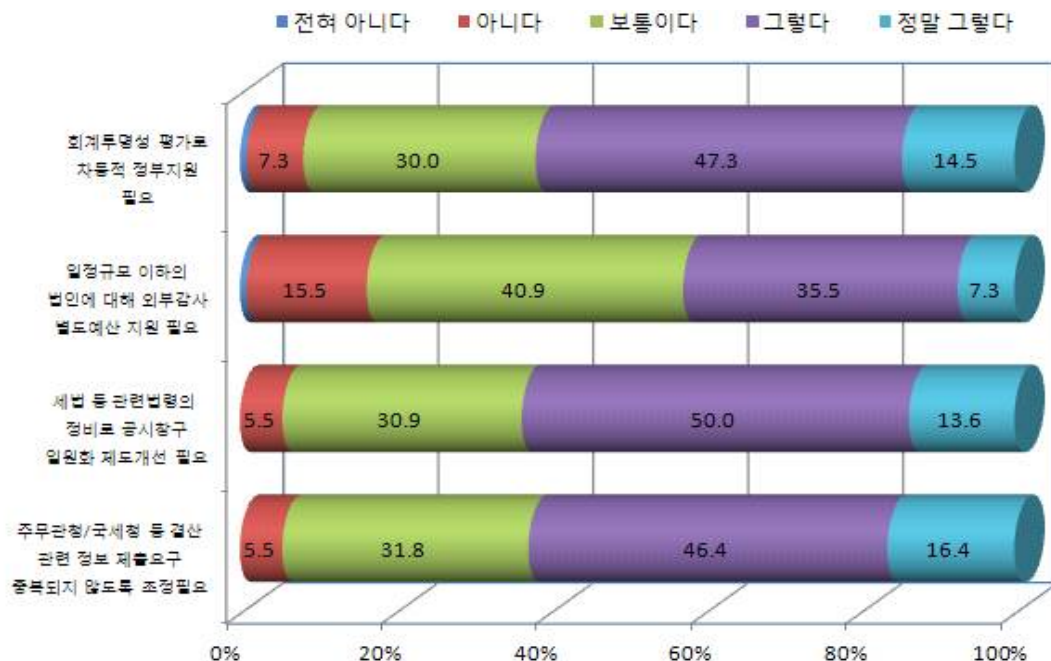
(4)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4

- <표 3-21-4>, <그림 3-21-4>은 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개선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회계투명성에 따른 정부 차등지원, 관련법령 정비를 통한 공시창구 일원화, 법인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의 중복 개선 등의 필요성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3-21-4>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4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회계투명성 평가로 차등적 정부지원 필요	1 (0.9)	8 (7.3)	33 (30.0)	52 (47.3)	16 (14.5)	110 (100)	3.67 (0.85)
일정규모 이하의 법인에 대해 외부감사 별도예산 지원 필요	1 (0.9)	17 (15.5)	45 (40.9)	39 (35.5)	8 (7.3)	110 (100)	3.33 (0.86)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로 공시창구 일원화 제도개선 필요	-	6 (5.5)	34 (30.9)	55 (50.0)	15 (13.6)	110 (100)	3.72 (0.77)
주무관청/국세청 등 결산관련 정보 제출요구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필요	-	6 (5.5)	35 (31.8)	51 (46.4)	18 (16.4)	110 (100)	3.74 (0.80)



<그림 3-21-4>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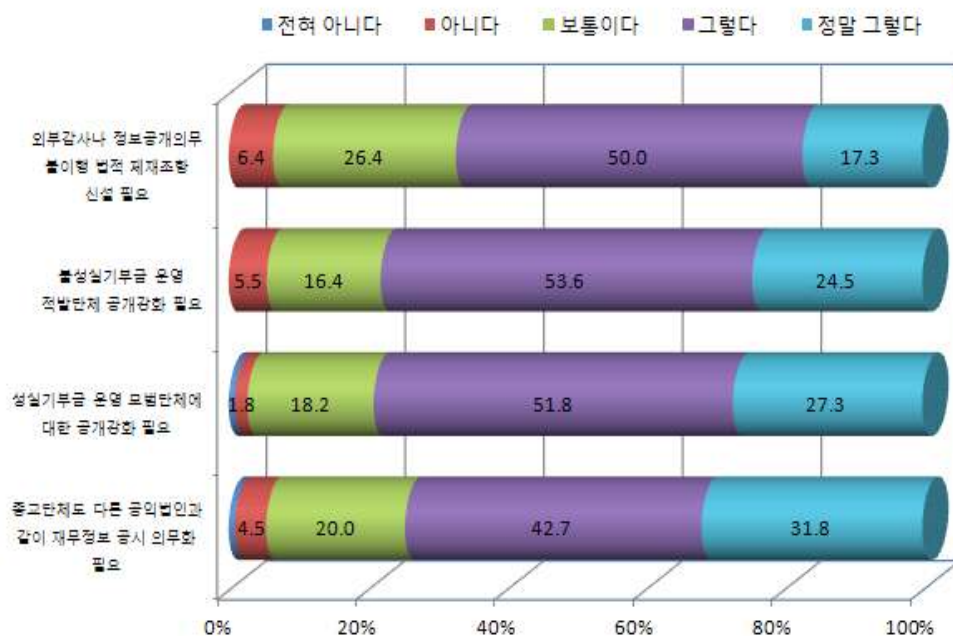
(5)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5

- <표 3-21-5>, <그림 3-21-5>은 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개선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외부감사 및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 신설, 불성실 기부금운영단체 및 성실기부금운영단체에 대한 공개강화의 필요성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한편, 종교단체도 다른 공익법인과 같이 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표 3-21-5>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5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외부감사나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법적 제재조항 신설 필요	-	7 (6.4)	29 (26.4)	55 (50.0)	19 (17.3)	110 (100)	3.78 (0.81)
불성실기부금 운영 적발단체 공개강화 필요	-	6 (5.5)	18 (16.4)	59 (53.6)	27 (24.5)	110 (100)	3.97 (0.79)
성실기부금 운영 모범단체에 대한 공개강화 필요	1 (0.9)	2 (1.8)	20 (18.2)	57 (51.8)	30 (27.3)	110 (100)	4.03 (0.78)
종교단체도 다른 공익법인과 같이 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필요	1 (0.9)	5 (4.5)	22 (20.0)	47 (42.7)	35 (31.8)	110 (100)	4.00 (0.89)



<그림 3-21-5> 내부통제제도 및 회계정보 공시의견5

4) 외부감사제도 관련 의견

(1)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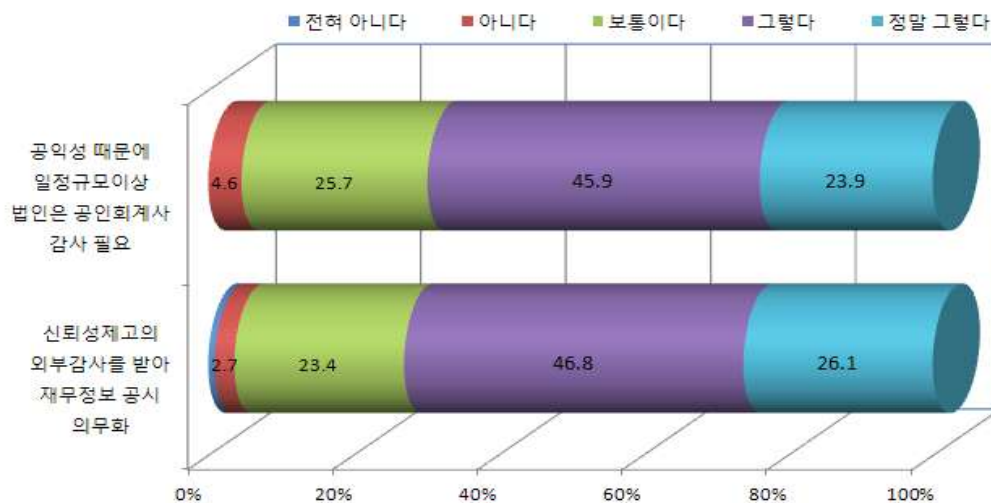
① 외부감사의 필요성

- <표 3-22-1>, <그림 3-22-1>는 외부감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일정 규모이상의 비영리법인은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3-22-1> 외부감사의 필요성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공익성 때문에 일정규모이상 법인은 공인회계사 감사 필요	-	5 (4.6)	28 (25.7)	50 (45.9)	26 (23.9)	109 (100)	3.89 (0.82)
신뢰성제고의 외부감사를 받아 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1 (0.9)	3 (2.7)	26 (23.4)	52 (46.8)	29 (26.1)	111 (100)	3.95 (0.83)



<그림 3-22-1> 외부감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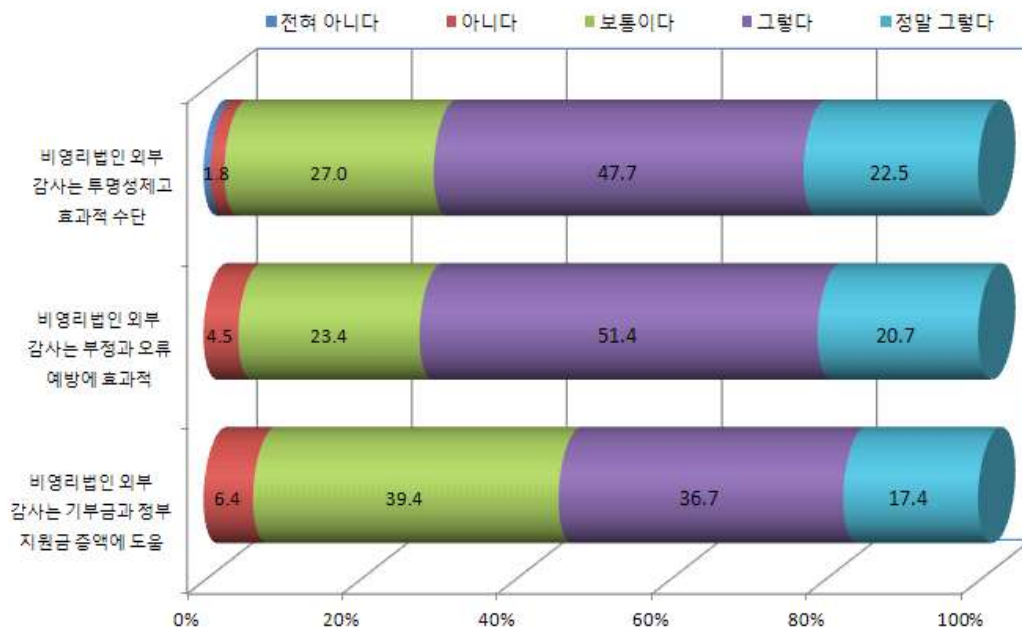
② 외부감사의 효과

- <표 3-22-2>, <그림 3-22-2>는 외부감사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비영리법인 외부감사는 투명성제고와 부정 및 오류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외부감사가 기부금과 정부지원금 증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표 3-22-2> 외부감사의 효과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비영리법인 외부감사는 투명성제고의 효과적 수단	1 (0.9)	2 (1.8)	30 (27.0)	53 (47.7)	25 (22.5)	111 (100)	3.89 (0.80)
비영리법인 외부감사는 부정과 오류예방에 효과적	-	5 (4.5)	26 (23.4)	57 (51.4)	23 (20.7)	111 (100)	3.88 (0.78)
비영리법인 외부감사는 기부금과 정부지원금 증액에 도움	-	7 (6.4)	43 (39.4)	40 (36.7)	19 (17.4)	109 (100)	3.65 (0.84)



<그림 3-22-2> 외부감사의 효과

(2)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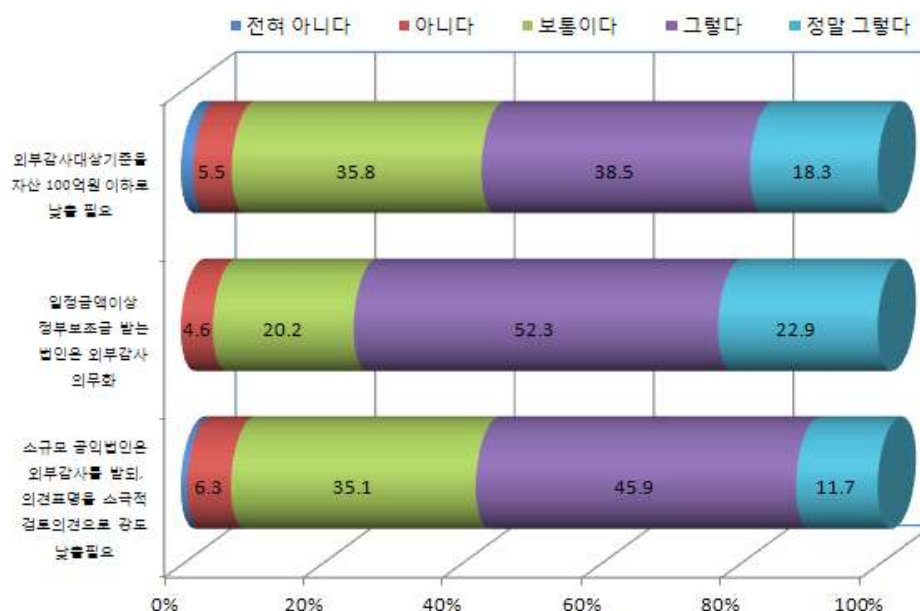
① 외부감사제도 개선1

- <표 3-23-1>, <그림 3-23-1>는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 외부감사대상범위의 확대,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공익법인의 외부감사 의무화,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의견표명수준의 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표 3-23-1> 외부감사제도 개선1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외부감사대상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하로 낮출 필요성	2 (1.8)	6 (5.5)	39 (35.8)	42 (38.5)	20 (18.3)	109 (100)	3.66 (0.91)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외부감사 의무화 필요	-	5 (4.6)	22 (20.2)	57 (52.3)	25 (22.9)	109 (100)	3.94 (0.79)
소규모 공익법인 감사의견표명 수준을 소극적 검토의견 조정 필요	1 (0.9)	7 (6.3)	39 (35.1)	51 (45.9)	13 (11.7)	111 (100)	3.61 (0.81)



<그림 3-23-1> 외부감사제도 개선1

② 외부감사제도 개선2

- <표 3-23-2>, <그림 3-23-2>는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 비영리 공익법인 외부감사에 관한 법적근거의 확립, 감사품질제고를 위한 감독기구의 필요성, 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표 3-23-2> 외부감사제도 개선2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법제정을 통해 공익법인 외부감사 법적 근거 확립	-	4 (3.6)	31 (27.9)	57 (51.4)	19 (17.1)	111 (100)	3.82 (0.75)
감사보고서 품질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과 같은 통합감독기구 필요	1 (0.9)	6 (5.4)	32 (28.8)	57 (51.4)	15 (13.5)	111 (100)	3.71 (0.80)
공인회계사회가 통합감독기구 위탁을 받아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행	1 (0.9)	5 (4.5)	35 (31.5)	57 (51.4)	13 (11.7)	111 (100)	3.68 (0.77)



<그림 3-23-2> 외부감사제도 개선2

5) 외부감사제도 법제화에 대한 실행방안

(1) 자산규모 100억 이상 또는 연간 현금수입 5억원 이상 비영리공익법인

①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

- <표 3-24-1>, <그림 3-24-1>는 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 5억 이상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의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외부감사의 의무화, 배정제도에 의한 감사인선임, 감리제도에 의한 감사품질제고, 자기검토금지 제도화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표 3-24-1>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 5억 이상)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외부감사 의무화 감사보고서 함께 재무제표 공시	1 (0.9)	6 (5.4)	30 (27.0)	53 (47.7)	21 (18.9)	111 (100)	3.78 (0.84)
공공성을 고려, 외부감사인 선임은 공인회계사회나 정부 배정	2 (1.8)	9 (8.1)	33 (29.7)	47 (42.3)	20 (18.0)	111 (100)	3.67 (0.92)
공익법인 감사보고서 감리제도로 감사품질 제고	-	8 (7.2)	33 (29.7)	45 (40.5)	25 (22.5)	111 (100)	3.78 (0.87)
자기검토 금지규정 제도화	-	9 (8.1)	36 (32.4)	46 (41.4)	20 (18.0)	111 (100)	3.69 (0.86)



<그림 3-24-1>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 5억 이상)

(2) 자산규모 10억~100억, 연간 현금수입 1~5억원 비영리공익법인

①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

- <표 3-24-2>, <그림 3-24-2>는 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의 비영리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되 공인회계사회의 감사인 선임 또는 봉사자에 의한 감사수행, 외부감사의 의견표명수준의 조정 및 자기검토금지제도화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표 3-24-2>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외부감사 의무화 감사보고서 함께 재무제표 공시	-	8 (7.2)	41 (36.9)	47 (42.3)	15 (13.5)	111 (100)	3.62 (0.88)
공공성을 고려, 외부감사인 선임은 공인회계사회나 봉사자 선발	-	8 (7.2)	47 (42.3)	38 (34.2)	18 (16.2)	111 (100)	3.59 (0.85)
외부감사수준을 소극적 의견표명 수준으로 조정	-	10 (9.0)	53 (47.7)	35 (31.5)	13 (11.7)	111 (100)	3.46 (0.82)
자기검토 금지규정 제도화	-	7 (6.3)	47 (42.3)	43 (38.7)	14 (12.6)	111 (100)	3.58 (0.79)



<그림 3-24-2>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100억, 수입 1~5억)

(3) 자산규모 10억 미만, 연간 현금수입 1억 미만인 비영리공익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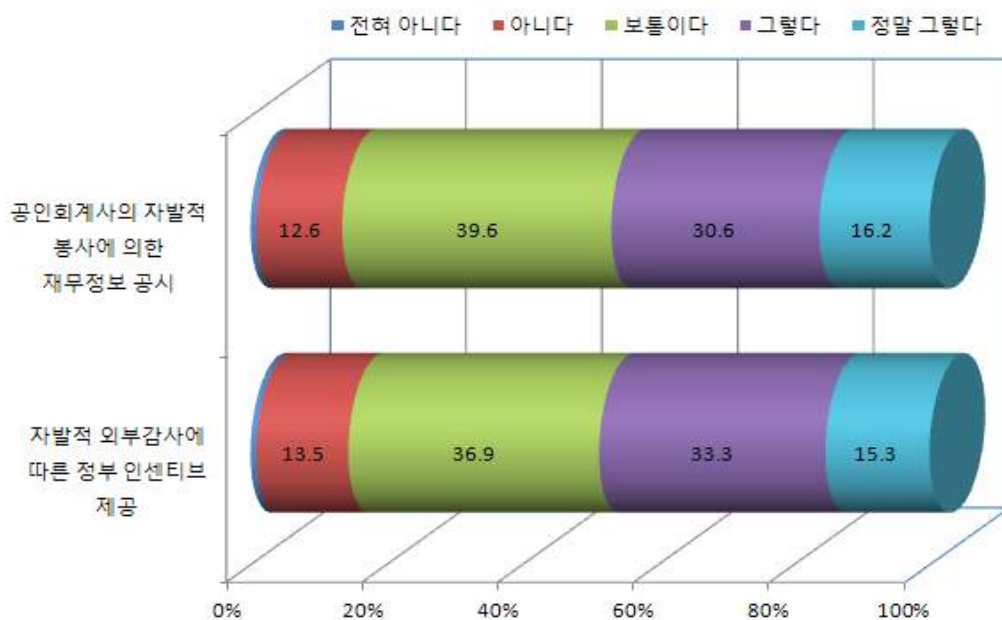
①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

- <표 3-24-3>, <그림 3-24-3>는 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 1억 미만인 비영리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소규모 법인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자발적 외부감사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표 3-24-3>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 1억 미만)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공인회계사의 자발적 봉사에 의한 재무정보 공시	1 (0.9)	14 (12.6)	44 (39.6)	34 (30.6)	18 (16.2)	111 (100)	3.49 (0.94)
자발적 외부감사에 따른 정부 인센티브 제공	1 (0.9)	15 (13.5)	41 (36.9)	37 (33.3)	17 (15.3)	111 (100)	3.49 (0.94)



<그림 3-24-3> 외부감사제도 법제화 방안(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 1억 미만)

6) 주무관청 관계자 의견 요약

- 주무관청 1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주무관청 관계자의 비영리법인 지도 및 감독 시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34.3%),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및 보직변경(24.2%), 직원의 전문성 부족(21.7%)이 애로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제출한 결산자료 정보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자료의 이해가능성, 충분성,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였다(3점 이하).
- **주무관청관계자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과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내부통제제도가 투명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부정 및 오류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운영실태에 관한 설문결과, 법인의 의사결정이 이사장 및 사무총장 재량으로 결정되는 편이며, 이사장의 권한 남용이나 부정 방지프로그램이 적절히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주무관청의 감독절차가 오류나 부정의 방지효과가 있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다소 높지 않은 응답을 보였다. 거래의 기록과 결산, 기부금의 수입과 지출보고,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한 승인,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별도계좌사용, 적절한 업무분장 등 내부통제 절차에 대해 보통 또는 그 이하의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법인 감사의 실질적인 활동, 법인책임자의 부정/오류 방지제도 구축운영, 실무자의 내부통제 이해수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응답을 보였다.
- **주무관청관계자의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조사결과**, 법인책임자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 이사회실질적 운영,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내부감사인의 실질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기부자에 대한 정보제공, 통일된 회계처리기준 제정, 구성원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임직원 윤리교육,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의 확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의무화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였다. 회계투명성에 따른 정부 차등지원, 관련법령 정비를 통한 공시창구 일원화, 법인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의 중복 개선 등의 필요성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외부감사 및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 신설, 불성실 기부금운영단체 및 성실기부금운영단체에 대한 공개강화의 필요성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한편, 종교단체도 다른 공익법인과 같이 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 **주무관청관계자의 법인 외부감사제도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비영리법인은 공익성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은 외부감사 필요하고 법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와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또한 비영리법인 외부감사는 투명성제고와 부정 및 오류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외부감사가 기부금과 정부지원금 증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 **주무관청관계자의 법인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 외부감사대상범위의 확대,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공익법인의 외부감사 의무화,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의견표명수준의 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또한 비영리 공익법인 외부감사에 관한 법적근거의 확립, 감사품질제고를 위한 감독기구의 필요성, 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 **주무관청관계자의 법인 외부감사제도 법제화에 대한 방안 조사결과,**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 외부감사의 의무화, 정부지정에 의한 감사인선임, 감리제도에 의한 감사품질제고, 자기검토금지 제도화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자산규모가 10-100억원 사이의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되 공인회계사회의 감사인 선임 또는 봉사자에 의한 감사수행, 외부감사의 의견표명수준의 조정 및 자기검토금지제도화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소규모 법인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자발적 외부감사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5. 종교신자 설문결과

1) 응답자 특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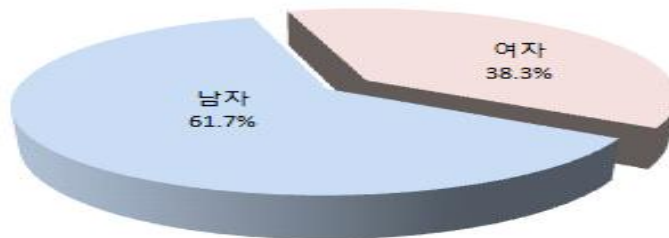
(1) 개인특성

- <그림 3-25-1>는 종교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종교기관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가톨릭 38%, 기독교 37%, 불교 25%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1> 종교기관별 분포(n=208)

- <그림 3-25-2>는 성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가 61.7%로 여자보다 많은 참여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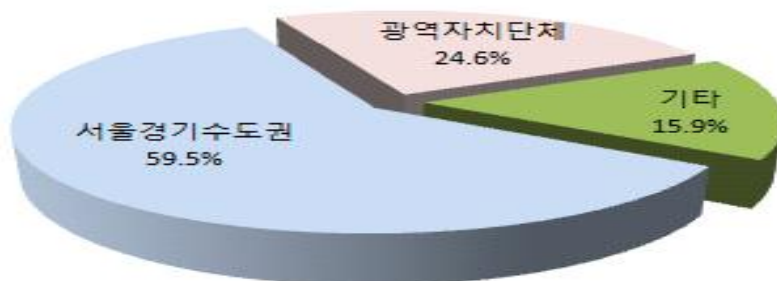
<그림 3-25-2> 성별 분포(n=208)

- <그림 3-25-3>은 연령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50대가 39.2%로 가장 많고, 40대 29.5%, 60대 23.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3> 연령별 분포(n=207)

- <그림 3-25-4>는 지역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경기수도권이 52.6%, 광역자치단체 29.1%, 기타지역 18.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4> 지역별 분포(n=207)

- <표 3-25>은 종교기관별 응답자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종교기관별 응답자 특성별 분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독교는 남성 응답자, 40대, 서울/경기수도권이 많고, 가톨릭은 남성응답자, 50대, 서울/경기수도권, 불교는 여성응답자, 50대, 기타지역 응답자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25> 종교기관별 응답자 특성별 분포

구분		기독교	가톨릭	불교	계	X^2
성별	남	59(77.3)	45(57.0)	21(40.4)	125(60.1)	13.82**
	여	18(22.7)	34(43.0)	31(59.6)	83(39.9)	
연령	30대	1(1.3)	3(3.8)	11(21.2)	15(7.2)	42.44**
	40대	33(42.9)	10(12.8)	14(26.9)	57(27.5)	
	50대	27(35.1)	35(44.9)	21(40.4)	83(40.1)	
	60대 이상	16(20.8)	30(38.5)	6(11.5)	52(25.1)	
지역	서울/경기수도권	47(61.8)	60(75.9)	16(30.8)	123(59.4)	37.39**
	광역자치단체	55(31.6)	10(12.7)	17(32.7)	52(24.6)	
	기타	5(6.6)	9(11.4)	19(36.5)	33(15.9)	
계		77(100)	79(100)	52(100)	20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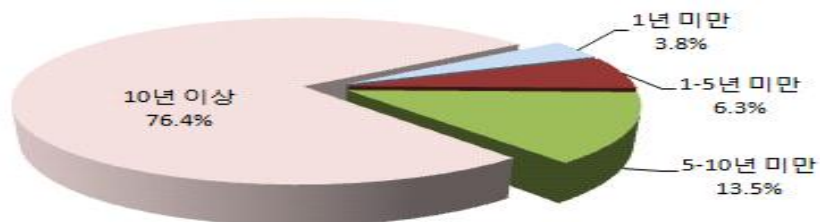
*p< 0.5 ** p<0.01

- <그림 3-25-5>는 응답자의 종교기관에서의 직책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55.8%가 일반신자로 나타났고, 행정담당자 29.2%, 성직자 8.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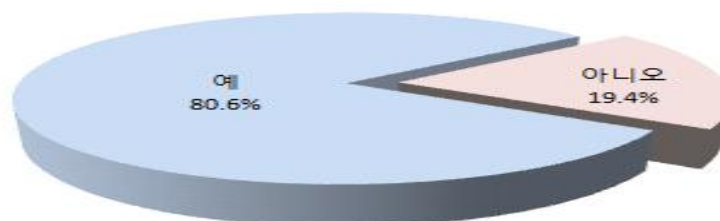
<그림 3-25-5> 직책별 분포(n=262, 다중응답)

- <그림 3-25-6>는 응답자의 신앙생활 기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76.4%가 1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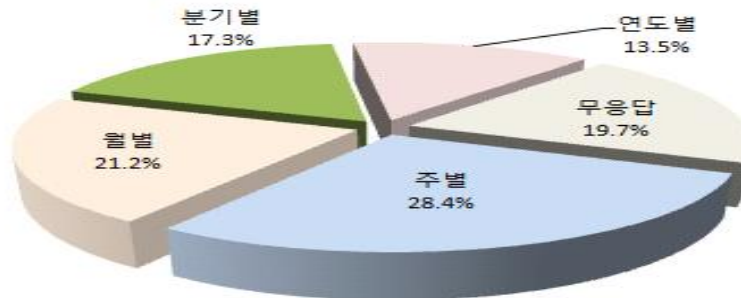
<그림 3-25-6> 신앙기간(n=208)

- <그림 3-25-7>은 응답자의 신앙생활 기관에서의 헌금(교부금, 후원금 등) 재정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80.6% 재정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응답하고 있다.



<그림 3-25-7> 재정정보 제공 현황(n=206)

- <그림 3-25-8>은 재정정보의 제공주기에 대한 응답으로 주로 주별 및 월별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8> 재정정보 제공 주기(n=208)

- <그림 3-25-9>은 재정정보의 제공 내용에 대한 응답으로 주로 “월별수지”와 “현금수입” 정보가 많았다.



<그림 3-25-9> 재정정보 제공 내용(n=420, 다중응답)

2)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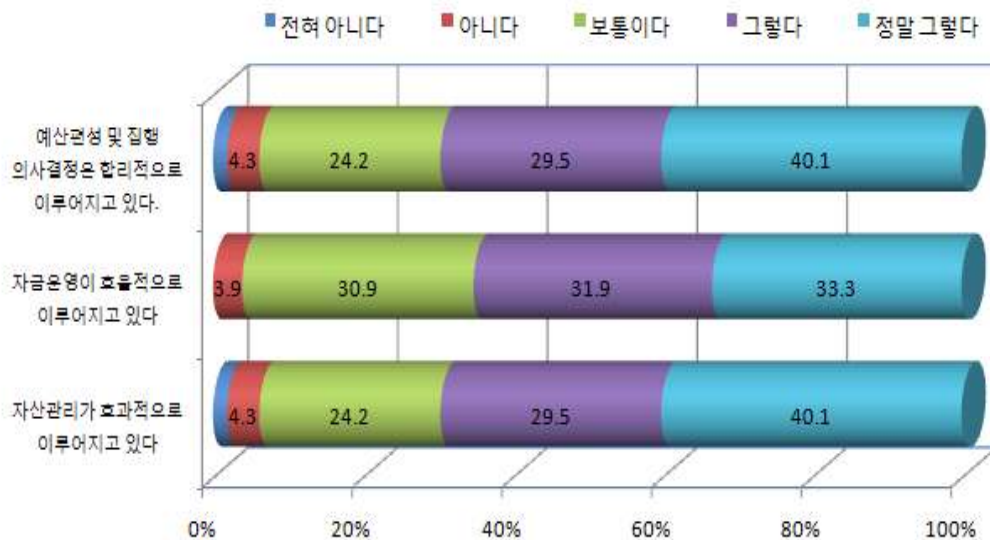
(1)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1

- <표 3-26-1>, <그림 3-26-1>은 종교단체의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사결정은 위원회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운영이나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3-26-1>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 의견1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예산편성 및 집행의사결정은 위원회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짐	4 (1.9)	9 (4.3)	50 (24.2)	61 (29.5)	83 (40.1)	207 (100)	4.01 (1.00)
자금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	8 (3.9)	64 (30.9)	66 (31.9)	69 (33.3)	207 (100)	3.95 (0.89)
자금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1 (0.5)	5 (2.4)	69 (33.3)	69 (33.3)	63 (30.3)	207 (100)	3.91 (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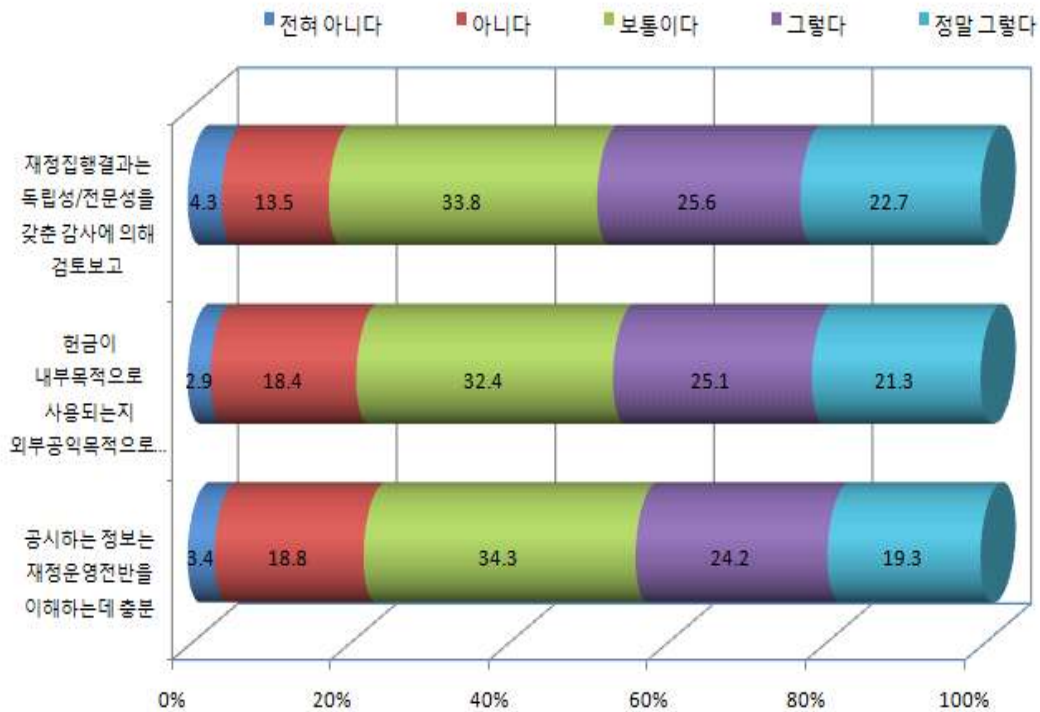
<그림 3-26-1>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 의견1

- <표 3-26-2>, <그림 3-26-2>은 종교단체의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집행결과의 감사인에 의한 검토 및 보고, 현금 등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정보공개에의 충분성에 대한 설문에는 다소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표 3-26-2>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 의견2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재정집행결과는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감사에 의해 검토/보고	9 (4.3)	28 (13.5)	70 (33.8)	53 (25.6)	47 (22.7)	207 (100)	3.49 (1.11)
현금 등이 내부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외부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정보제공	6 (2.9)	38 (18.4)	67 (32.4)	52 (25.1)	44 (21.3)	207 (100)	3.43 (1.10)
신자들에게 공시하는 정보는 기관의 재정운영전반을 이해하는데 충분	7 (3.4)	39 (18.8)	71 (34.3)	50 (24.2)	40 (19.3)	207 (100)	3.37 (1.09)



<그림 3-26-2>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 의견2

- <표 3-26-3>은 각 종교기관별 기관의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기독교와 카톨릭 소속 응답자의 평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6-3> 종교기관별 기관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 의견 차이분석

조 사 항 목	기독교 (n=77)	카톨릭 (n=78)	불교 (n=52)	F-value
예산편성 및 집행의사결정은 위원회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짐	4.31 (0.96)	4.06 (0.84)	3.50 (1.07)	11.49**
자금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	4.06 (0.95)	4.00 (0.85)	3.69 (0.83)	3.00*
자금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4.09 (0.92)	3.87 (0.87)	3.69 (0.78)	3.37*
재정집행결과는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감사에 의해 검토/보고	3.71 (1.15)	3.67 (1.04)	2.88 (0.94)	11.23**
현금 등이 내부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외부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정보제공	3.79 (0.99)	3.47 (1.13)	2.85 (0.97)	12.80**
신자들에게 공시하는 정보는 기관의 재정운영전반을 이해하는데 충분	3.71 (1.00)	3.45 (1.10)	2.75 (0.99)	13.80**

* p< 0.05 ** p< 0.01

3)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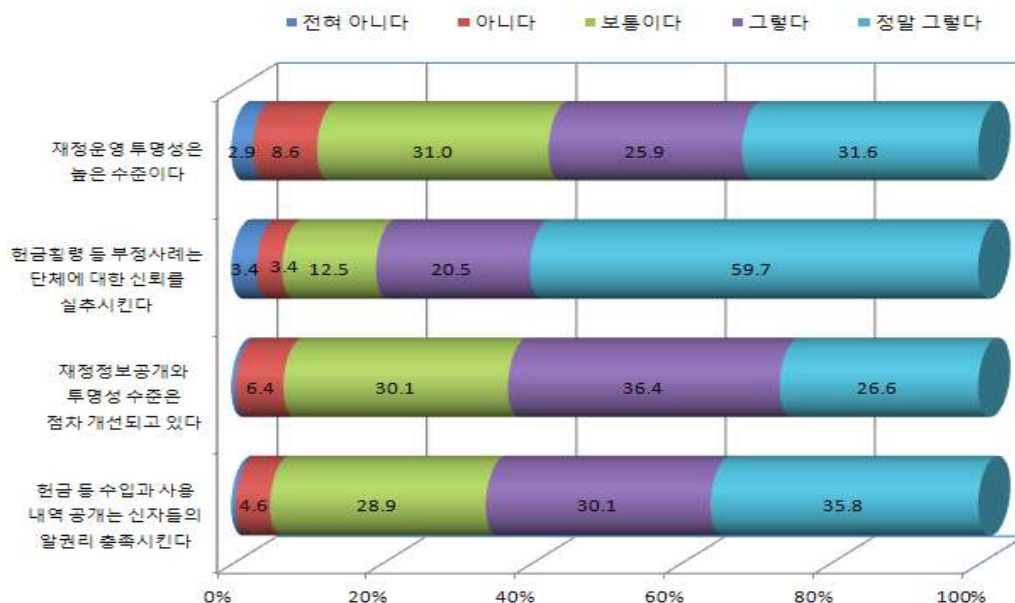
(1)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1

- <표 3-27-1>, <그림 3-27-1>은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인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재정운영 투명성은 높으며 투명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종교단체의 횡령 등 부정 사례가 종교분야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으며 종교단체의 현금수입과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3-27-1>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 의견1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은 높은 수준이다.	7 (3.4)	18 (8.7)	58 (28.2)	62 (30.1)	61 (29.6)	206 (100)	3.74 (1.08)
현금횡령 등 부정사례는 단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다.	6 (2.9)	6 (2.9)	26 (12.5)	43 (20.7)	127 (61.1)	208 (100)	4.34 (1.00)
재무정보공개와 투명성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2 (1.0)	12 (5.8)	59 (28.4)	78 (37.5)	54 (26.0)	205 (100)	3.83 (0.92)
현금 등 수입과 사용내역공개는 신자들의 알권리 충족시킨다.	2 (1.0)	12 (5.8)	59 (28.5)	63 (30.4)	71 (34.3)	207 (100)	3.91 (0.97)



<그림 3-27-1>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 의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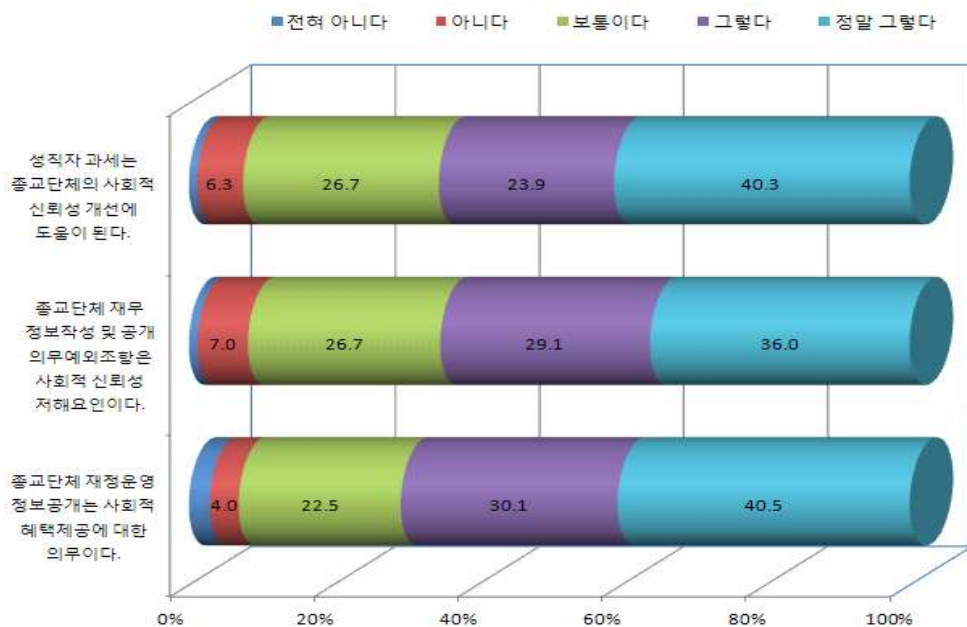
(2)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2

- <표 3-27-2>, <그림 3-27-2>은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인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성직자 과세가 종교단체의 신뢰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종교단체에 대한 재무정보의 공개의무 면제가 사회적 신뢰성을 저해하며, 종교단체에도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설문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3-27-2>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 의견2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성직자 과세는 종교단체의 사회적 신뢰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	2 (1.0)	12 (5.8)	55 (26.4)	55 (26.4)	84 (40.4)	208 (100)	4.00 (0.99)
종교단체 재무정보작성 및 공개의무 예외조항은 사회적 신뢰성 저해요인이다.	2 (1.0)	12 (5.8)	56 (27.2)	62 (30.1)	74 (35.9)	206 (100)	3.94 (0.97)
종교단체 재정운영 정보공개는 사회적 혜택제공에 대한 의무이다.	6 (2.9)	7 (3.4)	46 (22.4)	66 (32.2)	80 (39.0)	205 (100)	4.01 (1.01)



<그림 3-27-2>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 의견2

- <표 3-27-3>은 각 종교기관별 기관의 재정운영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대한 인식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기독교와 가톨릭 소속 응답자의 평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높은 수준이다”와 “투명성 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기독교 소속 응답자가 좀 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신뢰성과 관련하여서는 가톨릭 소속 응답자가 좀 더 높은 긍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7-3> 종교기관별 재정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의견 차이분석

조 사 항 목	기독교 (n=77)	가톨릭 (n=79)	불교 (n=52)	F-value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은 높은 수준이다.	4.08 (0.95)	3.65 (1.12)	3.38 (1.07)	7.23**
헌금횡령 등 부정사례는 단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다.	4.14 (1.13)	4.68 (0.70)	4.12 (1.07)	7.98**
재무정보공개와 투명성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4.00 (0.86)	3.86 (1.00)	3.54 (0.80)	4.05**
헌금 등 수입과 사용내역공개는 신자들의 알권리 충족시킨다.	4.00 (0.86)	4.06 (1.03)	3.56 (0.96)	4.91**
성직자 과세는 종교단체의 사회적 신뢰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	3.88 (1.07)	4.38 (0.85)	3.58 (0.87)	12.16**
종교단체 재무정보작성 및 공개의무 예외조항은 사회적 신뢰성 저해요인이다.	3.88 (1.00)	4.25 (0.88)	3.56 (0.94)	8.82**
종교단체 재정운영 정보공개는 사회적 혜택제공에 대한 의무이다.	3.92 (1.09)	4.31 (0.94)	3.69 (0.88)	6.61**

* $p < 0.05$ ** $p < 0.01$

4)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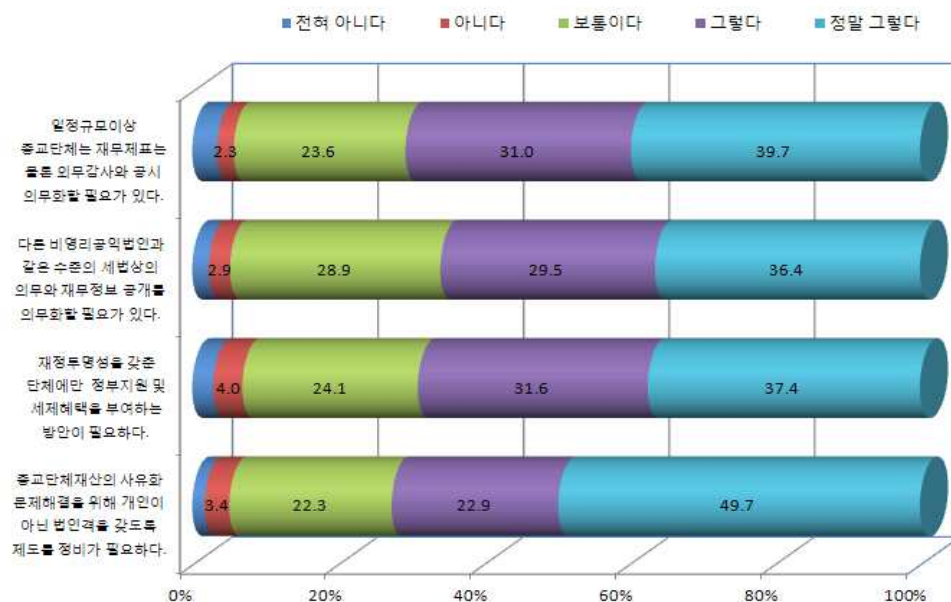
(1)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1

- <표 3-28-1>, <그림 3-28-1>은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일정 규모이상의 종교단체에 대해 재무정보의 외부감사와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재정투명성을 갖춘 종교단체에만 정부지원 및 세제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데에도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종교단체재산의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격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높은 수준의 응답을 나타냈다.

<표 3-28-1>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1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일정규모 이상 종교단체는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화할 필요	6 (2.9)	4 (1.9)	51 (24.5)	68 (32.7)	78 (37.5)	207 (100)	4.00 (0.98)
다른 비영리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의 세법상 의무와 재무정보 공개 의무화할 필요	4 (1.9)	5 (2.4)	58 (27.9)	65 (31.3)	74 (35.6)	206 (100)	3.97 (0.95)
재정투명성을 갖춘 단체에만 정부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필요	5 (2.4)	7 (3.4)	53 (25.5)	68 (32.7)	74 (35.6)	207 (100)	3.96 (0.98)
종교단체재산의 사유화 문제해결을 위해 법인격을 갖도록 제도 정비 필요	3 (1.4)	6 (2.9)	46 (22.1)	53 (25.5)	100 (48.1)	208 (100)	4.16 (0.96)



<그림 3-28-1>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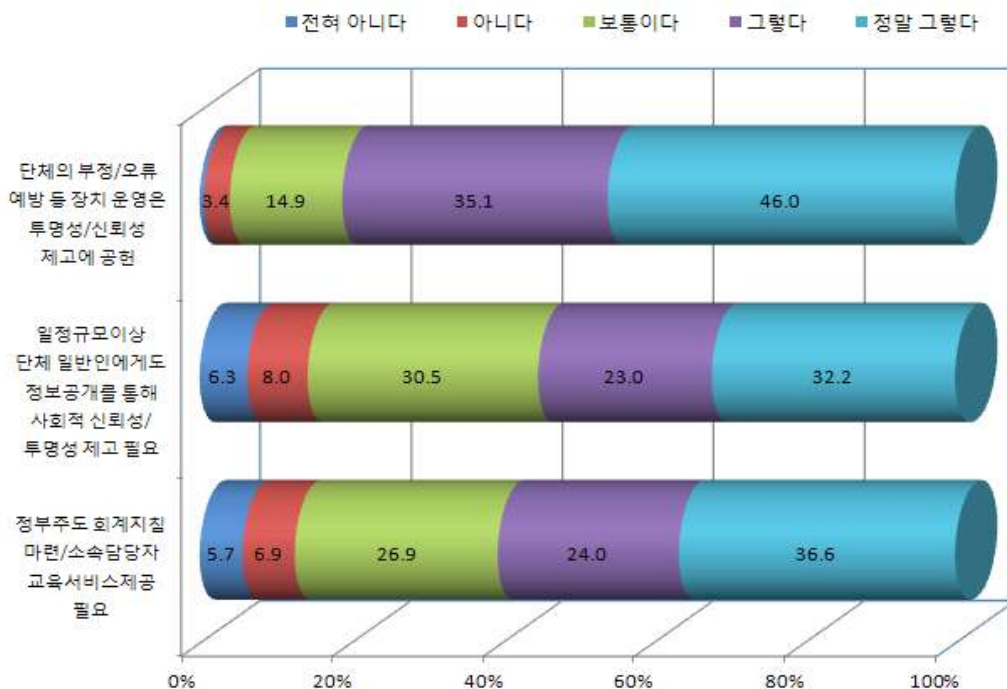
(2)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2

- <표 3-28-2>, <그림 3-28-2>은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종교단체의 부정 및 오류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이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또한 종교단체의 재정정보를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주도하여 종교단체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표 3-28-2>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2

(단위 : 명, %)

조 사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편차)
단체의 부정/오류 예방 등 장치 운영은 투명성/신뢰성 제고에 공헌	1 (0.5)	6 (2.9)	34 (16.3)	73 (35.1)	93 (44.7)	207 (100)	4.21 (0.86)
일정규모이상 단체는 일반인에게도 정보공개로 통해 사회적 신뢰성/투명성 제고 필요	11 (5.3)	16 (7.7)	64 (30.8)	50 (24.0)	66 (31.7)	207 (100)	3.70 (1.15)
정부주도 회계지침 마련/소속담당자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	10 (4.8)	12 (5.8)	57 (27.4)	55 (26.4)	74 (35.6)	208 (100)	3.82 (1.13)



<그림 3-28-2>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 의견2

- <표 3-28-3>은 각 종교기관별 기관의 재정운영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 의 응답차이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가톨릭 소속 응답자의 평점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8-3> 종교기관별 투명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 차이분석

조 사 항 목	기독교 (n=77)	카톨릭 (n=79)	불교 (n=52)	F-value
일정규모 이상 종교단체는 재무제표 작성, 외무감사와 공시 의무화할 필요	3.74 (1.17)	4.30 (0.79)	3.94 (0.83)	7.00**
다른 비영리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의 세법상 의무와 재무정보 공개 의무화할 필요	3.68 (1.09)	4.38 (0.76)	3.77 (0.81)	13.24**
재정투명성을 갖춘 단체에만 정부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필요	3.78 (1.10)	4.23 (0.88)	3.83 (0.88)	4.90**
종교단체재산의 사유화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이 아닌 법인격을 갖도록 제도정비 필요	3.94 (1.03)	4.59 (0.61)	3.83 (1.06)	15.09**
단체의 부정/오류 예방 등 장치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은 투명성/신뢰성 제고에 공헌	4.05 (0.90)	4.53 (0.64)	3.98 (0.94)	9.17**
일정규모이상 단체는 일반인에게도 정보 공개로 통해 사회적 신뢰성/투명성 제고 필요	3.43 (1.24)	4.06 (1.08)	3.54 (0.98)	6.91**
정부주도 회계지침 마련하고, 소속담당자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	3.60 (1.19)	4.19 (0.99)	3.60 (1.09)	7.20**

* p< 0.05 ** p< 0.01

5) 종교신자 의견 요약

- 종교기관(기독교, 가톨릭, 불교) 응답자의 2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80.6%가 해당 종교단체의 현금(교부금, 후원금 등)등 재정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보의 제공주기는 28.4%가 주별, 21.2%가 월별, 17.3%가 분기별로 나타났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는 주로 “현금수입”(29.0%)과 “월별수지”(25.5%)로 나타났다.
- **종교신자의 해당 종교기관의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사결정은 위원회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운영이나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재정집행결과에 대한 감사의 검토 및 보고, 현금 등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정보공개에 충분성에 대한 설문에는 다소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한편,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관리제도에 대한 종교기관별 응답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독교와 가톨릭 소속 응답자의 평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종교신자의 해당 종교기관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 의견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재정운영 투명성은 높으며 투명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종교단체의 횡령 등 부정사태가 종교분야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으며 종교단체의 현금수입과 사용내역을 공개되어야 한다는 데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성직자 과세가 종교단체의 신뢰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설문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종교단체에 대한 재무정보의 공개의무 면제가 사회적 신뢰성을 저해하며, 종교단체에도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설문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종교단체의 부정 및 오류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이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또한 종교단체의 재정정보가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주도하여 종교단체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종교기관별 응답을 비교분석한 결과, 가톨릭이 위에서 설명한 종교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정보공개의무 및 외부감사의무 강화, 정부의 차등지원, 다른 비영리법인과 같이 세제혜택에 따른 정보공시 등의 의무부과, 성직자과세, 종교단체 법인화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4점) 지지를 나타냈다.

제 4 장 국내외 비영리조직의 모니터링시스템 모범사례 발굴

본 연구단계에서는 국내외 비영리조직의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먼저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및 공시시스템에 대한 실패사례를 찾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뒤, 국내외 비영리조직의 모니터링시스템 상 모범적 사례를 발굴한다. 구체적으로 모범사례의 선정 작업은 이전단계에서 조사·분석된 공시제도 등의 체계분석결과를 통해 필수적 요소와 자발적 요소로 구분된 항목별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수행된다.

비영리기관은 그 설립목적의 도덕성으로 인해 운영에 있어서의 전적인 사회적 신뢰성을 부여 받아 통제와 감독을 피해왔었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운영자들에 의한 부정과 공금횡령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그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립자나 이사장(executive director) 또는 중요한 기부자들의 전적인 통제 하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한된 자원을 회계보고, 내부통제 및 재정운영 감시에 할당하고, 상호거래관계가 아닌 기부행위와 같은 일방향적인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의 횡령 시 적발이 어렵고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다.

해외의 경우, 최악의 비영리기관으로 선정되었었던 Free Wheelchair Mission, National Hemophilia Foundation, Academy of Country Music Charitable Fund, Action International, Cancer Fund of America, Alliance for Charitable and Responsibility Awareness, Law Enforcement Alliance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규정위반과 비리들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유총연맹, 구덕원, 성신원, 애광원 등 많은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도덕적 해이와 비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공시자료, 감사보고서,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제도의 개선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1 절 국내사례

1. 국내 비영리조직의 평가사례

국내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경영에 대해 본 연구의 접근방식과 유사한 접근방식으로 평가·시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있다. 바로 국내 비영리조직법인의 투명경영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통해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삼일미래재단’이다.

삼일미래재단은 2008년 설립되어 삼일회계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조직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기여하는 것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나 생활환경의 개선 지원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비영리공익법인들의 올바른 공시를 유도하고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시상하고 비영리공익법인들의 현장에서 애로점들 이를테면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공인회계사들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수행한다. 비영리복지법인의 투명경영시상을 위한 심사방법과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삼일투명경영대상시상을 위한 심사절차는 신청법인의 서류평가를 시작으로 1~3차 심사를 통해 재무정보를 비롯한 비영리공익법인 정보공개의 충실성과 공개정보의 양질성을 검토하고 여기서 점수가 높은 법인이 선정된다. 주요 심사 자료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발간한 최근 3개년도의 연차 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보고서)와 외부전문가에 의한 최근 3개년도의 감사 보고서 (없을 경우에는 결산 보고를 위한 재무제표), 그리고 법인의 공식 홈페이지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시 준거하고 있는 기준은 유럽 및 호주를 포함한 기부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1) 기본 정보의 공시

가장 기본적인 평가절차이다. 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 기본정보를 충실하게 공개했는지 여부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법인기본정보의 적정성과 적시성,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공개했는지 그 수준을 검토한다.

(2) 필요 정보의 공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의 모금과 쓰임새 등 법인운영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법인의 임직원과 의사결정 과정, 기부금의 모금 과정과 쓰임새, 자원봉사자 활동 등 관련정보를 얼마나 충실하게 공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3) 전략 및 미션의 수립

이 단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법인이 설립된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설립목적과 실제 사업내용의 정합성, 정보에 대한 성실한 공개여부 등을 평가한다.

(4) 조직 운영 건전성과 위험 관리

이 단계에서는 조직의 위험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윤리성과 위험관리를 포함한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는 비영리공익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고려하고 법인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시하는지와 윤리규범에 대한 준수여부와 내부적 위험요소들에 대한 관리수준을 심사한다.

(5) 사업 수행 평가와 공시

이 단계에서는 사업계획과 사업 실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공개여부를 평가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놓치기 쉬운 객관적인 성과 공시와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한다.

(6) 재무적 성과의 공시

이 단계에서는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과 공개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비영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삼일 미래재단이 과거 선정했던 수상기업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월드비전, 승가원, 한국장애인재단 등이 있다.

2. 국내 벤치마킹사례(Best Practice Cases)

본 연구의 벤치마킹사례 대상기업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보공시와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차원에서 각각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선정하여 소개한다. 따라서 앞서 수행한 필수적, 자발적 공시실태조사결과와 홈페이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 기반하여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우선, **세이브더칠드런**은 1953년 영국 미국 등의 해외아동 구호재단이 6.25전쟁당시 한국지부설립으로 한국의 아동구호사업을 시작한 한해 약 305억원 가량의 후원금과 1,357억 자산규모(2012년 기준)를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다. 주요사업은 보건의료, 긴급구호, 아동보호, 교육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외적으로 아동에 대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보호를 위해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영리기관이다. 또한 UN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아동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아동권리모니터링이나 국제개발협력, 영세이버¹¹⁾ 운영 등의 사업도 수행 중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보의 적시성과 접근성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는 점이 큰 강점으로 부각된다.

국적이나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한 글로벌 최대 규모의 독립적 NGO로서 비전(vision), 사명(mission), 행동가치(values)에 대해 체계적으로 상세히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기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기존에 자비심과 정의심에 대한 실천조직에서 이제는 ‘공익달성을 위한 공적존재’로 변화되고 비영리기관의 구성과 재무상태 및 사업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테면, 운영철학에 5대 행동가치인 책임, 포부, 협력, 창의 및 정직을 반영하여 후원자를 비롯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검증 가능한 결과와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려고 하는 점이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외부지원금에 대한 운영이 공익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토록 운영함으로써 후원자를 비롯한 정보수요자와 비영리기관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영세이버 활동은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해 대학(원)생들을 선발, 아동권리전문가 양성과정으로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이러한 영세이버들이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캠페인, 연구활동,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토록 하는 사업이다.

<그림 4-1>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례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12 재정정보

세이브더칠드런은 개인과 기업, 정부 등 다양한 후원자 여러분께서 주신 귀중한 후원금을 국내외 아동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원금을 집행할 때 공익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지지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부 재정보고 사항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 바로가기

(회계감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Save the Children

아이들을 살리는 선물이기

Hi5

나눔첫돌잔치

모자뜨기

검색

사업소개

사업후원

참여하기

캠페인후원

자료실

세이브더칠드런 소개

뉴스 News

웹진 Webzine

Resources

자료실

보건·영양

긴급구호

아동보호

국내옹호활동

사업보고서

전체보기

보건·영양

긴급구호

아동보호

국내옹호활동

사업보고서

기타

Archives

자료실 :분류별 자료

보건·영양 / 긴급구호 / 아동보호 / 국내옹호활동 / 사업보고서 / 기타

에 관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법인의 책임완수와 효율적 운영, 그리고 투명한 관리를 반영하여 준수토록 하고 특별히 예산·회계규정 및 후원금관리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투명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비지급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전결권자 본인이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는 동급의 타전결권자가 공동결재토록 하고 있는 점은 사전적으로 내부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이로써 투명한 경비지출 관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2003년부터 ERP를 도입하여 예산과 회계처리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다음의 여러 내부공시를 통한 감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내부적 통제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연간 1회의 법인감사와 자체감사
- 전 직원에 대한 회계시스템 접근으로 내부통제회계와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 완료된 사업에 대해 사업성과와 사업비내용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제고
- 연 1회의 외부회계감사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 연간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 등에 대한 주무관청 보고

이사회는 구성은 이사 8인, 감사2인, 법률고문 1인으로 재정보고와 관련해서는 1995년부터 8개년간의 년차별 보고(연차보고서)가 요약적으로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에 국세청 공시시스템으로 링크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외부감사회계법인명을 함께 공시함으로써 공시되는 회계정보가 외부감사를 받은 정보임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다.

정기적인 소식지(분기)와 뉴스레터발간을 통해 진행 중인 사업내용과 성과, 사업비관련정보 등을 외부공개하여 일반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신뢰관계유지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투명한 경영에 대한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재무정보에 대한 충분한 공시가 요구되나 홈페이지 상 회계 및 재정보고와 관련해서는 감사보고서나 연차보고서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점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세이브더칠드런의 향후 추가정보공개 및 도입제도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사회결의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또는 조직구조, 중장기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후원자와 일반인에게 정보수요를 만족시키고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소개할 모범사례는 **월드비전**으로 전 세계 100여국에서 4만 여명의 직원이 일하는 세계최대 민간국제기구 국제월드비전의 한국지사이다. 국제월드비전은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NGO의 최상위 지위인 '포괄적 협의지위'를 부여받았고 BBB나 Charity Navigator, ECFA등 비영리기구의 투명성평가기관들로부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의 월드비전은 1950년 설립으로 약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국내외 구호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06년에 국내 NGO중 유일하게 WFP공식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전 세계 약 1억 명의 지구촌 이웃을 돕는 국제구호개발 NGO단체로서 한해 1,580억 후원금규모와 550억 자산(2012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월드비전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19인, 15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

고 있고 특별히 투명경영실현을 위해 윤리규정준수와 내외부 공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행중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홈페이지 내 투명경영실현관련 정보를 법
인윤리규정과 내·외부공시 측면에서 각각 상세히 공시하고 있다.

<그림 4-2> 한국월드비전 사례1

한국월드비전 투명경영실현		
월드비전은 법인 운영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운영정보를 공개합니다		
법인 윤리규정 준수 현황		내외부 공시 시스템
구분	내용	월드비전 윤리 준수 현황
윤리준수	법인 비전과 미션, 핵심가치와 전략의 반영	법인 비전과 미션, 전략(BSC)에 따라서 조직운영 아동의 변화와 후원자 중심의 사업을 지향하며 차별화된 사업모델 제시
	국제월드비전 직원행동강령 준수	월드비전의 정직성을 반영하고, 기관이 추구하는 사업의 효과와 가치 및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월드비전의 이사진, 직원들, 인턴직원 과 자원봉사자들이 준수 강령
	직원행동강령준수	모든 직원들이 직원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결면아동 과의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주민들과의 관계성에 있어 반드시 상대방의 존엄성 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도록 하기 위한 월드비전의 아동보호정책을 준수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숨김 없이 공개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적용(청지기합리인, 성희롱심의위원회 운영)
	운영규정의 반영	법인의 전반적 운영규정 준수(상임임원평가, 직제, 복무, 인사관리, 보수,재무회계, 재산관리, 사무관리, 감사, 위임전결, 시설운영, 지 부운영, 직장협의회, 이사회규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
	월드비전 아동보호정책 준수	전세계 월드비전 파트너십에서 이사회, 직원, 후원자, 자원봉사자들 아동보호정책을 준수하고 서약서 작성
	국제협약 준수	국제 NGO책임성 헌장, 국제적십자 행동수칙, 인도적 지원에 대한 책임성 원칙

<그림 4-3> 한국월드비전 사례2

법인 윤리규정 준수 현황		내외부 공시 시스템
구분	내용	월드비전 윤리 준수 현황
감사기능	자체감사(내부감사)	- 감사실을 설치하여 연1회 법인 및 전 사업장 감사(외부공인회계사 동행)를 진행하고 투명성 검증 - 이사회 감사소위원회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투명경영 검증 - 내부 회계통제 및 업무관리를 위한 정보공개 그룹웨어시스템 운영
	사업평가	- 파트너십역량평가(사업, 파트너십 관계, 모금, 운영)를 3년마다 전세계 월드비전 파트너십을 대상으로 하는 4등급 평가를 진행하고 개선권고 - 매년 국내사업에 대한 계획대비 목표달성에 대한 사업평가시행
	외부감사	- 연1회 공인된 회계법인에 의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검증받음 - 국제월드비전으로부터 5년에 한번씩 피어리뷰 평가를 받음
	정부감사(세무감사)	- 연2회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유지 - 기부금품모집법에 근거하여 행자부 모금사업 감사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지도 감사
	정부보고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주무관청 대상보고(투명성 유지) - 연간 사업실적 및 세입, 세출 결산서 주무관청 보고

먼저, 비영리기관의 윤리적 운영 및 활동을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 비전과 미션 및 6개의 핵심가치에 이를 반영하고 BSC전략수립을 통해 조직성장을 추구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기관 외부인증을 KPI로 설정한 바 있고, 직원의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조직운영규정은 물론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1) 운영규정준수

투명한 조직운영과 효율성을 위해 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특히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규정과 후원금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임원평가규정, 직제규정, 복무규정, 인사관리규정, 보수규정, 재무회계규정, 재산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감사규정, 위임전결규정, 시설운영규정, 지부운영규정, 직장협의회규정, 이사회규정, 기타 업무인계인수지침, 재정정보증지침, 징계지침, 출장여비지침, 퇴직금 지침, 휴직지침, 포상지침, 감사처분지침 등을 적용하고 그룹웨어 통합전산프로그램(선, 더존, 진우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예산통제 및 관리에 적용중이다.

(2) 국제협약준수

구호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제 NGO 책임성 헌장(International NGO Accountability Charter)', '국제 적십자 행동수칙(Red Cross Code of Conduct)', '국제 NGO 인도적 지원사업 협약(Sphere Humanitarian Charter for NGOs)', '인도적 지원에 대한 책임성원칙'에서 명시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표준을 지키고 있다.

내·외부통제의 일환으로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를 모두 받아오고 있고 5년 주기로 국제월드비전으로부터의 peer review도 받아오고 있다. 자체감사는 이사회 내 감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내부회계통제와 업무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그룹웨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후원금의 수입·지출내역이나 연간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등을 주무관청에 성실히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한국월드비전은 국제월드비전의 국제적 명성에 맞게 조직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회계정보산출의 신뢰를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적절히 공시함으로써 후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법인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관계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세출입결산서나 기본내역서, 감사보고서정보를 홈페이지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운 점이다. 향후 이해관계자들은 법인의 운영뿐 아니라 검증받은 회계재무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음 모범사례로 선정된 **승가원**은 불교계 장애인부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이사회개최정보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내부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1996년 ‘모두가 행복한세상, 장애가족 행복지킴이’라는 미션아래 불교장애복지의 리더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여 연간 후원금 약 59억원, 총자산 약 205억원규모(2012년 기준)의 복지법인으로 성장, 현재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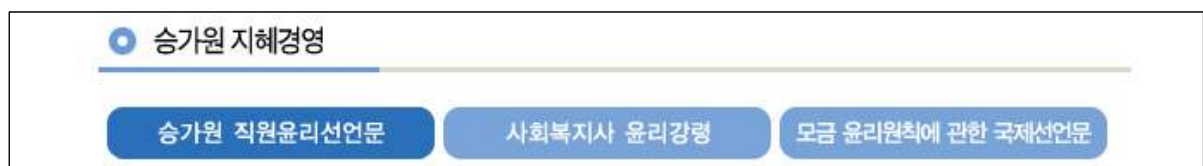
법인의 정관과 운영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별도로 다운받아 상세규정을 공개함으로써 법인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 승가원 사례1



뿐만 아니라 직원윤리와 사회복지 윤리강령, 그리고 모금에 대한 윤리원칙을 공개하여 기금모집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5> 승가원 사례2



법인운영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예산서 및 직원연봉표에 대한 공개가 그것이다. 한편, 2005년부터 법인예산서를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별도로 장애복지직원(사회복지사)연봉표를 공개하여 일반관리비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4-6> 승가원 사례3

이사회 개최현황			
개최일	이사	주요의결사항	참석인원
2013. 07. 09	10	- 승가원특별진상위원회 구성, 조사 준비 - 승가원 정관변경 (조항삭제 부결, 기본재산변경 의결) - 승가원 운영규정개정 - 승가원 이사장 이정모(태원스님) 사임 의결 - 승가원 이사장 직무대행자 김완두(미산스님) 선출 의결	8
2013. 3. 13	10	- 2012년도 승가원 결산 32,393,654,908원 의결 - 2013년도 승가원 추경예산안 32,243,171천원 의결 - 승가원 정관변경 의결 - 승가원 운영규정 개정 의결 - 성북장애인복지관 재수탁 신청 의결 -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재수탁 신청 의결 - 삼전어린이집 재수탁 신청 의결 - 승가원 임원 임면 부결	9

<그림 4-7> 승가원 사례4

승가원 예산

법인 업무

담당 직원

승가원 예산

다음글 >

제목

2013년도 승가원 추경예산서

등록일

2013-03-19

조회수

1621

다운로드

2013년도 법인1차추경예산.xls (308 KB) 2013년1차추경예산서(전체).xlsx (243 KB)

2013년도 승가원 법인사무국 및 산하기관의 추경예산서입니다.

** 2013년도 승가원 세입세출 예산총액 32,243,171천원

- 법인사무국 : 8,800,507천원

- 산 하 기 관 : 23,442,664천원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이메일전송

퍼가기

목록보기

내부모니터링시스템과 관련해서는 10인의 이사회활동 내역을 통해 그 정도를 판단해볼 수 있었다. 승가원은 이사진에 대한 활동내역을 이사회회의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0인의 이사회 구성과 외부감사보고 관련부분은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출연자와 무관한 이사회의 구성으로 독립적 운영을 가늠할 수 있었고 2011년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외부감사가 시작된 2011년 2012년의 외부감사보고서는 국세청 공시시스템에서 관련보고서가 열리지 않거나 빈문서가 열리는 오류로 인해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다음으로 **한국장애인재단**은 2004년 설립된 국내최초 장애인전문 민간공익재단으로 외부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이나 내부통제절차, 이해상충에 대한 해결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어 법인운영에 있어 내실을 높인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실현’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장애감수성, 현장성, 다양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그 주요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등록한 자료의 경우 설립근거법이나 월별 기부금수입 및 지출현황의 공시등 기본적인 공시에 충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차대조표의 경우 전기와의 비교표시로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있고 non-big4에서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 재무제표작성과 표준지침서에 따라 정보를 작성 및 감사가 수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보고서의 페이지와 주석 수는 각각 53페이지와 11개 항목(2012년 기준)으로 집계되고 이는 비영리법인들의 평균감사보고서의 페이지수인 15와 평균주석수인 9에 비해 상당한 양으로 판단된다.

설립취지와 목적, 설립근거법령과 미션과 윤리헌장 등을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시되어있는데, 이 중 설립근거법령과 윤리헌장은 매우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재단의 기부금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홈페이지의 ‘윤리헌장’부문에서 공시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윤리강령을 각각 모금사업과 배분사업, 임직원, 사회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계화된 윤리규정과 투명한 공시를 보여주는 측면이다. 또한 조직구성에 있어서 조직원별 담당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연락처 등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channel을 적절히 보여주는 좋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표 4-1> 장애인재단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

윤리헌장	5가지 윤리헌장 공시
윤리강령	- 총 6장으로 구성 - 1장 총칙, 2장 기본윤리, 3장 모금사업에 대한 윤리, 4장 배분사업에 대한 윤리, 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6장 사회에 대한 윤리
	각 장별 3~5개의 세부강령 제정 및 공시

재단의 주요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인력양성사업, 장애인인식에 대한 개선사업 및 사회조성 지원사업으로 구성되고 이들 운영의 결과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감사받은 정보로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다.

한편 홈페이지에서 이사회를 소개하고 배분과 기금운용 및 운영자문에 대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공시하고 있는데 이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운영에 대한 실효성은 이사회회의와 배분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별 회의록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투명한 이사회 의결을 위해 정관에 '의결 제척사유'를 규정해둌므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고 있다(정관 제 3장 제 20조 의결제척사유). 이를테면, 이사회운영에 있어 이사해임이나 금전 등을 수반하는 사항이 임원과 직접 관련 있는 경우, 또한 이사가 소속된 법인 단체 등에 대해 배분을 할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배제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매스컴에서 거론되고 있는 비영리법인 임원에 대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통제시스템으로써 체계적이며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4-2> 장애인재단 규정

제20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재단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이사가 소속된 법인·단체 등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9>
4.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신설 2013.1.9>

그리고 정기적인 소식지에 후원출처와 후원금액을 공개하고 <그림 4-8>과 같이 통계적 수치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줌으로써 기부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되고 있고 후원자들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8> 재단 후원금 공개 예



그 외에도 본 연구에서 시행한 공시실태조사결과 등에 기초한 모범사례들로 다음의 비영리법인을 추가로 소개한다. 먼저 순수한 한국태생 NGO로서 투명한 정보공시와 경영을 수행하고 있는 굿네이버스를 소개하고 다음으로 국내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가장 역사가 깊은 태화복지재단을 소개한다.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는 1991년 설립된 순수한 한국기반의 국제구호개발 NGO로 UN과 함께 인간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평화나 안전을 지키는 일들을 수행하는 비영리조직이다. 2012년 한해 1,000억원 수입과 ‘함께 나누는 사회’를 사명으로 아동권리보호와 사회교육 및 네트워크형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조직은 크게 국내전문복지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보건복지부 등록)와 해외구호개발사업과 대북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외교부등록)로 나뉘어 있고 각각 5~7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는 약 44억원 자산과 342억원 수입(2012기준)규모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지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각 시도지정 6개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16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8개 학대 피해아동그룹홈, 16개 지역아동센터,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강원도아동복지센터, 아주 좋은이웃 심리치유센터 등을 통한 아동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4개 복지관, 3개 어린이집, 1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 내 빈곤가정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종합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은 지구촌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복지사업과 개발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2003년에 기존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국제사업본부가 분리된 조직이다. 2012년 기준으로 214억원 자산과 779억원 수입규모를 가지고 있다.

두 조직 모두 ‘사단법인. 사단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기업회계기준’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반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외교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관할 구청에 감사와 결산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공시실태조사결과는 대체로 공시의 수준과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감사보고서의 경우 2012년은 다운로드가 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2011년의 경우 감사보고서의 표지만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감사를 받아 객관성을 입증 받은 자료의 공개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사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해외사업국 회계통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사적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

다. 홈페이지에 재정보고메뉴로 연차보고와 운영보고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고, 공시되는 정보도 수입원과 지출처 별로 각각 구분하여 후원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후원내역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공지해 놓았다. 특히 고유영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별 활동비와 자체 행정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공시함으로써 목적별 비용처를 구분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운영보고에서는 굿네이버스의 후원회원수와 자원봉사자 및 전문봉사자별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시함으로써 투명한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태화복지재단은 1921년 국내 최초의 사회복지재단으로 감리회 기독교정신인 섬김과 나눔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외된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소명아래 현재 10개의 사회복지관과 44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다. 복지에 대한 신개념으로 섬김과 나눔 뿐 아니라 선도적인 복지경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및 의료, 해외복지사업 등 세부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을 전국에 설치·운영하는 한편 법인산하에 태화사회복지연구소를 두어 사회복지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오래된 역사동안 설립당시의 조직 비전과 가치에 따라 일관된 의사결정과 사업수행에 집중하여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태화는 다양한 복지사업 중에서 야학반(1921년)이나 아동보건사업(1924년), 구락부사업(1925년) 등의 분야에서 국내 처음으로 선도적인 복지사업도입단체이다.

<그림 4-9> 태화복지재단의 비전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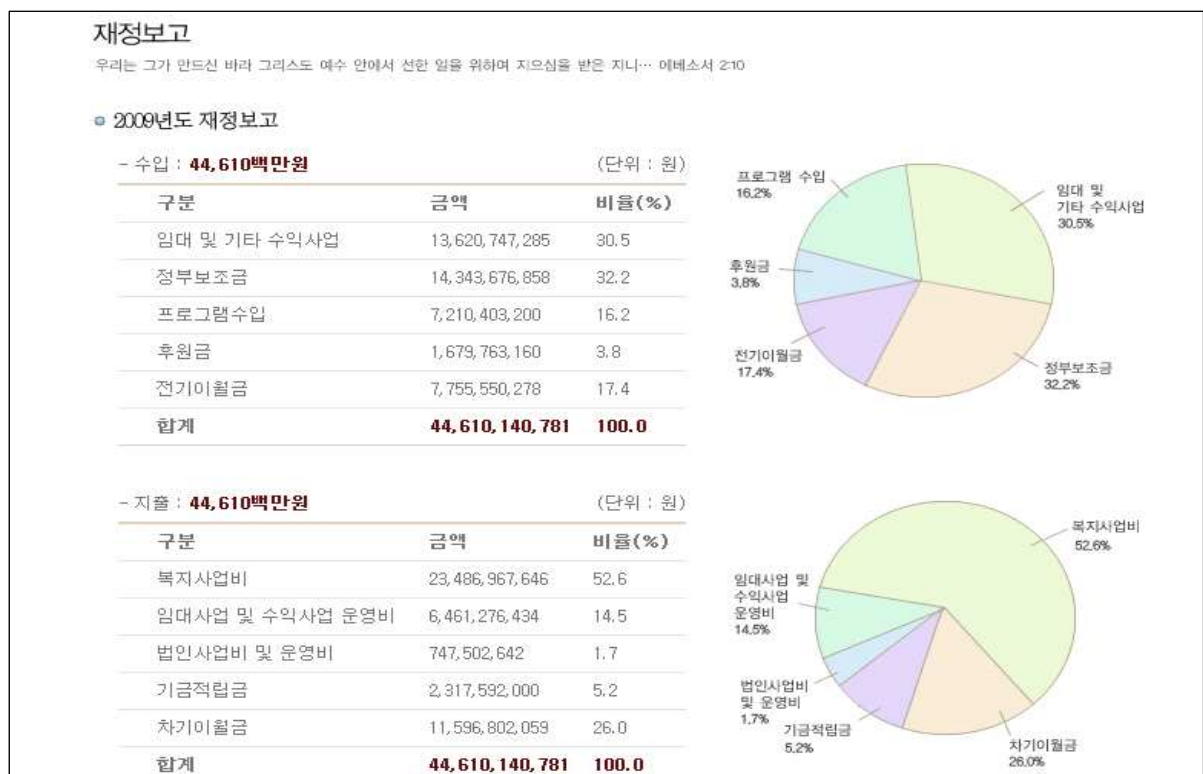


조직의 구성은 대표이사 1인에 10명의 이사(국세청 공시시스템상 이사의 수는 15인), 2명의 전문감사인을 두고 있고 홈페이지에 각 부처별 연락처를 공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년 2회의 자체 내부감사를 시행하고 2년에 1회씩 지자체의 감사를 받아오고 있다.

태화복지법인의 가장 모범적인 부분은 이사의 권한강화로 인한 경영자의 견제장치이다. 매스컴에 언급된 많은 부정 및 비리 비영리법인들의 경우 경영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은데 비해 상대적으로 이를 통제할만한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요인이다. 현재 태화는 이사회로 권한이 위임되어 활발한 이사회활동이 진행 중이고 특히 세위원회 즉, 정책개발위원회, 재정 및 수익사업관리위원회, 발전모금위원회, 특별위원회로 분야 별로 운영 중에 있다.

태화복지재단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한다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태화복지연구소를 통해 수퍼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표준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조직의 성장과 지리적인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설립 초기의 미션과 가치에 대한 구성원간의 공유를 다시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수행하기 위해 표준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 아래와 같이 세 번째 목표인 '선도적 복지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준화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4-10> 비영리법인 정보공시 예



이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오랜 역사를 지키고 가치가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자정노력으로 분석된다. 조직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은 다양하고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반면, 투명한 회계보고와 경영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체계화시키고 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화복지재단은 표준화된 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직운영에 대한 부정이나 비리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재정보고와 관련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공시를 통해 수입원천별 규모와 사업 및 용도별 지출내역을 보고하고 있다. 법인 운영에 따른 재무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명경영을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시된 최근 재정보고가 2009년인 점으로 인해 적시에 공시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공시가 적시성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홈페이지 관리의 문제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국세청 공시시스템에는 2012년까지 관련정보가 적절히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표준화된 시스템이 정착단계에 이르면 시의적절한 정보공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입·세출 결산명세서 등 세부 재무정보에 대해서는 산하기관별로 홈페이지를 이동하여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세입·세출 예결산 명세서와 수입 및 사용결과를 각각 세부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세련된 정보의 요약과 공시의 형태는 아니지만 투명한 회계정보처리와 공개는 적절히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모범사례를 통해 각 비영리 공익법인의 특징적인 best practice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이브더칠드런의 경우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홈페이지에 8개 년도의 연도별 재정결과(1995~2012)를 보고함으로써 정보의 적시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좋은 사례로 분석된다.

두 번째 월드비전은 내부통제를 위한 상세한 법인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내·외부공시, 그리고 국제월드비전으로부터 5년마다 한번씩 Peer review를 통해 자체적인 내부통제절차가 체계화 되어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파악된다. 또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적절한 경영진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승가원은 이사회의 개최와 이들 결과인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해둌으로써 내부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 사례이다.

네 번째 한국장애인재단의 경우는 법인 정관 내에 이사회결의 시 이해관계자배제

규정(의결제척사유)을 두어 사전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 하다. 정기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오고 있고 감사보고서의 공시 면에서 볼 때에도 비영리공익법인의 약 10%가 외부감사를 시행 받고 이들의 평균 감사보고서 페이지수가 대략 15페이지, 주석의 수는 약 9개인데 비해 한국장애인재단의 감사보고서는 53페이지와 11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충실한 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 번째 태화복지재단의 경우는 순수 국내 비영리법인으로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신념으로 관련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사회의 세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활동을 견제하고 있는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굿네이버스는 전사적으로 투명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모범사례로서 주기적으로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행해오고 있고 순환근무제를 시행하여 고착화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좋은 사례로 분석된다.

3. 국내 실패사례(Worst Practice Cases)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을 위한 재정이 대부분 보조금이나 후원금등의 공공재정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은 국가재정낭비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게 되어 그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15,796개소로 파악되고 생활인원은 181,907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곳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160,720명으로 이중에 104,162명(65%)이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국내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통한 공금횡령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장기요양보험제이란 치매나 중풍 등 만성질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가족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가 요양인정을 받게 될 경우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요양 등급자 들은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되는데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노인의 5.7%정도인 328천명 대상자 중에서 약 290천명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들과 관련된 예산은 3조 5천 여억 원으로 집계된다. 결국 노인복

지예산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설법인의 수와 인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를 이용한 비리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취약한 사회복지시설단체의 예산집행 등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¹²⁾

<표 4-1> 2011년 기준 사회복지시설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생활인원	종사자수
합계	15,796	181,907	160,720
아동	4,314	17,105	14,176
노인	7,524	116,791	104,162
장애인	2,813	25,345	27,579
기타	1,145	22,666	14,803

*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취약복지시설 기동점검), 2013.5.

이들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직원채용과 관리 및 인건비 지급 등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허위직원명부를 올린 뒤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비리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 또한 시설회계의 예산을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함으로써 예산외 지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집행하는 등 시설자체의 비리도 비리이지만 관할부처의 적법한 승인절차 없이 이러한 부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소홀도 비리를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관련하여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등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나 적절한 통제 없이 기본재산을 주식투자자금으로 전용하거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볼 때 감독당국의 관리책임도 자유롭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주로 적발되는 복지법인 부정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용도와 사용에 따른 법인세부족이나 직원 퇴직급여 미지급, 기본재산처분대금의 부적절한 사용, 노인요양시설 입소보증금 미반환 등 규정을 위반하여 용도 외 예산을 집행하거나 공적지원금에 대한 사적처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국내 실패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다.

국고보조단체의 하나로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는 **자유총연맹**의 경우 해마다 십억원 대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으나 불법과 내부규정위반을 일삼아 ‘비리의 온상’으로 불려

12)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취약복지시설기동점검), 2013.5.

지고 있다¹³⁾. 국고지원에 대한 부당운영과 부적절한 회계운영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자유총연맹 육성법 제 1조)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고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이다.

이러한 단체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회계처리 하지 않은 액수만 1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비리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부당집행규모가 1억 4천만원이나 되고 인건비성 경비의 지출이 총 지출 중 70%를 차지하는 등 운영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명예회장의 급여가 매년 1억원을 넘고 활동비로 매달 1,000만원씩 5년간 총 5억 7천여만원 지출하는 등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 비해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기구가 부재했다는 점이 이러한 비리를 키운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 경비의 집행측면에서도 단가에 대한 시장조사 없이 비싼 가격에 물품 구매를 하고 1억원 이상 경쟁입찰 대상에 대해서 제재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등 규정위반이 가능했던 것도 이를 단계적으로 통제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은 부산최대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구덕병원과 구덕실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인은 2010년 법인이사가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유용한 것이 적발되었다¹⁴⁾. 대표이사의 횡령이 무분별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대표이사의 도덕성의 부재와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리가 적발된 이후 2011년에도 여전히 이사들의 법인카드 유용과 공금 횡령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 보고된 바 있다¹⁵⁾.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리에 대한 책임에 대해 횡령대표이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보류하고 대신 법인의 누적적자가 커짐에 따라 산하시설일부를 폐업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이사진과 감사진이 전 대표이사의 친인척과 지인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이전비리의 전횡을 견제할 공익이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순천의 노인전문요양원 **성신원**도 유사한 비리사례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은 공공재정에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

13) 내일신문, 국고보조단체 자유총연맹‘비리온상’. 2013.10.31.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173759>.

14) 전국매일일보, 구덕원의 비리는 어디까지?, 2010.11.08., <http://blog.daum.net/yongsung-blue/513>.

15) <http://blog.naver.com/hagija77?Redirect=Log&logNo=139465694>.

라 감독기관의 인력부족으로 원천적인 비리근절이 어렵다고 알려져 왔다. 성신원의 경우도 매년 순천시에 결산자료를 제출하고 정당한 운영으로 보고한 뒤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해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허위직원으로 인건비를 부풀려 횡령하고 국비로 건물 신축시 공사계약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비리가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복지정책의 남발로 지방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인력은 부족하여 노인요양원등의 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신·증축에 따른 공사대금 부풀려 횡령, 유령직원과 수용인원 장부기재 후 임금착복, 친인척채용임금착복, 운영비 횡령 등의 비리행태는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한편 노인복지단체인 부산의 **애광원**은 2008년 대표이사의 국고횡령비리로 파문을 일으켰으나 이후 비리척결을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비리이사를 퇴출시키고 직원출신의 원장을 내세우며 기존의 이미지쇄신은 물론 강도 높은 자구책에 나서면서 성공한 사례이다. 애광원은 노인종합복지법인으로 2008년 당시만 해도 대표이사가 부식비가 공과 공사비 횡령, 유령직원등록, 이중장부작성 등 수많은 비리가 밝혀졌었다. 이러한 상황도 역시 대표이사의 비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후 노사가 협의 하에 비리이사를 해임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이사진을 선임하는 등 자정노력을 거쳐 지금은 사회복지법인의 모델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하였다¹⁶⁾. 이러한 노력 중 대표적인 것으로 홈페이지개편을 들 수 있는데, 조직의 미션과 임원진의 구성, 법인에 대한 운영전반과 관련정보를 이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공지사항에 년차별 예결산서를 공고하고 납품선정에 대한 공고 및 입찰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법인이 투명경영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로써 신뢰를 주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실패사례에서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부재이다.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과 이를 견제하거나 방지할 수 있을만한 윤리규정이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허술하게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두 번째, 경영자를 견제할 시스템의 부재이다. 우선 경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로 구성된 이사회나 이들의 형식적인 활동, 그리고 심지어는 가공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법인의 비리를 키우고 있었다.

16) 부산일보, 비리대명사 애광원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모델로, 2010.5.11일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00511000142>.

세 번째, 비영리 공익법인들의 느슨한 내부통제장치이다. 임직원들의 활동 및 법인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은 경영자 뿐만 아니라 직원의 횡령이나 유용을 사전에 방지할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로 결국 사건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시기능의 부재이다. 공익법인에 자금을 제공한 관련 행정당국의 경우 현실적으로 관리인력이 부족하여 수동적인 감사대응을 하게 되고, 일반 후원자들의 경우는 공익법인측의 한정된 정보공시로 인해 법인정보에 대한 접근자체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법인운영에 대한 외부감시가 허술하다. 또한 100억 이상 규모가 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많은 법인들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비영리공익법인들의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할뿐더러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법적제재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 2 절 국외사례

1. 해외 비영리조직의 평가사례

해외 비영리조직의 모니터링시스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의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운영 실태와 투명성을 평가해온 공신력 있는, 비영리기관 평가기구인 Charity Navigator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였다. Charity Navigator는 2011년 9월, 2차원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영리기관에 대한 평가에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영리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Charity Navigator가 사용한 재무성과와 운영의 건전성(financial performance metrics) 및 책무성과 투명성(Accountability & Transparency)의 관점에서의 평가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성과와 운영의 건전성(Financial Performance Metrics)

재무성과와 운영의 건전성의 평가와 관련하여 프로그램비용의 비중, 관리비용의 비중, 기부모금비용의 비중, 기부모금활동비용의 효율성, 주요수익성장률, 프로그램비용 성장률, 운전자본비율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Charity Navigator의 재무성과와 운영의 건전성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표4-3>과 같다.

<표 4-3> 비영리조직 평가요소

항목	정의
1. 프로그램비용 비중 (program expenses)	총 기능적 비용예산(total functional expenses) 중 고유목적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의 비중을 말한다.
2. 관리비용 비중 (administrative expenses)	총 기능적 비용예산(total functional expenses) 중 간접비나 관리직원 및 회의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비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5% 미만이면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3. 기부모금비용 비중 (fundraising expenses)	총 기능적 비용예산(total functional expenses) 중 우편, 캠페인, 홍보활동, 관련 인건비 등,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 비용
4. 기부모금활동비용의 효율성 (fundraising efficiency)	\$1를 유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총 기부금으로 나눈 값
5. 주요수익 성장률 (primary revenue growth)	기본수익의 기준연도대비 성장률
6. 프로그램비용 성장률 (program expenses growth)	프로그램비용의 전년대비 성장률
7. 운전자본 비율 (working capital ratio)	제약이 있는 자산을 차감한, 순자산을 총비용으로 나눈 값, 총비용을 지급하면서 현재의 순자산을 가지고 몇 년간 지속 운영가능할지를 연수(years)로 계산한 값

즉, Charity Navigator는 총 기능적 비용예산(total functional expenses) 중 고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의 비중, 기부모금활동비용의 효율성(fundraising efficiency), 기본수익의 기준연도대비 성장률, 프로그램비용의 전년대비 성장률, 총비용을 지급하면서 현재의 순자산을 가지고 몇 년간 지속 운영가능할지를 연수(years)로 계산한 값인 운전자본비율(working capital ratio) 등 비영리기관의 고유목적에 위해 집행되는 비중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이러한 지표가 높을수록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해당 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대용치(proxy)로 사용하였다.

2) 책무성과 투명성(Accountability & Transparency Performance Metrics)

국세청 보고서 상의 정보(Information Provided on the Form 990)

모니터링시스템의 작동과 관련한 더 직접적인 대용치(proxy)로써 Charity Navigator는 책무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의 평가와 관련하여 실행 이사의 독립성, 자산의 사용방향, 외부감사여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여부, 이사회 의사록의 보관여부, 감독기능의 Form 990 사전검토여부, 내부자고발정책, 문서보관 및 폐기관련 정책, 보상정보 및 결정절차, 이사회구성원명단의 공시 등을 고려하고 있다. Charity Navigator 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각각의 배점은 <표 4-4>와 같다.

<표 4-4> Charity Navigator의 평가사례

항목	정의
1. 독립성 있는 실행이사 (independent voting board members)	Form 990 상에 독립적인 이사들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적어도 5명 이상인 경우, 이들이 5명 미만이거나 또는 의결권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15점 감점
2. 자산의 사용에 있어 중요한 방향전환이 없음 (no material diversion of assets)	최근 2년간의 Form 990 상에 승인된 목적이외의 용도로, 자산을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전환한 경우, 전환이 있었지만 Schedule O를 사용하여 금액 및 관련된 자산, 사후조치 등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진 경우 7점 감점, 전환이 있었지만,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5점 감점
3. 재무제표 외부감사 받음 (audited financials prepared by independent accountant)	Form 990 상에 재무제표가 독립적인 외부감사인 에 의해 감사받았으며, 감사위원회 등 재무보고와 관련된 기관 내부의 감독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외부감사를 받았으나, 내부 감독기능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7점 감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15점 감점

항목	정의
4. 특수관계인과의 대여 또는 차입거래가 없음 (does not provide loans to or receive loans from related parties)	Form 990 상에 기관의 임직원, 이사들 등 특수 관계인과의 대여 또는 차입거래가 없음이 언급되어 있음(의무공시 사항),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가 있을 시 4점 감점
5. 이사회 의사록의 보관 (documents board meeting minutes)	Form 990 상에 기관이 이사회의 의사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언급이 되어있음, 의사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 4점 감점
6. Form 990을 제출하기 전에 감독기능에서 검토 (provided copy of Form 990 to organization's governing body in advance of filing)	Form 990을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 등 감독기능에 제공하여 검토를 거치도록 함, 제공하지 않은 경우 4점 감점
7. 이해상충과 관련된 정책 (conflict of interest policy)	Form 990 상에 거래에 있어서의 이해의 상충과 관련된 정책이 언급되어 있음. 언급이 없을 시, 4점 감점
8. 내부자고발 관련 정책 (whistleblower policy)	Form 990상에 내부 직원들이 재무부정 및 문제들에 대한 내부자고발 절차가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존재함이 언급되어 있음, 언급이 없을 시, 4점 감점
9. 문서의 보관 및 폐기와 관련된 정책(records retention and destruction policy)	Form 990 상에 문서의 보관 및 폐기와 관련된 정책(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과 방침이 언급되어 있음, 언급이 없을 시, 4점 감점
10. CEO 성명과 보상정보 공개 (CEO listed with salary)	Form 990 상에 CEO의 성명과 보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음(new 990에서는 의무공시 사항), CEO 보상을 적절하게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4점 감점
11. CEO 보상결정 절차(process for determining CEO Compensation)	Form 990 상에 CEO의 보상결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토절차가 있음이 언급되어 있음, 언급이 없을 시 4점 감점
12. 이사회 구성원 명단공개 (board listed/ board members not compensated)	Form 990 상에 보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이사회 구성원 명단이 공개되어 있고, 이사회 구성원 중 이사회참석에 대해서만 보상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음, 언급이 없을 시 4점 감점

웹사이트 상 정보(Information Provided on the Charity's Website)

웹사이트 상 제공되는 정보의 평가항목은 <표4-3>과 같다. 정보의 투명성의 정도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Charity Navigator는 기부자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이사진 명단 공개, 외부감사여부, 핵심인력 공개 등을 고려하고 있다.

<표 4-5> Charity Navigator 웹상의 정보

항목	정의
1. 기부자 개인정보보호 정책 (donor privacy policy)	비영리기관이 기부자보호에 관한 정책을 웹페이지에 명료하게 공시하는 경우: (1) 본 기관은 기부자 정보를 팔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음, (2) 기부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함, 웹사이트에 기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부자 정보를 제공 또는 공개하지 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있는 경우 3점 감점, 관련 정책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4점 감점
2. 이사진 명단 공개 (board members listed)	웹사이트에 이사회 명단을 공시하여 기부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기관의 지배구조(governing body)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음, 웹사이트에 이사회 구성원 명단이 없는 경우 4점 감점
3. 외부감사 받은 재무보고 (audited financials)	감사보고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웹사이트에 공시한 경우(미래에는 감사의견도 반영 예정), 감사보고서 공시하지 않은 경우 4점 감점
4. Form 990	IRS Form 990을 웹사이트에 공시 또는 직접적인 link를 해놓은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3점 감점
5. 핵심인력 공개 (key staff listed)	기관을 운영하는 핵심인력을 웹사이트에 공시한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3점 감점

위에 논의된 항목들에 근거하여 Charity Navigator는 만점 70의 비영리기관 종합평가지수를 제시하였다. 이 지수는 재무성과와 운영의 건전성(financial performance metrics) 및 책무성과 투명성(Accountability & Transparency) 점수의 단순한 합계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만점인 70점으로부터 개별 기관의 점수의 괴리도를 보여준다. 괴리가 작을수록 건전한 기관으로 평가된다. 그 지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된다.

$$\text{Index} = 70 - \sqrt{\frac{(70 - \text{재무성과운영건전성점수})^2 + (70 - \text{책무성및투명성점수})^2}{2}}$$

Charity Navigator는 위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점수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전체등급을 4성(four star)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분	★★★★	★★★	★★	★	0 Stars
점수	≥ 60	50-60	40-50	25-40	< 25

2. 해외 벤치마킹사례(Best Practice Cases)

Charity Navigator는 2012년 미국의 비영리기관에 대한 순위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벤치마킹사례로서 Charity Navigator의 평가체계에 따라 높은 등급을 받은 몇몇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 비영리조직의 웹페이지를 살펴봄으로써 벤치마킹을 할 만한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1) Direct Relief International

Direct Relief는 1984년에 설립되어 제3세계 및 지역의 가난하고, 재앙 및 내전 등의 사유로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 6월 현재, 총수익이 \$299 million으로 전 세계 140개 국가에 기부 받은 의약품과 소모품을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Bill Clinton 전 미국대통령 등 유명인들의 지원이 활발하다.

Charity Navigator에 따르면, 2012년 6월 30일, 결산일 현재, Direct Relief는 재무성과와 운영의 건전성(Financial Performance) 관점에서 69.9/70을 받았고, 책무성과 투명성(Accountability & Transparency)의 관점에서 70/70으로 만점을 받았다.

Direct Relief International의 경우 실행이사 현황 및 독립성여부를 공시하고 있으며, 은행가/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31인의 이사진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재정 및 IT 등 다양한 소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과거 13년간 외부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사회회의사록 보관하고 있고,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해상충과 관련된 내부자고발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문서의 보관 및 폐기와 관련된 정책이 있으며, CEO보상결정관련절차를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 상에는 보상철학/기부정책/보상구조 등에 대한 상세한 공시를 하고 있다. Charity Navigator에서 제시하고 있는 Direct Relief International의 세목별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다음<표4-6,7>과 같다.

<표 4-6> Direct Relief의 재무성과와 운영의 건전성(2012년 6월 30일 현재)

항목	비중
프로그램비용(program expenses)	98.7%
관리비용(administrative expenses)	0.7%
기부유치비용(fundraising expenses)	0.5%
기부유치효율성(fundraising efficiency)	\$0.0
기본수익성장율(primary revenue growth)	22.0%
프로그램비용성장율(program expenses growth)	22.6%
운전자본비율(working capital ratio)	0.63%

▶ **책무성과 투명성(Accountability & Transparency Performance Metrics)**

<표 4-7> 국세청 보고서 상의 정보(2012년 6월 30일 현재)

항목	확인
독립성 있는 실행이사(independent voting board members)	✓
자산의 사용에 있어 중요한 방향전환이 없음(no material diversion of assets)	✓
재무제표가 외부감사 받음(audited financials prepared by independent accountant)	✓
특수관계인과의 대여 또는 차입거래가 없음(does not provide loans to or receive loans from related parties)	✓
이사회 의사록의 보관(documents board meeting minutes)	✓
Form 990을 제출하기 전에 감독기능에서 검토(provided copy of Form 990 to organization's governing body in advance of filing)	✓
이해의 상충과 관련된 정책(conflict of interest policy)	✓
(whistleblower policy)	✓
문서의 보관 및 폐기와 관련된 정책(records retention and destruction policy)	✓
CEO 성명과 보상정보의 공개(CEO listed with salary)	✓
CEO 보상결정 절차(process for determining CEO compensation)	✓
이사회 구성원 명단의 공개(board listed/ board members not compensated)	✓

자료: <http://www.charitynavigator.org>

<표 4-8> 웹사이트 상 정보(Information Provided on the Charity's Website)

항목	확인
기부자 개인정보보호 정책(donor privacy policy)	✓
이사진 명단 공시(board members listed)	✓
외부감사 재무보고(audited financials)	✓
Form 990	✓
핵심인력 공시(key staff listed)	✓

▶ **책무성과 투명성 -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관련 특성 분석:**

Direct Relief International 의 2012년 사업보고서의 두 번째 페이지에 chair의 성명, vice chair, secretary, treasurer, 은퇴한 chair, 국제 자문 위원회 명단, 현

president and CEO 등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어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핵심인력의 현황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20페이지에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21페이지에 재무상태표가 제시되어 있다. 22-2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이 나타나 있다. 주석의 내용으로는, 2012 회계연도의 운영실적과 현금수입, 임직원 현황 및 관련비용, 기능별 프로그램비용, 기부유치활동비용(fundraising expenses) 현황, 일반관리비 현황, 기타비용 및 임원보상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Direct Relief 의 웹사이트에 제시된 정보를 보면 <표4-8>에 제시되어 있다.

Charity Navigator가 check list에 포함한 기부자 개인정보보호 정책(donor privacy policy, 이사진 명단 공시(board members listed), 외부감사 재무보고(audited financials), Form 990, 핵심인력 공시(key staff listed)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웹사이트의 재무부분에서 책무성과 투명성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하고 있다.¹⁷⁾

외부감사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의 보고서를 올려놓고 있다. 2012 회계연도의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본 기관은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공시(fair value level disclosures)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련된 비용이 효익보다 크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Direct Relief의 기본원칙과 미션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는 투명성과 관련된, 특히 본 기관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재무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본 기관은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사람들과 기업들을 위한 공개된 주주총회(shareholders meetings)들을 개최한다. Direct Relief는 어떤 사람이든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재무자료를 올려놓고 있다. Direct Relief는 이해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 및 내부자고발(whistleblower)과 관련된 명확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재정적 신뢰성(integrity)과 지원자들과 일반대중(general public)을 위한 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명성을 유지하게 한다.

Direct Relief의 홈페이지에는 보상철학, 기부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금조달, 현물자원(in-kind resources)에 대한 평가가 공개되어 있으며, 재정보고와 관련되어서는, 감사보고서, Form 990, 기관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내규(bylaws), 주정부 인증서(California certificate of nonprofit status), 국세청의 세금면제기관 관련서류(IRS 501(c)3 determination letter), 라이선스와 소속단체(licenses and affiliations) 등이 공시되어 있다.

17) <http://www.directrelief.org/about/finance>.

▶ 보상관련 철학(compensation philosophy)

Direct Reliefs는 웹페이지 상에서 높은 자질을 가지고 동기유발이 잘 되어 있으며, 기관의 미션을 충족시키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적절한 수준의 직원에 대한 보상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하다. Direct Reliefs의 정책은 복잡성과 책임성에 비추어,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보상을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높은 능력을 보유한 직원을 채용하고 보유하며, 동기를 유발하고, 인식하며, 탁월한 업적에 보상하는 것임을 기술하고 있다. 각 직원에게 제공되는 보상은 경영진과 이사회에 의해서서 검토되며, 문서화될 것이다. 임원들에 대한 보상은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됨을 기술하고 있다.

▶ 보상구조(compensation structure)

직원에 대한 보상패키지는, 비영리기관에 적절한 기본급, 시간당 임금, 업적급(performance based pay)으로 구성된다.

- (1) Direct Reliefs은 모든 자격 있는(eligible) 직원들에게 은퇴연금(401K)에 대해 매칭해 준다.
- (2) Direct Reliefs는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건강, 치과 및 장기 상해보험을 지원해준다.
- (3) Direct Reliefs는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유급휴무를 제공한다. Direct Reliefs는 보상제도에 있어서, 변화된 업무에 기초한 주기적인 조정을 한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조정은 비영리계통에서의 실무와 비교 가능하도록 일관성 있게 수행된다.

▶ 보상에 있어서의 이사회역의 역할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의 수립에 대한 책임이 있다.

- (1) 각 직원의 보상과 관련된 결정과 이러한 보상에 대한 기준을 문서화 한다.
- (2) 각 직원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명확하게 설정된 기준에 기초되어 있고, 각 직원에 대한 검토가 연단위로 이루어진다.

임원급과 기타 주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사회는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는, 이사가 아닌 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사회를 위해 모든 보상과 관련된 사안을 감독한다. 보상위원회의 의장은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 참여한다.

임원과 주요 직원에 대한 보상: 보상위원회는 보상에 대한 제안과 결정이 적절하며, 합리적이고 결정이 문서화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보상관련 검토절차(procedures)

비영리기관은 일 년 단위로, 각 직원의 직책에 대한 보상을 검토한다. 이러한 Direct Relief에서 지급되는 보상에 대한, 지역, 분야와 국가의 비영리기관들에서 지급되는 보상과, 비교분석을 포함한다. 이 분석은 또한 비영리부분을 포함한 지역의 고용시장의 보상수준을 고려한다.

Direct Reliefs는 각 직원의 직책(position)에 대해서 적어도 두 번의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이러한 비교를 함에 있어서, 직무기술(job descriptions), 특별 필수조건이나 특기들(special requirements and skills), 그리고 각 직책과 관련된 책임과 복잡성의 수준(level of complexity and responsibility)이 검토된다. 벤치마킹을 위한 설문조사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지역노동시장 벤치마킹
- (2) 지역 비영리영역 벤치마킹
- (3) 국가 비영리영역 벤치마킹
- (4) 국제 비영리영역 벤치마킹

연차업적평가(annual performance review): 모든 직원은 연 단위로 슈퍼바이저(supervisors)들로부터 업적에 관한 평가를 받는다. CEO에 대한 연차업적평가는 이사회 의장에 의해 수행되며, 이사회 의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 의해 승인 받는다.



<그림 4-10> Direct Reliefs 예(www.directrelief.org)

2) United Nations Foundation¹⁸⁾

United Nations Foundation은 1998년에 기업인들과 자선사업가인 Ted Turner의 \$1 billion 기부예 의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UN이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국제건강, 평화와 안전(peace and security), 여성권익보호, 빈곤추방, 에너지 접근성(energy access)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United Nations Foundation의 운영효율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Charity Navigator는 평가점수를 전체적으로는 69.04/70을 주었으며, 재무성과와 운영의 건전성(Financial Performance Metrics)에서 68.65점, 책무성과 투명성에서 70점을 주었다.



<그림 4-11> United Nations Foundation 사례1

구체적으로는, United Nations Foundation의 홈페이지에 실행이사 현황 및 독립성여부를 공시하고 있으며, 다국적 비영리전문가 및 경영자 그룹 포함한 16인의 이사진에 대한 소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이슈 별(e.g., Global health, Energy & climate, UN-US relations, Women & population)로 전문가 그룹 소위원회 존재하고 있음을 공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 14년간의 IRS Form 990과 15년간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사회이사록 보관하고 있고,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해상충과 관련된 내부자고발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문서의 보관 및 폐기와 관련된 정책이 있으며, CEO보상결정관련절차를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 상에 보상철학/기부정책/보상구조 등에 대한 상세한 공시를 하고 있다.

18) <http://www.unfoundation.org>

Charity Navigator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목별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다음<표4-9>와 같다.

<표 4-9> Direct Relief의 재무성과와 운영의 건전성(2011년 12월 31일 현재)

항목	비중
프로그램비용(program expenses)	86.5%
관리비용(administrative expenses)	7.5%
기부유치비용(fundraising expenses)	5.8%
기부유치효율성(fundraising efficiency)	\$0.03
기본수익성장율(primary revenue growth)	39.9%
프로그램비용성장율(program expenses growth)	23.5%
운전자본비율(working capital ratio)	1.81

프로그램비용에서 86.5%을 사용한 반면, 관리비용은 7.5%에 불과하며, 기부유치비용과 관련해서는 5.8% 만을 사용하고 있어 기관의 운영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본수익성장율이 39.9%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책무성과 투명성(Accountability & Transparency Performance Metrics)**

국세청 보고서 상의 정보(Information Provided on the Form 990)

United Nations Foundation의 IRS Form 990상에 나타난 주요항목으로는 <표 4-10>와 같다. 독립성있는 실행이사가 존재하며, 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전환이 없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가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대여 또는 차입거래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사회 의사록을 보관하고 있고, 이해의 상충 및 내부자고발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문서의 보관 및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CEO 및 이사회 구성원의 명단과 보상(compensation)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상에도 기부자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책무성과 투명성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공시하고 있다.

<표 4-10> 국세청 보고서 상의 정보(2011년 12월 31일 현재)

항목	확인
독립성 있는 실행이사(independent voting board members)	✓
자산의 사용에 있어 중요한 방향전환이 없음(no material diversion of assets)	✓
재무제표가 외부감사 받음(audited financials prepared by independent accountant)	✓
특수관계인과의 대여 또는 차입거래가 없음(does not provide loans to or receive loans from related parties)	✓
이사회 의사록의 보관(documents board meeting minutes)	✓
Form 990을 제출하기 전에 감독기능에서 검토(provided copy of Form 990 to organization's governing body in advance of filing)	✓
이해의 상충과 관련된 정책(conflict of interest policy)	✓
내부자고발관련 정책(whistleblower policy)	✓
문서의 보관 및 폐기와 관련된 정책(records retention and destruction policy)	✓
CEO 성명과 보상정보의 공개(CEO listed with salary)	✓
CEO 보상결정 절차(process for determining CEO compensation)	✓
이사회 구성원 명단의 공개(board listed/ board members not compensated)	✓

<표 4-11> 웹사이트 상 정보(Information Provided on the Charity's Website)

항목	확인
기부자 개인정보보호 정책(donor privacy policy)	✓
이사진 명단 공시(board members listed)	✓
외부감사 재무보고(audited financials)	✓
Form 990	✓
핵심인력 공시(key staff listed)	✓

▶ 책무성과 투명성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관련 특성 분석: Direct Relief와 마찬가지로 United Nations Foundation도 책무성과 투명성부분에서 만점을 받았다.

United Nations Foundation (UNF)은 회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확실한 재무통제를 적용함으로써 기부자들에 의해 제공된 \$1 billion 이상의 기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노력의 결과로 지난 14년간 연속적으로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왔다. 1998년 설립 이래로 조달된 기부금 중, 평균 1달러당 93센트를

UN의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했다. 본 기관은 과거 14년간의 IRS Form 990과 15년간의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이사진의 명단과 그들의 경력사항도 아래의 예와 같이 상세히 제시되고 있다.

UNITED NATIONS FOUNDATION
Connecting You with the United Nations

Who We Are | What We Do | How To Help

JOIN US

WHO WE ARE: OUR BOARD

Board | Experts | Leaders | Careers | Financial Information | Impact | News & Media

Helping the United Nations Foundation Support the UN in Creating a Better World

WWW.UNFOUNDATION.ORG > WHO WE ARE > BOARD

OUR BOARD

R. E. Turner (U.S.A.)
Chairman, Turner Enterprises
Ted Turner is the Founder and Chairman of UN Foundation as well as Turner Enterprises, Inc. and former Vice Chairman of Time Warner Inc., the world's leading media company. He is the founder of CNN, an environmentalist, and a philanthropist. Turner created the UN Foundation in 1998 with his historic gift in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He has said that his gift is an "investment in the future of humanity."

MEDIA CONTACT

Aaron Sherinian
(202) 887-9040
press@unfoundation.org

Darley Torn
(202) 496-6384
dtorn@unfoundation.org

DONATE

<그림 4-12> United Nations Foundation 사례2

FINANCIAL INFORMATION

The United Nations Foundation (UNF) employs rigorous accounting standards and financial controls to effectively steward the more than \$1 billion entrusted to us by our Chairman, partners, and donors.

Our financial stewardship efforts have led to fourteen consecutive years of clean financial audits.

Since its inception in 1998, an average of 93 cents of every dollar that the UN Foundation raised and spent went directly to support UN programs and causes. A breakdown of our expenses for the fiscal year 2012 is presented below.

IRS 990 forms and financial statements from our auditors are available for both the UN Foundation and our sister organization, the Better World Fund. We provide our IRS Form 990s on our website in order to share our financial information with partners, donors, and the public. Studying the IRS Form 990 will increase your understanding of the charitable organizations you choose to support. Should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about these forms, please contact Walter Cortés, Chief Financial Officer at wcortes@unfoundation.org.

Read a recent statement regarding the status of Ted Turner's historic \$1 billion gift.

United Nations Foundation

IRS Form 990: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2002 | 2001 | 2000 | 1999

Auditors' Statement:
2012-2011 | 2011-2010 | 2010-2009 | 2009-2008 | 2008-2007 | 2007-2006 | 2006-2005 | 2005-2004 | 2004-2003 | 2003-2002 | 2002-2001 | 2001-2000 | 2000-1999

Better World Fund

IRS Form 990: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2002 | 2001 | 2000 | 1999

Auditors' Statement:
2012-2011 | 2011-2010 | 2010-2009 | 2009-2008 | 2008-2007 | 2007-2006 | 2006-2005 | 2005-2004 | 2004-2003 | 2003-2002 | 2002-2001 | 2001-2000 | 2000-1999 | 1999-1998 | 1998

<그림 4-13> United Nations Foundation 사례3

3) Globus Relief

Globus Relief는 미국 Utah주의, Salt Lake City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자선기관으로, 본 기관의 비전(vision)으로는 저개발국가의 의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시설, 기타 소모품을 제공하는 자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을 제시하고 있다. 미션(mission)으로는 인도주의 의료자원 지원기관으로서 다른 자선기관들, 기업들 및 정부기관들과 협력하여 세상의 의료혜택의 제공을 향상시키는 일에 전념한다. 이를 위해, 평가업무, 자문, 자원의 전달, Bio-tech 해결책의 제시 및 훈련을 제공한다.

Globus Relief(<http://www.globusrelief.org/>)에 대한 Charity Navigator의 평가는 전체적으로는 69.95/70을 받았으며, 재무성과와 운영의 건전성(Financial Performance Metrics)에서 69.94점, 책무성과 투명성에서 70점을 받았다.

홈페이지에 실행이사 현황 및 독립성여부를 공시하고 있으며, 영리기업의 최고경영자인 7인의 독립이사를 포함한 9인의 이사진에 대한 소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 2년간의 Form 990과 감사보고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공개하고 있다. 한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사회이사록 보관하고 있고,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해상충과 관련된 내부자고발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문서의 보관 및 폐기와 관련된 정책이 있으며, CEO보상결정관련절차를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 상에 보상철학/기부정책/보상구조 등에 대한 상세한 공시를 하고 있다.

Charity Navigator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목별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다음<표 4-12>,<그림 4-14,15,16>과 같다.

<표 4-12> 재무성과와 운영의 건전성(2011년 12월 31일 현재)

항목	비중
프로그램비용(program expenses)	99.4%
관리비용(administrative expenses)	0.4%
기부유치비용(fundraising expenses)	0.0%
기부유치효율성(fundraising efficiency)	\$0.00
기본수익성장율(primary revenue growth)	44.0%
프로그램비용성장율(program expenses growth)	35.1%
운전자본비율(working capital ratio)	0.79

▶ 책무성과 투명성(Accountability & Transparency Performance Metr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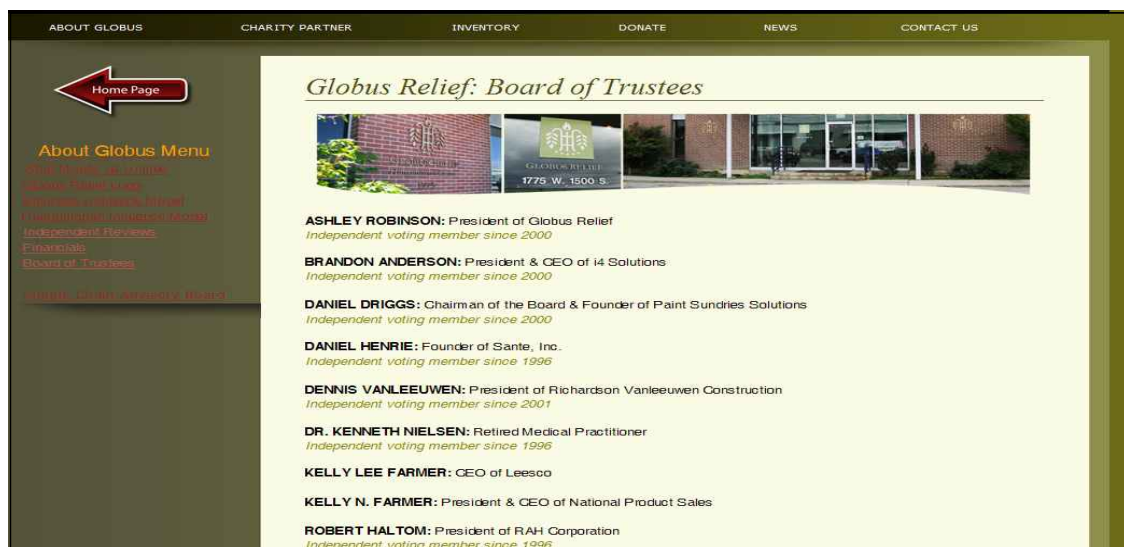
국세청 보고서 상의 정보(Information Provided on the Form 990)



<그림 4-14> Globus Relief 사례1



<그림 4-15> Globus Relief 사례2



<그림 4-16> Globus Relief 사례3

3. 해외 실패사례(Worst Practice Cases)

Charity Navigator는 2012년 자체 개발한 index에 기초하여 America's 50 worst charities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들 중 최하위에 열거된 몇 개 기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Kids Wish Network

Kids Wish Network는 1997년에 설립되어 미국 플로리다(Florida) 주의 홀리데이(Holiday)시에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해마다 Kids Wish Network은 수백만 달러를 모금하여 죽어가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Kids Wish Network의 내부통제 및 투명성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7인의 이사 성명은 공개되어 있으나 경력사항 및 독립성여부 판단은 불가능 했다. 소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Form 990은 당해 연도 분은 공개되었으나, 사업보고서와 외부감사보고서는 공개가 안 되었으며, 이해상충과 관련된 내부자고발정책, 문서의 보관 및 폐기와 관련된 정책, CEO보상결정관련절차, 보상철학/기부정책/보상구조 등에 대한 상세한 공시가 존재 하지 않았다. 또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었으나 그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었다.

Form 990 상에 재무제표는 CPA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표시하고 있으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찾을 수 없었으며, 유일한 재무정보는 Form 990이었다. 비록 본 기관이 내부자고발정책이 있으나, 횡령사건이 있었던 경우, 해당 직원을 해임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Form 990 상에 기관이 특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음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전 이사인 Mark Breiner는 United Charities International, Inc.와 Amerasource의 직원이자 주주이었는데, 이 기관들은 Kids Wish에 라이선싱과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2011년에 \$692,772 및 2010년에 \$993,000을 받았다.

동기관은 전 임원(officer), 이사(director) 또는 trustee, 주요 직원(key employee), 또는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 직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본 기관은 총수익의 2.5% 만을 직접적인 현금지원(direct cash aid)으로 사용한 반면, \$109.8 million의 현금을 판촉원(solicitor)들을 위해 지급했다. 반면에 \$18.1 million을 charity를 위해, \$3.2 million을 현금 지원(cash aid)을 위해 사용했다. 출납담당(treasurer) 이면서, 실행이사(executive director)인 Anna Lanzatella는 2011년 \$119,399의 기본급을 받았다. 3건의 주법위반으로 \$6,250의 벌금을 지급했다.

2011년 판촉원에 의해 \$18,572,871을 기부금을 모집하여, 그 중 \$14,514,273을 판촉원들의 급여로 지급했다. 한편 \$4,058,698을 자산단체에 지급했으며, 그 중 약 25%

인 \$994,213이 자선단체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했다. 직접적인 구호활동에 사용한 금액은 \$239,986인 총기부금의 1.29%에 불과하였다.

2011년 CEO인 James Reynolds는 연봉으로 \$236,815를 가져갔으며, CFO인 Kyle Effler는 \$121,152를 가져갔다. 2011년 판촉원들에 의한 총 \$6,015,451 중 \$5,016,543을 판촉원들(solicitor)에게 지급했으며, 자선기관에 사용한 금액은 \$1,008,908이었으나,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인 \$1,710,945을 자선기관의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직접적인 도움에 사용한 금액은 \$14,940에 불과해 총 수입 중 0.25%만을 direct aid에 사용하였다.

해마다, 본 기관은 거의 모든 기부금을 기관 운영자(operators)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아픈 어린이들은 총 기부금의 3%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을 지원받을 뿐이다. 본 기관은 오랜 기간 동안 꿈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한다고 하면서 끈질기게 기부금을 모았다. 지난 10년간 거의 \$110 million의 금액을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모금하였다. 본 기관은 많은 금액을 영리목적의 기금 모집자들(for-profit fundraisers)에게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설립자와 그의 회사들에게 적어도 \$4.8 million의 보상과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설립자 Mark Breiner은 여전히 KW의 최고책임자이며, 연 \$130,000의 보상을 받고 있다. 그는 또는 자금 모집회사인 Dream Giveaway의 partner로서 2008년과 2009년에, Kids Wish 로 하여금 Dream Giveaway에 거의 \$1.7 million을 자문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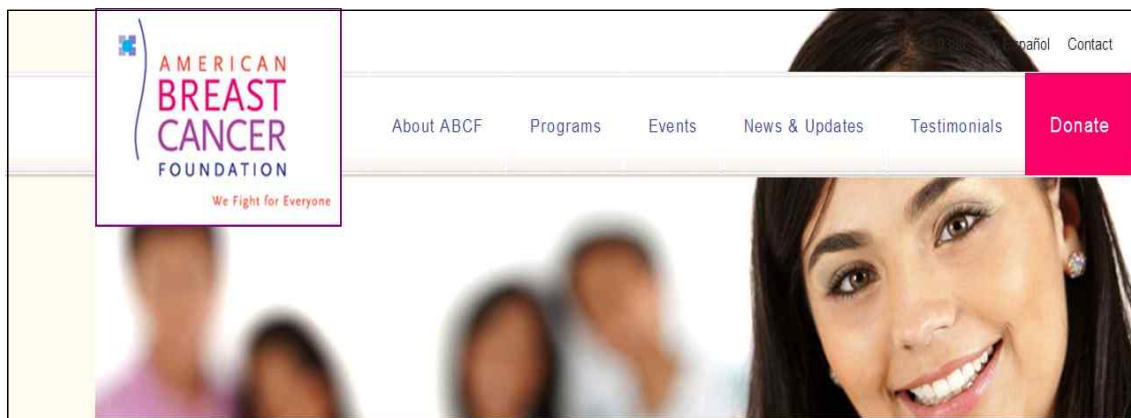
Breiner는 2010년 중반, Kids Wish에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돈 벌이를 해왔으며, 그의 장모를 기관의 이사로 남겨 놓았다. 2010년과 2011년에 기관은 Breiner의 회사 2곳에 \$2.1 million를 라이선싱, 자문 및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 Kids Wish 은 Breiner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시하지 않아 IRS 규정들을 위반해왔고 기관은 회계사들의 실수로 공시가 지연되었다고 회계사들을 비난했다. Breiner는 2012년 Kids Wish로부터 받은 \$1.26 million 에 대한 그의 펀드레이징과 자문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했다.

위의 내용들은 전형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 또는 부적절한 작동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American Breast Cancer Foundation

American Breast Cancer Foundation (<http://www.abcf.org/>)은 1997년 설립되었고 질병과 장애관련 비영리기관이다. 메릴랜드(Maryland)주의 볼티모어(Baltimore)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동 기관에 따르면, American Breast Cancer Foundation은 자선활동과 교육을 1986년 제정된 IRS Code 501(c) 3에 근거하여 비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방암과 관련된 연구와, 뉴스레터, 테이프 및 공청회들을 통해 일반대중을 계몽하며,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유방암 조기진단 X선 촬영을 보조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관은 직접적인 현금지원(cash aid)로 총수입의 5.3%만을 사용하여 America's worst foundation 3위에 rank 된바 있다. 2011년 총 \$1,080,163의 수입 중에서 판촉원(solicitor)들을 위해 지급한 급여가 \$883,789에 달했으며, 자선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196,374인 반면에 자선기관 관련 급여는 \$412,453에 달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direct cash aid)는 \$100,000에 불과해 총수입의 9.26%에 불과했다.



<그림 4-17> American Breast Cancer Foundation 사례

American Breast Cancer Foundation의 홈페이지에는 재무정보가 공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6인의 이사와 주요 직원 4인에 대한 간단한 경력은 공개되었으나, 독립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불가했다. 또한 소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Form 990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있지 않았다. CEO보상 관련 정보도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American Breast Cancer Foundation은 Charity Navigator에 의해 지난 13년 동안 낭비적이며 최악의 비영리기관들 중 하나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

다. 동 기관은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유치하면서 유방암조기발견을 위한 활동에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2010년 당시 저소득층 여성들의 유방암진단에 단지 \$100,000 만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American Breast Cancer Foundation의 설립자인 Phyllis Wolf 는 1997에 본 기관을 설립했으며 유방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자선활동을 한다고 많은 기부금을 모금해왔다. Wolf의 경영 하에, American Breast Cancer Foundation은 투병중이거나 죽어가는 여성들을 위해 한일이 거의 없었다. 대신에 Wolf는 6개 이상의 기부금모금전문기업들과 계약을 맺었고 그들을 위해 모금액의 75%을 지급하였다. phyllis Wolf의 아들인 Joseph A. Wolf는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모금관련 영리기관 대표이었다.

3년간 American Breast Cancer Foundation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후, Joseph은 비영리기부금 모금과 관련된 텔리마케팅회사를 설립하였다. 2003과 2010년 사이에, 그의 회사는 그의 어머니인 Phyllis Wolf를 위해 거의 \$18 million을 모금했다. 이러한 관계는 IRS 보고서에 2006년까지 공시되지 않았었다. 2010년 6월에 Wolf의 이러한 경영행태와 관련되어 부정적인 내용이 알려지게 되자, 이사회는 Phyllis Wolf을 사임토록하고, 그녀의 아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당해 연도에 Wolf는 \$126,500의 보상을 받았고, 그녀의 아들 회사는 \$134,733을 받은 반면, 암환자들은 단지 \$20,000 가치의 유방검진 X선 촬영혜택을 받았다.

3) Cancer Fund of America

Cancer Fund of America (<http://www.cfoa.org/>)는 1984년에 시작하였으며, 테네시 주(tennessee), 녹스빌(Knoxville)에 본부를 두고 있다. 본 기관은 암과 싸우는 최전선에 자신들이 존재한다고 선언서에(pledge letters) 주장하고 있다. Cancer Fund은 재정적으로 궁핍한 암환자들에게 재정적으로 직접적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CF는 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활동을 하며, 호스피스서비스나 기타 건강관리 서비스를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요활동 및 지출은 암치료와는 관계가 없고, 대신에 이 자선기관은 샴푸, DVD, 방향제 등을 포함한, 기부금품을 모으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것들을 죽어가는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보내주었다.

기부금이 세면도구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소모품 등을 생산하는데 쓰이는 동안, 영리목적의 fundraiser들은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CFA의 설립자와 다른 십여 명의 가족들은 CFA와 네 개의 분사(spin-off)된 자선기관으로부터 적어도

\$1 million의 보수를 받았다.

본 기관은 오직 0.9%만을 직접적인 현금보조(cash aid)로 사용하였다. \$80.4 million을 판촉원(solicitor)들을 위해 지급했다. \$17.6 million을 자선기관을 위해 사용했으며, \$891,812을 직접적인 지원(direct cash aid)에 사용했다.

수십년동안 CFA는 수백만 달러를 모금하여, 영리목적의 기금모집인(fundraisers)들에게 모금액의 82 페센트를 지급해 왔다. 지난 10년간, 기금모집인들은 \$98 million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나, 이 금액 중 \$1 million도 안 되는 금액을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돕는데 사용해 왔다.

4) Firefighters Charitable Foundation

Firefighters Charitable Foundation (<http://www.ffcf.org/>)은 1991년 설립되어 화재나 재난으로 인해 부상당하거나, 가정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다.

2002년부터 2011년에 걸쳐서 Firefighters Charitable Foundation은 \$64 million의 기부금을 유치했으며, 이 금액 중 \$55 million을 기부금유치활동을 의뢰했던 영리기관들에게 지급했다. 동 기관은 \$1달러당 10센트 미만의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했다. 동 기관은 2007년이 되면 이러한 행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The banner at the top features a collage of images: firefighters in action, a burning house, and a firefighter in front of flames. To the right of the collage is the text "Helping Victims of Fire & Disaster" in a stylized font, followed by the Firefighters Charitable Foundation logo, which is a Maltese cross with a fire hydrant in the center and the words "FIREFIGHTERS" and "CHARITABLE FOUNDATION" around it.

Below the banner, on the left, is a photograph of a young child being held by an adult. To the right of the photo, the text reads: "The Firefighters Charitable Foundation provides funding that:" followed by three bullet points, each preceded by a red heart icon:

- ♥ Assists fire and disaster victims; and supports Volunteer Fire Departments.
- ♥ Funds fire safety programs, first aid education and helps children in need.
- ♥ Delivers aid directly to victims through FFCF and other charitable organizations.

<그림 4-18> Firefighters Charitable Foundation 사례

홈페이지 상에 공시된 정보는 핵심 스텝과 이사진에 대한 성명과 간단한 대표 약력이 나타나 있으나 질적인 정보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선활동과 관련된 기관의 보고서로는 1페이지짜리 간략한 뉴스레터가 분기별로 공시되고 있으나, 재무자료 및 사업보고서는 공시가 되지 않고 있다. 이사진과 관련된 정보로 7인의 이사들에 대한 간단한 경력은 공개되었으나, 독립성 여부에 대한 내용은 판단이 불가능하고, 소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orm 990 및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도 홈페이지 상에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Children's Wish Foundation International

Children's Wish Foundation International (<http://www.childrenswish.org/>)은 Charity Navigator에 의해 Worst 3에 선정된 비영리기관으로 이 기관은 2010년에 죽음에 직면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600,000를 사용했으며, \$3 million 가치의 기부된 물품을 그들에게 전달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동 기관은 기금모집회사들에게 \$6 million를 지급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Children's Wish Foundation International의 설립자는 텔레마케팅(telemarketing)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찾아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Children's Wish Foundation International의 홈페이지는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보고서와 Form 990은 1년 치만 공시하고 있다.



<그림 4-19> Children's Wish Foundation 사례

2013년 6월 13일 자 CNN의 보도에 따르면, Tampa Bay Times와 the 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의 조사에 따르면, Kid's Wish Network은 매년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그러나 동 기관은 모금한 1달러 중 단 3센트도 안 되는 금액을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금액은 기관의 운영자의 부(wealth)를 증대시키거나 Kids Wish가 고용한 영리기관에 지급하는데 사용했다. 과거 10년 동안, Kids Wish는 거의 \$110 million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금회사에 지급했으며, 추가로 \$4.8 million를 Kids Wish의 설립자와 설립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문회사(consulting firms)들에게 지급했다. 이러한 사례는 비영리기관이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보다는 설립자의 개인적 이익추구의 수단일 뿐이 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기부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및 외부 모니터링시스템이 부재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 3 절 홈텍스 vs. Form 990 비교

비영리기관의 운영과 내부통제 및 정보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자료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홈텍스에 공개된 정보이며, 미국의 경우 Internal Revenue Service(IRS)의 Form 990에 공개된 자료가 비영리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홈텍스에 제시되는 내용과 미국 Form 990에 제시되는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1. 홈텍스 vs. Form 990의 기본사항 차이점

홈텍스의 경우, 자산보유현황 및 수입원천 별 내역,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현황 각각 제시, 사업목적이 제시되고 있으며, Form 990의 경우, 활동과 지배구조 등 인적 구성 정보, 순자산의 변화 및 기부금과 보조금, 프로그램서비스수익 등 주요 재무항목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홈텍스의 경우, Form 990에 비해, 재무제표와 관련된 자료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반면에 미국의 Form 990의 경우 이사회 및 직원과 관련된 기관의 인적 정보가 우리나라 보다 좀 더 상세하게 공시되고 있다.

<표 4-13> 홈텍스 vs. Form 990의 기본사항 차이

	홈텍스		Form 990
1. 기본사항	공익법인명	1. Summary	1. 미션과 중요한 활동기술
	사업 년도	활동과 지배구조 (activities & governance)	2. 순자산의 25% 이상을 처분했거나 또는 운영을 중단했는지 여부
1. 기본사항	대표자		3. 이사회 명수
	전화번호		4. 독립이사 명수
	소재지		5. 직원수
	전자우편번호		6. 자원봉사자수
	공익사업유형		7.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수익금액
	설립근거법		8. 기부금(contributions)과 보조금(grants)
2. 자산보유현황	총자산가액	수익	9. 프로그램서비스수익
	토지		10. 투자수익
각각에 대해: (1) 고유	건물		11. 기타수익
목적사업, (2) 수익사	주식 등		12. 총수익
업, (3) 총계	금융자산		13. 기부금 등 지급한금액
	기타자산		14. 회원들(members)에게 지급한 보조금(benefits)
3. 수입원천별 수입금	수익사업-금융	비용	15. 급여(salaries), 기타보상(other compensation), 종업원보조금(benefits)
액 현황			16. 전문모금수수료(professional fundraising fees), <u>총모금비용</u>
각각에 대해: (1) 수입	수익사업-부동산		17. 기타비용
금액, (2) 필요경비, (3)	기타수익사업		18. 총비용
소득금액	고유목적사업		19. 순수익(수익-비용)
4. 고유목적사업 현황	사업목적	순자산	20. 총자산
	구비서류:		21. <u>총부채</u>
	(1)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치계산서)		22. 순자산 또는 기금잔액 (20. - 21.)
	(2)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4)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명세서		
	(5) 출연자 및 이사회 주요구성원 현황명세서		

2. 홈텍스 vs. Form 990의 기타사항에서의 차이점

홈텍스의 경우 기부금의 모집 및 지출명세,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및 보유명세가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주요 구성원 현황이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다.

<표 4-14> 홈텍스 vs. Form 990의 기타사항 차이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1. 기부금의 수입	수입	4. 공익법인의 자 자산총액	
지출 명세	지출	산출액에서 주식이자소득액	
월별 현황	잔액	차지하는 비율	비율
2. 기부금 지출 명세서	지출목적	비고	
	지급건수	4. 출연자 및 이사회 주요 구성원현황 명세서	
	대표지급처명	설립시 출연자(기부자)	성명
	금액	출연재산종류(1.현금 2.금융자산 3.토지	출연재산종류(1.현금 2.금융자산 3.토지
3.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 명세서		4. 건물(구축물 포함) 5.주식 등 6.기타)	출연가액
1. 주식등의 보유현황	주식명	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보유주식수	상 동	
	주식가액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성명
	보유경위(출연, 유상취득, 기타)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임원, 그 밖에 해당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임여부
	배당현황	출연자와의 관계	직책(이사, 기타)
	비고		
2. 보유주식 변동사항	일자		
	변동사유		
	주식명		
	주식수		
	주식가액		
	관계(주식발행법인, 출연자와의 관계)		
3. <u>주식등의 보유비율</u>	주식명		
	주식수		
	보유비율: 총발행주식		
	보유비율: 보유주식수		
	보유비율: 보유비율		
	비고		

3. Form 990에서 요구하는 기타사항

Form 990의 경우, 우리나라의 홈텍스 자료와는 다르게, 프로그램서비스업적, check list 형식의governance /management / policies/disclosure관련 현황, 임원/이사 등 구성원에 대한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보상(compensation)정보, 재무제표 작성 시 발생주의 회계처리 여부, 재무제표 작성자 등의 정보 제시, 외부감사여부,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등을 공시하고 있다.

<표 4-15> Form 990에서 요구하는 기타사항

	<u>프로그램서비스 업적(accomplishments)</u> 조직의 미션 기술 기관이 당해 연도 동안 Form 990에 열거되지 않은 중요한 프로그램서비스를 수행했는지 여부 기관이 프로그램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세 개의 가장 큰 프로그램서비스에 관한 업적 기술(비용, 수익 기술)
	<u>Governance, management, disclosure</u> 이사회 명수 독립이사 명수 임원, 주요직원, 신탁관리인(trustee)이 다른 임원, 주요직원, trustee와 관련 있는지 여부 기관이 다른 회사 또는 개인에게 임원, 이사, trustee, 핵심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위임했는지 여부 지난 세무보고 이후에 기관에서 governing 문서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기관의 자산과 관련된 중요한 전환(diversion)이 있었는지 여부 기관에 주주(stockholders)가 있는지 여부 기관에 지대기구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있는지 여부 기관은 지대기구와 소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문서화를 하는지 여부 기관의 임원, 이사, trustee, 주요직원 중 기관의 mailing address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 기관은 지역 chapter, 지정 또는 affiliates가 있는지 여부 기관은 제출 전에 Form 990의 복사본을 지대기구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지 여부 기관은 이해의 상충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 주요직원, 신탁관리인(trustee)이 다른 임원, 주요직원, trustee은 이해의 상충을 공시하도록 요구되는 지 여부 기관은 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는지 여부 기관이 내부자고발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기관이 문서의 보관과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기관은 다음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독립적인 사람들에 의한 검토와 승인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CEO, Executive director, top management official Key employees 당해 연도 동안 기관은 조인트벤처 또는 파생기관에 투자했는지 여부 만일 투자했다면,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문서화된 절차가 있는지 여부
정책(policies)	
공시(dislosure)	Form 990을 제출할 지방정부 열거 Form 990을 공시하는 경우: 자체웹페이지, 다른웹페이지, 요청서 기관의 의사결정, 이해의상충, 재무제표가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는지 여부 기술 기관에 대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u>Compensation of officers, directors, trustees, key employees, highest compensated employees, and independent contractors</u> 성명과 직책 주당평균시간 Position(director, key employee, officer, 기관 trustee, highest compensated employee) 보상금액 기타보상금액
재무제표와 보고	Form 990작성에 적용한 회계처리방법(원금주의, 발생주의) 외부감사인에 의해 작성되거나 검토되는지 여부 외부감사를 받았는지 여부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정부보조를 받는지 여부

4. 홈텍스 및 Form 990에서 공시되는 재무제표

우리나라의 홈텍스 및 미국의 IRS Form 990에서 공시되는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면, 홈텍스의 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공개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분리해서 2개년 치를 비교형식으로 공시하고 있다. 반면에 Form 990에서는 수익보고서 및 기능별비용보고서(functional expense statement)를 분리해서 별도의 보고서로 제시하고 있으며, 순자산변동에 대한 보고서(reconciliation of net assets)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표 4-16> 홈텍스 vs. Form 990에서 공시되는 재무제표 비교

홈텍스	Form 990
대차대조표	Statement of revenue
공익사업, 수익사업	Statement of functional expenses
각각 2개년치 제시	Balance sheet
손익계산서	Reconciliation of net assets (순자산 조정)
공익사업, 수익사업	
각각 2개년치 제시	

5. 한국 및 미국의 비영리기관 감사보고서 비교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주식 등 전체적인 내용은 한국 및 미국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현금흐름표도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공시되고 있으나 한국의 비영리기관의 경우 현금흐름표까지 공시하는 기관은 발견할 수 없었다.

<표 4-17> 한국과 미국 감사보고서 비교

홈텍스	Form 990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운영성과표	Statement of activities and changes in net assets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Statement of functional expenses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현금흐름표
1. 일반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과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1. 조직일반사항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2. 중요한 회계정책
수익의 인식기준	기본사항
기부자산 및 기부물품의 평가기준	추정치사용
유가증권	현금동가액(cash equivalents)
유형자산의 평가와 감가상각	미래이자에 대한 가치
퇴직급여충당금	재고자산
기타자본잉여금	유형자산(건물, 장비 등)
전기재무제표의 과목개분류	수익인식
3. 토지보유현황	투자자산현황
4. 건물보유현황	공정가치측정(fair value measurements)
5. 임차보증금내용	부채
6. 기타보증금내용	순자산
7. 미지급금내용	기부금(endowment funds)
8. 퇴직급여충당금내용	편선비용
9. 자본금내용	신용위험, 수익위험
	리스
	법인세

제 4 절 해외 비영리기관 회계제도

1. 미국

1) 미국의 비영리기관과 회계기준

미국의 경우 세법인 Internal Revenue Code(IRC) 제501(c)(3)에서 비영리면세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면세단체는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 점검, 문학, 교육, 국내 및 국제아마추어 스포츠 진흥, 아동 및 동물 학대방지 등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 기금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들은 또한 순이익이 주주 또는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하며,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활동 및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면세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조직테스트(organization)과 운영테스트(operation test)로 구성된 공익성 테스트에 통과해야 한다.

조직테스트는 위에서 언급한 면세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운영테스트는 단체의 기능이 실제로 설립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단 면세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매년 미국의 국세청인 Internal Revenue Service가 요구하는 보고서인 Form 990을 작성하여 조·작·직의 현황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해야 하며 연차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비영리 법인과 관련된 회계기준으로는 일반적인 경우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가 정한 회계기준을 따르게 되며, 다만 정부가 설립했거나 관리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정부회계기준위원회(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GASB)가 제정한 정부회계기준을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표 4-18> 미국의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적용	제정기관	기준
민간부문 비영리기관	FASB	SFAS 93, 116, 117, 124
정보부문 비영리기관	GASB (NCGA)	GASB Statement No. 29, 35
		NCGA Statement No. 1
	AICPA	SOP 78-10
		Industry Audit Audits of Voluntary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s

2) 비영리기관 회계정보의 공개

면세단체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IRS의 보고서 양식인 Form 990(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 Form 990-EZ, Form 990-PF, 또는 Form 990-N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양식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입과 지출, 순자산, 제공한 프로그램, 이사회와 구성원과 보수를 받는지 여부, 재무제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산이 1천만 달러를 초과하면 Form 990을 작성하게 되며, 민간재단과 자선신탁은 Form 990-PF를 제출하게 되고, 총수입이 \$50,000 이하의 소규모 면세단체는 Form 990-N을 작성하여 전자공시를 하면 된다.

총수입이 \$50,000 이상이고 Form 990-N을 작성하지 않은 단체는 Form 990-EZ를 작성하게 된다. 규모가 커질수록 보고해야 할 내용이 많아지게 된다. 면세단체는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이나 설립 및 관리규정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시 그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되고 있다(손원익·송은주 2010). IRS에 제출된 비영리단체의 각종 보고서는 Guidestar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관리는 IRS에서 수행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규모와 위반기간에 따라 가중되는 가산세(penalty)를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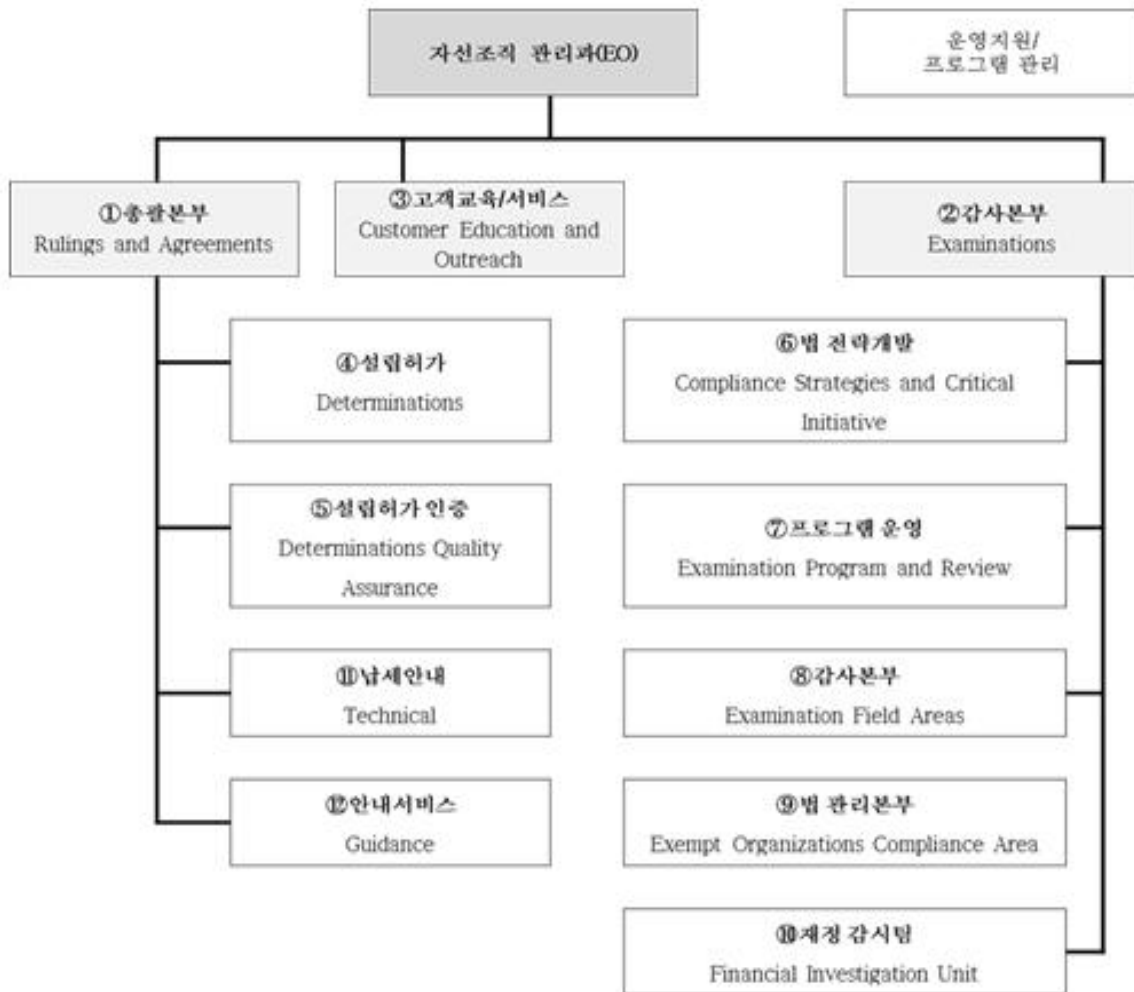
한편 미국의 IRS는 아래 표와 같은 체제 하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비영리기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표 4-19> IRS 인적자원 현황

년도	총괄본부	감사본부	고객서비스	운영지원	합계
2010	337	538	13	12	900
2011	332	531	12	14	889
2012	335	516	12	13	876

* 자료: Letter from the director (IRS Exempt Organizations, FY 2012 Annual Report & FY 2013 Workplan)

<표 4-20> IRS 조직도



* 자료: Letter from the director (IRS Exempt Organizations, FY 2012 Annual Report & FY 2013 Workplan)

3) 비영리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에서 \$500,000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되면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구되고 있다. 2015년부터는 \$500,000 기준이 \$750,000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미국의 예산관리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주, 지방정부, 비영리조직에 대한 감사지침인 Circular No A-133를 근거로 미국의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제정한 정부감사기준(Government Auditing Standards)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Circular A-133은 The Single Audit Act of 1984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The Single Audit Act는 비연방정부 조직들로서 연간 \$500,000 이상의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조직들은 단일감사(single audit) 또는 프로그램지정감사(program specific audit)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언제 정부보조가 사용되었는지는 보조가 수여된 기간으로 한다. 비용들은 현금거래, 대출(loans), 대출보증(loan guarantees), 연방정부에서 제한된 기부기금(federally endowment restricted funds)와 이자보조(interest subsidies) 등 다양한 비현금보조를 포함한다. 프로그램지정감사(program specific audit)는 피감사인인 하나의 연방 프로그램이나 관련법규, 기금협약 하에서 연방보조를 사용했을 때 수행된다.

Circular A-133은 정부보조를 받은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추가사항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 (1) 적절한 법규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든 연방정부프로그램들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유지
- (2) 모든 기금프로그램번호와 명칭, 기금제공기관, 기금수여 년과 중간보조기관들이 있을시 기관명의 명시
- (3) OMB Circular A-133하에서의 감사를 받은 경우, 적절한 연방기관에 요구되는 대로 제출되었음을 확인
- (4) 감사에서 발견된 사항, 의문이 있는 비용들 또는 법규의 준수와 관련된 내용. 이것은 필요시 특정한 조치, 현재 또는 이전의 발견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정내역들
- (5) 외부감사와 관련된 공식적 자료수집과 준비된 단일감사양식(single audit submission form), 정부보조를 받은 기관은 법적으로 이러한 양식들의 정확성과 적시성 있는 제출책임
- (6) 만일 피보조기관이 2차 수여자들을 가지고 있다면, 피보조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절차가 필요하다.

Circular A-133은 연방지원을 받은 비영리기관의 감사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1)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generally accepted auditing standards, GAAS)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정부감사기준(generally accepted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GAGAS)에 따른 감사의 계획과 수행
- (2) 만일 비영리기관과 연방정부수여와 관련된 재무제표는 GAAS와 GAGAS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밝힘
- (3) 연방지원에 대한 사용비용명세서(Schedule of Expenditures of Federal Awards)가 기관의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밝힘

- (4) 연방정부 지원의 수여자들의 측정된 위험이 낮음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시사의 수행
- (5)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수여자가 관련 법규, 협약의 준수를 하고 있음에 대한 검토와 시사절차의 결정
- (6) 전기의 감사에서 발견된 내용에 대한 조치

Circular A-133은 지원을 해주는 연방정부에 대해서도 감사과정 중에 다음 내용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열거하고 있다.

- (1) 감사는 정시에 완성되고 제출되었음을 확인
- (2) 연방정부 재정보조 수여기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감사인 또는 피감사기관에 대한 기술적 도움을 제공
- (3)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6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감사의 발견된 내용에 대한 경영자의 결정내용 제공
- (4) 재정보조 수여기관이 감사결과의 발견사항에 대한 조치와 필요시 개선 및 시정조치의 수행에 대한 확인

Circular A-133은 감사인의 보고서가 결합되거나 또는 분리된 보고서일 수 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가 OMB Circular A-133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언급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재무제표와 비용명세서가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일치되도록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에 대한 의견
- (2) 재무제표와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부통제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
- (3) 재정보조 수여자가 관련법규 및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하는 정도를 기술한 보고서
- (4) 발견된 내용과 의문이 있는 비용에 대한 명세서
- (5) 요구되는 위험기준 방법(risk-based methodology)을 사용하는 주요 프로그램들의 목록
- (6)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이 높은 위험 또는 낮은 위험 하에 있는지에 대한 연방정부프로그램에 대한 결정

2. 일본

1) 일본의 비영리기관과 회계기준

일본의 비영리법인은 각종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NPO법에 따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반 및 공익사단 및 재단법인이 있다(김완희 외, 2013). 일본의 경우 기관 및 법인들 간의 특성에 따른 의견차이로 법체계가 통일이 되지 못하고 일반비영리조직과 1998년 시행된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 따른 NPO(non-profit organization)법인 등이 병존하고 있다.

일반 공익법인과 관련해서 2009년 내각부 공익인정등위원회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이 기준에서는 공익법인이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일반에게 공개할 재무제표의 작성기준과 양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배원기 2012). NPO법인 중 공익활동에 관한 요건, 운영조직 요건, 사업활동 및 정보공개 요건, 경과연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public support test를 통과하고 국세청장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인정NPO라고 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우대를 받게 된다.

일본은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별로 별도의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주무관청이 제정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반면 NPO법인들은 2010년 7월에 NOP회계기준협의회가 제정한 NPO법인 회계기준을 사용한다(김완희 외 2013, p. 60). NPO회계기준은 정부기관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NPO단체, 회계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이 모여 약2년간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제정되었다(배원기 2012). 반면 일반 및 공익사단과 재단법인은 정부에서 제정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한다.

2) 일본의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표 4-21> 일본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구분	주무관청	회계기준
사회복지법인	후생노동성	사회복지법인 회계기준
의료법인	후생노동성	병원회계준칙
사립학교법인	문부과학성	학교법인 회계기준
종교법인	문부과학성	종교단체회계지침

* 자료: 김완희 외 (2013)

3) 비영리기관 회계정보의 공개

공익법인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익인정등위원회에 제출해야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공익인정등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웹사이트에 올려놓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에 자료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주무관청에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하면 50만엔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년 이상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립이 취소할 수 있다.

4) 비영리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자산이 100억엔 이상 또는 부채가 50억엔 이상 되는 공익사단 및 공익재단법인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총수입 및 지출액이 10억엔 이상인 비영리법인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구되고 있다.

3. 영국

1) 영국의 비영리기관과 회계기준

영국에서는 공익자선법(Charities Act)에 따라 자선사업감독위원회에 등록되면 세법상의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비영리법인들은 CCEW(The Charities Commission for England and Wales)가 제정하는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을 따르게 된다. 회사형 비영리법인은 회사법에 따라 조직된 법적형태가 회사인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사법에 따라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England와 Wales에서는 수입금액이 £250,000 미만일 경우에는 현금주의 회계를 허용해 주며, 수입금액이 £250,000 이상의 경우에는 UK GAAP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Scotland에서는 수입금액이 £100,000 미만일 경우에는 현금주의 회계를 허용해 주며, 수입금액이 £100,000 이상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UK GAAP)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영국 비영리기관 회계정보의 공개

영국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기관인 자선사업감독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 결산서류, 직원현황 등을 제출하게 되며, 수입액이 £100,000 이하인 법인은 간소한 연간보고서와 기관등록 기본정보만 제출하게 된다. 당해 연도 수입액이 £500,000를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2,800,000을 초과하고 수입액이

£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자선단체는 매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소득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3) 영국자선단체 수입규모별 정보공개양식

<표 4-22> 영국 자선단체 수입 정보공개 양식

수입규모	Annual Update	Annual Return		
		Part A	Part B	Part C
£ 100,000 이상		O	O	O
£ 50,000 이상 £ 100,000 미만		O	O	
£ 25,000 이상 £ 50,000 미만		O		
£ 10,000 이상 £ 25,000 미만		O		
£ 10,000 미만	O			

*자료: 박주언·이희길(2012, p.209)

Annual Return Part A는 단체의 기본적인 정보인 수입 및 지출, 연락처, 이사, 활동지역, 분류, 자원봉사자 수, 주거래 계좌번호 등 총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B는 단체의 재정에 관한 정보인 총 수입 및 지출의 상세내역 기타 이득이나 손실과 자산과 부채 현황 같은 총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Annual Return Part C는 활동목적, 수혜대상, 중장기전략 및 성과측정방법, 금년 주요 목표 및 성과, 세 가지 주요 모금활동과 수입/비용, 재정건전성 등 총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영국 비영리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당해 연도 수입액이 £ 500,000를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 2,800,000을 초과하고 수입액이 £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요구되고 있다. 당해 연도 수입이 £ 10,000에서 £ 500,000 사이이고 자산이 £ 2,800,000 이하인 경우에는 간소한 연간보고서와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되나 외부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와 검토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 5 절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 비영리기관의 내부통제

국내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과 공금횡령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조직에서의 일반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의 윤리의식 부재와 적절한 내부통제제도의 미비와 비효과성이 공통적으로 존재했으며, 외부감사기능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를 통한 신뢰성 있는 이사진의 선임 등 비영리기관 자체의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직의 미션과 임원진의 구성, 법인의 운영전반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려는 투명경영 노력이 필수적이다. 경영진은 적절한 내부통제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때, 언제나 재량적 판단과 자의적 예산집행의 유혹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부정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핵심의사결정자들의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및 보상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금액에 대한 공시를 통해 경영진의 도덕성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이사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최고경영자와 이사진 간의 효과적인 상호 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순환 근무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비영리기관들도 자발적인 공시 및 제도의 채택을 통해 자정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Charity Navigator가 사용하는 평가요소들인, 실행이사들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사용에 있어 중요한 방향전환이 있었는지 여부,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여부, 특수관계인과의 대여 또는 차입거래 유무, 이사회 의사록의 보관, 내부감독기능의 존재와 검토여부, 이해상충과 관련된 정책, 내부자고발 관련 정책, 문서의 보관 및 폐기와 관련된 정책, 최고경영자 보상 결정과 관련된 절차의 공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비영리기관의 외부감사 및 규제기관의 감독

이러한 내부적 자정 노력은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받음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국내외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부정 및 횡령 등에 노출되었던 기관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부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경우 예

산의 집행 및 결산내역에 대한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비영리기관에 대한 불신 및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기여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비영리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의 발전에도 심각한 훼손을 줄 수 있다. 비영리기관들도 외부감사와 관련된 비용이 불필요한 추가적 비효율만을 초래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비용은 기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정에 노출되었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외부감사의 역할이 비영리기관의 건전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규제기관도 외부감사제도의 정책을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비영리기관의 경우 각종 보고서의 제출 면제와, 중소 비영리기관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외부감사비용의 지원 등 획기적인 유인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 규제기관이 감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이유와 한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는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규제 및 감독기관들은 외부감사인을 적극 활용하여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하다. 다만 규모 및 지원 규모를 고려해 감사의견 대신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는 등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비영리기관의 회계처리 및 공시

비영리기관들 자체에서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특히 고유영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별 활동비와 자체 행정비를 분리하여 보고해야하며, 재정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통일된 회계처리 기준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목적적합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비영리기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전건하게 운영되는 지를 이해관계자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미국의 Charity Navigator가 사용한 비영리조직의 평가요소들인, 총비용 중 프로그램비용 비중, 관리비비용 비중, 기부모금비용 비중, 주요수익 성장률, 프로그램비용 성장률, 운전자본 비율과 그 산정방법 등 재무성과와 운영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Guidestar나 Charity Navigator와 같은 민간기구의 의한 공시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유인함이 필요하다.

제 5 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문제점

1. 내부통제의 취약성

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실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임직원의 윤리의식 부재이다. 윤리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허술하며 또한 임직원의 윤리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경영자(이사장 또는 사무국장)에 대한 견제 장치의 부재이다. 대부분 특수관계자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활동이 없거나 형식적인 이사회 활동에 그치고 있다. 셋째, 내부통제장치의 부재이다. 관련규정이 미비하고, 직원의 횡령·유용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넷째, 외부감시기능의 부재이다. 행정당국의 인력부족, 주기적 사후감사 등으로 효과적인 감시수단이 될 수 없으며, 기부자 등 이해관계자도 법인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어렵다. 다섯째, 대부분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재무정보의 신뢰성 검증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부실비영리법인의 문제점은 대부분 부실한 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투명한 비영리법인의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과 운영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부통제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부정과 오류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기부자의 기부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동의하고 있다.

<표 5-1>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수준

조사항목	공인회계사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일반회계 정보이용자	주무관청 관계자
비영리기관 운영투명성 제고에 핵심적 역할	4.05(0.82)	4.00(0.76)	4.11(0.82)	3.52(0.75)
비영리기관 재무보고 부정, 오류 감소에 도움	4.07(0.80)	4.06(0.71)	4.02(0.76)	3.57(0.68)
기부여부 및 금액결정 도움	3.73(0.90)	3.52(0.98)	3.77(0.89)	3.37(0.68)

한편, <표 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실제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비영리법인 관계자는 내부통제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고 내부통제절차가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외부이해관계자 집단 대부분은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정보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비영리기관들 자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노력은 추가적인 비용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비영리기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요소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2> 내부통제 운영실태

조사항목	공인회계사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일반회계 정보이용자	주무관청 관계자
법인의사결정은 이사장/ 사무총장 재량결정	3.84(0.80)	3.22(1.12)	3.73(0.85)	3.60(0.94)
이사장 권한남용 적절한 견제/ 부정 방지프로그램 가동	2.61(0.85)	3.42(1.03)	-	2.77(0.75)
주무관청의 감독철차는 오류/부정방지 효과 있음	3.15(0.99)	3.77(0.85)	-	3.46(0.78)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보고 충실히행	3.08(0.86)	4.42(0.66)	4.02(0.76)	3.15(0.84)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명확한 구분	3.30(0.99)	4.41(0.75)	-	3.13(0.82)
법인 투명한 정보공개 경영으로 지속적인 후원결심	-	-	2.87(1.06)	-
거래발생시 즉시기록, 월별(분기별) 결산 진행	3.02(1.00)	4.36(0.82)	-	3.14(0.75)
수입과 지출업무 분리, 기록담당자 분리	2.92(1.00)	4.42(0.85)	-	3.19(0.85)
모든 후원금수입/지출 전용계좌 통해 이루어짐	3.75(0.70)	4.70(0.53)	-	3.52(0.83)
일정 금액이상 지출은 부서장/기관장 승인 필요	3.85(0.67)	4.56(0.66)	-	3.47(0.83)
경비지출은 현금영수증이나 법인카드	3.50(0.78)	4.55(0.64)	-	3.60(0.77)
윤리헌장 제정, 직업윤리교육 정기적으로 진행	2.72(0.88)	3.75(0.98)	-	3.07(0.82)
법인감사는 업무 효율성, 효과성, 회계기록 신뢰성 증진	3.09(1.07)	4.14(0.77)	-	3.25(0.86)
감사는 연1회이상 실시, 적극적으로 이사회 참여의견 표명	2.97(0.98)	4.28(0.79)	-	3.27(0.78)
책임자는 부정/오류 파급효과 제고, 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	2.78(0.81)	-	-	3.17(0.81)
비영리법인 실무자는 내부통제 이해가 충분히 되어있음	2.59(0.84)	-	-	2.98(0.84)

2. 공시의 부실 및 명확한 회계기준의 부재

2-1. 공시의 부실

비영리법인의 공시서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의 사후관리, 국세청의 가산세 등에 의한 사후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과 인력의 한계로 공시의 성실성이 결여되어도 관리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면세혜택 부여 자격조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과정이 없고, 일단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비영리법인이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면세자격을 부여받고 사후관리도 미흡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시와 투명성 제고노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현재는 사실상 부실공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장의 사회복지유형의 공익법인 국세청 홈택스 공시실태 분석에 의하면 2011~2012년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되는 330개(각 연도별 165개 동일법인)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중 외부감사를 받아 공시한 법인은 81개(2011년 41개, 2012년 40개)이다. 또한 100억원 미만인 사회복지유형의 공익법인 중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 공시한 법인은 4개(2011년, 2012년 각 2개)에 불과하다¹⁹⁾.

<표 5-3> 재무정보 공시실태

구분		미공시	부실공시	정상공시	합계
공익사업대차대조표	2011	57	143	183	383
	2012	49	147	181	377
수익사업대차대조표	2011	74	45	264	383
	2012	63	50	264	377
공익사업손익계산서	2011	78	108	197	383
	2012	57	114	206	377
수익사업손익계산서	2011	55	63	265	383
	2012	51	74	252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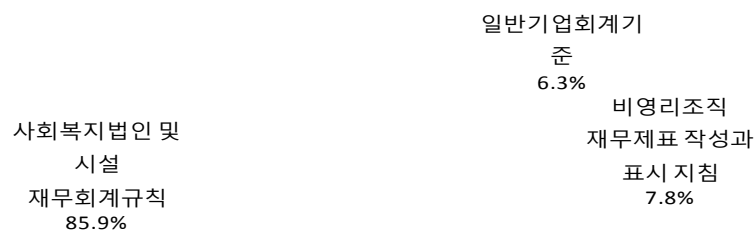
19) 100억원 이상이 되는 법인 중 2011년과 2012년 연속으로 외부감사를 받아 공시한 법인은 27개뿐이다.

공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도 <표 5-3>와 같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부실공시를 한 법인이 절반에 이르고 있어 부실공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실공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인제공,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비영리기관의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에 대한 지원을 협회차원에서 권장하고, 회계사들의 자발적인 사회기여참여를 유도하여 비영리기관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 정착에 일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정착은 장기적으로 공인회계사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2. 명확한 회계기준의 부재

현재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에는 구체적인 재무제표 작성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회계방법도 기본적으로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복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회복지법인이 적용하는 회계기준 및 회계방법이 일관성을 갖기 어렵고 비교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림 5-1>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각 법인별로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상이하다. 또한 <그림 5-2> 및 <그림 5-3>과 같이 법인별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복식부기와 단식부기가 혼용되어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도 없다.



<그림 5-1> 비영리법인 적용 회계기준(N=66)

복식부기,
발생주의
34.4%

단식부기,
현금주의
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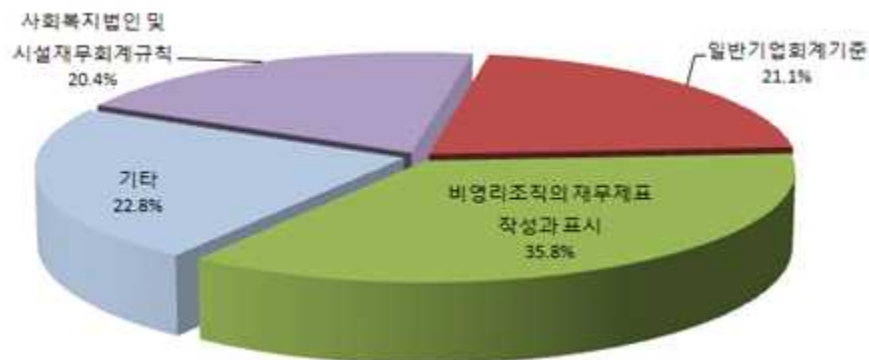
<그림 5-2> 비영리법인 공익사업 기록방식 및 인식기준(N=66)

복식부기,
발생주의
55.0%

단식부기,
현금주의
45.0%

<그림 5-3>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기록방식 및 인식기준(N=66)

한편, 비영리법인 외부감사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도 <그림 5-4>와 같이, 감사의 준거회계기준이 다양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그림 5-4> 비영리법인 외부감사 준거 회계기준(N=123)

한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예, 학술 및 장학재단)의 경우에도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①에서 ‘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회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학술 장학재단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지로 외부감사준거기준이 다양하고, 작성된 재무제표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사립학교, 의료기관 등의 비영리조직은 각각의 별도 회계관련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예술단체나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회계관련 규칙이 없는 실정이다. 회계기준원에서 2003년 발표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가 있지만 통일된 회계기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최근 회계기준원에서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이러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법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으로 민간부문의 경우 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따르고 정보부분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화된 회계기준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만하다. 비영리부분의 외부감사의 경우, 정부감사기준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도록 명시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외부감사의 실효성 미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③(시행령 제43조의 ③)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②(시행령 제27조의 ③)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이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법적제재조항이 없다. 법 제78조에 공시위반 등에 대한 가산세 조항은 있지만 외부감사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②(시행령 제27조③)에서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규정이 아니고 주무관청에서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주무관청의 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 벌칙으로 1년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외부감사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영리 공익법인은 외부감사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외부감사의무를 이행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표 5-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외부감사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수준이 공감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제고와 부정 및 오류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데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 규모이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데에도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고 있다. 외부감사가 기부금(후원금) 및 정부지원금의 증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도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2012년 기준 자산규모 50억 이상의 사회복지공익법인 377개 중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45개에 불과하고, 자산규모가 100억 이상되는 외부감사의무법인 165개 중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40개이며, 100억원 미만임에도 자발적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2개뿐이다. 이와 같이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무를 이행하는 법인은 26%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특별한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외부감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유인이 없으며 받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고 따라서 형식적인 감사가 될 수 있다.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의무 외부감사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의무 위반 시의 벌칙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위탁시설(사회복지시설법인)에 정부는 시설 운영비만을 지원하므로 법인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외부감사를 받을 유인이 없다. 정부가 이러한 시설법인의 정부지원금 투명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에 별도의 외부감사를 위한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5-4> 외부감사에 대한 인식수준

조사항목	공인회계사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일반회계 정보이용자	주무관청 관계자
투명성 제고에 효과적 수단	4.30(0.66)	3.77(0.88)	4.15(0.75)	3.89(0.80)
부정과 오류 예방에 효과적	4.13(0.67)	3.83(0.92)	4.12(0.72)	3.88(0.78)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필요	4.59(0.52)	3.72(0.98)	4.42(0.69)	3.89(0.82)
외부감사는 기부금(후원금)이나 정부지원금 증액에 도움	4.15(0.77)	2.81(0.94)	3.98(0.85)	3.65(0.84)

4. 관련 법률과 제도측면에서의 문제점²⁰⁾

비영리조직에 회계정보공시에 대한 관련 법률과 제도측면에서의 문제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규정이 산재되어 있으면서 체계성과 완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표 5-5>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법규에 따른 회계정보 요구 현황은 다양하다. 이러한 회계정보의 비표준화로 인해서 비영리조직 간의 정보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가 중복될 수 있어 비영리법인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회계정보를 공시하는 주체와 방법이 일관적이지 않다. 사립학교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외하면 비영리조직과 주무관청은 외부에 회계정보 공시 의무가 없다. 사립학교법에서는 비영리조직에게 인터넷에 1년 동안 회계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비영리조직과 주무관청 양자 모두에게 게시판에 20일 이상 또는 정기간행물에 고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자산총액 10억 이상인 비영리 공익법인만 국세청의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영리조직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정보양식으로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중복적으로 부담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10억 미만이지만 근접한 부동산 가액을 보유한 비영리조직은 국세청의 정보공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총액을 10억 미만으로 유지하려는 유인도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김진수·조진권 2009).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유형에 따라 회계에 관한 규정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의 소관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회계정보가 각 공익사업별 법률에 근거를 두다보니 회계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은 각각 재무회계규칙이 있다. 그러나 학술장학재단 등과 같은 기타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기업회계의 원칙이 명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외부감사에 대한 관련 법규정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제 50조의 ③, 시행령제43조의 ③)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제17조, 시행령 제27조의 ③)이 상이하다.

20) 김진수·조진권(2009) 논문 인용.

<표 5-5> 법규에 따른 회계정보 요구와 회계기준 현황

구분	비영리법인 설립운용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전보고 (예산서류 등)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보수일람표 6. 당해 예산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 예산총칙 2. 수입지출예산명세서 3. 전년도 부채명세서 4. 직원의 보수일람표 5. 과년도 미수액 조서 6. 추정 대차대조표 7. 전년도 대차대조표 8. 전년도 손익계산서 9. 기구와 정원일람표 10. 이사회회의록 사본 11. 학급편성표 등	없음
사후보고 (결산서류 등)	1. 사업결산서 2. 수지결산서 3. 재산목록 4. 자산증감사유 5. 재산목록 6. 사원이동현황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5. 사업수입명세서 6. 정부보조금명세서 7. 후원금수입명세서/ 사용결과보고서 8. 대차대조표 9. 수지계산서 10. 그 부속명세서 11. 감사보고서 12. 법인세신고서 13. 인건비/사업비명세서 14. 기타비용명세서 15. 자금계산서	1. 대차대조표 2. 운영계산서 3. 합계잔액시산표 4. 합산 재무제표 5. 예결산 자문위원회 회의록 6. 감사보고서(증명서) 7. 이사회 회의록 사본 8. 각부속명세서, 기타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각부속명세서 4. 기본금변동 계산서 5. 현금흐름표
회계기준	없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	의료기관회계 기준규칙
구분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10억 이상)		법인세법 (수익사업)
사전보고 (예산서류 등)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없음		없음
사후보고 (결산서류 등)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부금모집 및 지출명세 4.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5.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6. 감사보고서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세무조정 계산서 및 부속 서류
회계기준	없음(기업회계원칙을 준용)	없음		없음

* 자료원 : NPO에 대한 회계정보 공시제도의 평가 및 정책방향(김진수·조진권 2009)참조하여 수정

제 2 절 개선방안

1. 내부통제

4장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모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고, 상세한 윤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직원윤리교육 및 회계담당자 교육, 순환근무제, 감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건전한 내부통제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한편, <표 5-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개선을 위해서는 책임자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내부감사의 실질적인 모니터링, 구성원의 내부통제제도 이해와 실천, 윤리교육실시와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표 5-6> 내부통제 개선방안

조사항목	공인회계사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일반회계 정보이용자	주무관청 관계자
책임자의 회계투명성인식, 연차보고서 공시 중요	3.93(0.82)	4.19(0.61)	4.31(0.66)	3.75(0.70)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 참여 중요	3.97(0.74)	3.68(0.86)	4.23(0.68)	3.85(0.74)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4.08(0.67)	3.92(0.76)	4.36(0.67)	3.78(0.79)
구성원의 내부통제제도 이해와 실천 중요	4.17(0.54)	4.25(0.59)	4.38(0.54)	3.89(0.79)
임직원 윤리교육 등 지속적인 의식전환교육 필요	4.11(0.56)	4.25(0.69)	4.37(0.55)	3.88(0.78)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 인력 확보 중요	4.14(0.55)	4.27(0.70)	4.13(0.71)	3.94(0.67)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규모가 영세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내부통제절차가 지켜지도록 공인회계사의 멘토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감사인의 기능(이사회, 위원회)의 내실화, 윤리교육강화,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은 상장회사협의회회의내의 상설조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가 제정과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상장여부와 규모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내부통제의 기본원리나 내용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비영리부문에 특화된 내부통제모범규준을 제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리기업과 같은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을 요구하는 것은 비영리조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²¹⁾. 따라서 공인회계사회에서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기본적인 내부통제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내부통제의 품질평가를 비영리조직의 지원여부 결정에 반영하는 정책이 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회의 멘토지원단에서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비영리법인을 규제하는 관련 법규(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의료법 등)에서는 내부감사인의 임무 중에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운영 및 평가 임무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²⁾.

2. 회계기준체계와 공시제도의 개선

회계기준체계와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통일된 정보공시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영리법인회계기준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관련 법규에서 회계에 관하여 회계기준원에서 제정된 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법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영리공익법인의 면세자격을 결정하는 국세청에서 비영리공익법인의 적용회계기준 및 외

21)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유한회사의 회계개혁추진안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22) 현재 비영리법인을 감독하는 각종 규정(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등)에서는 내부감사인을 회계(또는 법률)전문가로 하도록 하여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부감사의 기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규정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부감사에 대한 지침을 세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둘째, 감사보고서의 공시에 관련된 규정의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에는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시의무를 부과한 결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감사보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공시시스템에는 공시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의무공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많은 공익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으며, 첨부한 법인도 내부감사보고서를 첨부하기도 하여 일관성이 없다. 또한 외부감사의무법인도 감사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첨부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물론 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조 ②에 의하면 외부감사의무 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에서 결산서류 등에 외부감사보고서를 포함시켜 국세청 홈택스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계기준의 통일과 함께 관련법규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원칙 준수), 의료법(의료기관회계기준준칙), 사립학교법(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및특례규칙),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각 주무부처가 제공하는 재무정보 제공양식 규정)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이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와 관련주식 등을 통해 정보를 작성하면 관련 법규의 요구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관계법규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관련부처간의 법규 조정이 이루어지면 비영리법인의 자료제출중복, 정보작성기준의 혼란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²³⁾.

23)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개혁방안(2011.10.28)에는 비영리법인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표준회계기준의 적용여부를 비영리법인 감독부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이 실제 비영리법인에 수용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항의 신설과 모범 비영리법인과 부실 비영리법인의 정보공개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법을 제외하고는 결산서 등 정보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의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의 ⑪ 자산가액의 5/1,000).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제58조의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산 및 결산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제19조의 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 5-7> 비영리법인 공시개선 의견

조사항목	공인회계사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일반회계 정보이용자	주무관청 관계자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필요	4.50(0.62)	3.72(1.01)	4.12(0.88)	3.78(0.75)
법인 회계 투명성 평가 후 차등적 정부지원 필요	4.23(0.72)	3.42(0.95)	4.32(0.73)	3.67(0.85)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기적 정보제공 중요	4.07(0.72)	4.11(0.76)	4.39(0.56)	3.94(0.80)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 기준 제정 필요	4.37(0.75)	4.14(0.80)	4.26(0.73)	3.94(0.73)
일정규모 이하 법인은 외부감사 별도 예산지원	4.13(0.75)	3.94(0.90)	3.83(0.93)	3.33(0.86)
세법 등 관련법령 정비를 통한 공시창구 일원화 개선	4.10(0.74)	4.16(0.62)	4.11(0.74)	3.72(0.77)
주무관청, 국세청 등 관련 정보 제출요구 중복 되지않도록 조정	4.17(0.65)	4.53(0.62)	4.18(0.70)	3.74(0.80)
외부감사나 정보공개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 조항 신설필요	4.26(0.64)	3.36(0.88)	4.08(0.80)	3.78(0.81)
불성실기부금운영 적발단체에 대한 공개강화 필요	4.46(0.60)	3.97(0.71)	4.56(0.68)	3.97(0.79)
성실기부금 운영의 모범단체 공개강화 필요	4.24(0.68)	-	4.43(0.65)	4.03(0.78)

사립학교법의 경우에도 예산 및 결산서 제출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제74조의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감독 법규 간에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의 정도가 일관성이 없다. 또한 앞서 2장에서 검토한 바와같이 이러한 벌칙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의 성실성이 높지 않다. 이는 형식상의 공시가 많고 공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정보의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정, 외부감사제도의 개선(회계감사기준 제정, 감리체계정립),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표준화된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시되고 불성실/성실공시법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정보중개기관(예, 한국가이드스타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3. 외부감사

외부감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 5-8>에 외부감사제도 개선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5-8> 외부감사제도의 개선방안

조사항목	공인회계사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일반회계 정보이용자	주무관청 관계자
외부감사기준을 자산 100억 이하로 낮출 필요	4.12(0.93)	-	3.95(0.90)	3.66(0.91)
일정금액 이상 정부보조금받는 법인 외부감사 의무화 필요	4.54(0.56)	-	4.49(0.63)	3.94(0.79)
소규모 공익법인 외부감사를 받되, 소극적 검토의견으로 조정 필요	3.97(0.78)	-	3.51(0.97)	3.61(0.81)
외감법과 같은 법제정으로 공익법인 외부감사에 관한 법적 근거 확립	4.45(0.59)	-	4.05(0.83)	3.82(0.75)
공익법인 감사보고서 품질제고로 금융감독원과 통합감독기구 필요	3.60(0.96)	-	3.81(0.97)	3.71(0.80)
공인회계사회가 통합감독기구 위탁감리업무 수행 방식이 적절	4.00(0.77)	-	-	3.68(0.77)

첫째,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한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감사의 대상기준으로 자산규모와 함께 수입금액 규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어도 현행 외부감사의무법인(자산 100억이상)의 외부감사가 실효성을 갖도록 외부감사의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하고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비영리법인이나 유한회사 등을 포괄하는 외부감사의 법적 근거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감사 의무화에 대한 입법추진은 유한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의무적 외부감사의 입법화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50조의 ③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 외부감사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만 외부감사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인회계사가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회계감사기준이 법규에 분명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④에는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 ⑧에 의하면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에 적용될 회계감사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비영리법인의 별도 회계감사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의 본질이나 절차가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와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AICPA 감사기준, 영국은 FRC 산하 APB(Auditing Practices Board)가 제정한 감사기준, 캐나다는 CICA(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가 제정한 감사기준을 영리/비영리 회계감사에 공히 적용(예,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토론토대, 세이브 더 칠드런, 월드비전 등)한다²⁴⁾. 금융위의 회계개혁추진계획에서도 비영리법인에 적용될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하는 영리법인 회계감사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²⁵⁾.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통합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면 비영리법인에 적합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회에서 비영리법인 회계감

24) 김명아 등(2014)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및 외부감사통합법 제정에 관한 연구” 참조.

25) 다만,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사의 범위(예를 들어, 관련 법규 등의 준수여부와 내부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제출) 등이 달라질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감사지침이 필요할 수 있다(황인태 등(2013)의 “사립대학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제도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 참조).

사 실무지침이나 감사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외부감사제도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규모를 고려한 차등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른 외부감사제도의 차등적용의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표 5-9, 10, 11>에 제시된 이해관계자의 설문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5-9>외부감사법제화(자산규모 100억 이상, 수입금액 5억 이상)

조사항목	공인회계사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일반회계 정보이용자	주무관청 관계자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감사보고서와 함께 재무제표 공시	4.31(0.73)	-	3.78(0.84)	3.78(0.84)
공익법인 공공성 고려, 공인회계사회 추천이나 정부배정 제도가 효과적	3.98(1.08)	-	3.67(0.92)	3.67(0.92)
공익법인 감사보고서의 감리제도로 감사품질 제고 필요	3.92(0.79)	-	3.78(0.87)	3.78(0.87)
자기검토 금지규정 제도화	4.03(0.87)	-	3.69(0.86)	3.69(0.86)

<표 5-10>외부감사법제화(자산규모 10억-100억 미만, 수입금액 1-5억 미만)

조사항목	공인회계사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일반회계 정보이용자	주무관청 관계자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감사보고서와 함께 재무제표 공시	3.62(0.88)	-	3.61(0.93)	3.62(0.88)
공인회계사회가 자발적 봉사자 선발 외부감사서비스 제공	2.88(1.06)	-	3.50(0.96)	3.59(0.85)
자발적 봉사자에게 직무연수시간 인정	3.19(1.22)	-	3.74(0.97)	-
외부감사 수준을 소극적 의견표명 수준으로 조정	3.67(0.88)	-	3.48(0.91)	3.46(0.82)
자기검토 금지규정 제도화	3.76(0.97)	-	3.79(0.81)	3.58(0.79)

<표 5-11> 외부감사법제화(자산규모 10억 미만, 수입금액 1억 미만)

조사항목	공인회계사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일반회계 정보이용자	주무관청 관계자
공인회계사회 자발적 봉사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지원받아 공시	3.07(1.06)	-	3.35(1.10)	3.49(0.94)
자발적 외부공시 받을 경우 정부 인센티브 제공	3.78(0.92)	-	3.86(0.88)	3.49(0.94)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이 5억이상인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표 5-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인 선임은 공인회계사회나 정부가 배정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감사보고서의 품질제고를 위한 감리제도의 신설과 자기검토 금지규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규모 10억-100억 미만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되 외부감사에 대한 의견표명수준을 소극적 검토의견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검토의 금지규정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외부감사인 지정 및 예산지원으로 비영리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공인회계사의 입장에서는 수입료의 일부를 해당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산규모 10억 미만(수입금액 1억 미만) 영세규모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의무를 배제하되 공인회계사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봉사를 통해 재무정보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세규모의 비영리법인이 부정이나 오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은 물론 인프라를 해칠 수 있다. 또한 내부통제와 회계관리(재무제표 작성지원)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멘토링 사업을 지속하고, 자발적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에는 정부가 국고를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지원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금예산의 일정비율을 외부감사예산으로 할당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외부감사인의 선임은 비영리법인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감사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감사인 지정은 공인회계사회와 같은 기관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행 비영리법인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는 사립학교법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부가 감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감리를 위해서는 상장회사 이외의 감리업무는 공인회계사회가 위탁감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4. 관련법규의 정비

4-1. 공시관련규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주무관청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공시내용이 방대하고 중복되고 있다. 주무관청별 공시내용 불일치는 비영리조직 간의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해치고, 동일정보의 중복제출은 비영리조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제정하여 비영리조직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양식과 내용이 비교가능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영리 공익법인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공익법인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공시하는 회계정보의 작성지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형별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개별법규에서는 공시서류를 가능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공시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검토하여야 할 공시관련 법규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5-12>와 같다.

<표 5-12> 공시관련 법규

관련법규	조항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규칙제19조②③	결산서의 작성 제출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제12조② (시행령제19조①②③)	사업계획등의 제출
의료법(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법제62조(규칙 제11조)	결산서의 제출
사립학교법(시행령)	법제31조(시행령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시행령 제50조의 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4-2. 외부감사와 관련된 규정

비영리법인 유형별로 외부감사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표 5-13>에서와 같이 외부감사의무화에 대한 법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③),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의 ②), 사립학교법(제31조)이다. 이러한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경우(특히 의료법인병원)에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유인이 없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정 규모(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일 때 외부감사의무대상이 될 수 있다.

<표 5-13> 외부감사와 관련된 법규

관련법규	조항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제12조②(시행령제27조③)	예산 및 결산 등, 법인사무의 감사
의료법(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	-
사립학교법(시행령)	법제31조(시행령 제9조의 4)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③(시행령 제43조의 3)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50조의 ③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 외부감사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만 외부감사불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 동법 제78조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에는 공시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은 있지만 외부감사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다. 따라서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갖지 위해서는 외부감사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 외부감사의무를 불이행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③에서는 자산규모 100억 이상이면,

주무관청이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동법 제19조(벌칙)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외부 감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러한 벌칙조항은 주무관청의 감사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을 갖기는 하지만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익법인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효과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③의 규정을 개정하여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의 평가일 또는 평가방법에 대한 법규정을 일관성있게 수정하여야 한다. 먼저 자산가액의 평가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③(시행령 43조의 ③)에 의하면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다. 반면,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의 ③에 의하면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이다. 이와 같이 외부감사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자산가액의 평가일이 달라 비영리법인에 혼동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모두 총자산가액을 결정할 때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평가방법은 외부감사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비영리법인은 물론 감독기관에도 큰 부담을 준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외부감사 대상을 판단하는 자산가액의 평가일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직전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을 시가로 재평가하여 비교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만으로 외부감사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²⁶⁾.

4-3. 총괄관리감독과 관련된 법규정비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주무부처(관청)을 통해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면세혜택을 자동적으로 부여받고 면세자격 유지조건에 대한 사후 평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관련 부처나 관청의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도 문제이지만 주무부처 또는

26) 참고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의 1항에서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산총액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내 각각의 부서별로 공익사업내용에 따라 비영리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거기에 비영리조직의 회계정보를 검증, 평가하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자의적, 비자의적으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실태 점검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는 국세청(IRS)에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어 비영리법인의 면세자격 조건과 정보의 공시 등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영리공익법인에 면세자격을 부여,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정보공시제도를 관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국세청)에서 비영리법인의 관리와 감독을 통합하는 법제도적 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무관청에서도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공시하는 자료나 회계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하면 비영리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관부처가 다른 비영리법인간에도 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처간의 협의와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제 6 장 결 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영리기업들을 중심으로 투명성제고를 위한 회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국가투명성 순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그간 상대적으로 투명성 제고 노력이 미흡했던 비영리조직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비영리조직의 후원금 또는 국고지원금의 유용 등 비리와 부정의 사례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조직의 부정사례에는 내부통제, 재무공시, 외부감사 등의 투명성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에 취약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사회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격의 제고를 위해 영리법인과 함께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재무공시의 실태분석 및 이해관계자 설문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부통제, 공시제도, 외부감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영리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2011년과 2012년 자산규모 50억 이상 383개와 377개의 사회복지 유형 공익법인의 국세청 홈택스 공시실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시항목은 기본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일부 법인은 기본적인 공시항목을 누락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의 경우 부채나 순자산의 공시를 누락하고, 손익계산서의 경우 수익과 비용의 계정과목이나 순자산변동 내용을 누락한 법인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둘째, 재무제표 작성 기준으로 발생기준과 현금기준 혼용되고 있다. 셋째, 외부감사보고서(2011년 40개, 2012년 45개) 제출법인 85개 중 100억 미만의 경우는 4개 법인에 불과하며, 외부감사 의무법인(자산 100억 이상) 330개(2011년, 2012년 각 165개) 중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은 81개(2년 연속공시 27개)로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보고서에 적용 준거기준 불일치하며, 외부감사 대상 재무제표(명칭 및 종류) 불일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홈페이지 공개된 정보가 미흡하고 내용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술 및 장학재단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공인회계사, 정보이용자, 주무관청담당자 총 382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제도, 공시제도, 외부감사에 관한 설문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설문대상자가 내부통제제도가 비영리법인의 운영투명성제고, 재무보고 부정 및 오류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실제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에 관하여는 비영리법인 관계자의 경우에 내부통제절차가 잘 지켜지고 운영수준이 높은 것으로 응답한 반면, 비영리법인의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나 주무관청의 담당자

등은 내부통제운영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응답자가 내부통제 및 공시의 개선을 위해 이사회와 감사의 실질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성실기부금 운영단체 및 성실 기부금 운영단체의 공개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범위를 확대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의 수준을 조정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인회계사는 현행 외부감사의무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 법적 제재 조항을 통해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감사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의 설문결과,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가 취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규모가 영세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내부통제절차가 지켜지도록 공인회계사의 멘토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감사인의 기능(이사회, 위원회)의 내실화, 윤리교육강화,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비영리법인의 공시서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의 사후관리, 국세청의 가산세 등에 의한 사후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과 인력의 한계로 공시의 성실성이 결여되어도 관리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비영리법인의 입장에서 상속증여세법의 공시규정,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원칙 준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각 주무부처가 제공하는 양식)의 요구가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법인별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복식부기와 단식부기가 혼용되어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도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통일된 정보공시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불성실/성실공시법인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가이드스타와 같은 민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사회복지 유형의 비영리법인 330개(2011년 165개, 2012년 165개) 중,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은 81개

(2011년 38개, 2012년 43개) 뿐이다. 따라서 적어도 현행 외부감사의무법인(자산 100억 이상)의 외부감사가 실효성을 갖도록 외부감사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유한회사 등을 포괄하는 외부감사의 법적 근거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표준회계기준을 한국회계기준원 등에서 제정하되 해당 회계기준의 채택에 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감독부처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정 규모 이하(자산 100억 미만)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외부감사인 지정 및 예산지원, 의견표명 수준의 조정, 공인회계사의 재능기부 등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영세규모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의무를 배제하고, 내부통제와 회계관리(재무제표 작성지원)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멘토링 사업을 지속하고, 자발적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에는 정부가 국고를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법인 투명성제고를 위해 비영리법인의 자발적 공시투명성 제고노력이 중요하다. 재정운영의 공개는 규제가 아닌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하고,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 확보, 윤리 및 회계 교육, 감사와 이사회 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나 내부감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 내부통제, 회계전문 교육프로그램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여 가동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영리공익법인 중 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연간 수입금액이 5억미만)과 종교보급목적의 공익법인이 공시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규모에 관계없이 공시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종교보급 목적의 공익법인(2012년 국세청 통계기준 17,708개, 총 29,509개의 60%)에 대한 재정운영정보공개 및 투명성 강화방안 논의가 필요하다²⁷⁾.

27) 3장에 제시한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종교단체의 정보공개와 외부감사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정보이용자, 주무관청, 비영리법인관계자, 종교신자 모두가 높은 수준의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 문헌

- 감사원. 2013. 취약 복지시설 기동점검. 감사결과보고서.
- 감사원. 2013. 취약 복지법인 기동점검. 감사결과보고서.
- 고영일. 2010.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35(11): 171-177.
- 권수영 · 이한상 · 최종학. 2013. 감사품질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회계학연구 38(2): 447-523.
- 김명아 · 한정미 · 최수정 · 김광윤. 2014.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회계 및 외부감사통합법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완희 · 정창모 · 전규안 · 송옥렬 · 남혜정. 2013. 사회투명성 제고와 회계의 역할. 한국회계학회 연구보고서.
- 김일섭. 2009. 비영리단체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서.
- 김진수 · 조진권. 2009. NPO에 대한 회계정보 공시제도의 평가 및 정책방향. 한국비영리연구 제7권 제3호: 3-37.
- 박주언 · 이희길. 2012. NPO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통계작성방안. 통계청 연구보고서.
- 배원기. 2012. 일본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11권(1): 3-47.
- 손성규 · 정기위. 200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이 회계오류의 발생에 미친 영향. 회계저널 18(2): 221-249.
- 손원익 · 송은주. 2010. 비영리단체 정보공개 제도의 국제비료 -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제8권(3): 3-41.
- 유혜영 · 이호영 · 채수준. 201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자원특성이 회계오류발생에 미친 영향. 경영학연구 41(6): 1347-1373.
- 전중열 · 정병수 · 박충환. 2002. 비영리사단법인의 재무보고에 대한 연구. 회계저널 제11권 제4호.
- 조현우 · 유경연. 2006.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정보의 신뢰성. 회계와 감사연구 44: 119-145.
- 한정화 · 전성빈 · 홍길표 · 김문현. 2012.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투명성 및 기업투명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경영학회 연구보고서.
- 황인태 · 강선민 · 한기원. 2013. 사립대학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제도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구보고서.

SBS 제10차 미래한국리포트. 2012. 11. 1.

Ashbaugh-Skaife, H., D. Collins, and W. Kinney. 2007. The Discovery and Reporting of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Prior to SOX-Mandated Audi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1 - 2): 166 - 192.

Choi, J. H., S. Choi, and J. Lee. 2009. Human Resource Investment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Earnings Quality. Working Paper, Seoul National University.

Doyle, J., W. Ge, and S. McVay. 2007. Determinants of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1-2): 193-223.

Francis, J. R, I. K. Khurana. and R. Pereira. 2005. Disclosure Incentives and Effects on Cost of Capital Around the World. *The Accounting Review* 80: 1125-1162.

Fremont-Smith, M. 2007. The Search for Greater Accountability of Nonprofit Organizations: Recent Legal Developments and Proposals for Change. *Fordham Law Review* 76: 609 - 646.

Ge, W., and S. McVay. 2005. The Disclosure of Material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After the Sarbanes-Oxley Act. *Accounting Horizons* 19(3): 137 - 158.

Gelb, D. S, and P. Zarowin. 2002. Corporate Disclosure Policy and the Informativeness of Stock Prices.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7: 33-52.

Healy, P.M., A.P. Hutton, and K.G. Palepu. 1999. Stock Performance and Intermediation Changes Surrounding Sustained Increase in Disclosur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6: 485-520.

Iyer, V., and A. Watkins. 2008. Adoption of Sarbanes-Oxley Measures by Nonprofit Organizations: An empirical Study. *Accounting Horizons* 22(3): 255 - 277.

Keating, E., M. Fischer, T. Gordon, and J. Greenlee. 2005. The Single Audit Act: How Compliant are Non-Profit Organizations? *Accoun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17(3): 285-309.

Ostrower, F. 2007. *Nonprofit Governance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on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from the First National Representative Study*.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etrovits, C., C. Shakespeare., A. Shin. 2011.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ternal Control Problems in Nonprofit Organizations. *The Accounting Review* 86: 325-357.

Ribar, D., and m. Wilhelm. 2002. Altruistic and joy-of-giving motivations in charitable behavior.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2): 425-457.

부록 : 이해관계자 설문지

1. 공인회계사
2. 비영리법인관계자
3. 주무관청
4. 정보이용자
5. 종교단체(가톨릭, 기독교, 불교)

설 문 지 (공인회계사용)

비영리공익법인 및 학술장학재단 관련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회의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및 회계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은 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1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하게 연구목적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연구진 일동

*본 설문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박성환(한밭대학교, psh630@hanbat.ac.kr, 010-8997-9930)

공동연구원: 이호영(연세대학교, hylee@yonsei.ac.kr, 010-3398-1847)

강선아(충남대학교, sunakang@cnu.ac.kr, 010-4068-4346)

채수준(대전대학교, sjchae@dju.kr, 010-7269-5593)

I.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귀하의 직급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Partner ② Director ③ Manager ④ In-Charge ⑤ Staff
4. 귀하의 공인회계사 업무 경력은?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5. 귀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① Big4(삼일, 삼정, 안진, 한영) 회계법인 ② Non-Big4 회계법인
③ 감사반 ④ 기타()
6. 귀하의 업무분야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회계감사 ② 경영컨설팅(M&A 등 Financial Service)
③ 세무조정 및 자문 ④ 기타

II. 비영리법인 내부통제제도 검토 및 감사 경험

1. 귀하는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1-1를 답해주십시오) ② 없다

1-1. 귀하의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 경험은 얼마나 되셨나요?

- ① 1년 미만 ② 1-3년미만 ③ 3-5년미만 ④ 5년 이상

1-2. 귀하께서 감사하였던 비영리공익법인은 어느 분야입니까?

- ① 병원 ② 학교 ③ 사회복지법인 ④ 기타()

1-3. 비영리공익법인 회계감사시 어떤 회계기준(지침)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③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④ 기타()

1-4.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참여 형태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내부감사인 ② 이사 등 집행임원
③ 외부감사인 ④ 세무 및 회계 대리인
⑤ 공인회계사회 재능기부프로그램 참가자 ⑥ 참여경험 없음

2. 외부감사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답변해 주세요.

2-1. 연간 감사시간(기간)은? (시간) 또는 (일)

2-2. 연간 감사보수는 얼마입니까? (만원)

2-3. 감사여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연간 감사시간은 충분하다	1	2	3	4	5
2	연간 감사보수는 적정하다	1	2	3	4	5

2-4.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경우가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2-5. 비적정감사의견을 표명하였다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 ① 관련회계규정의 위배 ② 감사증거의 불충분 ③ 독립성의 위배 ④ 기타

Ⅲ. 내부통제제도의 인식 및 운영실태

※ 다음은 비영리공익법인 내부통제제도의 역할 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체크(✓) 해주십시오.

1. 인식수준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매우 그렇다 4 5
1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는 비영리기관의 운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	2	3	4 5
2	내부통제제도는 비영리기관의 재무보고에 관한 부정이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3	비영리기관의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는 기부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하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2. 운영실태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매우 그렇다 4 5
1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편이다.	1	2	3	4 5
2	법인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권한남용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1	2	3	4 5
3	주무관청의 감독절차가 법인의 오류나 부정의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1	2	3	4 5
4	기부금 제공자에 대한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	1	2	3	4 5
5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1	2	3	4 5
6	거래발생 시에는 즉시 기록하고, 월별(분기별)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7	일정 금액이상의 지출은 업무 담당자 이외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승인이후에 이루어진다.	1	2	3	4 5
8	모든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1	2	3	4 5
9	수입과 지출업무는 분리되어 있으며 기록담당자와도 분리되어 있다	1	2	3	4 5
10	경비지출은 현금영수증이나 법인카드를 이루어진다.	1	2	3	4 5
11	윤리헌장이 제정되어 있고, 직원윤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12	법인의 감사는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회계기록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2	3	4 5
13	감사는 연 1회 이상 법인의 사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1	2	3	4 5
14	비영리법인의 책임자는 부정과 오류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2	3	4 5
15	전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실무자는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다.	1	2	3	4 5

IV.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

※ 다음은 귀 법인의 회계공시제도의 개선과 관련 한 사항입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체크해주시요.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법인 운영책임자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연차보고서의 공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	사무국장이나 이사장 중심이 아닌 이사회실의 실질적인 운영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후원금 기부단체(개인)에게 누가 수혜자인지 어떤 혜택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5	발생기준과 복식부기 방식을 포함하는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구성원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7	임직원에게 대한 윤리교육 등 지속적인 의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8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9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0	법인 회계의 투명성을 평가하여 차등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1	일정규모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에 대한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2	세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공시창구를 일원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3	주무관청, 국세청 등 결산과 관련된 정보의 제출요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4	외부감사나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5	불성실기부금 운영으로 적발된 단체에 대한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6	성실기부금 운영의 모범단체에 대한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V. 외부감사제도 관련 의견

1.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효과

※ 다음은 외부감사제도(법인의 감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비영리공익법인(단체)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는 투명성제고의 효과적인 수단이다.	1	2	3	4	5
2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는 부정과 오류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1	2	3	4	5
3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자산 및 후원금 수입)의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2	3	4	5
4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는 기부금(후원금)과 정부지원금의 증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5	사회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단체도 공익법인과 같이 외부감사를 받아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2.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 현재 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체크해주시시오.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비영리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하(예, 50억)로 낮출 필요가 있다.	1	2	3	4	5
2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3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감사의견표명의 수준을 소극적 검토의견(Review)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5	공익법인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같은 통합감독기구가 필요하다.	1	2	3	4	5
6	공인회계사회가 통합감독기구의 위탁을 받아 공익법인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1	2	3	4	5

VI.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세부실행방안

1. 자산규모 100억 이상(민간기업 외부감사의무기준) 또는 연간현금수입 5억원 이상인 비영리공익법인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감사보고서와 함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1	2	3	4	5
2	공익법인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이나 정부에서 배정하는 제도가 효과적이다.	1	2	3	4	5
3	공익법인 감사보고서의 감리제도를 통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4	재무제표 작성지원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자기검토의 금지규정을 제도화한다.	1	2	3	4	5

2. 자산규모 10억~100억원 미만 또는 연간 현금수입 1~5억원 미만인 비영리공익법인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감사보고서와 함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1	2	3	4	5
2	공익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발적인 봉사자를 선발하여 외부감사서비스를 제공한다.	1	2	3	4	5
3	자발적인 봉사자에게는 직무연수시간으로 인정해준다.	1	2	3	4	5
4	외부감사의 수준을 소극적 의견표명 수준(Review)으로 조정한다.	1	2	3	4	5
5	재무제표 작성지원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자기검토의 금지규정을 제도화한다.	1	2	3	4	5

3. 자산규모 10억 미만 또는 연간 현금수입 1억원 미만인 비영리공익법인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공인회계사의 자발적인 봉사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지원을 받아 재무정보를 공시한다.	1	2	3	4	5
2	외부감사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되, 자발적인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	2	3	4	5

VII. 기타 의견(설문에 반영 못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귀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설문지 (비영리법인 관계자용)

사회복지법인 및 학술장학재단 관련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회의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및 회계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은 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1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하게 연구목적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연구진 일동

*본 설문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박성환(한밭대학교, psh630@hanbat.ac.kr, 010-8997-9930)

공동연구원: 이호영(연세대학교, hylee@yonsei.ac.kr, 010-3398-1847)

강선아(충남대학교, sunakang@cnu.ac.kr, 010-4068-4346)

채수준(대전대학교, sjchae@dju.kr, 010-7269-5593)

I.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귀하가 속한 법인의 소재지는? ① 서울/경기 수도권 ② 광역자치단체 ③ 기타
4. 귀하의 직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대표이사(회장, 이사장, 상임이사) ② 이사 ③ 감사
④ 사무총장(국장) ⑤ 담당직원(사무장, 운영 및 관리실장 포함) ⑥ 기타()
5. 귀하의 전공분야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상경계열 ② 행정/법학 ③ 사회복지 ④ 기타 ()
6. 귀하의 현 기관의 근속기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7. 귀 법인의 자산규모와 기본재산규모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주세요.

번호	금액범위	총자산		기본재산	
		2011년말	2012년말	2011년말	2012년말
1	50억 미만				
2	50억 이상~100억 미만				
3	100억 이상				

- 7-1. 귀 법인의 현재 이사총수는 몇 명입니까? (명)
- 7-2. 이사 중 외부추천이사는 몇 명입니까? (명)
- 7-3. 출연자와 관계가 있는 이사는 몇 명입니까? (명)
- 7-4. 이사 중 상근이사는 몇 명입니까? (명)

8-1. 귀 법인의 감사는 몇 명이십니까? ① 1명 ② 2명

8-2. 상근감사는 몇 명입니까? ① 1 명 ② 2명

8-3. 감사(2명일 경우에는 감사1, 감사2)의 전문분야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8-3-1. 감사1:

8-3-2. 감사2:

- ① 회계전문가(회계사,세무사,회계전공교수) ② 법률전문가(변호사,법률전공교수)
③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④ 기타()

9. 법인의 정관 이외에 별도의 회계 규정 및 지침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

10. 귀 법인이 다음 중 어떤 회계기준(지침)을 적용하고 계십니까?

-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③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④ 기타()

10-1. 고유목적사업의 회계기록방식과 회계원칙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복식부기, 발생주의 ② 단식부기, 현금주의

10-2 수익사업 회계의 기록방식과 회계원칙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복식부기, 발생주의 ② 단식부기, 현금주의

11. 회계 및 세무처리를 위해 자체 회계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① 예(11-1을 답해주십시오) ② 아니오

11-1. 11의 답이 '예'라면, 회계전담인력은 관련 전공학위 및 자격증 등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2. 외부 세무회계사무소에 회계장부의 기장과 재무제표 작성 및 신고 등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II. 내부통제제도의 인식 및 운영실태

※ 다음은 비영리공익법인 내부통제제도의 인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체크(✓) 해주십시오.(내부통제제도는 법인의 부정 및 오류를 방지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절차를 뜻합니다.)

1. 인식수준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는 비영리기관의 운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	2	3	4	5
2	내부통제제도는 비영리기관의 재무보고에 관한 부정이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3	비영리기관의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는 기부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2. 운영실태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편이다.	1	2	3	4	5
2	법인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권한남용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1	2	3	4	5
3	주무관청의 감독절차가 기관의 오류나 부정의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1	2	3	4	5
4	기부금 제공자에 대한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	1	2	3	4	5
5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1	2	3	4	5
6	거래발생 시에는 즉시 기록하고, 월별(분기별)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7	일정 금액이상의 지출은 업무 담당자 이외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승인이후에 이루어진다.	1	2	3	4	5
8	모든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1	2	3	4	5
9	수입과 지출업무는 분리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통장잔액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1	2	3	4	5
10	경비지출은 현금영수증이나 법인카드를 이루어진다.	1	2	3	4	5
11	윤리헌장의 제정되어 있고, 직원윤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12	법인의 감사는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회계기록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2	3	4	5
13	감사는 연 1회 이상 법인의 사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1	2	3	4	5

Ⅲ. 공시 현황

1. 귀 법인이 결산자료,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법인의 현황 등을 어떻게 공시하고 있습니까? 해당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국세청 홈택스 ②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③복지부 나눔넷
 ④안행부 나눔포털 ⑤법인의 자체 홈페이지 ⑥한국가이드스타
 ⑦간행물 ⑧이메일 서비스 ⑨기타()

2. 귀 법인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

3-1. 귀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기부단체(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국세청 홈택스 공시자료 ②기부금(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③이사회 회의록 ④연차(활동)보고서
 ⑤후원회원의 검색서비스 ⑥이메일 서비스(뉴스레터 등)

3-2. 기부금 등 주요 정보의 업데이트 주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일별 ②월별 ③분기별
 ④연도별 ⑤실시간 ⑥기타()

4. 법인관련 정보의 공시현황에 관하여 의견을 체크(✓) 해주십시오.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현재 법인의 인력과 재정규모에 비추어 주무관청이나 국세청 등의 서류제출 및 전자공시는 큰 부담을 준다.	1	2				3	4				5				
2	국세청 홈페이지 의무공시는 지자체 등에 제출 (또는 공시)하는 내용과 중복된다.	1	2				3	4				5				
3	국세청 홈택스나 지자체 등에 제출하는 결산서류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뢰할 만하다.	1	2				3	4				5				
4	현재 국세청 홈택스, 기관의 홈페이지, 주무관청 등을 통해 공시하는 정보는 기부단체(개인)가 후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하다.	1	2				3	4				5				
5	공익법인의 투명한 정보공개는 후원금을 증액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6	주무관청은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 법인이 제출한 공시서류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한다.	1	2				3	4				5				

IV.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

※ 다음은 귀 법인의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의 개선과 관련 한 사항입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체크(√)해주시시오.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법인 운영책임자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연차보고서의 공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사무국장이나 이사장 중심이 아닌 이사회실의 실질적인 운영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후원금 기부단체(개인)에게 누가 수혜자인지 어떤 혜택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5	비영리법인의 통일된 세무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1	2	3	4	5
6	구성원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	1	2	3	4	5
7	임직원에게 윤리교육 등 지속적인 의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1	2	3	4	5
8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1	2	3	4	5
9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0	법인 회계의 투명성을 평가하여 차등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11	일정규모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에 대한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1	2	3	4	5
12	세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통해 공시창구를 일원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1	2	3	4	5
13	주무관청, 국세청 등 결산과 관련된 정보의 제출요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4	외부감사나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5	불성실기부금 운영으로 적발된 단체에 대한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V. 외부감사제도 관련 의견

※ 다음은 외부감사제도(외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서류 등의 회계감사를 의미합니다)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귀 법인은 현재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① 예(1-1~6을 답해주십시오) ② 아니오 (2를 답해주십시오)

1-1. 외부감사인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Big4(삼일, 삼정, 안진, 한영) 회계법인 ②Non-Big4 회계법인 ③감사반(개인회계사)

1-2. 감사기간	1-3. 공인회계사 투입인원	1-4. 감사수수료
일(시간)	명	만원

- 1-5.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 이외에 제공받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① 재무제표 작성 ② 세무자문 ③ 내부통제제도구축 ④ 기타()

1-6. 자산이 100억원 미만인데 외부감사를 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감독기관의 요구 ② 기부자 등의 요구
③ 이사장 등 경영층의 자발적 투명성 제고 ④ 기타()

2.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감독기관의 요구가 없어서 ② 감사를 받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어서
③ 기부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없어서 ④ 수수료 부담이 커서
⑤ 기타()

3. **현행 비영리공익법인(단체)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번 호	항 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가 법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2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는 법인의 부정과 오류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1	2	3	4	5
3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자산 및 후원금 수입)의 법인 은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2	3	4	5
4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기부금 증액이나 정부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5	외부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다.	1	2	3	4	5
6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감사를 받을 생각이다.	1	2	3	4	5
7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단체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VI. 기타 의견(설문에 반영 못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세요)

귀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설문지 (정보이용자용)

비영리공익법인 및 학술장학재단 관련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회의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및 회계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은 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1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하게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연구진 일동

*본 설문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박성환(한밭대학교, psh630@hanbat.ac.kr, 010-8997-9930)

공동연구원: 이호영(연세대학교, hylee@yonsei.ac.kr, 010-3398-1847)

강선아(충남대학교, sunakang@cnu.ac.kr, 010-4068-4346)

채수준(대전대학교, sjchae@dju.kr, 010-7269-5593)

I.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주생활) 지역은? ① 서울/경기 수도권 ② 광역자치단체 ③ 기타
4. 귀하의 직업은?
① 교수 ② 회사원 ③ 공무원 ④ 기타()
5. 사회복지(학술장학)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에 기부(또는 현금)의 경험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5-1. 기부경험이 있다면 기부단체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지인의 소개 ② 소속한 종교단체의 소개 ③ TV 등 미디어의 불우이웃 소개
④ 유니세프 등과 같은 단체의 홍보물 ⑤ 기타()
6. 비영리법인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① 지자체 홈페이지 ②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 공시
③ 해당 법인 홈페이지 ④ 복지부 나눔넷
⑤ 안행부 나눔포털 ⑥ 한국가이드스타
⑦ 온라인 정보제공(이메일) ⑧ 기타 (예, 간행물 등)

7. 각 경로로부터 확인하신 정보내용은? 해당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시오.

- | | |
|--------------|----------------|
| ① 법인의 연차보고서 | ② 외부감사보고서 |
| ③ 기부금수입 및 지출 | ④ 이사회회의록 |
| ⑤ 재무제표 | ⑥ 법인의 주요 행사 소개 |
| ⑦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 ⑧ 기타() |

8. 현재 이용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정보원에 인식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정도에 체크(✓) 해주시오.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매우 그렇다 4 5
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정보는 적시에 제공된다.	1	2	3	4 5
2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	1	2	3	4 5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정보는 후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하다.	1	2	3	4 5
4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확인(검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II. 내부통제제도의 인식 및 운영실태

※ 다음은 비영리공익법인 내부통제제도의 역할 등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체크(✓) 해주시오.

1. 인식수준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매우 그렇다 4 5
1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는 비영리기관의 운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	2	3	4 5
2	내부통제제도는 비영리기관의 재무보고에 관한 부정이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3	비영리기관의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는 기부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2. 운영실태(귀하가 기부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경험에 기초하여 응답해주세요)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매우 그렇다 4 5
1	비영리법인의 후원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가 대표자(책임자)에 의해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	비영리법인의 책임자는 법인의 운영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중요시 하고 있다.	1	2	3	4 5
3	후원금 납부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납부 즉시 영수통보를 받는다.	1	2	3	4 5
4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윤리경영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다.	1	2	3	4 5

Ⅲ.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 의견

※ 다음은 귀 법인의 회계공시제도의 개선과 관련 한 사항입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체크해주십시오.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법인 운영책임자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연차보고서의 공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사무국장이나 이사장 중심이 아닌 이사회실의 실질적인 운영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후원금 기부단체(개인)에게 누가 수혜자인지 어떤 혜택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5	발생기준과 복식부기 방식을 포함하는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1	2	3	4	5
6	구성원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	1	2	3	4	5
7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 등 지속적인 의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1	2	3	4	5
8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1	2	3	4	5
9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0	법인 회계의 투명성을 평가하여 차등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11	일정규모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에 대한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1	2	3	4	5
12	세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공시창구를 일원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1	2	3	4	5
13	주무관청, 국세청 등 결산과 관련된 정보의 제출요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4	외부감사나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5	불성실기부금 운영으로 적발된 단체에 대한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6	성실기부금 운영으로 적발된 단체에 대한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IV.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 대한 의견

※ 다음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의견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는 투명성제고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1	2	3	4	5
2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는 부정과 오류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1	2	3	4	5
3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자산 및 후원금 수입 기준)의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2	3	4	5
4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는 기부금(후원금)이나 정부지원금 증액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5	사회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단체도 공익법인과 같이 외부감사를 받아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2.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 현재 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체크해주시십시오.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비영리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하(예, 50억)로 낮출 필요가 있다.	1	2	3	4	5
2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3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감사의견표명의 수준을 소극적 검토의견(Review)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5	공익법인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같은 통합감독기구가 필요하다.	1	2	3	4	5
6	사회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단체도 공익법인과 같이 외부감사를 받아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V. 외부감사 법제화에 대한 세부실행방안

1. 자산규모 100억 이상(민간기업 외부감사의무기준) 또는 연간현금수입 5억원 이상인 비영리공익법인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감사보고서와 함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1	2	3	4	5
2	공익법인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이나 정부에서 배정하는 제도가 효과적이다.	1	2	3	4	5
3	공익법인 감사보고서의 감리제도를 통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4	재무제표 작성지원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자기검토의 금지규정을 제도화한다.	1	2	3	4	5

2. 자산규모 10억~100억원 미만 또는 연간 현금수입 1~5억원 미만인 비영리공익법인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감사보고서와 함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1	2	3	4	5
2	공익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발적인 봉사자를 선발하여 외부감사서비스를 제공한다.	1	2	3	4	5
3	자발적인 봉사자에게는 직무연수시간으로 인정해준다.	1	2	3	4	5
4	외부감사의 수준을 소극적 의견표명 수준(Review)으로 조정한다.	1	2	3	4	5
5	재무제표 작성지원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자기검토의 금지규정을 제도화한다.	1	2	3	4	5

3. 자산규모 10억 미만 또는 연간 현금수입 1억원 미만인 비영리공익법인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공인회계사의 자발적인 봉사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지원을 받아 재무정보를 공시한다.	1	2	3	4	5
2	외부감사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되, 자발적인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	2	3	4	5

VI. 기타 의견(설문에 반영 못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귀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설문지 (주무관청용)

비영리공익법인 및 학술장학재단 관련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회의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및 회계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은 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1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하게 연구목적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연구진 일동

*본 설문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박성환(한밭대학교, psh630@hanbat.ac.kr, 010-8997-9930)

공동연구원: 이호영(연세대학교, hylee@yonsei.ac.kr, 010-3398-1847)

강선아(충남대학교, sunakang@cnu.ac.kr, 010-4068-4346)

채수준(대전대학교, sjchae@dju.kr, 010-7269-5593)

I.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가 속한 기관의 소재지는? ① 서울/경기 수도권 ② 광역자치단체 ③ 기타
4. 귀하의 현 직급은?
① 서기보 ② 서기 ③ 주사보 ④ 주사 ⑤ 사무관 ⑥ 서기관
5. 귀하의 현재 업무수행 경력은 몇 년입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6.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복수 선정가능)
①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중 ②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및 보직변경
③ 비영리법인 직원의 잦은 교체 ④ 비영리법인 직원의 전문성부족
⑤ 비영리법인 관련 정보의 신뢰성 ⑥ 담당공무원의 법률, 회계 지식부족
⑦ 기타()

7. 현재 비영리법인이 제출한 결산자료 등 정보의 인식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정보는 이해가능하다.	1	2	3	4	5	1	2	3	4	5
2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	1	2	3	4	5	1	2	3	4	5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정보는 충분하다.	1	2	3	4	5	1	2	3	4	5
4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신뢰성이 높아진다.	1	2	3	4	5	1	2	3	4	5

9. 현재 비영리법인이 제출한 결산자료 등 정보의 활용수준에 대한 의견입니다.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적기에 제출받아 활용하고 있다.	1	2	3	4	5	1	2	3	4	5
2	사회복지법인의 결산보고서는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1	2	3	4	5	1	2	3	4	5
3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정부지원여부를 결정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	1	2	3	4	5	1	2	3	4	5
4	결산보고서 등 사회복지법인의 종합적인 정보를 홈페이지나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법인은 지원여부를 결정 때 인센티브를 준다.	1	2	3	4	5	1	2	3	4	5

II. 내부통제제도의 인식 및 운영실태

※ 다음은 내부통제제도의 인식 및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감독(현장평가 등)경험에 기초하여 의견을 체크(✓) 해주십시오.(내부통제제도는 법인의 부정 및 오류를 방지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절차를 뜻합니다.)

1. 인식수준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는 비영리법인의 운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	2	3	4	5	1	2	3	4	5
2	내부통제제도는 비영리법인의 재무보고에 관한 부정이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1	2	3	4	5
3	비영리법인의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는 기부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1	2	3	4	5

2. 운영실태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편이다.	1	2	3	4	5					
2	법인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권한남용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1	2	3	4	5					
3	주무관청의 감독절차가 기관의 오류나 부정의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1	2	3	4	5					
4	기부금 제공자에 대한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	1	2	3	4	5					
5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1	2	3	4	5					
6	거래발생 시에는 즉시 기록하고, 월별(분기별)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7	일정 금액이상의 지출은 업무 담당자 이외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승인이후에 이루어진다.	1	2	3	4	5					
8	모든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1	2	3	4	5					
9	수입과 지출업무는 분리되어 있으며, 기록담당자외도 분리되어 있다.	1	2	3	4	5					
10	경비지출은 현금영수증이나 법인카드로 이루어진다.	1	2	3	4	5					
11	윤리현장이 제정되어 있고, 직원윤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12	법인의 감사는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회계기록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2	3	4	5					
13	법인의 감사는 연 1회 이상 법인의 사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1	2	3	4	5					
14	비영리법인의 책임자는 부정과 오류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2	3	4	5					
15	전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실무자는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다.	1	2	3	4	5					

Ⅲ.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의 개선 의견

※ 비영리법인의 내부통제 및 회계공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음 항목에 귀하의 의견을 체크(✓) 해주십시오.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법인 운영책임자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연차보고서의 공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사무국장이나 이사장 중심이 아닌 이사회에 실질적인 운영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후원금 기부단체(개인)에게 누가 수혜자인지 어떤 혜택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5	발생기준과 복식부기 방식을 포함하는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1	2				3	4				5				
6	구성원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중요하다.	1	2				3	4				5				
7	임직원에게 대한 윤리교육 등 지속적인 의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1	2				3	4				5				
8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1	2				3	4				5				
9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0	법인 회계의 투명성을 평가하여 차등적인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11	일정규모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에 대한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1	2				3	4				5				
12	세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공시창구를 일원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1	2				3	4				5				
13	주무관청, 국세청 등 결산과 관련된 정보의 제출요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4	외부감사나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5	불성실기부금 운영으로 적발된 단체에 대한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6	성실기부금 운영의 모범단체에 대한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17	종교단체도 다른 공익법인과 같이 재무정보의 공시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1	2				3	4				5				

IV. 외부감사에 대한 인식

※ 외부감사란 법인의 임원인 감사에 의해 수행되는 내부감사가 아니고 외부의 회계전문가(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 의해 수행되는 결산서류 등의 회계감사를 의미합니다.

1.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효과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는 투명성제고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1	2	3	4	5
2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는 부정과 오류의 예방에 효과적이다.	1	2	3	4	5
3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자산 및 후원금 수입)의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2	3	4	5
4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는 기부금의 증액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2	3	4	5
5	사회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단체도 공익법인과 같이 외부감사를 받아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2.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현재 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공익법인(종교단체제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비영리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대 상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하(예, 50억)로 낮출 필요가 있다.	1	2	3	4	5
2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3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되 감사의견표 명의 수준을 소극적 검토의견(Review)으로 그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1	2	3	4	5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5	공익법인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같은 통합감독기구가 필요하다.	1	2	3	4	5
6	공인회계사회가 통합감독기구의 위탁을 받아 공익법인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1	2	3	4	5

V. 외부감사의 법제화에 대한 세부실행방안

1. 자산규모 100억 이상(민간기업 외부감사의무기준) 또는 연간현금수입 5억원(모금액 또는 정부보조금 합계) 이상인 비영리공익법인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감사보고서와 함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1	2	3	4	5
2	공익법인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이나 정부에서 배정하는 제도가 효과적이다.	1	2	3	4	5
3	공익법인 감사보고서의 감리제도를 통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4	재무제표 작성지원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자기검토의 금지규정을 제도화한다.	1	2	3	4	5

2. 자산규모 10억~100억원 미만 또는 연간 현금수입 1~5억원(모금액 또는 정부보조금 합계) 미만인 비영리공익법인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감사보고서와 함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1	2	3	4	5
2	공익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자발적인 봉사자를 선발하여 외부감사서비스를 제공한다.	1	2	3	4	5
3	외부감사의 수준을 소극적 의견표명 수준(Review)으로 조정한다.	1	2	3	4	5
4	재무제표 작성지원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자기검토의 금지규정을 제도화한다.	1	2	3	4	5

3. 자산규모 10억 미만 또는 연간 현금수입 1억원(모금액 또는 정부보조금 합계) 미만인 비영리공익법인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공인회계사의 자발적인 봉사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지원을 받아 재무정보를 공시한다.	1	2	3	4	5
2	외부감사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되, 자발적인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	2	3	4	5

VI. 기타 의견(설문에 반영 못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귀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설문지 (종교단체 및 가톨릭신자용)

종교단체(법인) 관련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와 불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종교단체가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선도한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설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회의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및 회계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은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사회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1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하게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연구진 일동

*본 설문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박성환(한밭대학교, psh630@hanbat.ac.kr, 010-8997-9930)

공동연구원: 이호영(연세대학교, hylee@yonsei.ac.kr, 010-3398-1847)

강선아(충남대학교, sunakang@cnu.ac.kr, 010-4068-4346)

채수준(대전대학교, sjchae@dju.kr, 010-7269-5593)

I.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주생활) 지역은? ① 서울/경기 수도권 ② 광역자치단체 ③ 기타
4. 귀하는 다음 사항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성직자 ② 행정 또는 재정관리 담당자 ③ 일반신자 ④기타()
5. 귀 성당의 신자 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1,000명 이내 ② 1,000~5,000명 ③ 5,000~10,000명 ④ 10,000명 이상
6. 귀하의 신앙생활기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1년 이내 ② 1~5년 ③ 5~10년 ④ 10년 이상

Ⅲ.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

※ 종교단체 전반의 재정투명성 및 신뢰성에 관한 다음의 항목들에 의견을 체크(✓) 해 주십시오(종교단체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면세혜택과 재정정보의 공개는 물론 외부감사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1. 투명성 및 신뢰성 인식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종교단체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은 높은 수준이다.	1	2	3	4	5										
2	종교단체의 현금[교무금, 봉헌금, 후원금] 횡령 등 부정사례는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다.	1	2	3	4	5										
3	종교단체의 재무정보공개와 투명성 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1	2	3	4	5										
4	종교단체의 현금[교무금, 봉헌금, 후원금] 수입과 사용내역의 공개는 신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	1	2	3	4	5										
5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성직자 과세는 종교단체의 사회적 신뢰성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6	종교단체에 재무정보의 작성 및 공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조항은 종교단체의 사회적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1	2	3	4	5										
7	종교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공개는 종교단체에 비과세 등의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대한 의무라 할 수 있다.	1	2	3	4	5										

2.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일정 규모이상의 종교단체는 재무제표 작성은 물론 외부감사와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하다.	1	2	3	4	5										
2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다른 비영리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의 세법상의 의무와 재무정보의 공개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3	재정의 투명성을 갖춘 종교단체에만 기부금모금단체로서 정부가 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4	종교단체의 재산이 사유화(세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단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격을 갖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5	종교단체의 부정이나 오류를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공헌할 것이다.	1	2	3	4	5										
6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단체는 신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재정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7	종교단체가 재무정보를 작성 공시할 수 있도록 정부[또는 민간 전문기관]가 주도하여 회계지침을 마련하고 종교단체 소속 담당자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IV. 기타 의견(설문에 반영 못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귀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설문지 (종교단체 및 기독교신자용)

종교단체(법인) 관련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와 불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종교단체가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선도한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설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회의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및 회계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은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사회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1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하게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연구진 일동

*본 설문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박성환(한밭대학교, psh630@hanbat.ac.kr, 010-8997-9930)

공동연구원: 이호영(연세대학교, hylee@yonsei.ac.kr, 010-3398-1847)

강선아(충남대학교, sunakang@cnu.ac.kr, 010-4068-4346)

채수준(대전대학교, sjchae@dju.kr, 010-7269-5593)

I.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주생활) 지역은? ① 서울/경기 수도권 ② 광역자치단체 ③ 기타
 4. 귀하의 소속교회의 규모는(출석성인기준)?
① 100명 이내 ② 101~300명 ③ 301~500명 ④ 501~1,000명
⑤ 1,001~2,000명 ⑥ 2,001명 이상
 5. 귀하는 다음 사항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성직자 ② 행정 또는 재정관리 담당자 ③ 일반신자 ④기타()
- 5-1. 귀하의 신앙생활기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1년 이내 ② 1~5년 ③ 5~10년 ④ 10년 이상

① 예(6-1~2을 답해주십시오) ② 아니오

①주별 ②월별 ③ 분기별 ④ 연도별

① 현금 등 수입내역 ② 수입 및 지출(세입 및 세출) 내역
③ 자산과 부채 등 재정상태 ④ 감사보고서
⑤ 주요 활동계획 및 실적 보고서 ⑥ 기타 ()

Ⅲ.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

※ 종교단체 전반의 재정투명성 및 신뢰성에 관한 다음의 항목들에 의견을 체크(✓) 해 주십시오(종교단체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면세혜택과 재정정보의 공개는 물론 외부감사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1. 투명성 및 신뢰성 인식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교회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은 높은 수준이다.	1	2	3	4	5	
2	교회의 헌금[교무금, 봉헌금, 후원금] 횡령 등 부정사례는 교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다.	1	2	3	4	5	
3	교회의 재무정보공개와 투명성 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1	2	3	4	5	
4	교회의 헌금[교무금, 봉헌금, 후원금] 수입과 사용내역의 공개는 신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	1	2	3	4	5	
5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성직자 과세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성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6	교회에 재무정보의 작성 및 공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조항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1	2	3	4	5	
7	교회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공개는 교회에 비과세 등의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대한 의무라 할 수 있다.	1	2	3	4	5	

2.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일정 규모이상의 교회는 재무제표 작성은 물론 외부감사와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하다.	1	2	3	4	5	
2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교회에 대해서도 다른 비영리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의 세법상의 의무와 재무정보의 공개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3	재정의 투명성을 갖춘 교회에만 기부금모금단체로서 정부가 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4	교회의 재산이 사유화(세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개인이 아닌 법인격을 갖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5	교회의 부정이나 오류를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은 교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공헌할 것이다.	1	2	3	4	5	
6	일정규모 이상의 교회는 신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재정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7	교회가 재무정보를 작성 공시할 수 있도록 정부[또는 민간전문기관]가 주도하여 회계지침을 마련하고 교회 소속 담당자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IV. 기타 의견(설문에 반영 못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귀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설문지 (종교단체 및 불교신자용)

종교단체 (법인) 관련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와 불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종교 단체가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선도한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설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회의 비영리조직의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및 회계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은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사회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1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순수하게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연구진 일동

*본 설문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박성환(한밭대학교, psh630@hanbat.ac.kr, 010-8997-9930)

공동연구원: 이호영(연세대학교, hylee@yonsei.ac.kr, 010-3398-1847)

강선아(충남대학교, sunakang@cnu.ac.kr, 010-4068-4346)

채수준(대전대학교, sjchae@dju.kr, 010-7269-5593)

I.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20~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주생활) 지역은? ① 서울/경기 수도권 ② 광역자치단체 ③ 기타
4. 귀하는 다음 사항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성직자 ② 행정 또는 재정관리 담당자 ③ 일반신자 ④기타()
5. 귀 사찰(불당)의 신자 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1,000명 이내 ② 1,000~5,000명 ③ 5,000~10,000명 ④ 10,000명 이상

① 1년 이내 ② 1~5년 ③ 5~10년 ④ 10년 이상

① 예(6-1~2을 답해주십시오) ② 아니오

①주별 ②월별 ③ 분기별 ④ 연도별

① 현금[보통금, 교무금, 후원금] 등 수입내역
 ② 월별(또는 분기별, 연도별)수입 및 지출(세입 및 세출) 내역
 ③ 자산과 부채 등 재정상태 ④ 감사보고서
 ⑤ 주요 활동계획 및 실적 보고서 ⑥ 기타 ()

※ 다음은 귀하가 속한 사찰(불당)의 재정운영 정보공시 및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체크(√) 해주십시오.

- 310 -

Ⅲ. 종교단체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관련

※ 다음은 모든 종교단체의 재정투명성 및 신뢰성에 관한 공통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체크(✓) 해주십시오(현재 종교단체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면세혜택과 재정정보의 공개는 물론 외부감사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1. 투명성 및 신뢰성 인식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종교단체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은 높은 수준이다.	1	2	3	4	5
2	종교단체의 현금[시주금, 후원금] 횡령 등 부정사례는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다.	1	2	3	4	5
3	종교단체의 재무정보공개와 투명성 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1	2	3	4	5
4	종교단체의 현금[시주금, 후원금] 수입과 사용내역의 공개는 신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	1	2	3	4	5
5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성직자 과세는 종교단체의 사회적 신뢰성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6	종교단체에 재무정보의 작성 및 공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조항은 종교단체의 사회적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1	2	3	4	5
7	종교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공개는 종교단체에 비과세 등의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대한 의무라 할 수 있다.	1	2	3	4	5

2.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안

번호	항목	전혀 아니다 1	2	보통 3	4	매우 그렇다 5
1	일정 규모이상의 종교단체는 재무제표 작성은 물론 외부감사와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하다.	1	2	3	4	5
2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다른 비영리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의 세법상의 의무와 재무정보의 공개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3	재정의 투명성을 갖춘 종교단체에만 기부금모금단체로서 정부가 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4	종교단체의 재산이 사유화(세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단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격을 갖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5	종교단체의 부정이나 오류를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공헌할 것이다.	1	2	3	4	5
6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단체는 신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재정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7	종교단체가 재무정보를 작성 공시할 수 있도록 정부[또는 민간전문기관]가 주도하여 회계지침을 마련하고 종교단체 소속 담당자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IV. 기타 의견(설문에 반영 못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귀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